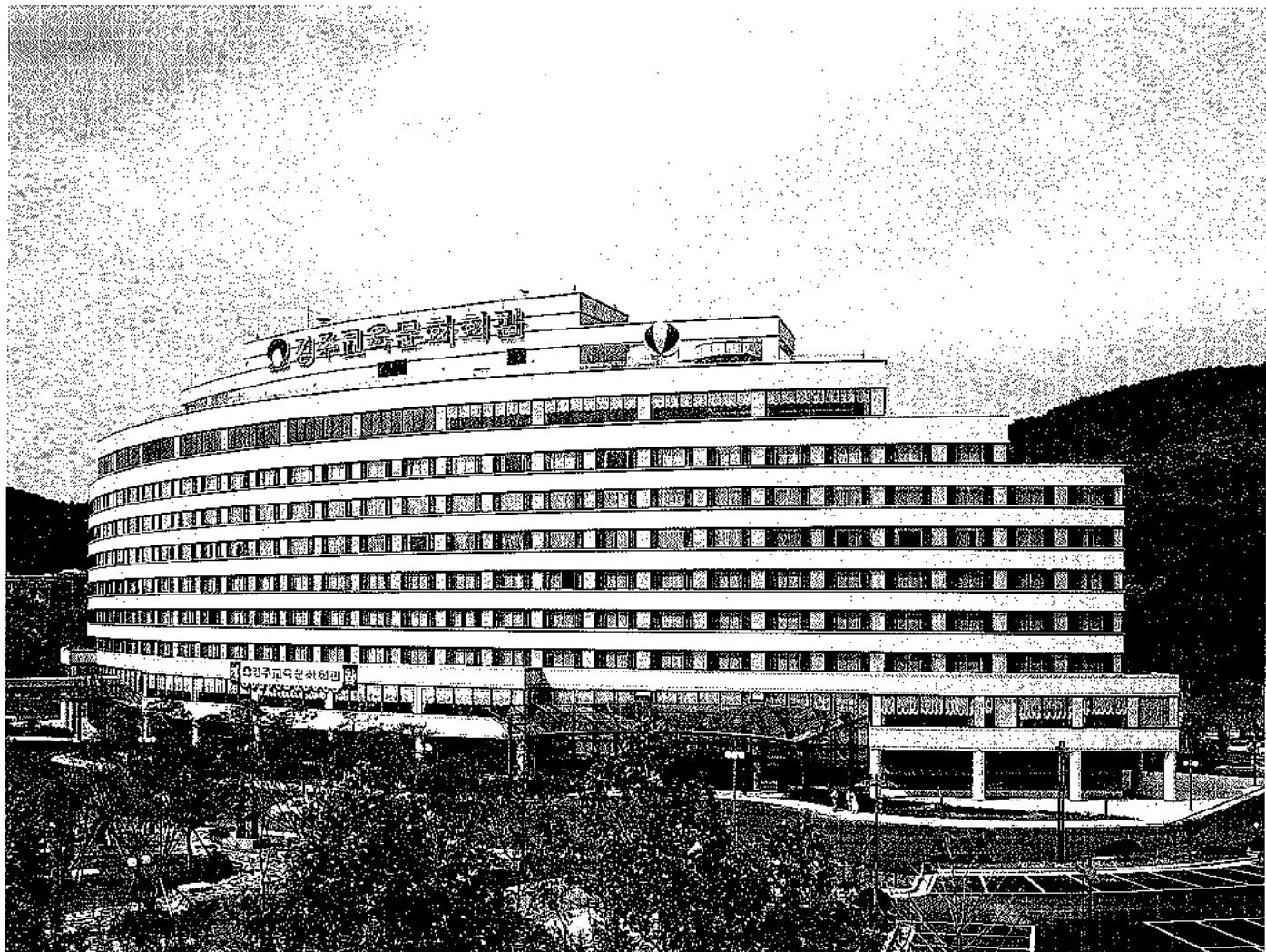


KOREAN ARCHITECT

#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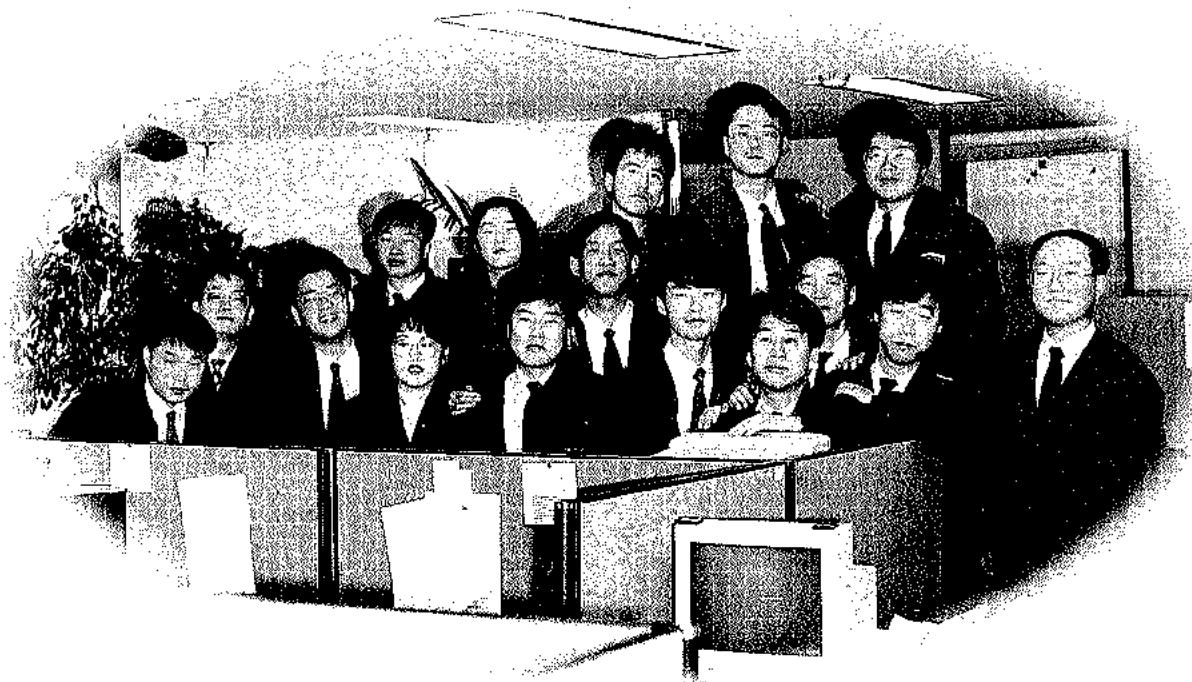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9월호 통권317호



월간 건축사 1995년 9월호 통권 317호(매월 5일 발행)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28일 등록번호 · (서)라-20 1989년 12월31일 제3종우편물(나)급인가

September  
9

- |   |  |
|---|--|
| 근대화와 건축의 근대사 / 강 역<br>회원작품<br>포스코센터 / 지순 + POS-AC<br>경주교육문화회관 / 이영희 + 김석문<br>주공속초연수원 / 안길현<br>작품노트<br>쌍용투자증권사옥 / 장용재<br>기획연재<br>한국의 건축가 - 김수근(1) / 정인아<br>건축 기행<br>동굴건축을 찾아서(1) / 박서홍 | 칼럼<br>한국유교건축의 재조명(4) / 김지민<br>해외건축<br>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6) / 박효순<br>현상설계경기<br>대구이전자구아파트, 동대문구청사,<br>동작구민회관 및 보건소청사<br>연구<br>송 「영조법식」 <대목작제도> 주해(8) / 김도경 + 주남철<br>번역<br>건축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br>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
|---|--|



## 신뢰로 자라납니다.

수많은 컴퓨터회사 중에서  
건축설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믿을수 있는 건축CAD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CAD전문회사인 (주)건캐드  
그간 250여개사의 성공적인 건축CAD시스템 구축한 풍부한 경험과 차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정보와 지속적인 기술을 지원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만족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향한 신뢰의 선택 (주)건캐드!



- 회사의 고성능 컴퓨터 486 SYSTEM
- 저렴하고 다양한 CAD SYSTEM 보유
- 완벽한 혼란성과 뛰어난 학장성
- LAN, PLOTTERS, PRINTER, MONTER 등



- 최고의 건축CAD설계지원시스템 CADPOWER Ver.60
- 건축설계전산시스템 MECADPOWER
- AutoCAD R11, R12, 진한글 등 판권



- 효율적인 건축CAD 활용 기술연구
- 건축CAD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건축설계전산화 프로그램 응용
- 건축CAD 3D 렌더링, 모델링 응용



- 건축설계실무에 바탕으로 한 교육
- 세계적인 단기강의 건축CAD교육
- 다양한 시간대의 전문과정 개설
- 건축CAD 실무자 양성 및 취업中介



- 신뢰, 성실의 아프터서비스 제공
- 24시간 신속한 서비스 체계구축
- 고객 업무 직업의 연속성 유지제계
- 실무자의 시스템 관리 능력 교육

건축CAD전문회사

**(주) 건 캐 드**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2 (종원빌딩 4층)  
대표전화: (02) 584-6480 팩스: (02) 587-1803

**(주)건축CAD기술연구소**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15 (종문빌딩 5층)  
대표전화: (02) 598-1486 팩스: (02) 598-1487

#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 삼성셔틀파킹

###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최대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에 대로 준비되므로  
입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 팔레트 통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에 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 분당 30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비단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 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체계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벨린스를 깨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  
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 엘리베이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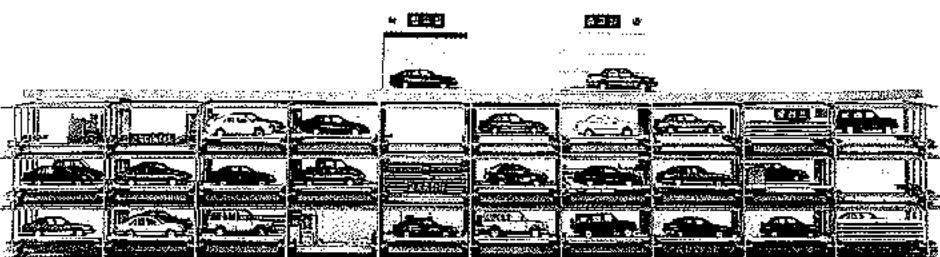
엘리베이터에 차를 실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 다층순환방식

콘베이어 원리를 이용 팔레트를  
상 하층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시스템.

##### 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팔레트를 평면으로  
배열하고 간단히 평면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1등품질에 도전한다



삼성중공업



(주)중앙창호

본사·광장  
록체사업부  
경구사사업부  
서스퀘어광장  
서울광장  
서울강남구  
서울 130-9  
기린건축자재백화점 102호  
(02) 548-8033 Fax 549-932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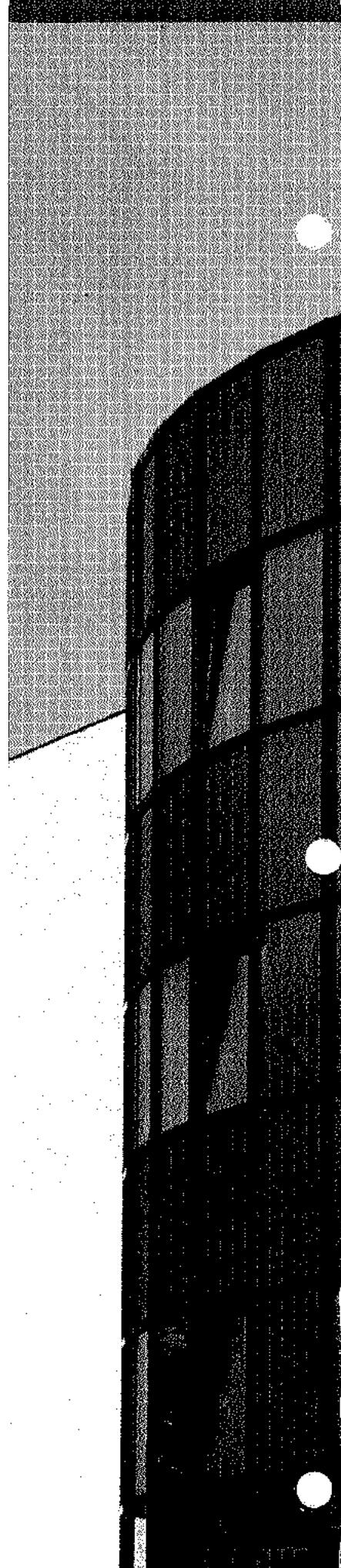
독일 HARTMANN 社의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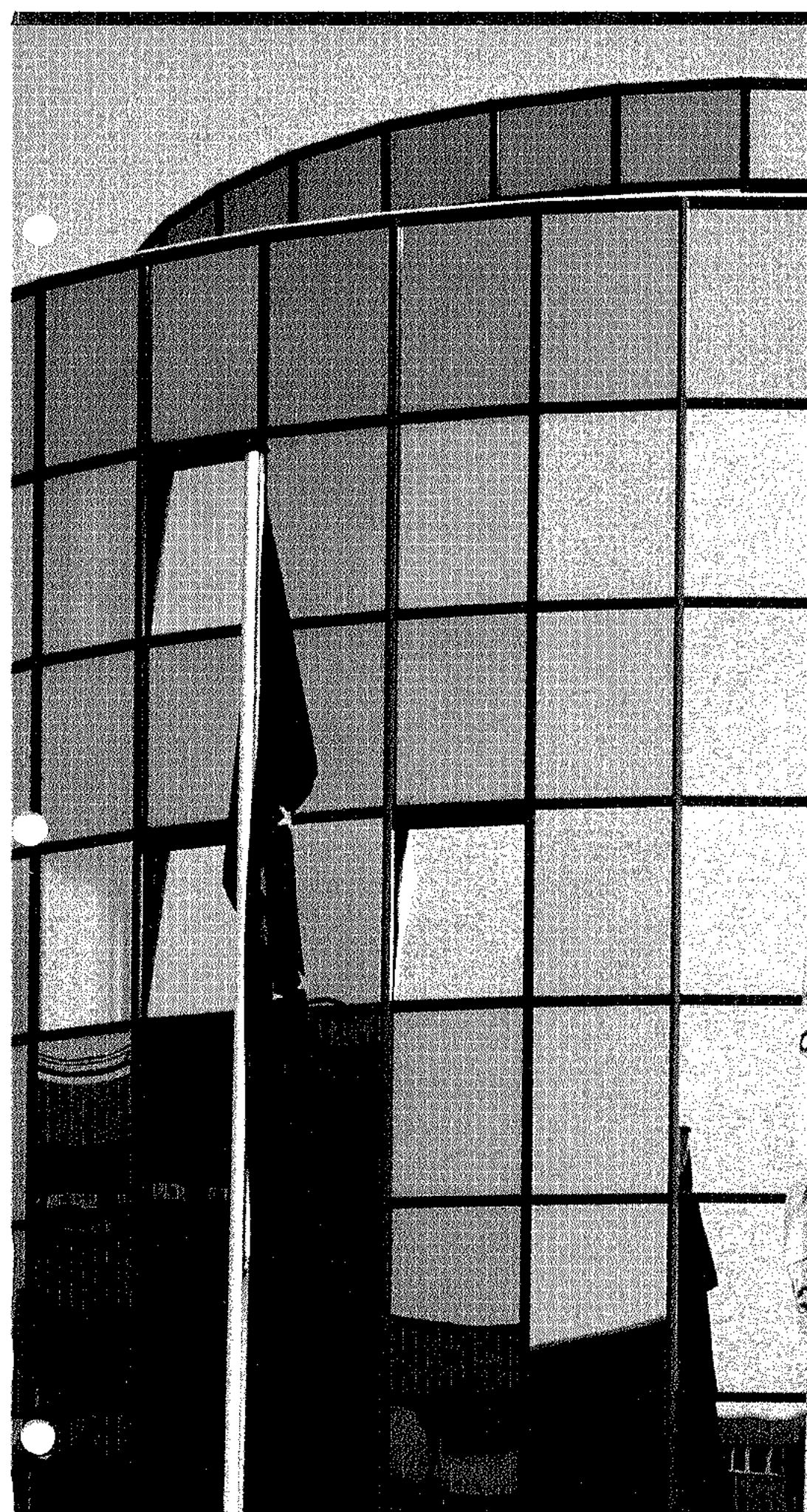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염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업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 . .  
독일의 협력업체와 겸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기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학충 돌보이게 해드립니다.





신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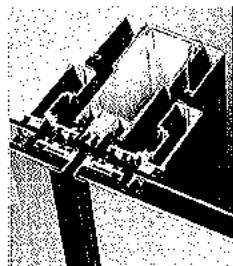
신공간

신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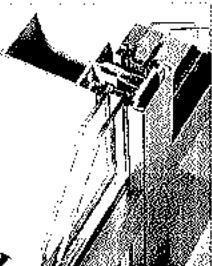
기술이 다르면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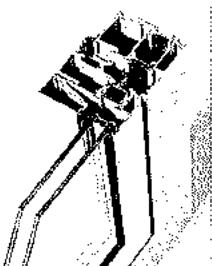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비, Tilt 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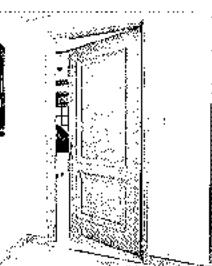


알루우드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복재



### 원목DOOR

목재창호, 건구,  
가구, 시스템카친도  
생산합니다.



#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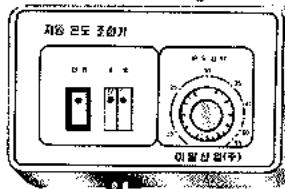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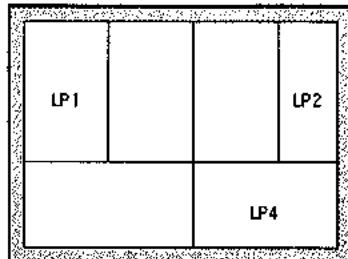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폐작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 설치프랜 예



공진청 형식승인 제 3-7-4527  
실용신안권출원 제 91-11674호  
실용신안권 출원 제 92-18466호  
의장권 출원 제 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면적 10.2m<sup>2</sup>/난방면적 7.5m<sup>2</sup>/부설율 73.5%
- 소요자재
  - 온돌판넬 LP1 (220V/240W) × 4장
  - 온돌판넬 LP2 (220V/120W) × 1장
  - 온돌판넬 LP4 (220V/180W) × 1장
  - 온도조절기 (중형) × 1대
  - 전기용량소요 1.25kW
  - 전기요금예상  
 $1.25\text{kW} \times 10\text{hr}/\text{일} \times 0.7 \times 59\text{원}/\text{kWh} = 520\text{원}/\text{일}$   
 $520\text{원} \times 30\text{일}/\text{월} = 15,600\text{원}/\text{월}$
  - 1일 10시간 사용, 통전율 70%, 전기요금(전기)단가 59원/kwh의 월간전기요금임.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롯트  
TEL. (032)813-5407 812-8798

## 지방지역 출판

대전 : (042)628-2845 강원 : (0392)33-0917  
부산 : (051)248-8933 광주 : (062)225-0064  
대구 : (053)753-4848 제주 : (064)44-4520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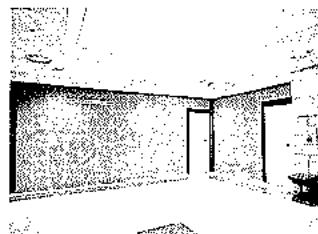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종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절대안전·안전성·편의성  
공간민족·시기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 푸마 셔터 설치업체

- 미도피 상계점
- 현대백화점 일구점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이소핑
- 신세계 영동점
- 경방필 프리자
- 부산 리비라 쇼핑
- 명동 SS 패션마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길
- 하이아트 호텔
- 조선호텔
- 워커힐 호텔
- 속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 제작설치업체

- '93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설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產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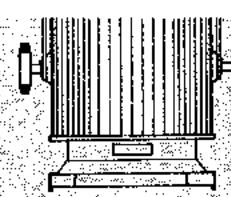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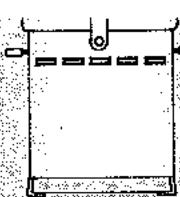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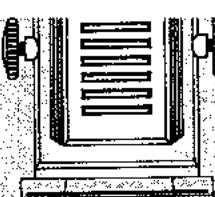
본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 838-4545 (代)

FAX : 838-0474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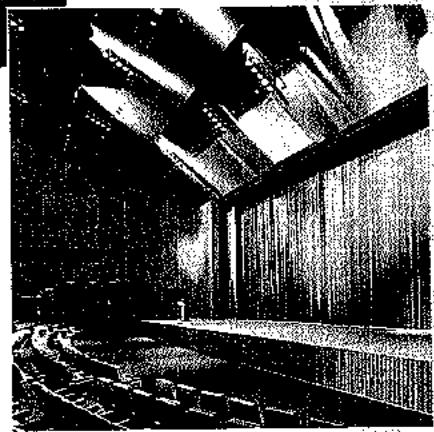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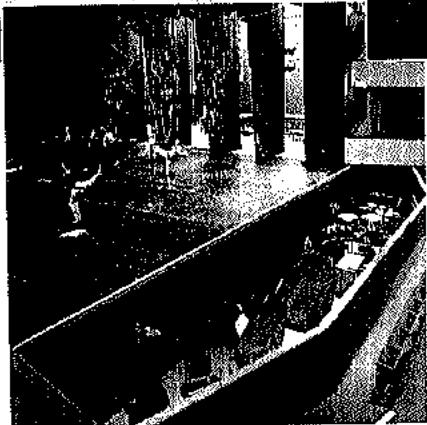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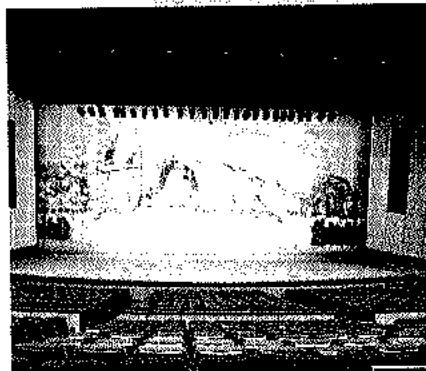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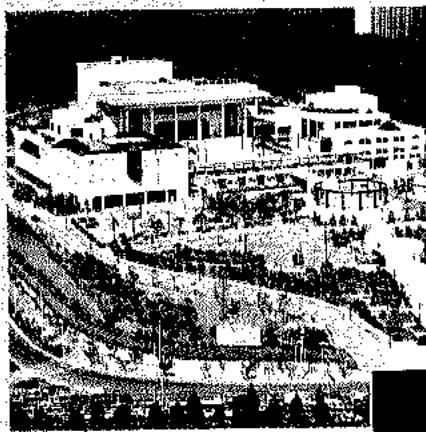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 무 대 기 계

# 무 대 조 명

# 영 상 설 비



기획 · 설계 · 시공



(주)성스테이지엔지니어링

SUNG STAGE ENGINEERING CO. LTD.

본사 · 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8(시화공단 2나 209)  
TEL : (02)855-5373, (0345)499-8100~4, FAX : (0345)499-8105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1(삼호물산B/D A동 813호)  
TEL : (02)589-1830~8, FAX : (02)589-1839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 주요 공사실적

- ◎ 세종문화회관 ◎ 유관순기념관 ◎ 안양문화예술회관
- ◎ 국립극장 ◎ 충현교회본당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쇠라돈워커힐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계몽센터 예술극장
- ◎ 롯데호텔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육군박물관
- ◎ 부산문화예술회관 ◎ 서울·제주 신라호텔 ◎ 대전시민회관
- ◎ 이화여대강당 ◎ 수인보와이키기관광호텔 ◎ 강원대학교
- ◎ 과천시민회관 ◎ 원주치악문화예술회관 ◎ 충북문화 예술회관

##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工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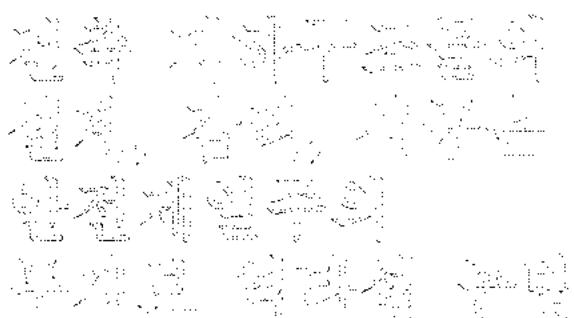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華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안전과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 無支保 逆打設 (N.S.T.D) 工法



무지보 역타설공법 건설세미나 (대한건설협회주최)



건축기술인과 함께하는 기업

TEL: (02) 594-8100/9  
FAX: (02) 533-9187

(주)

##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가설 H형강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 지하구조물을 역타설 축조하므로서

1.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원기상승없는 구조보강으로 안전성 증대
2. HANGING 장치에 의한 거푸집으로 상, 하향 자유자재로 이동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양생 중에도 그 하부 지하굴도 작업의 연속성 보장으로 획기적인 공기단축

## 종래 개착식 굴토후 구조물 축조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단축과 15%의 공사비절감

1. 동바리 사용 불필요
2. 중장비 작업대기 불필요
3. 거푸집 설치, 해체에 따른 소운반 불필요
4. 지하층수 증가할 수록 원기절감 효과 상승

## 무지보 역타설공법 안전진단결과

1. 흙막이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각 부재의 흔전단, 압축에 대한 작용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나타나 모두 안전함
2. 인접건물 기초 침하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전체 침하와 부등침하 모두 허용치 이내이므로 안전함
3. 암반층이 높은 도심지 현장에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면에서 매우 유리함

-한국 건설 안전 기술협회 -

-대한 산업 안전 협회 -

##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공사비, 공사기간절감과, 지하굴토공사 주변피해 민원을 억제하는 안전제일주의 공법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 “적산업무 전산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품사적**

조달청, 총무처(시설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체신부조달사업부, 법무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육군본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데이콤 현대건설(주), 공영토건(주), (주)기산, (주)대명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우양건설, (주)삼환끼류, 성일건설(주), 경향건설(주) 동국산업(주)

신화건설(주), 라이프종합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주)대륙건설, 그랜드종합건설(주), 한주개발(주), (주)씨엠기업, (주)한솔건설

삼안기술공사(주), 동보건설(주), (주)한국종합건축, 승도종합건축, 한강종합건축, 서울주택개발(주), 미주실업(주), (주)범한

거양개발(주), 부성건설(주), 진로건설(주), 두산건설(주), 삼경건설(주), (주)창조종합건축, (주)신한, 서울건축(주)

엄이건축(주), 유일종합건축(주), (주)세마종합건축, 토당건축, 보람종합건축, 한국조형건축, 진화건축

(주)이공건축, 미래건축(주), 동명기술공단(주), 가전종합건축, 도화종합기술공사(주)

한양적산연구소, (주)세원엔지니어링, (주)한국산업경영연구소, 성진건축

삼안건설기술공사(주), 서인적산연구소, 외 500개 업체.

## 견적비가 설계비의 5%도 안된다고 신경을 끽쓰셨습니까?

시장개방을 맞아 며지않아 기획에서 설계, 견적, 시공에 이르는 전문 분야를 연계하는  
CIC구축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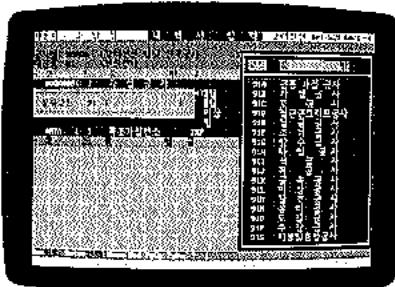
“이젠 적산업무를 외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려전산의 견적관리 프로그램이 **설계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에서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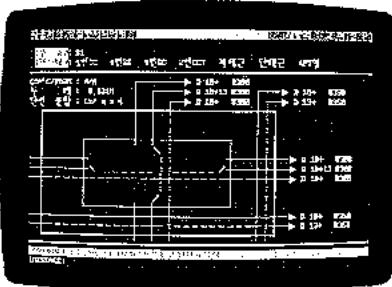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설계예산 내역서에서부터 발주처 시공회사까지 DATA가 연계처리  
되며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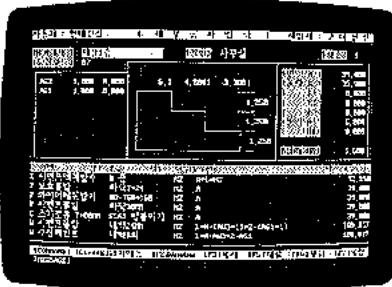
EMS-I(내역관리)



R.C(골조물량산출)



K-FIN(마감물량산출)



**효과:** ① 외주비 절감 ② 신뢰도 증가 ③ 다양한 분석 및 기술축적

### S/W 목록

- EMS - I 내 역 관 리 SYSTEM
- EMS - II 전기내역관리 SYSTEM
- EMS - III 설비내역관리 SYSTEM
- EMS - IV 토 목 내 역 SYSTEM
- R.C 골조물량산출 SYSTEM
- K - FINISH 마감물량산출 SYSTEM
- M.M.S 자 재 관 리 SYSTEM
- P.M.S 공 사 관 리 SYSTEM
- A.M.S 건설회계 관리 SYSTEM
- P-PMS 연사/급여 관리 SYSTEM

**특징:** ① 사용하기 편리하다(도움말/화면메뉴/팝업메뉴방식)

- ②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의 출력과 짐계분석
- ③ 물량산출시 내역으로 자동연결됨
- ④ 자재코드, 일위대가 제공
- ⑤ 설계변경/기성내역 작성이 용이하다.
- ⑥ 관공서(발주처) 전산내역 입찰과 연결
- ⑦ 통신을 이용한 완벽한 아프터 서비스

# 쇼핑문화의 첨장

동신빌딩

GRACE

가레이스백화점  
설립 기념

2/3F  
2층  
3층  
4F  
4층  
5F  
5층  
6F  
6층  
7F  
7층  
8F  
8층  
9F  
9층  
10F  
10층  
11F  
11층  
12F  
12층  
13F  
13층  
14F  
14층  
15F  
15층  
16F  
16층  
17F  
17층  
18F  
18층  
19F  
19층  
20F  
20층  
21F  
21층  
22F  
22층  
23F  
23층  
24F  
24층  
25F  
25층  
26F  
26층  
27F  
27층  
28F  
28층  
29F  
29층  
30F  
30층  
31F  
31층  
32F  
32층  
33F  
33층  
34F  
34층  
35F  
35층  
36F  
36층  
37F  
37층  
38F  
38층  
39F  
39층  
40F  
40층  
41F  
41층  
42F  
42층  
43F  
43층  
44F  
44층  
45F  
45층  
46F  
46층  
47F  
47층  
48F  
48층  
49F  
49층  
50F  
50층  
51F  
51층  
52F  
52층  
53F  
53층  
54F  
54층  
55F  
55층  
56F  
56층  
57F  
57층  
58F  
58층  
59F  
59층  
60F  
60층  
61F  
61층  
62F  
62층  
63F  
63층  
64F  
64층  
65F  
65층  
66F  
66층  
67F  
67층  
68F  
68층  
69F  
69층  
70F  
70층  
71F  
71층  
72F  
72층  
73F  
73층  
74F  
74층  
75F  
75층  
76F  
76층  
77F  
77층  
78F  
78층  
79F  
79층  
80F  
80층  
81F  
81층  
82F  
82층  
83F  
83층  
84F  
84층  
85F  
85층  
86F  
86층  
87F  
87층  
88F  
88층  
89F  
89층  
90F  
90층  
91F  
91층  
92F  
92층  
93F  
93층  
94F  
94층  
95F  
95층  
96F  
96층  
97F  
97층  
98F  
98층  
99F  
99층  
100F  
100층  
101F  
101층  
102F  
102층  
103F  
103층  
104F  
104층  
105F  
105층  
106F  
106층  
107F  
107층  
108F  
108층  
109F  
109층  
110F  
110층  
111F  
111층  
112F  
112층  
113F  
113층  
114F  
114층  
115F  
115층  
116F  
116층  
117F  
117층  
118F  
118층  
119F  
119층  
120F  
120층  
121F  
121층  
122F  
122층  
123F  
123층  
124F  
124층  
125F  
125층  
126F  
126층  
127F  
127층  
128F  
128층  
129F  
129층  
130F  
130층  
131F  
131층  
132F  
132층  
133F  
133층  
134F  
134층  
135F  
135층  
136F  
136층  
137F  
137층  
138F  
138층  
139F  
139층  
140F  
140층  
141F  
141층  
142F  
142층  
143F  
143층  
144F  
144층  
145F  
145층  
146F  
146층  
147F  
147층  
148F  
148층  
149F  
149층  
150F  
150층  
151F  
151층  
152F  
152층  
153F  
153층  
154F  
154층  
155F  
155층  
156F  
156층  
157F  
157층  
158F  
158층  
159F  
159층  
160F  
160층  
161F  
161층  
162F  
162층  
163F  
163층  
164F  
164층  
165F  
165층  
166F  
166층  
167F  
167층  
168F  
168층  
169F  
169층  
170F  
170층  
171F  
171층  
172F  
172층  
173F  
173층  
174F  
174층  
175F  
175층  
176F  
176층  
177F  
177층  
178F  
178층  
179F  
179층  
180F  
180층  
181F  
181층  
182F  
182층  
183F  
183층  
184F  
184층  
185F  
185층  
186F  
186층  
187F  
187층  
188F  
188층  
189F  
189층  
190F  
190층  
191F  
191층  
192F  
192층  
193F  
193층  
194F  
194층  
195F  
195층  
196F  
196층  
197F  
197층  
198F  
198층  
199F  
199층  
200F  
200층  
201F  
201층  
202F  
202층  
203F  
203층  
204F  
204층  
205F  
205층  
206F  
206층  
207F  
207층  
208F  
208층  
209F  
209층  
210F  
210층  
211F  
211층  
212F  
212층  
213F  
213층  
214F  
214층  
215F  
215층  
216F  
216층  
217F  
217층  
218F  
218층  
219F  
219층  
220F  
220층  
221F  
221층  
222F  
222층  
223F  
223층  
224F  
224층  
225F  
225층  
226F  
226층  
227F  
227층  
228F  
228층  
229F  
229층  
230F  
230층  
231F  
231층  
232F  
232층  
233F  
233층  
234F  
234층  
235F  
235층  
236F  
236층  
237F  
237층  
238F  
238층  
239F  
239층  
240F  
240층  
241F  
241층  
242F  
242층  
243F  
243층  
244F  
244층  
245F  
245층  
246F  
246층  
247F  
247층  
248F  
248층  
249F  
249층  
250F  
250층  
251F  
251층  
252F  
252층  
253F  
253층  
254F  
254층  
255F  
255층  
256F  
256층  
257F  
257층  
258F  
258층  
259F  
259층  
260F  
260층  
261F  
261층  
262F  
262층  
263F  
263층  
264F  
264층  
265F  
265층  
266F  
266층  
267F  
267층  
268F  
268층  
269F  
269층  
270F  
270층  
271F  
271층  
272F  
272층  
273F  
273층  
274F  
274층  
275F  
275층  
276F  
276층  
277F  
277층  
278F  
278층  
279F  
279층  
280F  
280층  
281F  
281층  
282F  
282층  
283F  
283층  
284F  
284층  
285F  
285층  
286F  
286층  
287F  
287층  
288F  
288층  
289F  
289층  
290F  
290층  
291F  
291층  
292F  
292층  
293F  
293층  
294F  
294층  
295F  
295층  
296F  
296층  
297F  
297층  
298F  
298층  
299F  
299층  
300F  
300층  
301F  
301층  
302F  
302층  
303F  
303층  
304F  
304층  
305F  
305층  
306F  
306층  
307F  
307층  
308F  
308층  
309F  
309층  
310F  
310층  
311F  
311층  
312F  
312층  
313F  
313층  
314F  
314층  
315F  
315층  
316F  
316층  
317F  
317층  
318F  
318층  
319F  
319층  
320F  
320층  
321F  
321층  
322F  
322층  
323F  
323층  
324F  
324층  
325F  
325층  
326F  
326층  
327F  
327층  
328F  
328층  
329F  
329층  
330F  
330층  
331F  
331층  
332F  
332층  
333F  
333층  
334F  
334층  
335F  
335층  
336F  
336층  
337F  
337층  
338F  
338층  
339F  
339층  
340F  
340층  
341F  
341층  
342F  
342층  
343F  
343층  
344F  
344층  
345F  
345층  
346F  
346층  
347F  
347층  
348F  
348층  
349F  
349층  
350F  
350층  
351F  
351층  
352F  
352층  
353F  
353층  
354F  
354층  
355F  
355층  
356F  
356층  
357F  
357층  
358F  
358층  
359F  
359층  
360F  
360층  
361F  
361층  
362F  
362층  
363F  
363층  
364F  
364층  
365F  
365층  
366F  
366층  
367F  
367층  
368F  
368층  
369F  
369층  
370F  
370층  
371F  
371층  
372F  
372층  
373F  
373층  
374F  
374층  
375F  
375층  
376F  
376층  
377F  
377층  
378F  
378층  
379F  
379층  
380F  
380층  
381F  
381층  
382F  
382층  
383F  
383층  
384F  
384층  
385F  
385층  
386F  
386층  
387F  
387층  
388F  
388층  
389F  
389층  
390F  
390층  
391F  
391층  
392F  
392층  
393F  
393층  
394F  
394층  
395F  
395층  
396F  
396층  
397F  
397층  
398F  
398층  
399F  
399층  
400F  
400층  
401F  
401층  
402F  
402층  
403F  
403층  
404F  
404층  
405F  
405층  
406F  
406층  
407F  
407층  
408F  
408층  
409F  
409층  
410F  
410층  
411F  
411층  
412F  
412층  
413F  
413층  
414F  
414층  
415F  
415층  
416F  
416층  
417F  
417층  
418F  
418층  
419F  
419층  
420F  
420층  
421F  
421층  
422F  
422층  
423F  
423층  
424F  
424층  
425F  
425층  
426F  
426층  
427F  
427층  
428F  
428층  
429F  
429층  
430F  
430층  
431F  
431층  
432F  
432층  
433F  
433층  
434F  
434층  
435F  
435층  
436F  
436층  
437F  
437층  
438F  
438층  
439F  
439층  
440F  
440층  
441F  
441층  
442F  
442층  
443F  
443층  
444F  
444층  
445F  
445층  
446F  
446층  
447F  
447층  
448F  
448층  
449F  
449층  
450F  
450층  
451F  
451층  
452F  
452층  
453F  
453층  
454F  
454층  
455F  
455층  
456F  
456층  
457F  
457층  
458F  
458층  
459F  
459층  
460F  
460층  
461F  
461층  
462F  
462층  
463F  
463층  
464F  
464층  
465F  
465층  
466F  
466층  
467F  
467층  
468F  
468층  
469F  
469층  
470F  
470층  
471F  
471층  
472F  
472층  
473F  
473층  
474F  
474층  
475F  
475층  
476F  
476층  
477F  
477층  
478F  
478층  
479F  
479층  
480F  
480층  
481F  
481층  
482F  
482층  
483F  
483층  
484F  
484층  
485F  
485층  
486F  
486층  
487F  
487층  
488F  
488층  
489F  
489층  
490F  
490층  
491F  
491층  
492F  
492층  
493F  
493층  
494F  
494층  
495F  
495층  
496F  
496층  
497F  
497층  
498F  
498층  
499F  
499층  
500F  
500층  
501F  
501층  
502F  
502층  
503F  
503층  
504F  
504층  
505F  
505층  
506F  
506층  
507F  
507층  
508F  
508층  
509F  
509층  
510F  
510층  
511F  
511층  
512F  
512층  
513F  
513층  
514F  
514층  
515F  
515층  
516F  
516층  
517F  
517층  
518F  
518층  
519F  
519층  
520F  
520층  
521F  
521층  
522F  
522층  
523F  
523층  
524F  
524층  
525F  
525층  
526F  
526층  
527F  
527층  
528F  
528층  
529F  
529층  
530F  
530층  
531F  
531층  
532F  
532층  
533F  
533층  
534F  
534층  
535F  
535층  
536F  
536층  
537F  
537층  
538F  
538층  
539F  
539층  
540F  
540층  
541F  
541층  
542F  
542층  
543F  
543층  
544F  
544층  
545F  
545층  
546F  
546층  
547F  
547층  
548F  
548층  
549F  
549층  
550F  
550층  
551F  
551층  
552F  
552층  
553F  
553층  
554F  
554층  
555F  
555층  
556F  
556층  
557F  
557층  
558F  
558층  
559F  
559층  
560F  
560층  
561F  
561층  
562F  
562층  
563F  
563층  
564F  
564층  
565F  
565층  
566F  
566층  
567F  
567층  
568F  
568층  
569F  
569층  
570F  
570층  
571F  
571층  
572F  
572층  
573F  
573층  
574F  
574층  
575F  
575층  
576F  
576층  
577F  
577층  
578F  
578층  
579F  
579층  
580F  
580층  
581F  
581층  
582F  
582층  
583F  
583층  
584F  
584층  
585F  
585층  
586F  
586층  
587F  
587층  
588F  
588층  
589F  
589층  
590F  
590층  
591F  
591층  
592F  
592층  
593F  
593층  
594F  
594층  
595F  
595층  
596F  
596층  
597F  
597층  
598F  
598층  
599F  
599층  
600F  
600층  
601F  
601층  
602F  
602층  
603F  
603층  
604F  
604층  
605F  
605층  
606F  
606층  
607F  
607층  
608F  
608층  
609F  
609층  
610F  
610층  
611F  
611층  
612F  
612층  
613F  
613층  
614F  
614층  
615F  
615층  
616F  
616층  
617F  
617층  
618F  
618층  
619F  
619층  
620F  
620층  
621F  
621층  
622F  
622층  
623F  
623층  
624F  
624층  
625F  
625층  
626F  
626층  
627F  
627층  
628F  
628층  
629F  
629층  
630F  
630층  
631F  
631층  
632F  
632층  
633F  
633층  
634F  
634층  
635F  
635층  
636F  
636층  
637F  
637층  
638F  
638층  
639F  
639층  
640F  
640층  
641F  
641층  
642F  
642층  
643F  
643층  
644F  
644층  
645F  
645층  
646F  
646층  
647F  
647층  
648F  
648층  
649F  
649층  
650F  
650층  
651F  
651층  
652F  
652층  
653F  
653층  
654F  
654층  
655F  
655층  
656F  
656층  
657F  
657층  
658F  
658층  
659F  
659층  
660F  
660층  
661F  
661층  
662F  
662층  
663F  
663층  
664F  
664층  
665F  
665층  
666F  
666층  
667F  
667층  
668F  
668층  
669F  
669층  
670F  
670층  
671F  
671층  
672F  
672층  
673F  
673층  
674F  
674층  
675F  
675층  
676F  
676층  
677F  
677층  
678F  
678층  
679F  
679층  
680F  
680층  
681F  
681층  
682F  
682층  
683F  
683층  
684F  
684층  
685F  
685층  
686F  
686층  
687F  
687층  
688F  
688층  
689F  
689층  
690F  
690층  
691F  
691층  
692F  
692층  
693F  
693층  
694F  
694층  
695F  
695층  
696F  
696층  
697F  
697층  
698F  
698층  
699F  
699층  
700F  
700층  
701F  
701층  
702F  
702층  
703F  
703층  
704F  
704층  
705F  
705층  
706F  
706층  
707F  
707층  
708F  
708층  
709F  
709층  
710F  
710층  
711F  
711층  
712F  
712층  
713F  
713층  
714F  
714층  
715F  
715층  
716F  
716층  
717F  
717층  
718F  
718층  
719F  
719층  
720F  
720층  
721F  
721층  
722F  
722층  
723F  
723층  
724F  
724층  
725F  
725층  
726F  
726층  
727F  
727층  
728F  
728층  
729F  
729층  
730F  
730층  
731F  
731층  
732F  
732층  
733F  
733층  
734F  
734층  
735F  
735층  
736F  
736층  
737F  
737층  
738F  
738층  
739F  
739층  
740F  
740층  
741F  
741층  
742F  
742층  
743F  
743층  
744F  
744층  
745F  
745층  
746F  
746층  
747F  
747층  
748F  
748층  
749F  
749층  
750F  
750층  
751F  
751층  
752F  
752층  
753F  
753층  
754F  
754층  
755F  
755층  
756F  
756층  
757F  
757층  
758F  
758층  
759F  
759층  
760F  
760층  
761F  
761층  
762F  
762층  
763F  
763층  
764F  
764층  
765F  
765층  
766F  
766층  
767F  
767층  
768F  
768층  
769F  
769층  
770F  
770층  
771F  
771층  
772F  
772층  
773F  
773층  
774F  
774층  
775F  
775층  
776F  
776층  
777F  
777층  
778F  
778층  
779F  
779층  
780F  
780층  
781F  
781층  
782F  
782층  
783F  
783층  
784F  
784층  
785F  
785층  
786F  
786층  
787F  
787층  
788F  
788층  
789F  
789층  
790F  
790층  
791F  
791층  
792F  
792층  
793F  
793층  
794F  
794층  
795F  
795층  
796F  
796층  
797F  
797층  
798F  
798층  
799F  
799층  
800F  
800층  
801F  
801층  
802F  
802층  
803F  
803층  
804F  
804층  
805F  
805층  
806F  
806층  
807F  
807층  
808F  
808층  
809F  
809층  
810F  
810층  
811F  
811층  
812F  
812층  
813F  
813층  
814F  
814층  
815F  
815층  
816F  
816층  
817F  
817층  
818F  
818층  
819F  
819층  
820F  
820층  
821F  
821층  
822F  
822층  
823F  
823층  
824F  
824층  
825F  
825층  
826F  
826층  
827F  
827층  
828F  
828층  
829F  
829층  
830F  
830층  
831F  
831층  
832F  
832층  
833F  
833층  
834F  
834층  
835F  
835층  
836F  
836층  
837F  
837층  
838F  
838층  
839F  
839층  
840F  
840층  
841F  
841층  
842F  
842층  
843F  
843층  
844F  
844층  
845F  
845층  
846F  
846층  
847F  
847층  
848F  
848층  
849F  
849층  
850F  
850층  
851F  
851층  
852F  
852층  
853F  
853층  
854F  
854층  
855F  
855층  
856F  
856층  
857F  
857층  
858F  
858층  
859F  
859층  
860F  
860층  
861F  
861층  
862F  
862층  
863F  
863층  
864F  
864층  
865F  
865층  
866F  
866층  
867F  
867층  
868F  
868층  
869F  
869층  
870F  
870층  
871F  
871층  
872F  
872층  
873F  
873층  
874F  
874층  
875F  
875층  
876F  
876층  
877F  
877층  
878F  
878층  
879F  
879층  
880F  
880층  
881F  
881층  
882F  
882층  
883F  
883층  
884F  
884층  
885F  
885층  
886F  
886층  
887F  
887층  
888F  
888층  
889F  
889층  
890F  
890층  
891F  
891층  
892F  
892층  
893F  
893층  
894F  
894층  
895F  
895층  
896F  
896층  
897F  
897층  
898F  
898층  
899F  
899층  
900F  
900층  
901F  
901층  
902F  
902층  
903F  
903층  
904F  
904층  
905F  
905층  
906F  
906층  
907F  
907층  
908F  
908층  
909F  
909층  
910F  
910층  
911F  
911층  
912F  
912층  
913F  
913층  
914F  
914층  
915F  
915층  
916F  
916층  
917F  
917층<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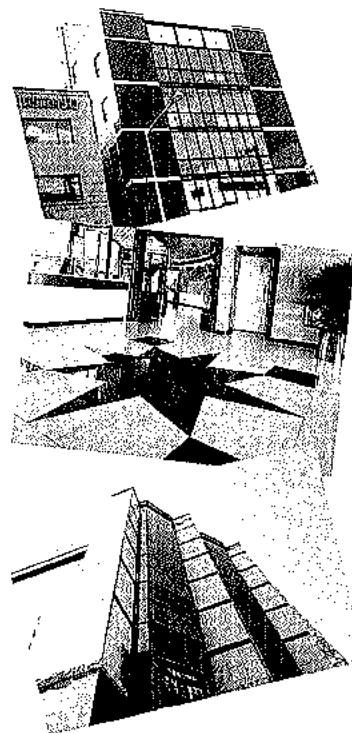


#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ACCESS FLOOR 시공 가능

고객신뢰의 대림이 국내 최초로  
ITALY BRETON사의  
세계특허공정으로 만든 미래형  
첨단건축 FASHION 내외장재—  
아름답고 한차원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건축물에는 미라톤을 꼭 사용하세요.



대림미라톤 상설전시장 OPEN  
TEL.(02)516-5826



## 대림 미라톤의 특장점

- 천연석이 표출 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마모, 화학물질에 강합니다.
- 공극이 없는 미라톤은 흡수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동결融解에 의한 “해”가 없습니다.
- 두께: 12mm, 15mm, 20mm, 30mm  
크기: 3m×1.2m 범위 내
-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씽크대, 세면대, 탁자등)에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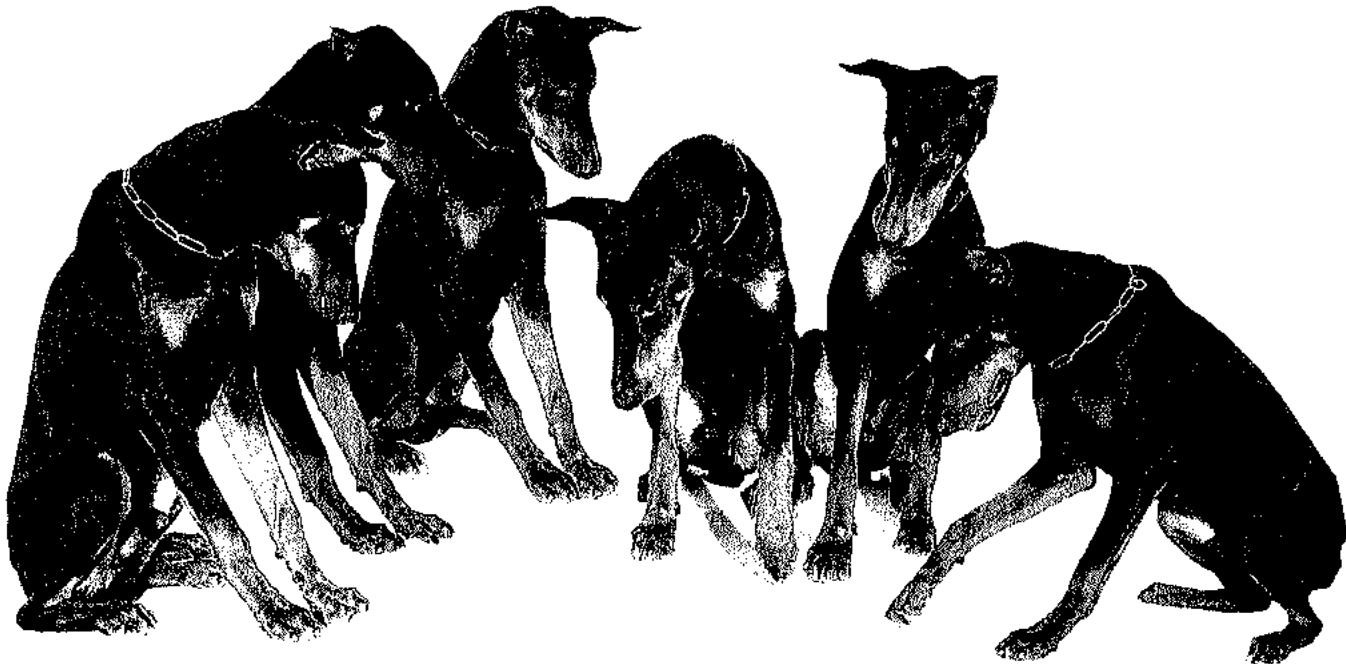


대림 콩크리트공업주식회사

본사: TEL (02) 725-3501~9 공장: TEL (0415) 62-8101~4

**ARRIS**

# 우리가 선택한 것!



정림건축의 기술력으로 만든  
우리나라 실무 환경에 가장 적합한 CAD

## 정림 3RD PARTY!

- 정림 MAIN
- 정림 ARCHITECTURE
- 정림 STRUCTURE
- 정림 3D
- 정림 한글

\* 가격 : 70만원(부가세 별도)

ARRIS 교육기관 안내

태백컴퓨터아카데미 TEL : 511-9400 / 토바디자인학원 TEL : 563-5666 / 캐드플러스 TEL : 564-4884

'정림 3RD PARTY'는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에서 공급합니다. 정림 3RD PARTY의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에게는 언제든지 방문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ARRIS 국내총판/정림 3RD PARTY 공급회사

(주)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5-25  
TEL 523-8871/3 FAX 523-8874



## 건축설계의 토탈솔루션제공

....무한 경쟁시대의 동반자 선언 !....

최첨단의 하드웨어와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로 건축설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젊고 창의적인 캐드전문업체인 청우시스템 —  
청우가 여는 새로운 세계 — 다이나시리즈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Dyna CAD — AutoCAD 3rd Party S/W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건축설계지원 프로그램.

- 한글 도움말
- 풍부한 심볼 제공
- 사용자 심볼 등록 기능
- 편리한 작도와 편집기능
- 한글 변환
- 철저한 교육지원



QE-Quick Estimate

건축물의 골조물량인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의 소요량을  
내장된 수식과 사용자 정의 수식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물량을 산출하여주는 세로운 차원의 골조물량 산출 프로그램.



QUE 3

입찰전적에서 도급, 설계변경, 실행, 기성청구, 정산에 이르기까지  
처리하여주는 공사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역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 융통성과 모든 메뉴에 대한 도움말 가능,  
보고서 출력형식의 변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Dyna P5 / Dyna 486

3차원 및 그래픽 작업이 요구되는 설계업무에 적합한  
Dyna P5 시스템과 최상의 효율과 경제성을 지닌  
Dyna 486 시스템

모델명 : Dyna P560 / P566, Dyna 433 / 450 / 466V

Young Fellows System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TEL : (02) 587-5168 / 9

FAX : (02) 588-4156



587-5168/9

한국적인 멋으로 꿈의 실내공간을 연출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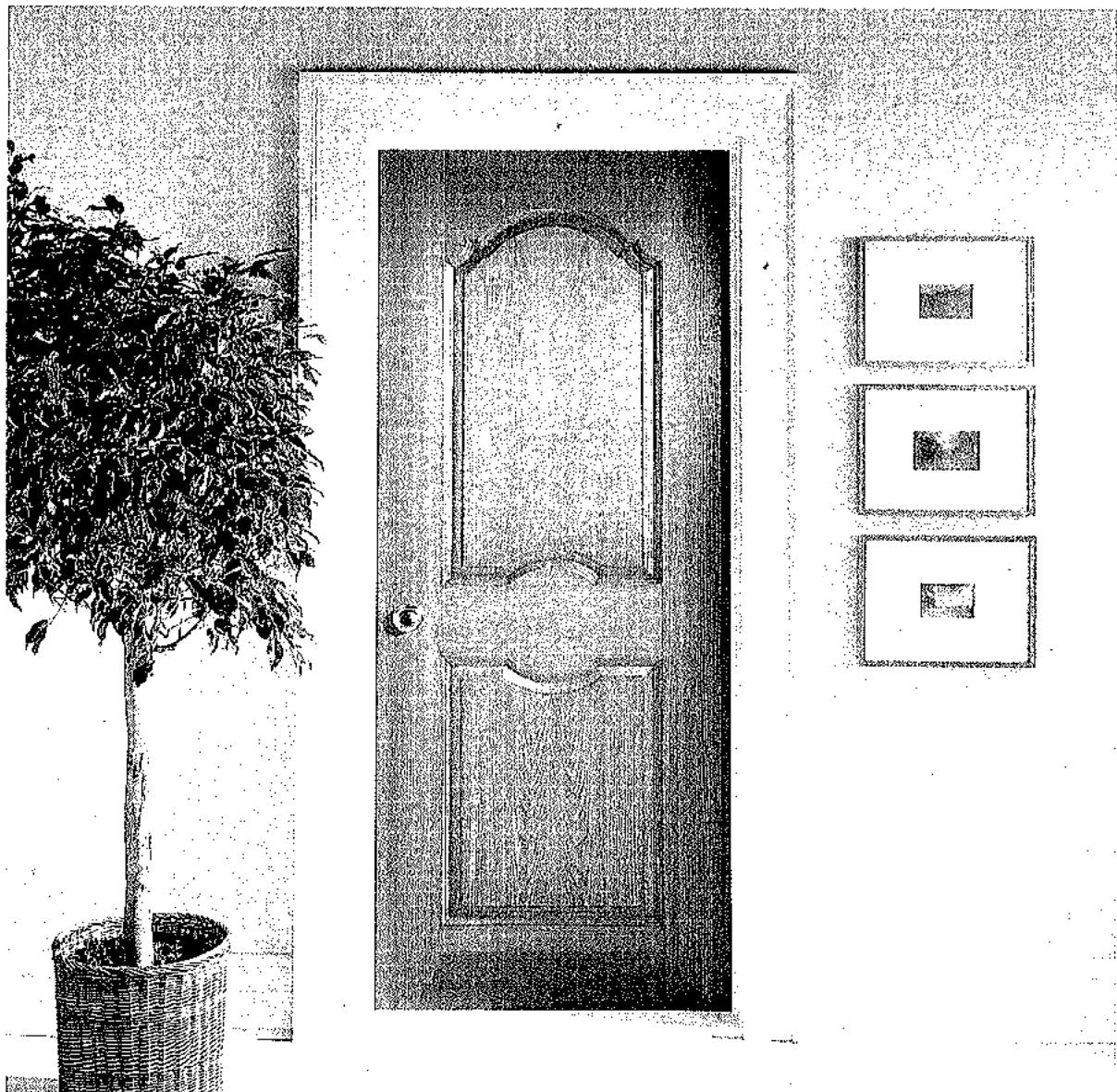
도어스킨의 대명사 Masonite가  
한국의 멋을 살려 새롭게 개발한 고품격 도어스킨,  
**Morning Sun 탄생!**



CraftMaster는 Masonite에 의해 제작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내용  
도어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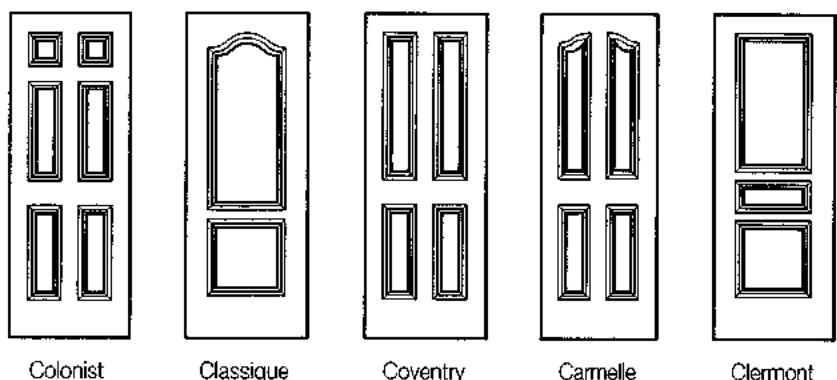
본사 · 공장(합판사업본부 견재판매팀) : 인천광역시 남구 노화동 825 · Tel : 032-870-8700 · Fax : 032-868-9555 · 9166



세계 최대의 도어스킨 제조사인 미국의 Masonite와 손잡고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국내에 공급해온 이진산업이 국내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을 살린 고품격 도어스킨 Morning Sun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Morning Sun은 섬세한 오크원목의 무늬결과 질감을 바탕으로 주택의 실내장식 요소들과 화모니를 이루고 전체적으로 동양적인 고전미를 살려주도록 특수 디자인된 신개념의 도어스킨입니다.

#### 현재 보급중인 Doorskin Design



# 입사지원서

성명	도편수
생년월일	1994년 11월
현주소 및 연락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8-2 일성빌딩 3층 (주)소라건축 CIA 개발사업부 TEL 564-0257



## 자기소개

-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뛰어나 수년전 했던 작업도 언제나 활용 가능
- 한번 그렸던 도면은 절대로 잊지 않으며 언제든지 불러 쓸 수 있음
- 아무리 복잡하게 생긴 대지라도 5초내에 구직 완료 (라운딩도 가능)
- 실번호정리는 10명분을, 실번호에 상세코드 추가는 30명분을 혼자서 해결
- 30명이 작업할 마감번호정리를 야근없이 끝냄
- 마감리스트를 다른 사람보다 36배 빨리 작성
- 창호리스트는 절반의 시간이면 OK
- 실번호갱신과 실부호타입변환을 자동으로 할 사람은 저밖에 없음
- 한글은 12가지 형태로 자유자재, 제2외국어는 한문, 일어 능통
- 입사와 동시에 그 설계사무소 고유도면양식 및 각종 부호 표기법 파악
- 마감은 70% 이상, 골조률량은 90% 이상 자동으로 산출 (자동내역작성 가능)

## 특기사항

### 구조도면을 자동으로 처리함

- 구조평면 2일치 작업을 단 2시간만에 끝냄
- 구조리스트에 관한 것은 모두 자동으로 똑딱 (슬라브, 보, 기둥, 기초, 옹벽, 계단, D.A.)
- 매트기초, 플랫 슬라브의 배근 처리 가능
- 개구부리스트와 철골리스트도 물론 자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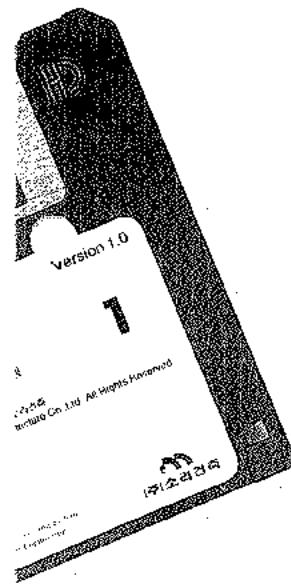
## 입사 후의 포부

이 사람『도편수』는 진정 저의 가치를 인정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 달동안 실험적으로 채용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맘에 차지않으시면 월급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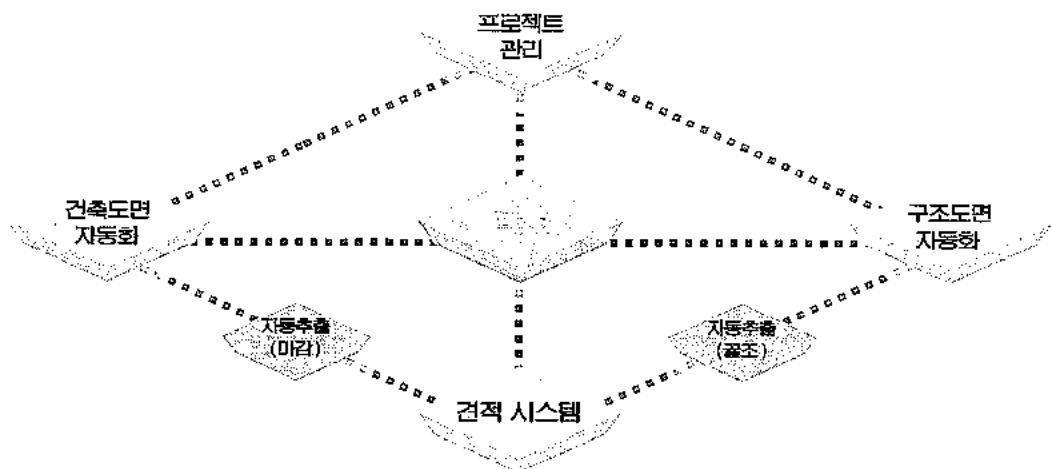
도편수

건축, 설계  
(C)제작  
(C)IPR



국내 최초 건축전용 통합솔루션

# 도편수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십시오.



## 도편수의 모듈구성

도편수 정기교육 및 1개월간 무상대여

신청 : 판매원

장소 : (주)소리건축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정기교육 외에 소리건축에 오시면 언제나 데몬스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은 분에 한하여 도편수를 1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해 드립니다.

- 디자인모듈 (프로젝트관리 + 건축모듈 + 구조모듈 + 한글) : 150만원
- 구조모듈 (구조모듈 + 한글) : 70만원

개발원 (주)소리건축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88-2 임성빌딩 3층 TEL 564-0257

판매원

캐드라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101호 TEL 785-1700

FOCUS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12 장호빌딩 3층 TEL 522-8257

#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9월호 통권317호

發 行 人 : 金圭泰  
 編 輯 企 劃 : 編纂委員會  
 委 員 長 : 李俊憲  
 委 員 : 吳龍夫,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豉, 金宗植  
 編 輯 · 取 材 : 弘報部/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尹泰日  
 發 行 處 :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 1965년 10월 23일)  
 住 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 便 番 號 : 137-070  
 電 話 :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 시 밀 리 : (02)586-8823  
 登 錄 番 號 : 서울 라-26(月刊)  
 登 錄 : 1967年 3月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 刷 人 : 李鳳秀/正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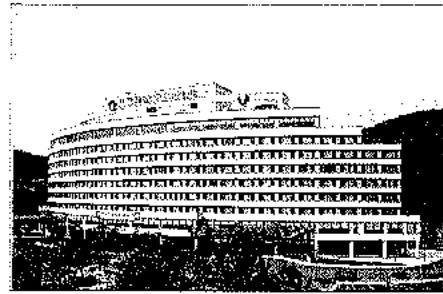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Lee Joo-Hoon/  
         Yang Hae-Yoon/Choi Tae-Yong  
         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  
 는 금합니다.

## 차례

1995년 9월호 통권 317호

칼럼	
광복50주년 : 근대화와 건축의 근대사 / 姜 嫣	22
칼럼	
창립30주년기념 '95 전국건축사대회 무기연기에 즈음하여 / 李鍾寬	24
회원작품	
포스코센터 / 池 淳+POS-AC	25
경주교육문화회관 / 李永熙+閔丙勳	34
주공속초연수원 / 安吉元	40
계획작품	
쌍용저동사옥 / 朱榮正	44
회원갤러리	
샛강(6호F) / 朴亨泰	46
풍성한 가을(50호F) / 金鍾國	47
일하며 생각하며	
삼풍사건의 지속적 반성으로 건축환경 개선하자 / 鄭求殷	48
작품노트	
쌍용투자증권사옥 / 蔣應在	50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김수근(1) / 鄭麟夏	56
건축기행	
몽골건축을 찾아서(1) / 朴舒弘	64
한국 건축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4) / 金知民	70
해외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6) / 朴孝洵	78
현상설개경기	
대구이천지구아파트	90
동대문구청사	
동작구 구민회관 및 보전소청사	94
연구	
송 「영조법식」〈대목작제도〉 주해(8) / 金度慶+朱南哲	96
칼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07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15
설계	
1995년도 7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16
설계소식	
	118



표지사진 / 경주교육문화회관(설계 : 이영희+민병훈)

## CONTENTS

VOL 317. SEPTEMBER 1995

### COLUMN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 Modern History of Architecture / Kang Hyek	22
---	----

### TALK

For a Indefinite Postponement of National Architects Meeting '95 / Lee Chong-Kwan	24
---	----

### WORKS

POSCO Center / Chi Soon & POS-AC	25
----------------------------------	----

Kyeongju Education & Culture Center / Lee Young-Hee & Min Byeong-Hun	34
--	----

Korea National Housing Cooperation Training Center / Ahn Gil-Won	40
--	----

### PROCESS WORK

Ssangyong Building Co. Ltd. in Cheo-dong / Joo Young-Jung	44
---	----

### GALLERY

The Interval River / Park Hyeong-Tae	46
--------------------------------------	----

An Abundance of Autumn / Kim Chong-Guk	47
--	----

### ESSAY

Tragic Accident- "Sampoong" &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of Architecture / Cheong Gu-Eun	48
--	----

### WORK NOTE

Ssangyong Investment & Security Co. Bldg. / Chang Eung-Jae	50
--	----

### SERIAL

Korean Architect, Kim Swoo-Geun (1) / Jung In-Ha	56
--	----

### ARCHITECTURE TRAVEL

In Research of the Mongolian Architecture (1) / Park Seh-Hong	64
---	----

### TRADITIONAL ARCHITECTURE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4) / Kim Chi-Min	70
--	----

### OVERSEAS ARCHITECTURE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6) / Park Hyo-Soo	78
---	----

### COMPETITION

Taegu Icheon Apartment	90
------------------------	----

Tongdaemun-gu Hall	92
--------------------	----

Tongchak-gu Residential Hall & Preservation of Health Center	94
--	----

### REPORT

Translation of Chinese Architecture Documentary Record (8) / Kim Do-Kyoung & Joo Nam-Chull	96
--	----

LAWS & ORDINANCES	107
-------------------	-----

STATISTICS	116
------------	-----

KRA NEWS	118
----------	-----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분회/33-6411 · 광악분회/882-6744 · 도봉분회/903-3425 · 영등포분회/632-2143 · 강동분회/484-6840 · 강서분회/604-7168 · 성동분회/446-5244 · 등촌분회/923-0158 · 종로분회/735-0905 · 마포분회/333-5251 · 송파분회/423-9158 · 중구분회/279-1415 · 용산분회/717-6607 · 서초분회/552-8468 · 은평분회/388-1486 · 동작분회/815-3026 · 강남분회/517-3071 · 노원분회/933-8676 · 양천분회/653-2892 · 중랑분회/437-7356 · 성북분회/922-5117 · 구로분회/852-2275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6-9350~4

#### ■경기도건축사회/(033)47-6129~30

직할분회/033)43-6662 · 민양분회/0343)49-2698 · 부천분회/032)664-1554 · 성남분회/0342)755-5445 · 의정부분회/0351)876-0458 · 송탄분회/033)666-6153 · 고양분회/0344)63-8902 · 구리분회/0346)63-2337 · 이천분회/0336)635-0545 · 광명분회/02)684-5845 · 원산분회/0345)80-9130 · 시흥분회/032)694-4121

####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원주분회/0371)43-7290 · 강릉분회/0391)41-7371 · 속초분회/0392)33-5081 · 삼척분회/0394)31-8708 · 영월분회/0373)374-2659

#### ■충청북도건축사회/(043)56-2752 · 53-7342

충주분회/0441)847-3062 · 청천분회/0443)43-6253 · 음천분회/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분회/0417)551-4551 · 홍성분회/0541)32-2755 · 부여분회/0483)835-2217 · 대천분회/0452)34-3367 · 서산/045)64-8500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이수분회/0653)52-3796 · 군산분회/0654)43-3816 · 남원분회/0671)32-5000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46-7567 · 33-9944

목포분회/0631)72-3349 · 순천분회/0661)743-2457 · 여수분회/0662)32-5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2-8317~8

포항분회/0562)44-6029 · 경주분회/0561)772-4710 · 구미분회/0546)51-1537~8 · 인동분회/0571)54-4832 · 김천분회/0547)434-2541 · 영주분회/0572)34-5560 · 점촌분회/0581)53-6677 · 상주분회/0582)32-5868 · 경산분회/053)812-8721 · 달성분회/053)634-6306 · 영천분회/0536)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분회/0522)74-8836 · 진주분회/0591)745-6403 · 쟁무분회/0557)645-7420 · 김해분회/0525)36-5692 · 밀양분회/0527)355-4848 · 거창분회/0598)43-6090 · 양산분회/0623)84-3050 · 거제분회/0558)635-3432 · 삼천포분회/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분회/064)62-2233

## 광복 50주년 : 근대화와 건축의 근대사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 Modern History of Architecture

姜 嫣 / 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ang Hyeok

지난 8·15로 우리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했다. 지나간 반세기는 우리의 근대화의 역사에 다름아니며 그것은 동시에 한국의 근·현대 건축 50년이기도 하다. 해방은 우리의 근·현대사의 진정한 출발이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뜻깊은 사건이었다. 우리의 근대화의 내용과 성격은 여러가지로 규정지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것으로 일제 35년간 상실했던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시 쌓아올리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 점은 건축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현대사의 온갖 고초와 시련을 딛고서, 그리고 통일을 위시하여 아직도 해결

해야 할 숱한 난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남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일구어 냈다는 데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지녀 도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든다. 지난 50년의 우리의 근대사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빠른 경제 성장과 공업 발달로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성공적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건축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건설과 개발의 역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깊이 성찰해 볼 때 우리의 근대사를 무조건 성공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그것은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해야 더

합당할 것이다. 외형적 성장과 경제발전의 대가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상실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이 삶에 근본적인 것이며 쉽사리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지만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의 자연 환경과 국토 공간, 그리고 도시경관의 폐해상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양적팽창과 물적 풍요 이면에서 우리는 삶의 환경의 또 다른 칙박함과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 역사의 대차대조표는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않다.

이제까지 간과해왔던 것들이 이제 보다 큰 가치를 지니게 되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비싼값을 치루고서야 얻을 수 있는 것들로 변하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수도꼭지만 틀면 마냥 공짜로 마실 수 있었던 물이 오늘날 휘발유나 콜라보다 비싼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건축에 적용해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지고의 가치로 간주되었던 건설과 개발이 이제 재고되어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하며, 건축에서도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가치라는 것이 건설 행위의 전면에 나서게 됐음을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광복 50주년을 즈음하여 우리에게 한국 건축의 근대사를 깊이 성찰하도록 촉구하는 두 가지 사건이 터졌다. 그 하나는 삼풍백화점 붕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이다. 두 건축물 모두 정상적인 수명을 나한 끝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종말을 맞이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이들의 분노와 원망이 서려있다. 그것들은 그야말로 우리 근대사와 한국 근·현대 건축의 일면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사건들이며, 그 이면에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여러가지 화두들을 제공한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단적으로 우리 근대화의 무모성과 허구성을 드러냈다.

그 봉괴와 더불어 우리가 추구해온 성장과 발전의 신화가 함께 무너졌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근본 원리가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며, 법과 규범도 아니며, 상식과 지성도 아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과정이 결과에 묻혀버리고, 미래가 현재에 희생되는 사회에서 삼풍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삼풍백화점 봉괴는 최소한의 윤리도 결여된 비정한 자본과 기술이 합작해 일으킨 작품으로, 사회학적으로 진단하자면 그것은 한마디로 공동체의 봉괴인 것이다. 삼풍은 유달리 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지금 우리 사회와 도시 도처에서 이러한 근대화의 부정적 결과들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보다 잘 살기 위해 추진해온 지난 반세기의 역사적 과정이 오히려 이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이 뼈아픈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을 위한 건축, 인간을 위한 도시는 교실에서나 유효한 허울 좋은 구호 일뿐 도구적 합리성으로 자본과 권력에 봉사해온 것이 한국 현대건축이 걸어온 길이 아니었던가? 그러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국토를 망가뜨리고 도시 환경을 숨막히는 곳으로 만들어 온 것이 우리 건축인이 아니었던가?

삼풍 사건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근대화와 현대건축을 근본적으로 돌아켜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정말 이제는 '죽임'의 건축이 아니라 '살림'의 건축을 할 때가 됐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에서 건강, 행복, 문화, 환경, 윤리 같은 지금 까지 간과되어 왔으나 정말로 소중한 가치들을 회복할 때이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건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길이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고를 막는 최소한의 조건임을 각성해야 한다. 그 실천을 위한 제도적, 구조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할 때 실수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광복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구 조선총독부 청사의 돔 상부 랜턴을 건물 본체에서 떼어내어 기증기로 지상에 내려놓는 광경이었다. 그것은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 모습은 치욕적인 과거와의 결연한 단절을 의미하는 듯 했고 국민의 속을 후련하게 했다. 말많던 구 총독부 청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반세기를 매듭짓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일부 인사들의 속은 편안하지가 않다. 한 건물의 존폐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과 연결된다는 논리가 별로 설득력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그것이 광복 50주년 행사의 메인 이벤트가 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해방 후 반세기 동안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한,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역사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건물의 헤체를 통해 지나간 반세기를 정리하고 다가올 반세기를 전망한다는 논리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어쩌면 일제 35년을 청산한

다고 하면서 우리의 현대사 50년을 지우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19년 동안 총독부 청사로 쓰였던 이 건물은 그보다 두 배 가까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중앙청이었고 십수년 동안 국립 중앙박물관이었다.) 그리고 지워진 그 자리에 또 다른 과거(경복궁)의 복원을 통하여 미래를 건설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일제의 청산은 우리의 삶의 여건과 의식을 바꾸는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일개 건축물의 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바탕 정치적 잔치로 끝날 구 총독부 청사의 철기는 역설적으로 그 건축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실이 일제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하다.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정궁(경복궁) 파괴와 총독부 건립에 대응하여 거꾸로 총독부 파괴와 정궁 복원으로 응수한다는 것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일제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일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다.

구 총독부 청사의 존폐 논의에는 실상 건축물의 의미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한 건물이 담고 있는 의미나 상징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한 건물이 지니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이미지는 영구 불변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한 건물이 표상하는 의미는 건물 자체에 각인되어 고정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둘러싼 역사적, 사회적, 물리적 맥락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변화에 따라 좌우된다. 구 총독부 청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에서 일제의 야만성과 흉계를 읽으려는 쪽과 그것보다 그 이후의 한국 현대사의 축적을 더 비중있게 읽고자 하는 쪽 간의 상반된 시각때문이다. 전자는 이 건축물의 의미를 건립의도, 건립주체, 배치개념, 스케일에서 찾으려고 한다. 후자는 그 보다 광복 이후 우리 현대사의 역사성에서 찾고자 한다. 양자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의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후자의 견해가 보다 설득력있고 성숙한 것이다.

여하튼 우리는 구 중앙청의 철거에서 공공건축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지닐 수 밖에 없는 상징적 성격, 그리고 권력 및 여론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치적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게 된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한 건물의 운명을 지나간 과거 및 다가올 미래를 결부시키는 데서 사회 속에 건축이 가지는 존재 의미를 되씹게 된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 속에 존재하는 건축의 역사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건축가의 손에 의해 지어진 그것은 이후 독자의 삶을 누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은 항상 아쉽고 서운하다.

# 창립30주년기념 '95전국건축사 대회의 무기연기에 즈음하여

李鍾寬 /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장

올해는 협회 창립3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가적으로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해방되기가 무섭게 분단된 조국은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반세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완의 광복인 셈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가 있습니다. 이같은 일제의 반역사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일제통치의 상징물인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헐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정신과 기상을 부활시키고 고양시키는 명시적 계기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결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50년전 당시 해방의 감격과 기쁨은 새로운 감회속에 되새기는 것 못지않게 불모의 한국건축을 자랑스럽게 일구어 온 우리 건축사들로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욱이 협회 창립 30년의 역사는 궁지와 자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집행부와 30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는 광복이후 오늘까지 우리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온 주역들의 결집체인 협회역사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을 회원에게 심어줄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발전논리의 제시로 회원과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한국건축의 새로운 위상을 모색하고자 오는 9월말 제주도에서 전회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기념행사를겸한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고자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건축계로선 치욕스러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그에 따른 대내외적 사유들로 인해 부득이 행사 추진을 무기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건축계에 큰 상처로 남게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건축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는 건설제도 전반에 관한 종체적 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코자 기획단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본 협회는 협회차원의 개선책 및 대응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건축사들이 예정되었던 제주도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또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건설기본법의 검토가 재차 추진되고 한건연의 종합건설업 면허제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역시 이번 행사를 막는 또하나의 적신호가 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급박하게 변화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우리 건축계의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행사준비에 있어 시간적 여유나 장소마련이 다급한 마당에 과연 제주행사가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집행부는 신중한 논의끝에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무기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 밝혀두고 싶은 것은 항간에 서울건축사회가 대회 개최의 부당성을 집행부에 견의함으로써 행사가 무기연기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무근임을 지면을 통해 밝히는 바입니다.

행사준비위원장으로서 회원과 협회를 위해 뜻깊은 행사를 꾸며보려 준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해왔으나, 불의의 삼풍백화점 사고와 긴박한 상황변화로 부득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행사를 무기연기하게 됨으로써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많은 회원들께 혼란을 끼치게 된 점 지면을 빌어 양해를 구하며 아무쪼록 향후 행사추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 행사 준비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던 제주건축사회 백형철 회장님과 임원, 제주도, 그리고 한진관광 측에도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는 10월 23일에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각계인사 및 전국 대의원을 초청해 조촐한 기념식과 리셉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포스코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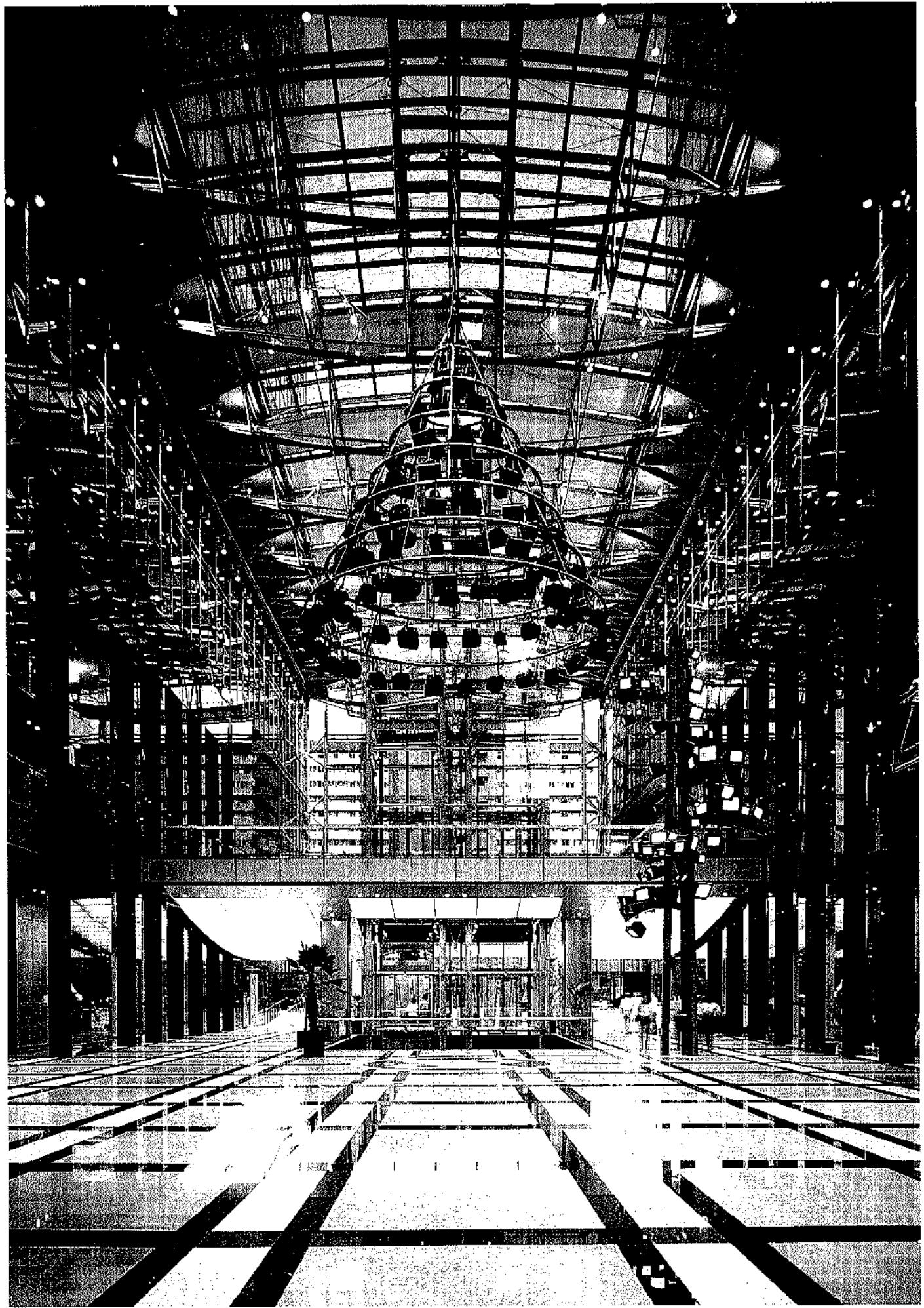
# 포스코센터

POSCO Center

池 淳 / (주)간삼종합건축 + (주)POS-AC

Designed by Chi Soon & POS-AC





아뜨리움 전경



야경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2번지, 892-1, 5

용도 / 업무, 균정, 전시, 관람집회시설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장비 및 미관지구

대지면적 / 17,453.8㎡

건축면적 / 7,280.7㎡

연면적 / 180,973.1㎡

건폐율 / 41.7%

용적률 / 595.6%

조경면적 / 2,898.5㎡

규모 / 지하6층, 지상21층, 지상31층

구조 /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시공자 / (주)동아건설산업

건축주 / 포항제철

공사기간 / 92.1~95.6

Location / 892-1, 5, Taehi-dong, Gangnam-gu, Seoul

Use / Business, Neighborhood, Exhibition

District / Commercial

Site Area / 17,453.8㎡

Bldg. Area / 7,280.7㎡

Gross Floor Area / 180,973.1㎡

Bldg. Coverage Ratio / 41.7%

Gross Floor Ratio / 595.6%

Landscaping Area / 2,8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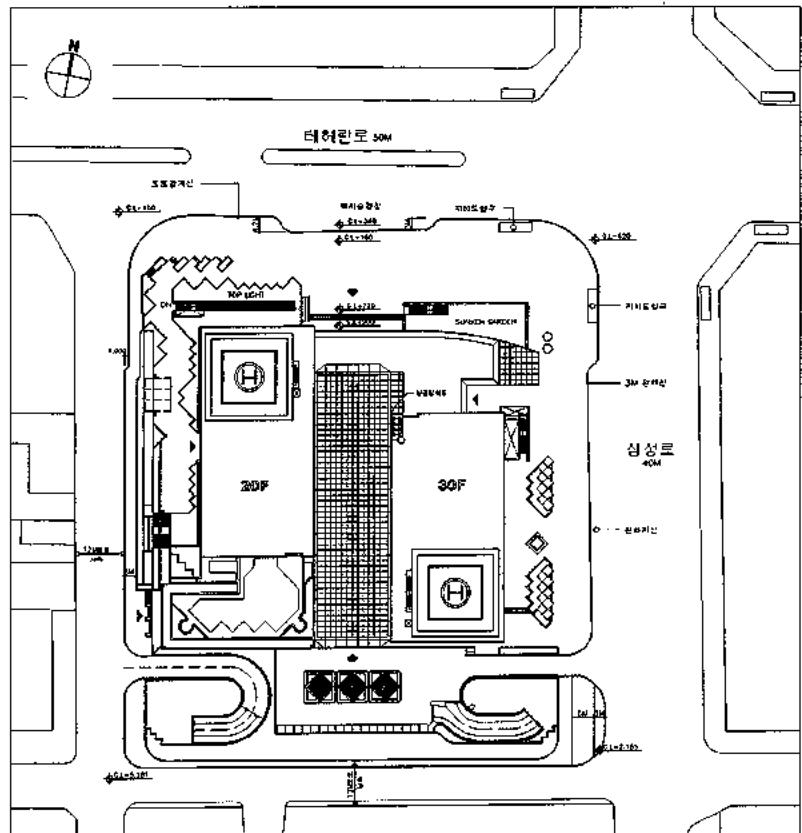
Bldg. Scale / 6 Story Below Ground,  
21 & 31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or / Dong-A Cons. Co, Ltd.

Client / Pohang jechoel

Construction Term / 92.1~95.6



배치도



주출입구 전경

POSCO Center는 세계화로 확대되어 가는 사무내용과 24시간 무제한 업무시간대를 충족시키며, 신속 정확한 정보처리와 통신시설등 첨단기능에 적응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목표로 설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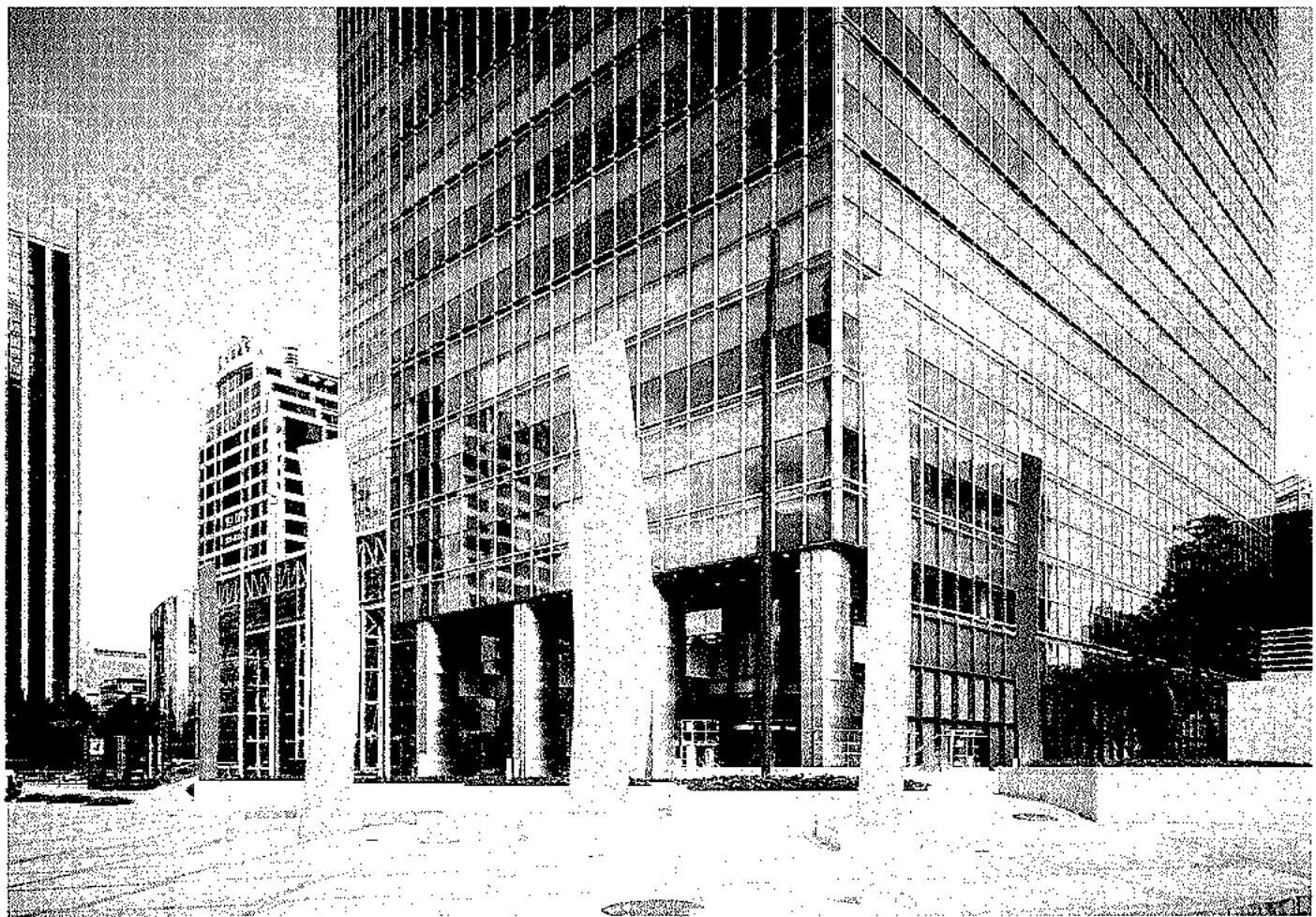
국내 초유의 'Grade-3'를 지향하는 '한국형 인테리전트 빌딩'이라는 명분위에 국산자

재 및 기술구현을 위하여 설계과정 속에 전문기술도입 및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총체적 통합 IBS를 실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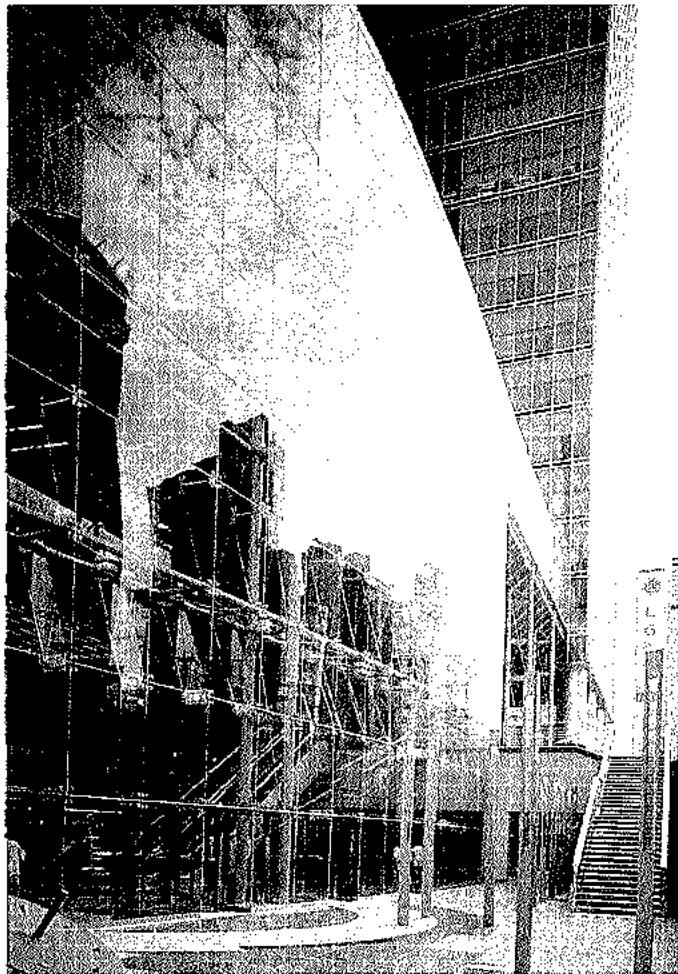
조형 및 환경의 공간 개념은 기업과 시민과의 개방하고 도시문화를 수용하는데 설계의 주안점을 두었다. 저층부 Atrium은 이런 의미에서 Public Urban Plaza로서의 자유스런

접근(Access)과 도시를 반영하는 투명성을 강조했으며, 사무공간의 무주(18m Span)처리와 전층 OA Floor 등은 미래에 예측되는 건축 및 설비의 확장성을 반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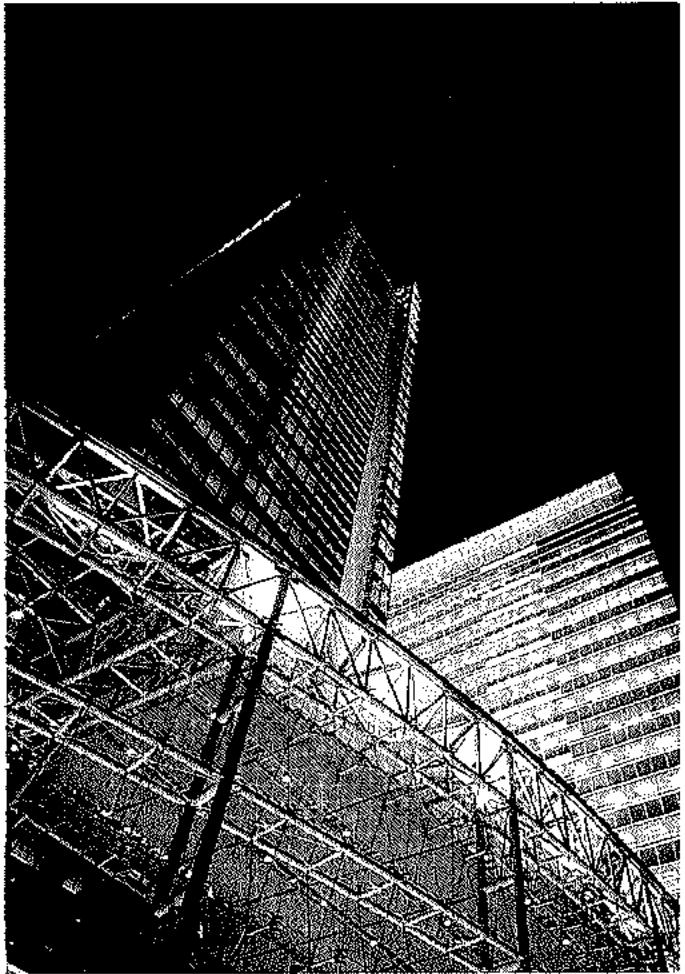
자연과 공존하는 설비 환경을 위하여 자생력 있는 인테리전트 빌딩으로서의 미래 지향적 건축을 기대한다.



북측 플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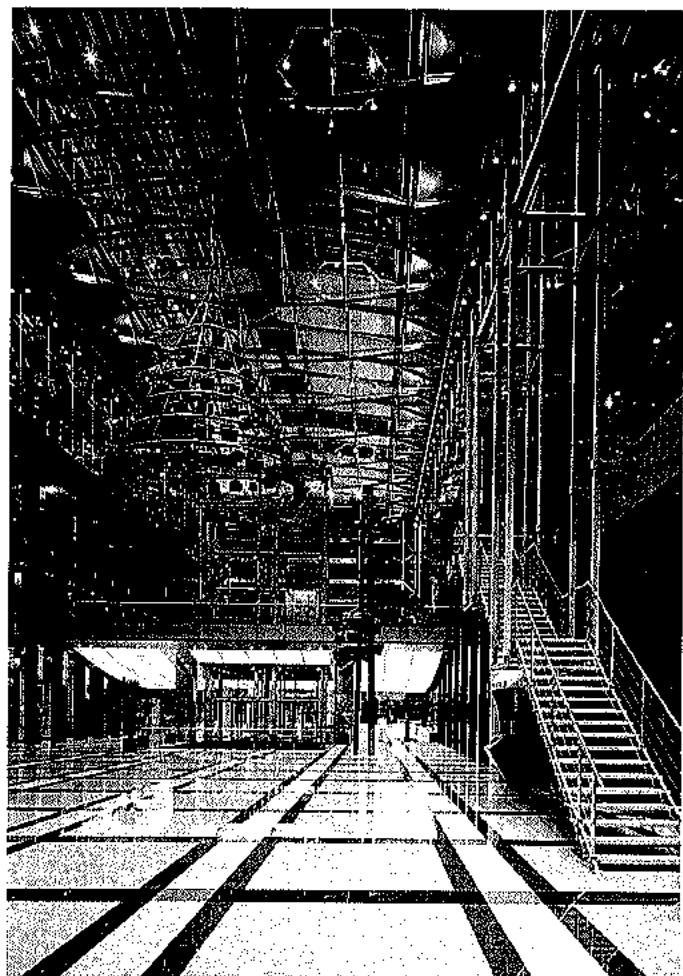
선근가든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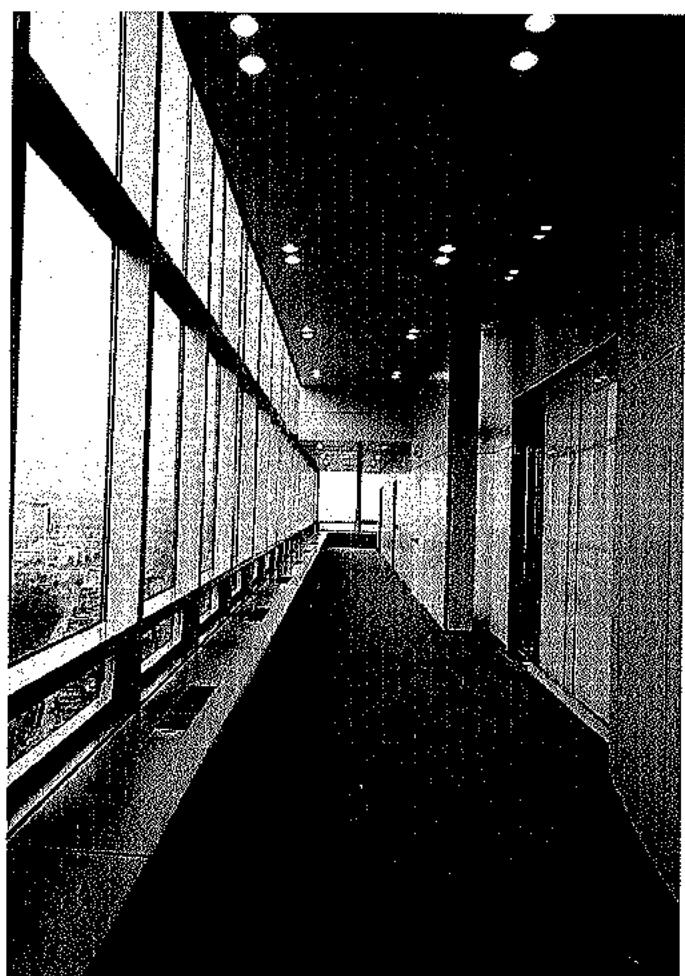
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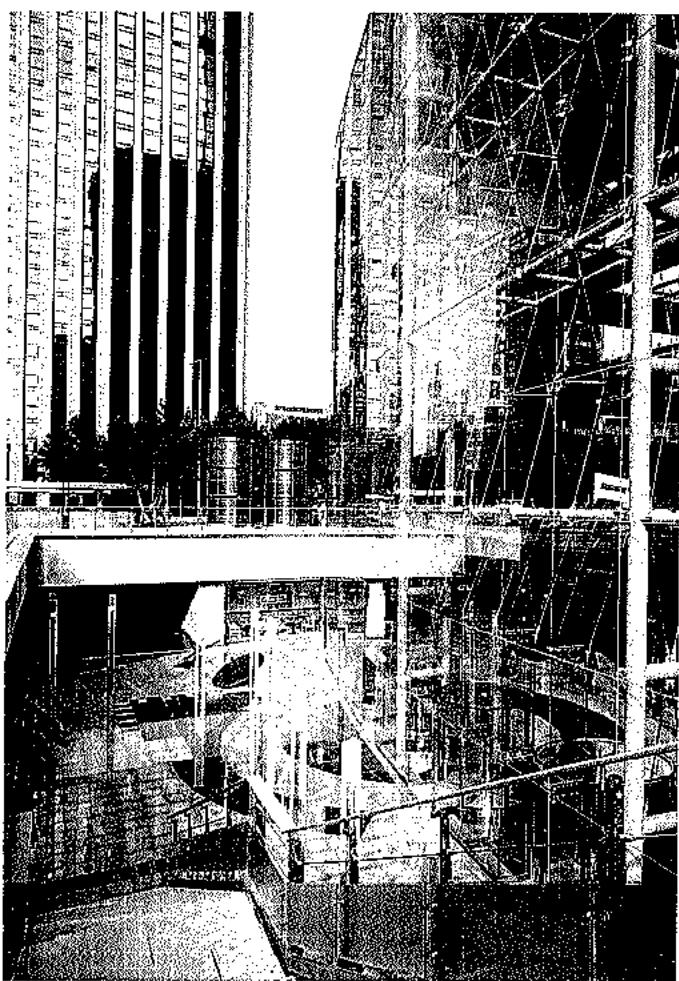
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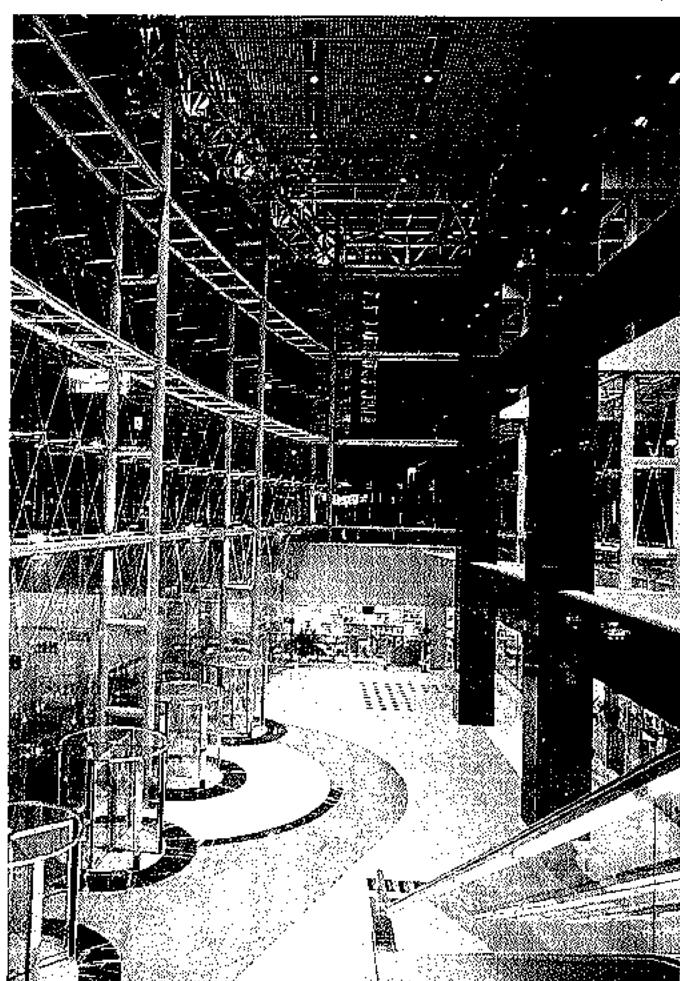
1층로비 및 아뜨리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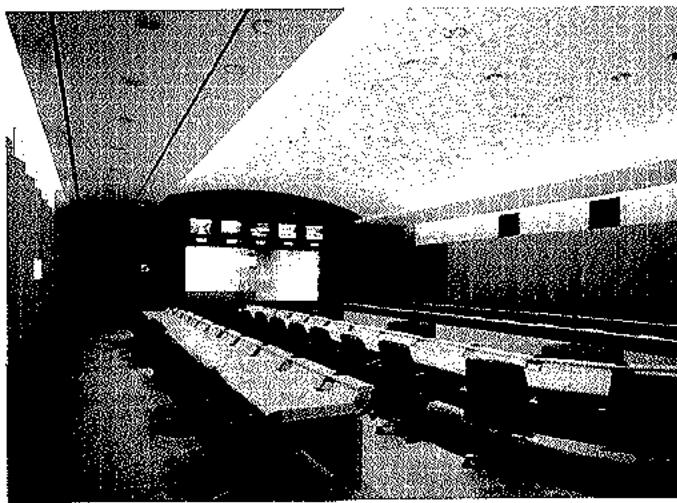
복도



서촌가든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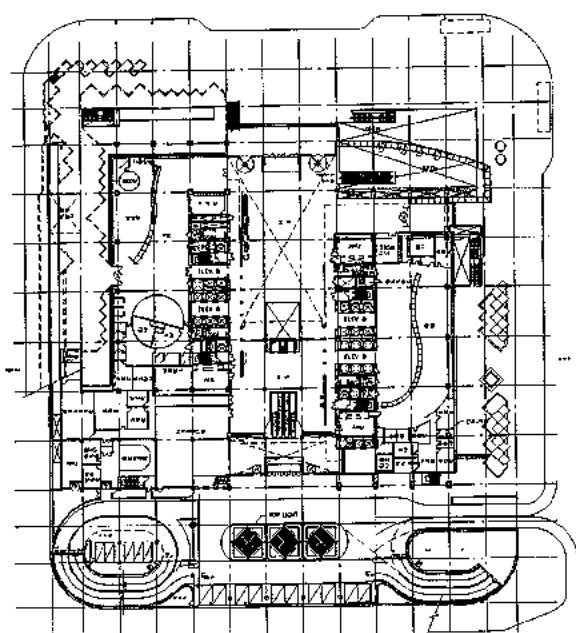
서촌가든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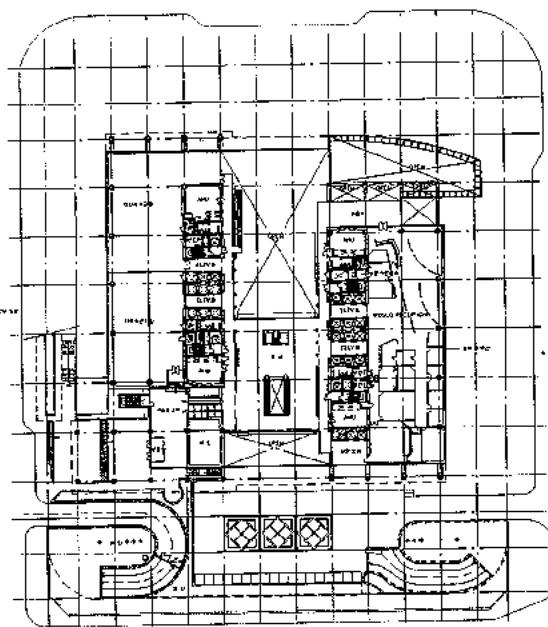
영상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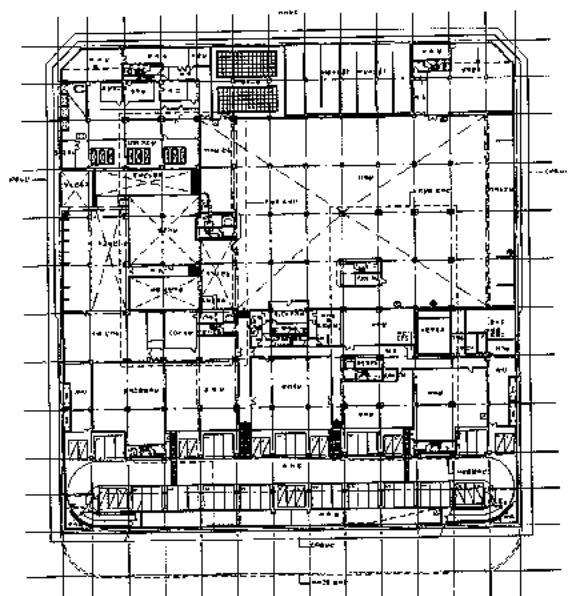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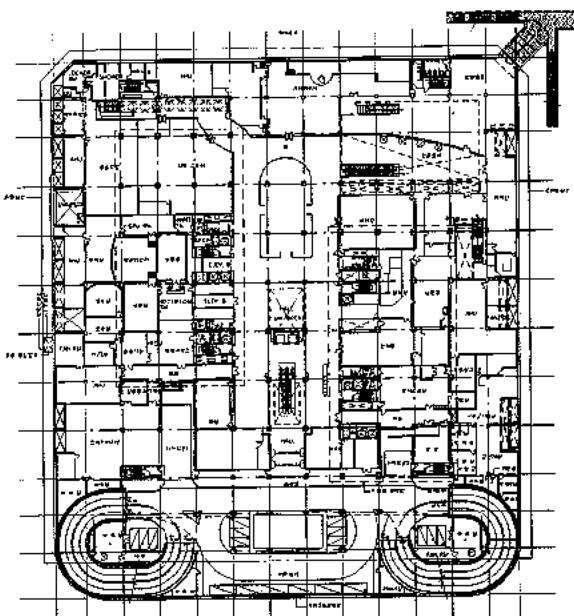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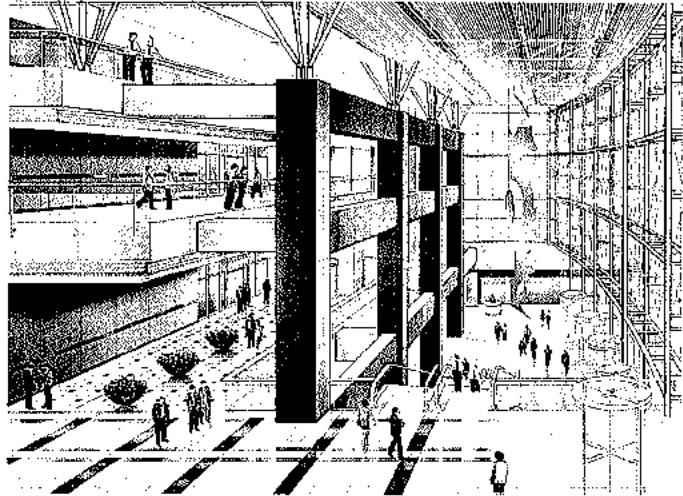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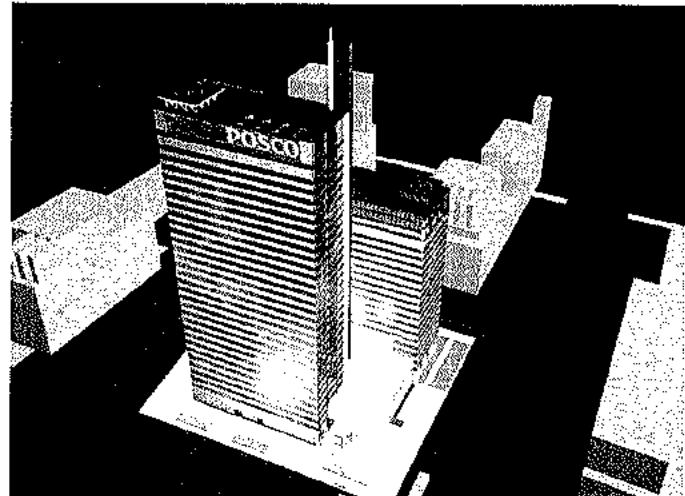
지하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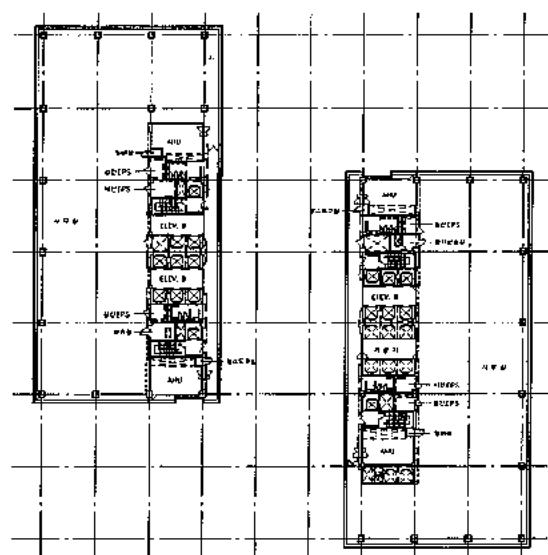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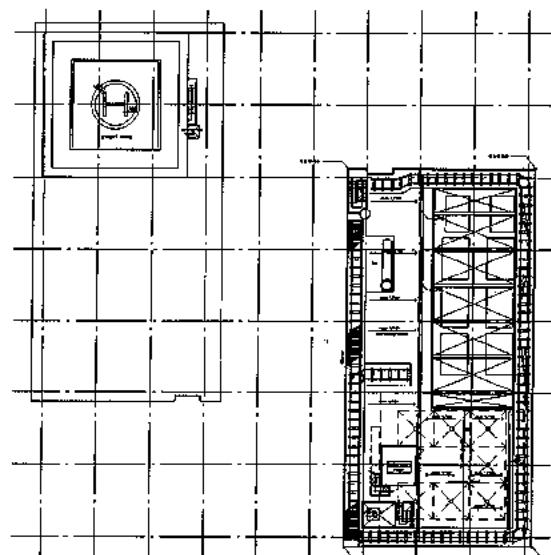
실내 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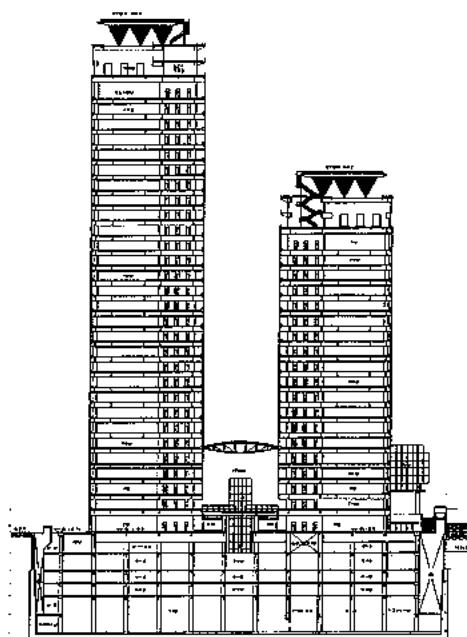
CAD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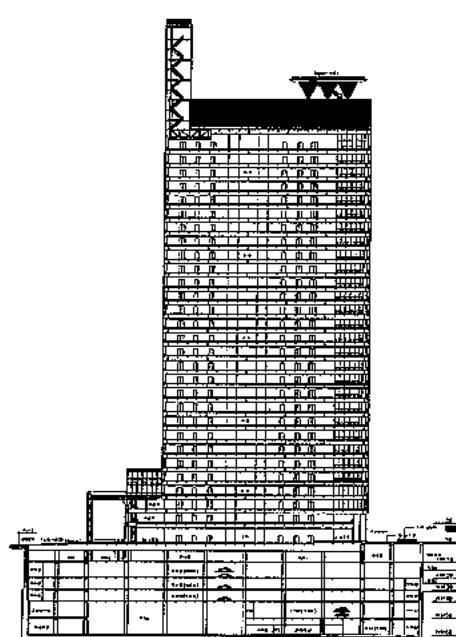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옥탑층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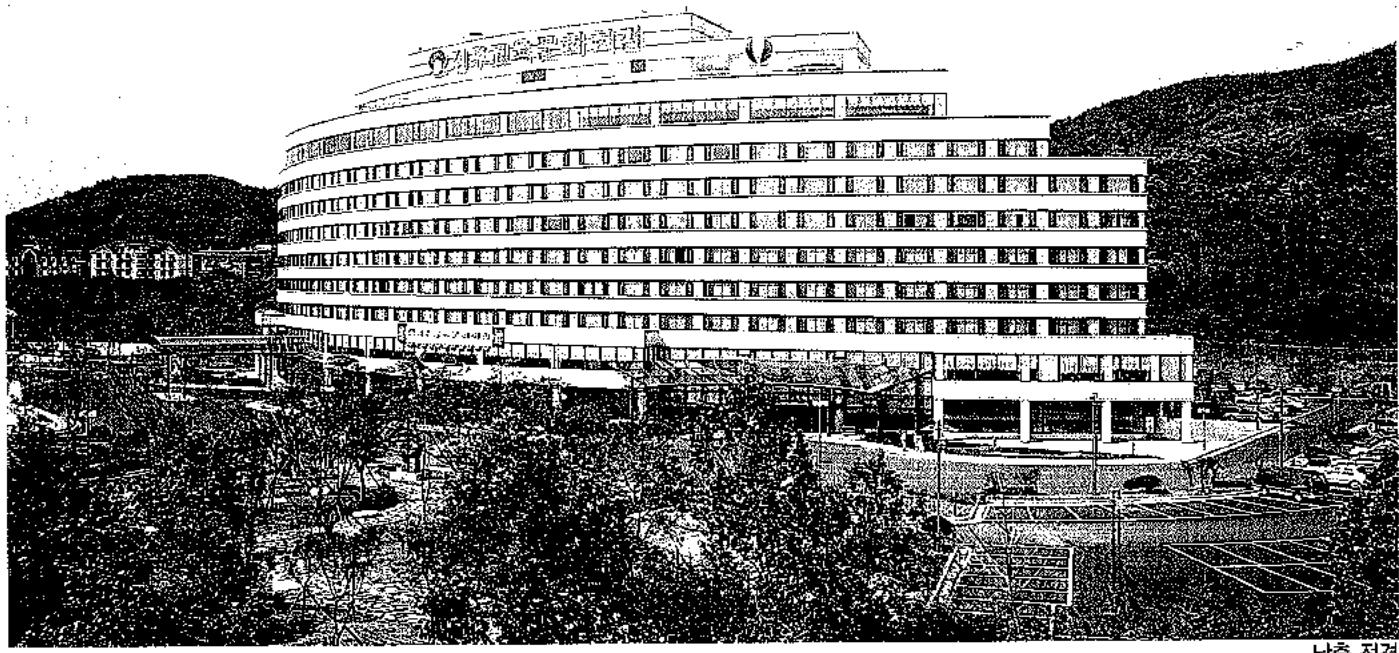
의원작품

# 경주교육문화회관

Kyeongju Education & Culture Center

李永熙 + 閔丙勳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 Min Byeong-Hun



남측 전경

대지위치 / 경북 경주시 신평동 경주보문관광단지 F지구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 59,015m<sup>2</sup>

연면적 / 32,302.83m<sup>2</sup>

건폐율 / 10.95%

용적률 / 5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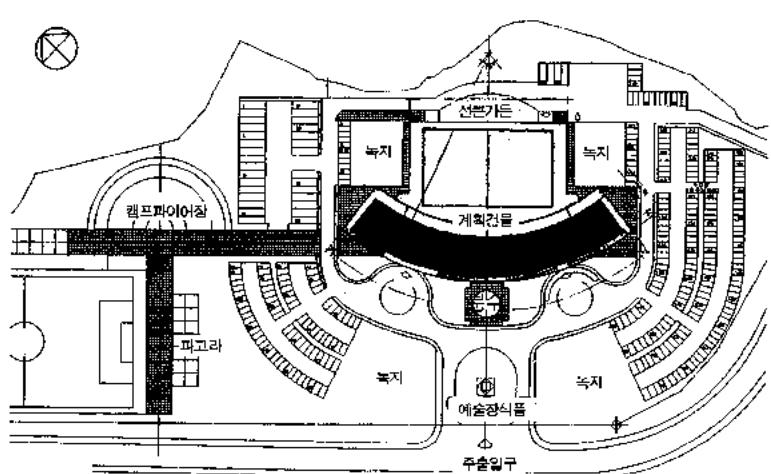
규모 / 지하 1층, 지상 9층, 옥탑 2층

설계담당 / 서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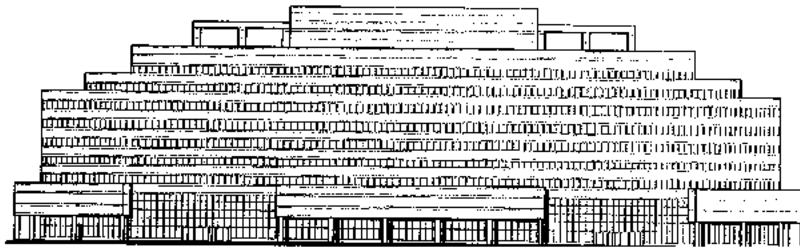
전기 / (주)문유현 전기설계사무소

설비 / (주)우정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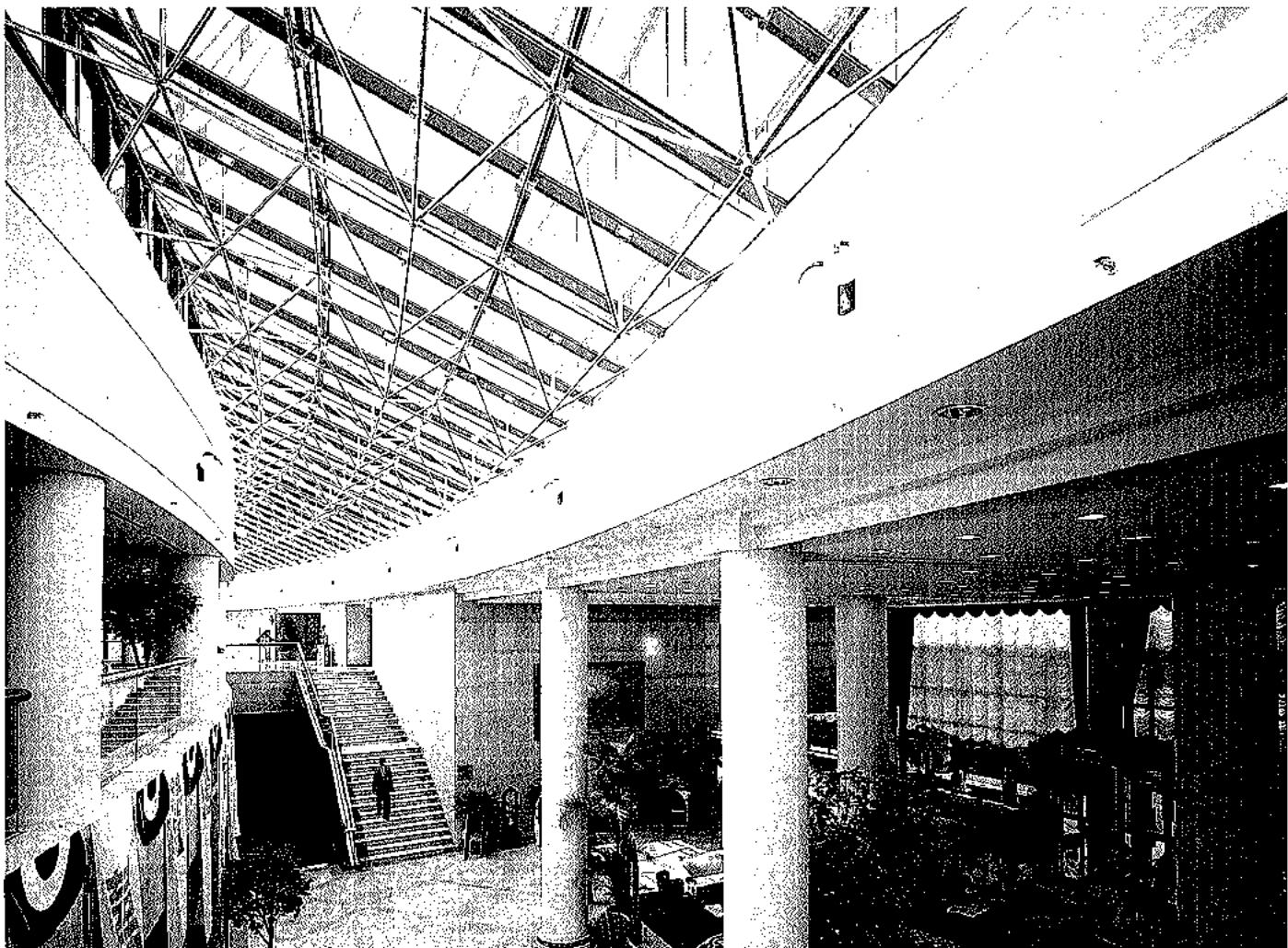
조경 / 밴도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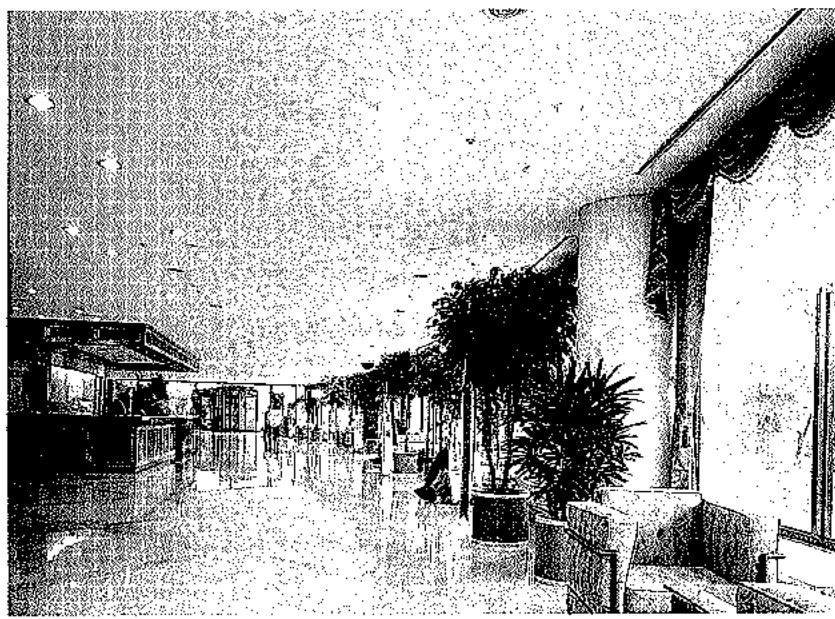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2층에서 본 톱라이트 및 1층 로비



로비

Location / Pomun Tour Zone, Shinpyeong-dong, Kyeongju-si,  
Kyeong sangbuk-do,

District / Green

Site Area / 59,015m<sup>2</sup>

Gross Floor Area / 32,302.83m<sup>2</sup>

Bldg. Coverage Ratio / 10.95%

Gross Floor Ratio / 5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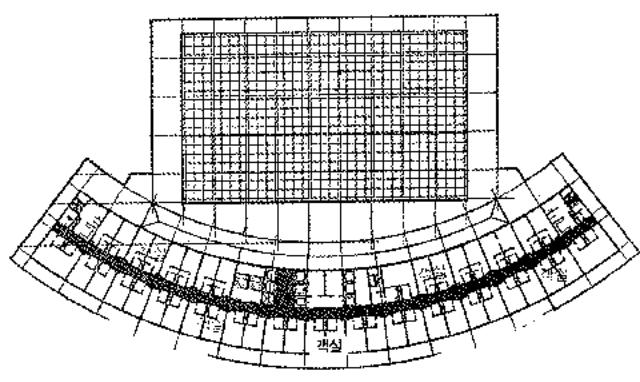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9 Stories Above Ground,  
2 Stories Penthouse

Designer / Seo Dae-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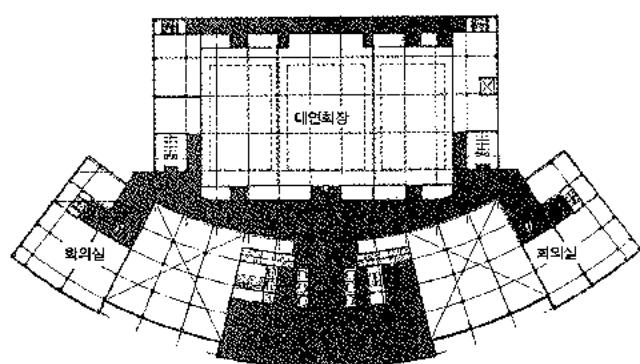
Electric Installation / Mun Yu-Hyun

Mechanical Services / Wuj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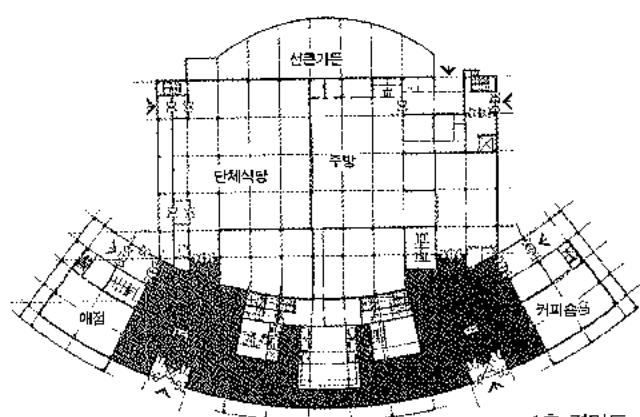
Landscaping / Ba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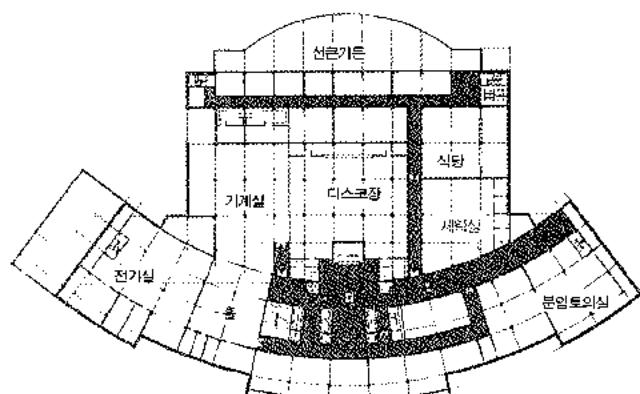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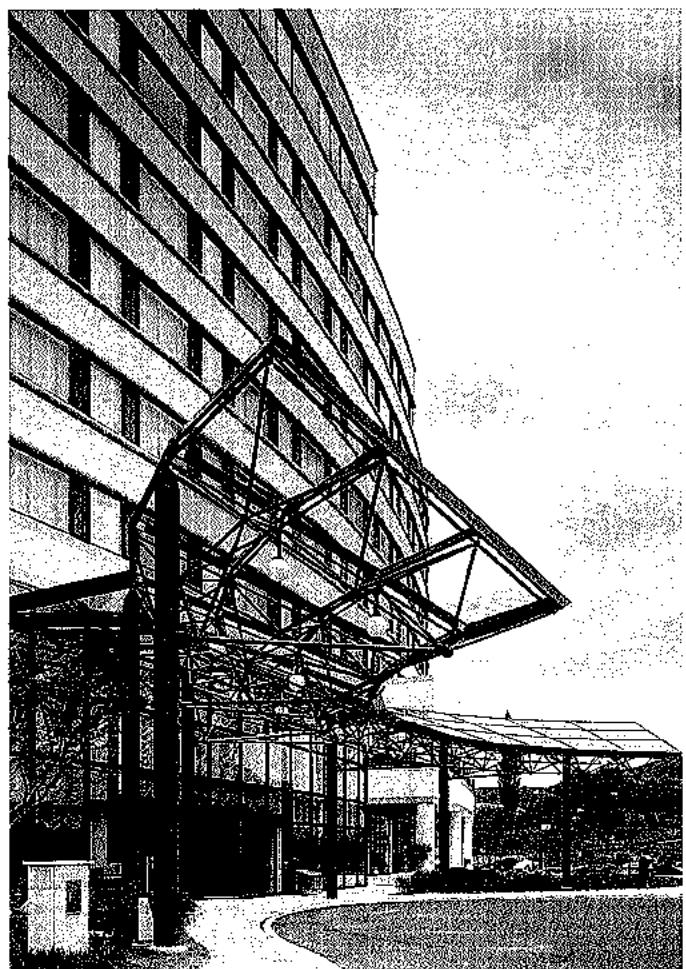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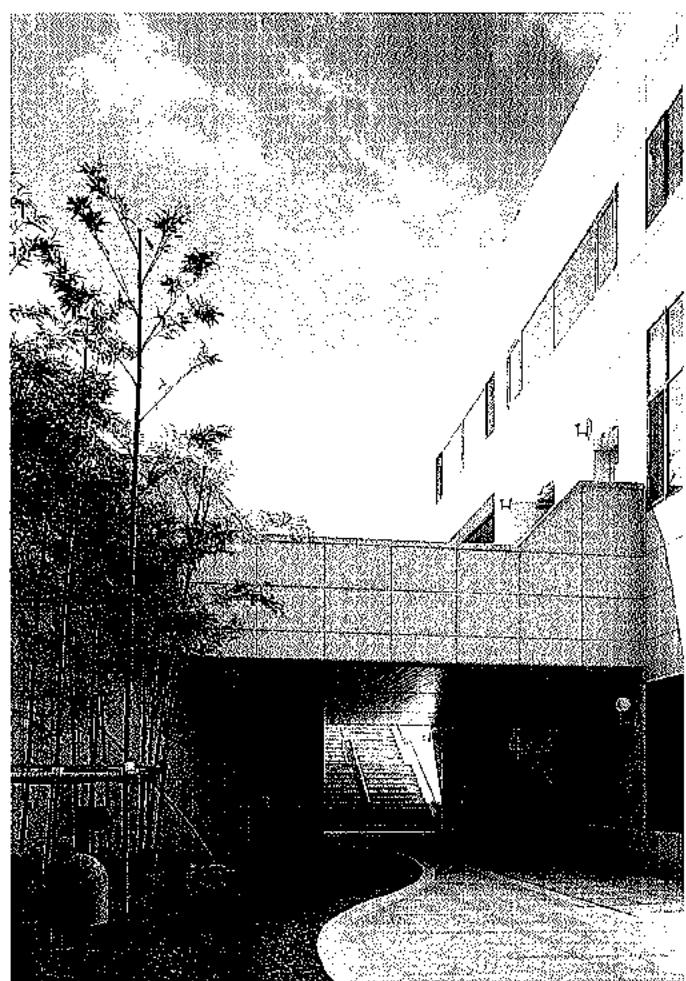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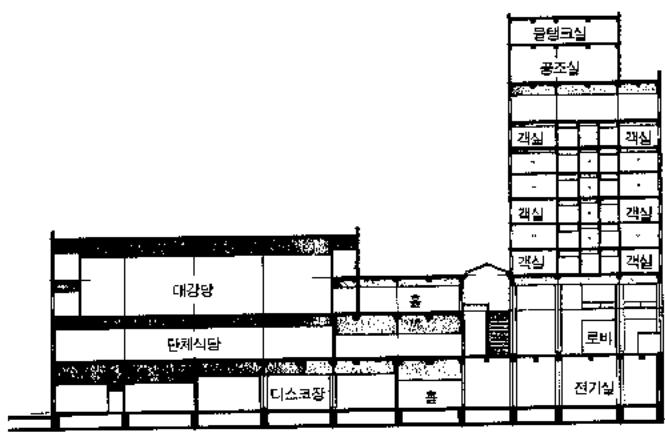
선큰 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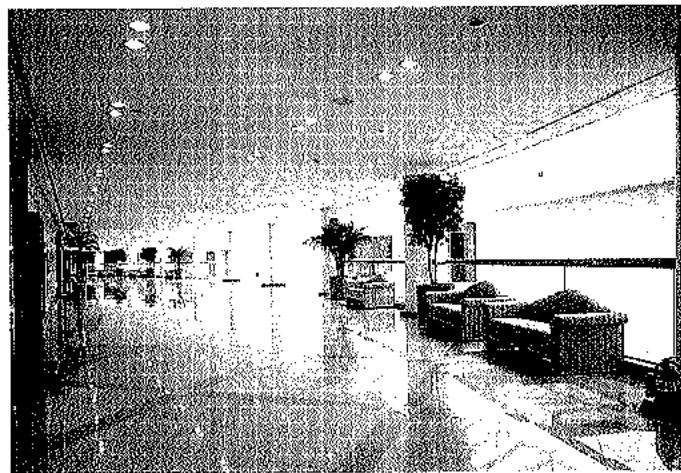
동측 후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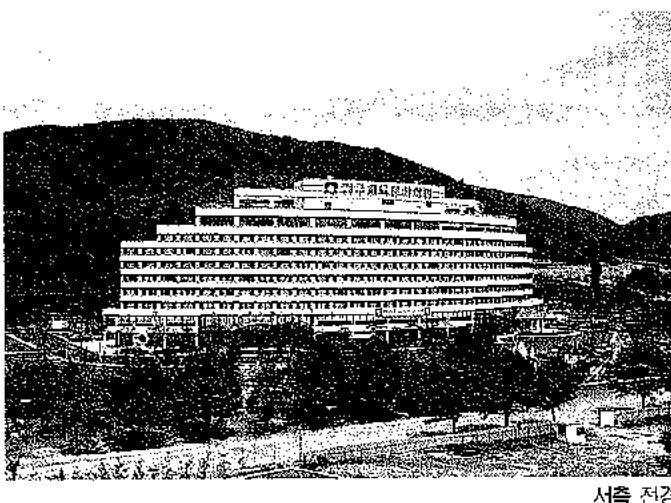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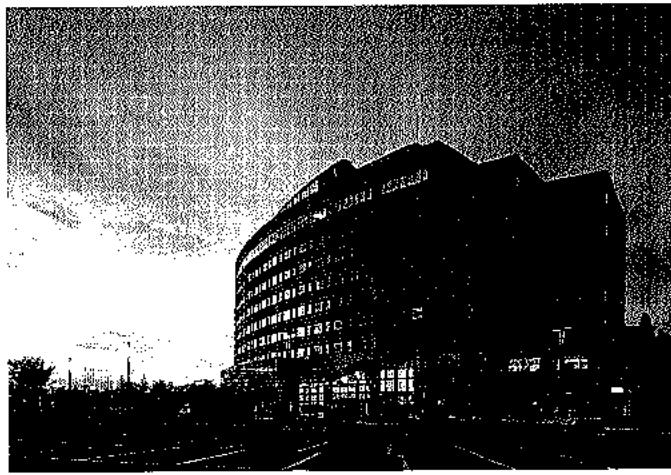
단면도



라운지



서측 전경



야경



2층 툴리어트

### 계획의 목적

교육문화회관은 회원의 복지수혜 확충 및 기금조성 확대와 국민건전관광을 위해 일반관광객에게 자연관광을 이용한 가족단위 휴양시설을 제공코자 계획되었다. 그리고 국내외 수학여행단 및 기업체 연수 등의 단체활동 연수장을 수용함으로써, 여가선용에 부응하고 국제간 청소년 교류와 양질의 문화환경 조성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배치계획

계획부지는 경주시로부터 직선거리 15km 내

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중심으로 반경 2.5km 주변에 경주조선호텔·도쿄호텔·보문호텔·도투락월드·신라촌 등 경주보문관광단지가 인접하고 있다.

주진입은 전면도로 폭 16m 도로에서 이루어지며 일반인과 단체차량은 주차장과 주진입 도로에 오픈된 광장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단체와 일반의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동선에 따른 외부기능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보문호와 신라촌을 잇는 도로축과 일치하는 전면도로의 도시축을 설정하여, 대지형상과 도로축에 순응할 수 있는 구심

적 매스형태를 강조하였다.

전면에는 녹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단체 주출입구와 기까운 좌측면에 운동시설을 배치하여 캠프파이어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객실부는 주출입구와 객실 수직동선·대연회장의 무주공간을 위하여 고층부를 Public Space 사이의 공간을 대형 천장으로 연결하여 공간흐름에 극적인 변화성을 추구하였다.

### 평면계획

교육문화회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기능의 상호연관성 및 호텔자체의 복합적 기능과



대연회장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쾌적한 환경과 융통성 있는 공간활용을 계획상의 요지로 단체와 일반이용객의 주출입구를 분리하였다. 1층은 넓은 로비와 2층 상부의 Sky Light 도입으로 로비 깊숙한 곳까지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창출하여 전체 호텔분위기인 로비의 인상적인 실내공간을 연출하였다.

2층에는 회의기능을 수용하여 사교·연회·집회 및 다목적홀로 구성하여 Public Space의 성격을 부여하고 대회의실과 1층 로비의 연결은 코어 후면의 주계단으로 연결하였다. 주기능을 수용하는 객실부는 단체이용객을 저

층(3~6층)에 두어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토록 하고, 일반이용객은 고층(7~8층)에 두어 단체와 일반이용객을 충분히 분리하여 기변성 있는 공간활용을 꾀하였다. 9층에는 사우나 및 스키아이라운지를 두어 균일한 층고형성과 균형있는 매스로 층고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종업원 시설에 있어서도 근무환경과 작업능률을 고려하여 지하층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코자, 넓은 선큰과 휴게공간을 둘으로써 항상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 입면계획

보문호와 신라촌 등 관광단지 내에 인상적인 조형이미지 부각을 위해 전체외관은 대칭적인 형상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에 따른 매스의 분절로, 저층부와 고층부의 중량감 있는 일체감을 표출시켰다. 외형은 곡면의 변화성에 대응한 수평밴드와 수평창패턴의 안정감과 기둥간격의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색채계획에서도 밝고 화사한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하여, 경주보문단지 내에 랜드마크로서 활력있는 도시분위기가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의원작품

# 주공 속초 연수원

Korea National Housing Cooperation Training Center

安吉元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Gil-Won



속초동 전면 파사드

위치 / 속초시 노학동 산156-1 및 156-2

지역 /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 9,999m<sup>2</sup>

건축면적 / 1,966.14m<sup>2</sup>

연면적 / 9,706.29m<sup>2</sup>

건폐율 / 19.66%

용적률 / 73.52%

규모 / - 속초동: 지하1층, 지상9층

- 연수동: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외장재 / 드라이버트, 앤스파트 쌍글

구조설계 / 삼천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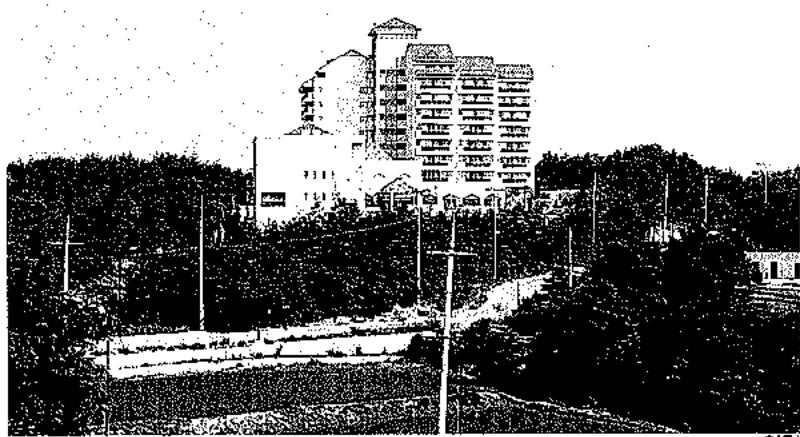
기계설비 / 태라(엔)

전기설비 / 화인(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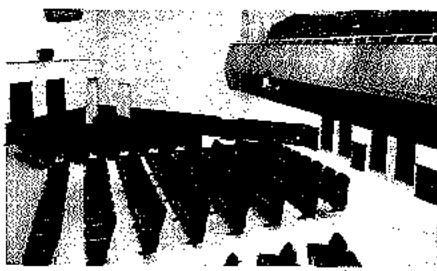
조경 / 삼덕(엔)

설계기간 / 1992. 7~199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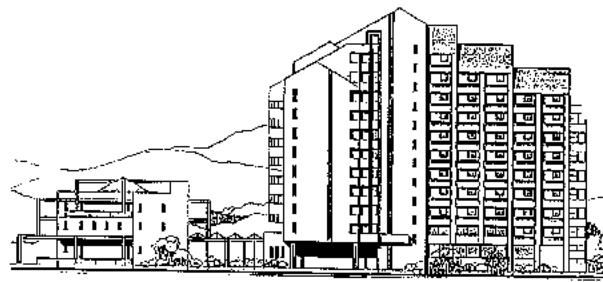
시공기간 / 1993. 3~1995. 2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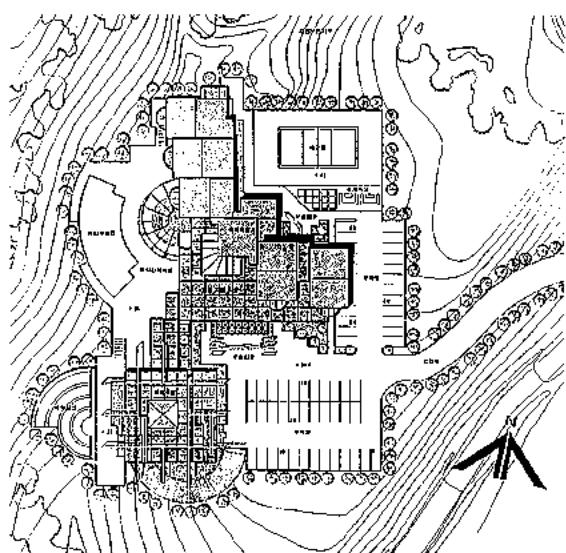
연수동 강당



우측면도



1층 로비



종합배치도

Location / 156-1, 2 Nohak-dong, Sokcho-shi

District / Green

Site Area / 3,990m<sup>2</sup>

Bldg. Area / 1,986.14m<sup>2</sup>

Gross Floor Area / 9,706.29m<sup>2</sup>

Bldg. Coverage Ratio / 19.66%

Gross Floor Ratio / 73.52%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9 Stories Above Ground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Rigid Frame

Structure Design / Samjeon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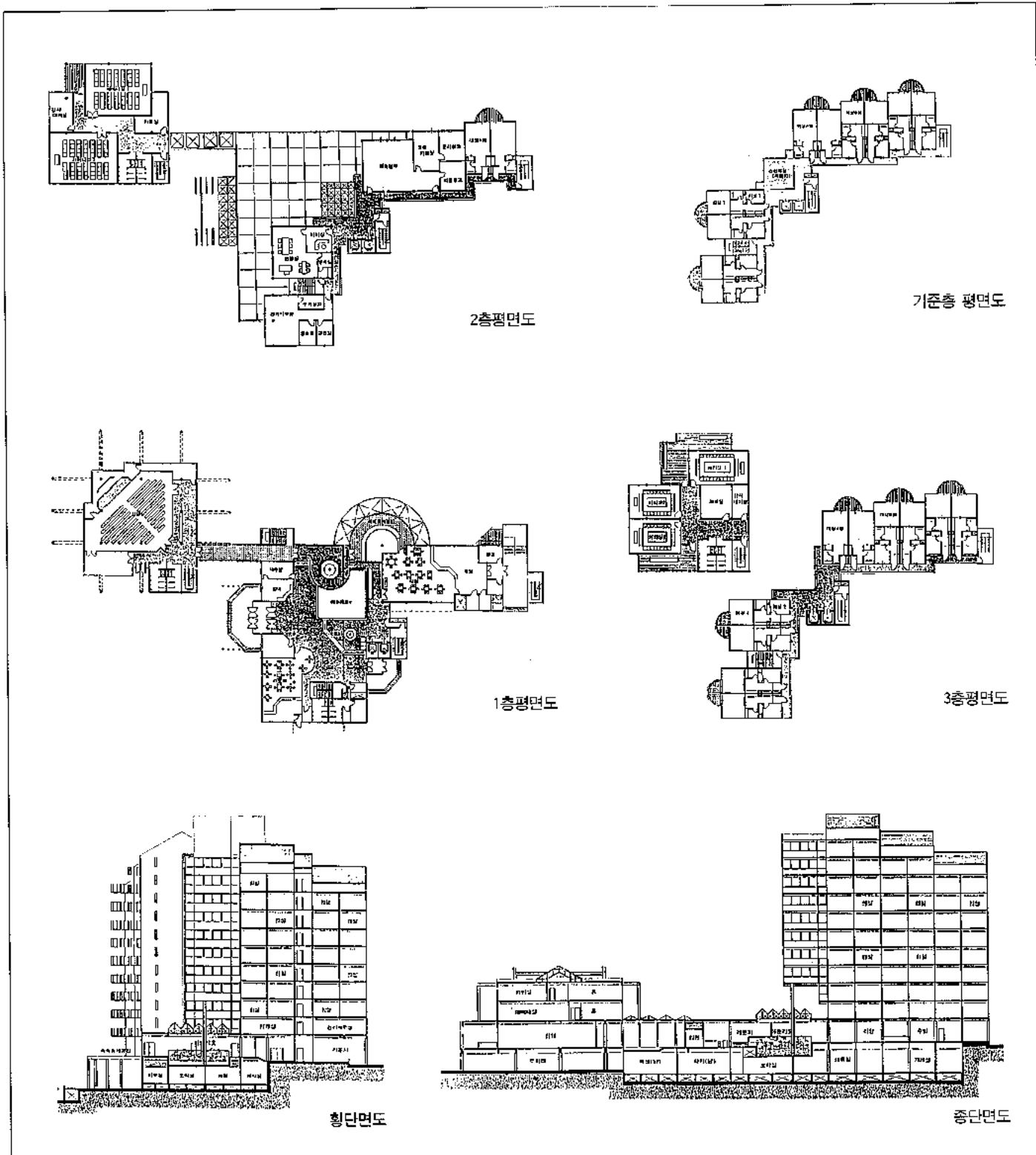
Mechanical Services / Taera Eng.

Electric Installation / Hwain Eng.

Landscaping / Samdeok Eng.

Design Term / 1992.7~1992.11

Construction Term / 1993.3~1995.2



부지이용에 있어 기존지형고를 이용하여 자연환경훼손을 억제한다. 대지질 성토량을 최소화하고 남북 고저차 25m, 국도변과의 약 10% 경사지를 최대한 이용한다. 또 연결통로와 중점과의 전이공간을 부여하여 공간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레벨차에 의한 변화를 주어 동선체계를 조작화하고 진입로와 분리된 서비스 동선을 확보

하였다.

특색있는 건물영상을 연출하기 위해 Open Space 배경 및 상징적 Mass를 도출시켰다. 인자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공간을 개방시키고 진입광장과 조화롭게 하여 상징성을 부가시켰다. 방송실에는 모니터를 설치해 중앙통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전체적 계획의 주안점은 연수원의 이미지 구현을 위해 조형성을 추구함

과 동시에 통일성을 추구하였다. 숙소동과 연수동 기능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각각의 동선을 분리하고 개별건물과 Open Space를 연결시키고 편의 공간과도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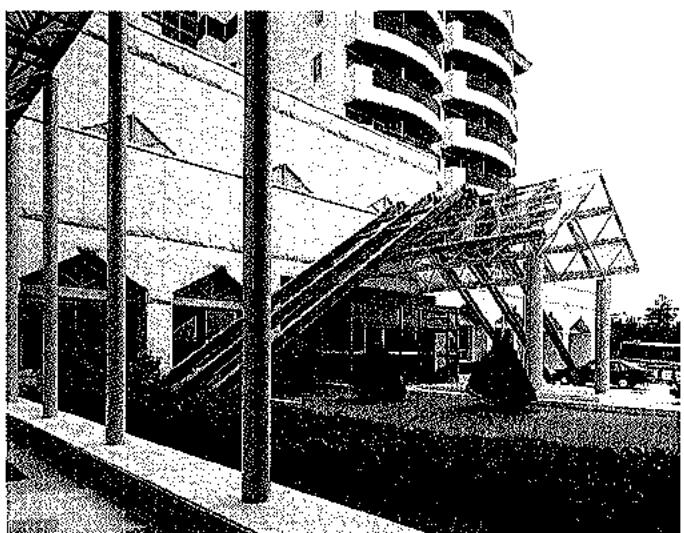
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체육시설 및 일부시설을 개방하여 체력증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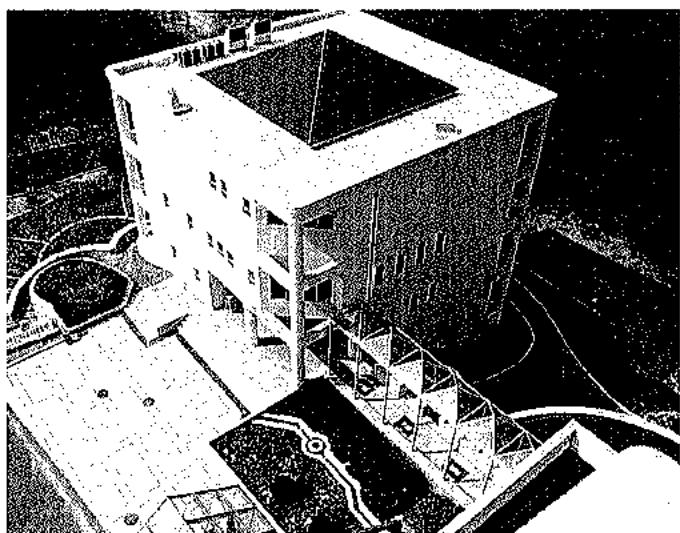
선큰가든에서 올려다 본 숙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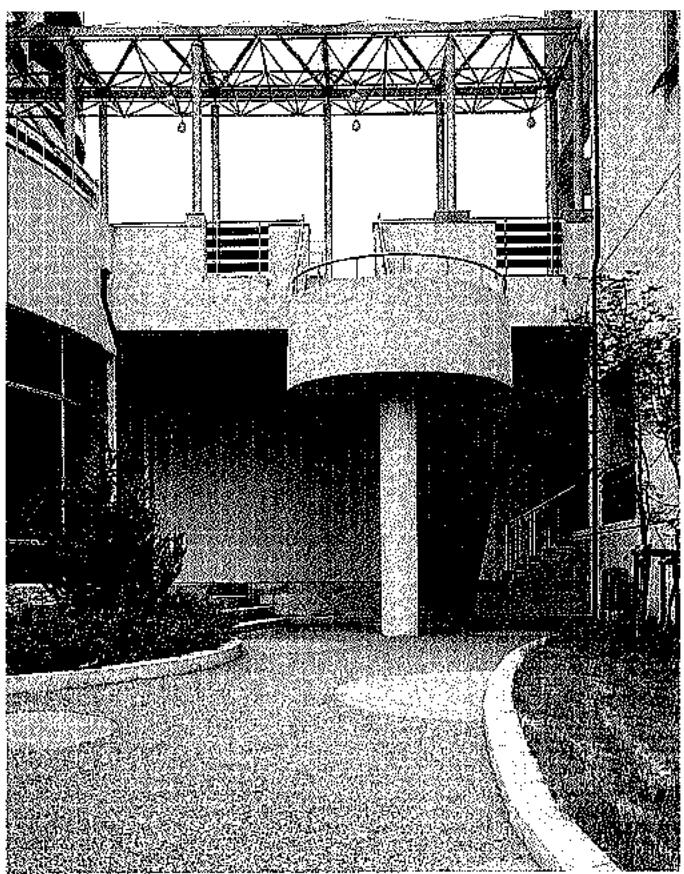
실내수영장 내부



주출입구 캐노피 상세



위에서 본 연수동 전경



선큰가든



숙소동과 연수동 연결통로



기획작품

# 쌍용저동사옥

Ssangyong Building Co. in Cheo-dong

朱榮正 / 예조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oo Young-Jung



투시도

대지위치 / 서울시 중구 저동2가 64번지

대지면적 / 1,192.65㎡

건축면적 / 711.98㎡

연면적 / 9,825.08㎡

건폐율 / 59.69%

용적률 / 51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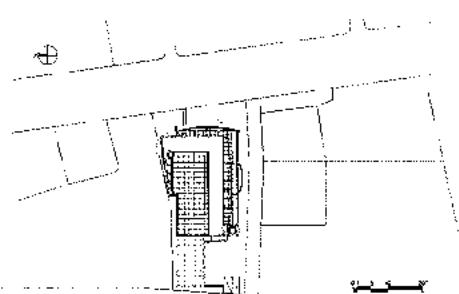
용도 / 업무시설

규모 / 지하5층, 지상1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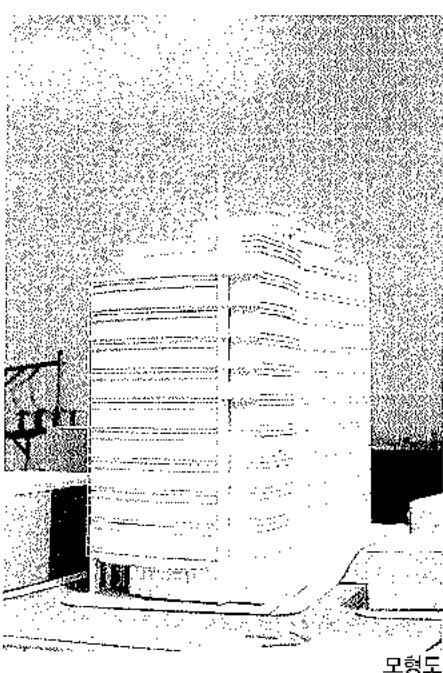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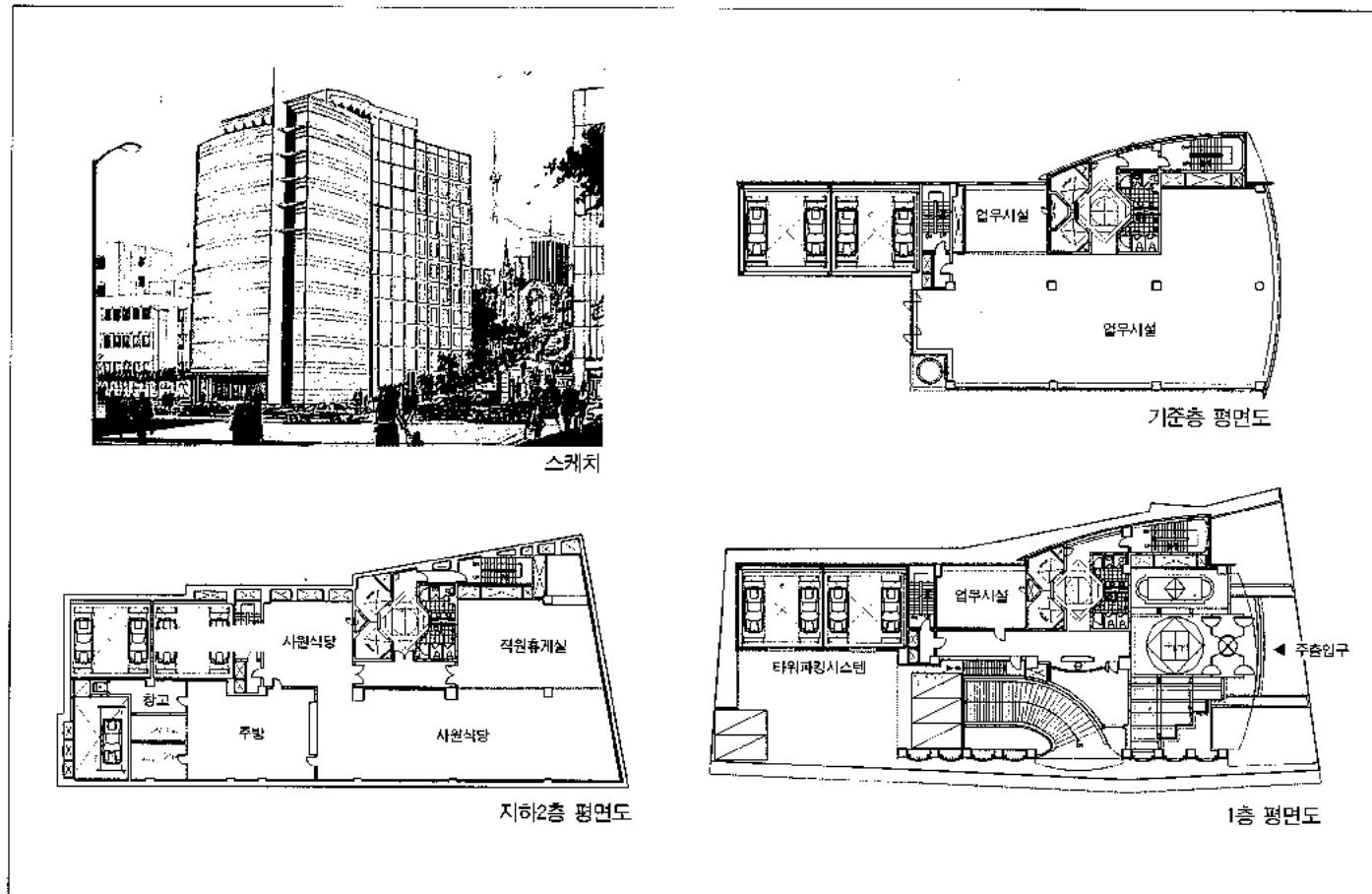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마감 / THK30 확장석 베너구이+물갈이 마감,

지정 THK24 캘러 복층유리



배치도



지명 현상 설계로 당선된 (주)쌍용 저동 사옥은 21C를 지향하는 업무시설로써 실용적이며 장래 다양한 기능 변화에 대응할 업무시설을 창출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21C를 대비한 중후하고 진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주)쌍용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조적, 시각적 통일성과 주변의 도시맥락에 조화되는 친근한 이미지의 연출, 기능에 따른 영역성 확보와 원활한 동선 체계를 통한 Vitality한 공간창출, 기능에 따른 I.B.S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무공간의 자동화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공간 계획 연출에 Concept를 두었다.

#### 배치 계획

- 대지축을 주축으로 하여 진입동선을 유도하고 도시의 기로축에 부축을 형성시켜 도시맥락에 순응
- 전면 도로에 대한 식별성과 전면성을 고려하여 (주)쌍용 저동 사옥의 품위와 권위를 상장하는 개념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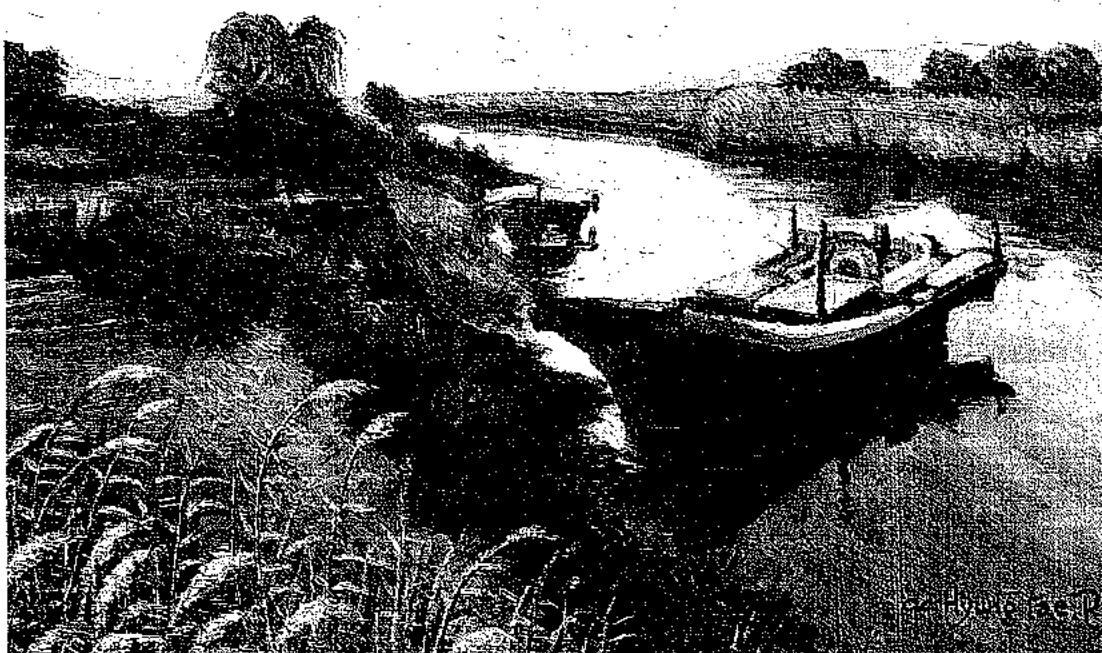
- 보차 분리를 원칙으로 하여 동선의 혼재 방지 및 차량 동선의 원활한 순환체계 구성
- 전면으로 주출입동선을 유도하여 동적인 공간을 유도하고 건물 후면에 부출입동선을 두어 주축에 의한 점진적인 깊이를 가진 동선 유도

#### 평면 계획

- 효율적 평면구성 및 공간의 융통성 부여와 동선의 원활화
- 인간 중심의 계획으로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을 부여하고 친근감 있는 공간구성
- 이동 칸막이에 의한 장래의 공간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 및 Flexibility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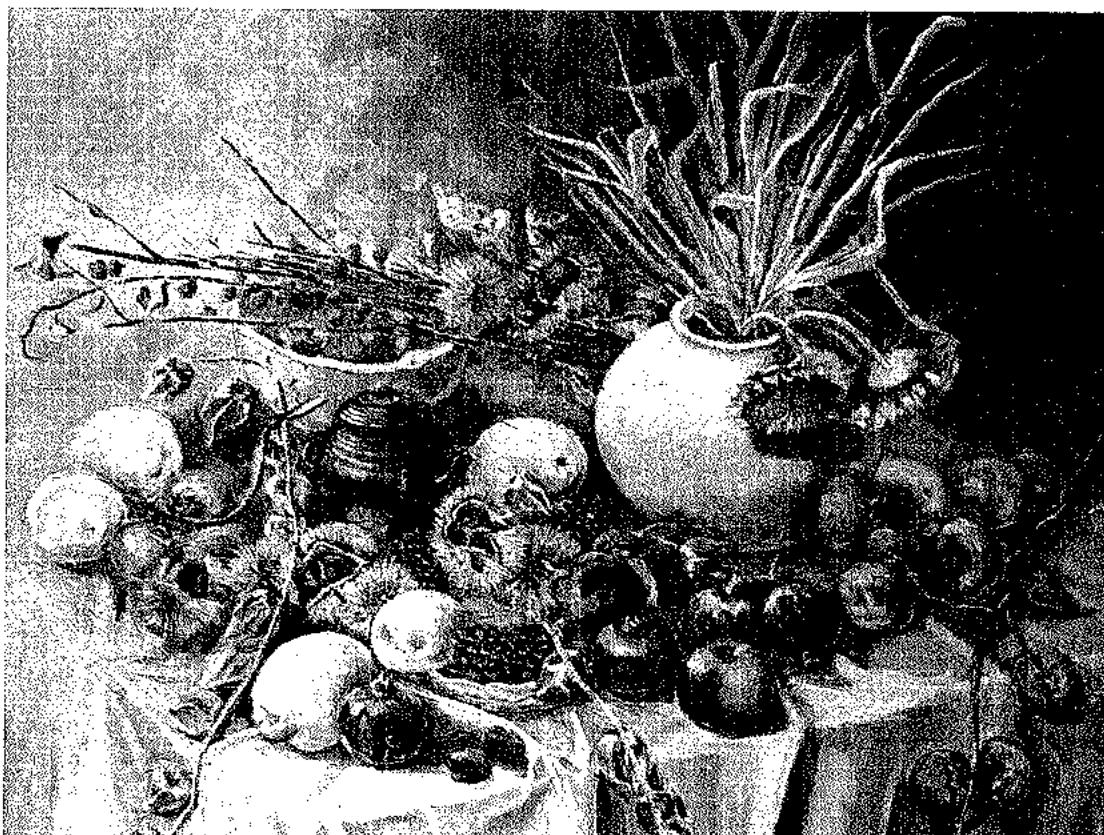
#### 입면 계획

- (주)쌍용 저동 사옥의 상징적 Image 부여
- 수직선의 강조와 곡면매스결합에 의한 다이나믹한 입면 구성
- 정면의 곡면 사용은 진입시 편안한 각도, 원거리로부터의 랜드마크적인 표현



### 셋강(6호F), 박형태 / 성일건축사사무소

흐르는 장강이 만들어준  
또 하나의 지류, 강서 하구언  
시간의 흐름이 이어지듯  
순간들의 실상은 흘러가고  
그 아름다움이 순간 굴절된 채  
여기 하상처럼 걸려있는 듯 하다



풍성한 가을(50호F), 김종국 / 국영건축사사무소

가을풍경 스케치하러 다니다 보니 길가 흑은  
들에서 가을의 열매들이 한창이다.  
채집하여 화실에 옮겨 놓아보니 풍성한 가을이다.  
정말 부자가 된 것 같다.  
내년에도 풍년이 와야 할 텐데….

# 삼풍사건의 지속적인 반성으로 건축환경 개선하자

Tragic Accident- "Sampoong" &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of Architecture

鄭求殷 / 심예 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eong Gu-Eun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열악한 건축 환경의 개선에 있다.

그러나 열악한 건축환경을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자 주어진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혁에 힘쓸 때 우리의 건축 문화는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악봉같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있은 지도 2개월여 지나고 그 충격의 여파가 잔잔해지면서 이제까지는 늘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뇌리속에서 점점 망각의 그늘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다.

삼풍사고 후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변하여 졌을까? 수많은 국민과 건축인들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이 자성과 반성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이제는 진정 무엇인가 변해져야 한다고 다짐하며 기대하여 보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지난날의 타성에 다시 젖어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저 건물의 안전진단이나 하고 앙케이트나 조사하며 관계법규 몇몇 조항만 강화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진다면 이 엄청난 희생을 값진 경험으로 살려 우리의 건축풍토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삼풍사태가 비록 건축주의 지나친 욕심과 새로운 공법에 대한 미숙함과 아울러 부실한 시공과 관청의 눈가림식 행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총체적인 사회구조적 결함에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데는 의리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매스컴의 보도에 일견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언론매체들도 생존자 구출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국민을 계도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온 힘을 기울여 국민의 의식을 안전불감증에서 깨우쳐 주길 바랐지만 그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흐려지고 말았다.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열악한 건축환경

경의 개선에 있다.

첫째, 법을 준수하는 국민의식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가진자와 특권계층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모든 부조리의 씨앗이다. 또한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법을 조변석개하여 특별조치법이다. 양성화다 하여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행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주고 정당화시켜 준다면 공정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되고 최대한으로 법을 어긴 사람만 이익을 얻게 되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빨리빨리 적당주의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의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집권시기에 끝장을 보기위해 무엇이든 서둘러왔고, 그 여파로 사회 모든분야 모든 국민의 마음이 조금해지고 말았다. 설계, 시공, 감리 모든 분야에서 이와같은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한 제2의 삼풍사태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셋째, 기술자들의 장인정신의 결여에 원인이 있다.

기술자를 우대하여 주고 자부심을 길러주는 사회여야만 장인정신이 살아남고 계승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기능공들이 중동의 건설현장에서 피땀흘려 고생한 덕분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잘살게 되었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장인정신이 연연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붐과 함께 갑자기 인건비가 인상되고 잘살게 되니까 3D 업종이 기회되고 기능공 양성이 어려워지며 장인정신도 해이해지고 말았다.

넷째, 적정공사비로 완벽한 시공을 하자.

현행 공사입찰제도로서는 최저가 낙찰로서 공사를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량자재 사용과 하도급자에게 손실을 전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해어날 수가 없다. 또한, 일반 건축주들도 적정한 공사비에 완벽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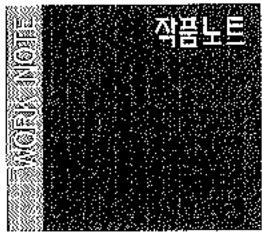
공을 요구하기 보다는 우선 남보다 싸게 공사를 맡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과당 경쟁으로 공사의 질이 떨어질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과당경쟁을 막고 적정한 공사비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축주, 설계, 시공, 감리 관청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모든 건설현장에서의 기본이자 또한 최대의 판전이다. 각 분야의 적절한 조화만이 건축현장에서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빌주자인 건축주는 건축물이 개인의 소유임과 동시에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시민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말고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여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자는 건축의 조형예술 뿐만아니라 구조안전을 감안한 설계로 폐적한 생활공간이 창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시공자는 자기기술 개발과 책임의식으로 내가 시공한 현장은 내가 책임진다는 투철한 장인정신을 가지고 건설에 임할 때 부실공사는 추방될 것이다.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계의 연장선상에서 시공을 감독하여 공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관청의 의무와 역할 또한 지대하여 국민의 편에서 국민편의 위주로 제도를 간소화하고 법집행에 일관성을 가지고 참다운 관리 조절 기능을 다할 때 건축붐도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열악한 건축환경을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 주어진 자기 직분에 충실히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혁혁에 힘쓸 때 우리의 건축문화는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삼풍사건으로 회생된 분들의 영령에 보답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쌍용투자 증권사옥

Ssangyong Investment and Security Co. Bldg.

蔣應在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 건축  
by Chang Eung-Jae

### 1.

지금으로부터 8년전 1987년 4월 어느날 우리는 쌍용그룹 관계자와 모임을 가진 후 여의도에 1987년 2월, 9개 증권사가 공동으로 구입한 대지에 건설하려는 「쌍용투자증권 사옥」에 대한 설계의뢰를 받아, 그 해 8월 중순까지 4개월간 「계획안」을 작성하여 수차례 협의가 진행되었다.

1987년 8월, 서울시 측으로부터 공동구입된 1만평 대지의 9개사 분할승인을 얻기까지 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 기간동안 서울시가 제시하는 개발모델과 9개 증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 건물의 방법간에 조정작업이 추진되었으며 특별히 「조성」되는 제2의 증권 업무지구의 성격을 살리고 도시환경에 기여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검토가 상당한 시간 진행되었으며, 9개사 접속 중앙부분에 대한 지하층 공동개발과 같은 제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부분의 지표면을 「공동조경 부분」으로 설정하고 각사 건물의 건축한계선을 조정하는 선에서 그 작업은 마무리 되었고, 그 중앙부분에 보행자를 위한 공동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소극적이고 그냥 지나치는 일반인에게는 별로 의식되지도 않는 부분으로 보이겠지만, 또 공동 조경처리의 내용에서 미흡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집단지구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노력을 시도하였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추후 이와 유사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그 장애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봄직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2.

상당한 기간, 작업이 진행되고 서울시와 여러가지 협의가 진행된 후 9월경 갑작스럽게 「외국건축가」의 영입이 검토되고 그에 대한 협력방안 및 계약방법 등에 대해 검토되고 「외국건축가」선정작업도 병행되어 1987년 12월30일 급히 미국 LA의 서쪽 산타모니카 소재 W. 베케트사와 쌍용건설이 계약체결을 하게 되었다.

필자가 체험한 한국종합무역센터 사무동, 전시동 설계의 협력경험이 이 프로젝트의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빌주방법의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이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되는 기회가 된 셈이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건축주(대기업을 위시하여 정부부서 빌주공사도 포함)는 왜 외국 건축가의 초빙을 선호하는가?

또 외국건축가를 초빙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에 협력하는 국내건축가에게는 무슨 역할을 기대하는 것인가?

또 우리들 국내건축가는, 무조건 디자인의 주도권 확보를 이유로 외

국건축가와 적대관계로 받아들이고, 비협조적인(물론 계약내용은 그렇지 않겠지만)관계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협력설계를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닌지?

외국건축가, 국내건축가 협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내건축가와 국내건축가의 협력설계는 어떻게 이야기 될 수 있는지?

작게는, 설계사무실 내부에서의 각 단계별 디자인 작업에서 사무실 내부의 건축가 끼리의 협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항상 디자인을 누가 주도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여 그 수많은 부분과 여러단계에서의 건축가 그룹의 협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팀을 이루는 건축가 그룹이 종적인 지시와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작업의 과정에서 “충분한 전개”에 의해 공감을 얻고 설득이나 확인의 과정을 서로 공유하며, 팀원 상호간의 동위적인 작업과 사고를 통해 페이스의 변환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협력을 구사할 수 있는 조직, 그런 조직의 필요성이, 생활양태가 다양화 되고 건물이 대형화, 복합화 된 현대에는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조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한편 당연히 마스티이고자 하는 속성을 지닌 건축가 개인의 천재성 내지 식관을 과대평가 하고, 횡적이지 않고 종적인 해결사로서의 조직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그 문제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을 이야기함은 국내건축가간의 협력도 종적인 방법으로의 협력이외에는 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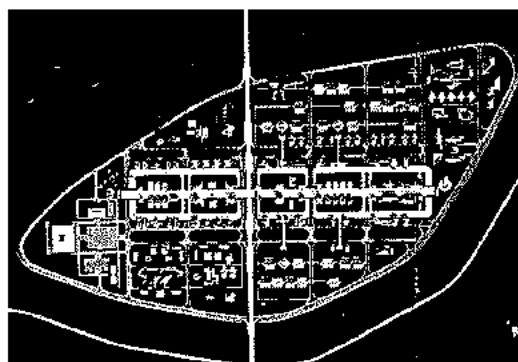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은 인간의 욕구가 다양화 되고, 규모가 대형화, 복합화 되는점, 또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건축의 형식이나 동원되는 기술의 수준이 마스타로서의 개인 건축가가 소화하는 수준을 넘어선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가」간의 협력은 필연적이기도 하고, 이에는 국제적인 협력도 그 방법과 접근태도에 따라, 가능성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필자는 건축가로서, 좋은 건축이란 단순히 기능을 해결하는 수준으로서의 물리적 공간이 이루는 형태로서는 만족할 수 없으며 그 속에 담겨지는 「생활」이 활성화 되고 그 이상의 수용력과 승화감 또는 격을 느끼게 해주는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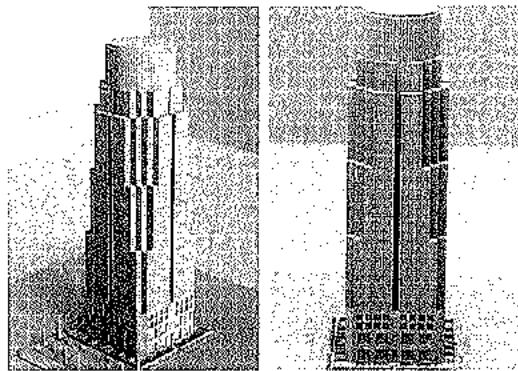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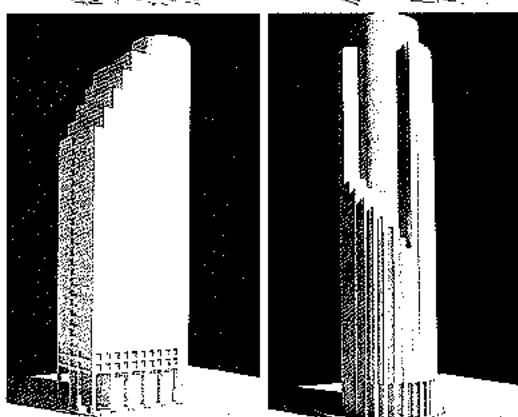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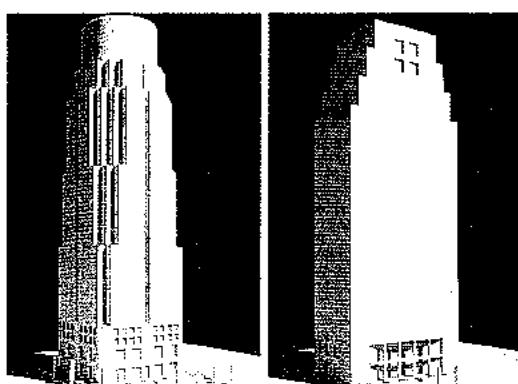
이에는 필연적으로 건축물에 담겨지는 「생활」에 대한 이해도와 종합화하는 구사력이 높아야 할 것이며, 그 보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절실한 「애정」을 가진 건축가가 동원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수용하는 「우리의 건축물」에 외국건축가가 가질 수 있는 「애정」은 어떤 수준의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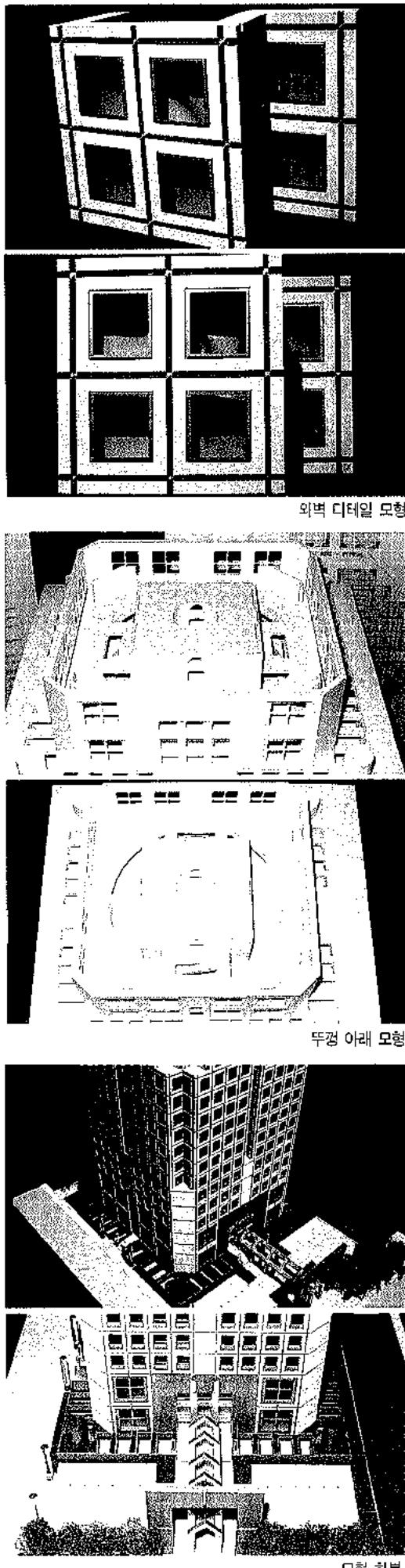
위치도



여의도 마스터플랜



초기 개념 및 모형도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건축가의 초빙」에 거는 기대는 건축주의 기대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건축가」와 협력하는 「국내건축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그 협력으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실시설계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며 초기 개념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각 단계에 걸쳐 설득과 공감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그를 위한 코디네이션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적드라도 그 「애정」을 공유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통상적으로 「외국건축가 초빙」을 요청하는 건축주의 바람은 「디자인」을 그들 외국건축가의 것으로 기대하는 점은 확실하지만, 설득과 공감을 통한 「공유」의 개념이 성립될 경우 「주도권」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규모가 크다거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소화해 보지 못한 수준의 건축물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기획내용으로 자신없는 부분에 대해 막연하게 「외국건축가」는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그들의 「디자인」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건축주의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근래에 일어난 각종 대형 건축물 통과사고는 국내 건축기술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각종 국제적 개방의 불가피성과 맞물려 「외국건축가」의 국내 건축계의 설계, 감리계에의 진출이 더욱 많아질 것은 확실하다.

「협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협력」을 통하여 확실한 「자립」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하여 우리들 국내건축가는 실력을 바탕으로 한 협력방법의 정립을 꾀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건축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서의 외국건축가 초빙을 행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기획」(Program)을 바탕으로 수준높은 외국건축가에게 당당하게 주문하는 발주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누가 설계 주도권을 행사했느냐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이땅에 세워지는 좋은 건축물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주의 「건축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중요하며, 그와 아울러 건축가의 능력, 즉 토착성에 대한 이해와 현대건축 기술에서의 보편적 호소력을 도덕성 있게 구사할 수 있는 「건축가의 상실성」에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 3.

1987년 12월 30일 외국건축가 초빙 계약이 성립되어 C.D(Concept Design), S.D(Schematic Design), D.D(Design Development), W.D(Working Design), 감리단계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초기 개념 설계 단계부터 협력작업을 차수하여 1989년 10월까지 수행, 통산 22개월이 설계작업에 소요되었으나 형질 변경허가를 얻어 9개사 공동의 지하연속벽 공사가 1989년 8월 착수되었으나 본 프로젝트는 수도권 심의 획득이

1990년 5월에 이뤄짐에 따라 본격적인 대관업무는 1991년 1월에 가서 완료되었으며 9개사 공동으로 추진된 지하연속벽 공사와 병행하여 토공사가 추진되어 1991년 12월에 완료된 후 1992년 1월부터 건축공사가 착수되어 총 42개월이 소요되어 1995년 6월에 완료되었다.

이렇게 본 사무소에서 처음 착수한 시점을 기준하면 8년 2개월을 소요하여 21,200평, 지하 7층, 지상30층의 '쌍용타워'가 탄생된 셈이다. 물론 그 공사기간동안 감리업무가 본 사무소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수차에 걸쳐 설계변경 작업이 추진되었다.

통상적인 국내 프로젝트의 추진을 기준으로 보면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이 타 프로젝트보다 긴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추진으로 이해된다.

#### 4.

이 프로젝트의 대지위치는 여의도 전체지도상에서 중앙에 위치하며 북서측으로 면한 516광장은 폭 250m에 달하여 약간의 좁은 띠형태의 녹지가 건물과의 사이에 위치하나 광장에 노출된 고층건물에 의한 「섬」의 느낌을 주고 있는 셈이다. 여의도를 가로지르는 통과동선의 준고속화는 또 더욱 북서측 Approach의 의미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광장의 성격이 이미 본래의 광장의 성격을 상실해 되어 있는 모습이나 향후광장의 개발계획과 공지로 남아있는 안보전시관 대지의 향후개발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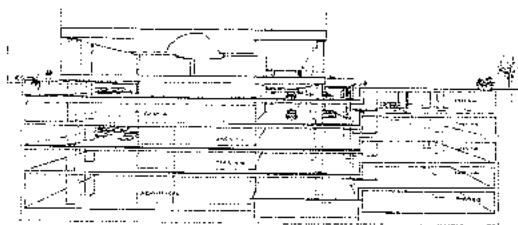
60년대 후반 정부에 의해 여의도 및 한강연안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새로운 도심으로서의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입안되었으며, 당시 건축가 김수근 팀에 의해 주도된 초기제안에는 입체적인 도로망의 제안 및 엄격한 지역의 분할 계획이 보여지나 실현되는 단계에서 도로의 평면화와 군사 퍼레이드를 위한 무비건조한 광장의 처리에 의해 그 모더니즘적 제안은 기회를 잊고 만 셈이다.

어떻게 되었던, 계획된 도시, 여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건축주에게 대단한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점을 읽을 수 있으며 더욱 기업의 상징으로서의 건축은 본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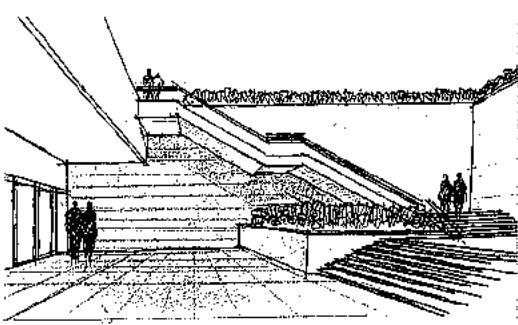
이 관점에서 최대높이(결과적으로 30층) 및 최대면적을 목표하는 점은 타 증권사 건물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할 것이다.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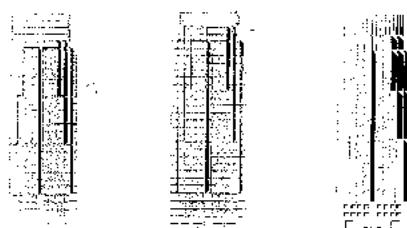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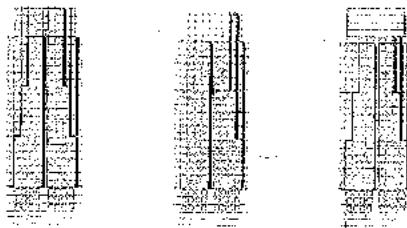
건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타 증권사 보다 높은 30층(초기 32층 높이)을 목표로 한 점과 대칭형의 평면의 형식과 사각형 속의 사각형 또, 사각형 속의 원형(The Circle in The Square)의 형식이 1층 로비 홀로부터 기준층 평면 4면중 오목형 부분을 타고 올라가 최상부 랜턴의 형태에까지 연결처리 된 점도 인지도와 상징성의 부여를 위한 노력이며, 30층 규모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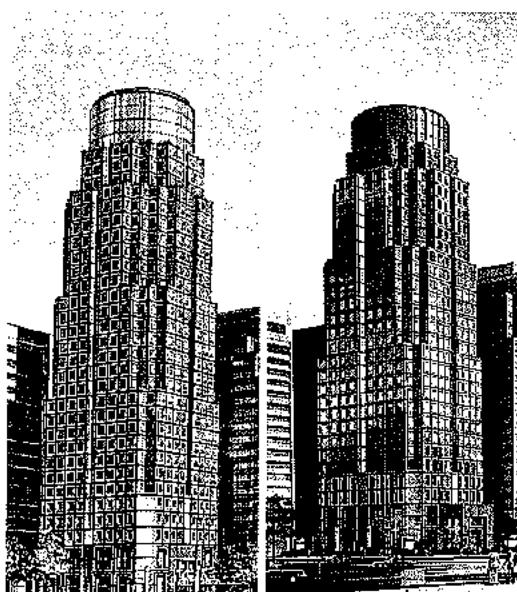
지하 단면스케치



선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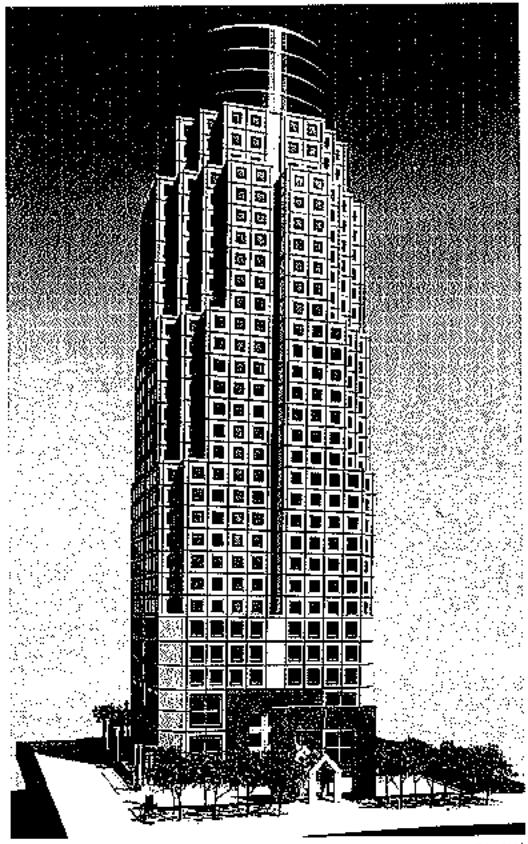


입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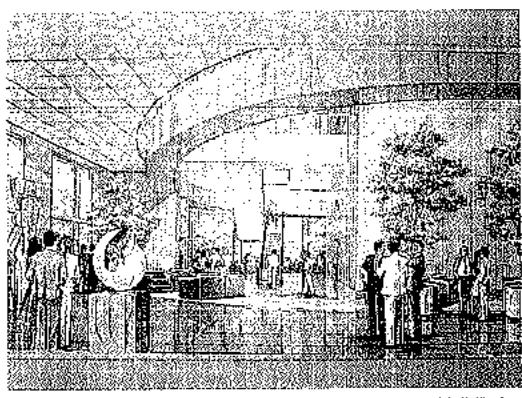


초기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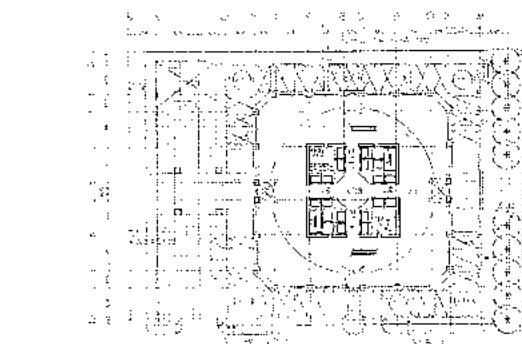
최종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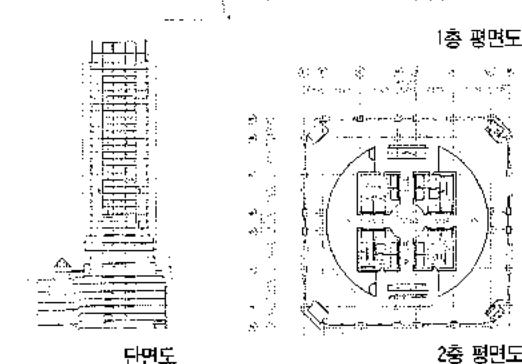
모형사진



실내투시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물이 철골구조가 아닌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결될 수 있었던 점도 이러한 평면의 형식에 의한 강력한 휘력저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초기 콘셉트의 단계에서 최상부 린턴부분의 용도에 대한 생각과 1, 2층 로비부분의 원형 오픈부분에 의해 2층 평면이 사용되기 어려운 점, 또 기준층 평면의 4개소의 오목부분에 의한 평면 사용효율의 저하와 같은 점에서 Co-Designer와 꾀많은 관점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어찌여, 「효율」이나 「융통성」(Flesibility)에 대한 추구와 건물의 형태적 형식이 갖는 제약성과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함이 옳을 듯 하나, 그러한 형식이 갖는 건축적 성격은 그러한 「효율」이나 「융통성」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해오며 작업해왔던 것은 아닌가 하고 느끼게 해주었다.

“형식이 갖는 비효율, 또는 비융통성”이 아니라 효율적이며, 또 종합적인 건축적 소화가 「형식」으로 승화되는 점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외관에 관한 초기 형식은 이렇게 완성되었으나 의외에도 우리는 법규외적인 제약에 부딪치게 되어 건물 높이 및 외관에 대한 조정작업을 강요받게 되었다. 특정지역에 면하여 상당히 높은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 어느 기준에도 없는 “너무 높다”하는 의견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절충에 의한 조정, 그리하여 전체높이가 8m 정도가 낮아지고 단을 지우는 높이가 조정되어 “거의 원안에 다름없는” 조정안을 만든 셈이다.

또 외벽에 재료에 관해서는 초기단계 시멘트 회사의 이미지를 위하여 시멘트 제품으로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로서, 표면을 샌드 브라스팅(Sandblasting)하는 마감재료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모 프리캐스트 제작회사와 샘플제작까지 완성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최종단계 제품정밀도와 균질감확보, 작업장 확보문제, 또 공사비 상승문제 등이 다시 거론되어 원래의 의도대로 화강석 베니 마감으로 마감되었다.

그와 같은 새로운 표면처리(사실은 새롭지도 않지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소화되지 못하는 점 또한 한국적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 6.

두번째로 그들 협력 건축가팀과 당황스러운 대화가 있었던 기억은 「모듈」에 대한 처리를 거론했을 때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피스 빌딩에서의 모듈 코디네이션은 단위스페이스 개념과 설비 유니트의 설치나 칸막이 및 천정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내부의 모든 마감에 다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본 사무소에서 그동안 다뤄진 모듈에는  $3.6m \times 2.4m$ 을 위시하여  $3.2m \times 3.2m$  또 최근  $4m \times 2m$ 까지 여러가지가 개발되었으나 본 프로젝트는  $3.75m \times 3.75m$ 라는 특별한 크기의 모듈로 적용 그 처리에 고심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협력건축가팀에서는 특별히 디자인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반응이었다.

결국 여러가지 제안을 국내건축가 팀에서 만들어 추진하였지만 그 근본원인을 상당한 시간 경과 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일반오피스 빌딩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준층의 경우 「코아와 외벽, 디자인이 완료되면 건축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하고 그 이후의 마감디자인은 「실내디자인」에서 처리되며, 실제 모든층의 사무실 배치 계획은 별도로 실내디자인 용역처리되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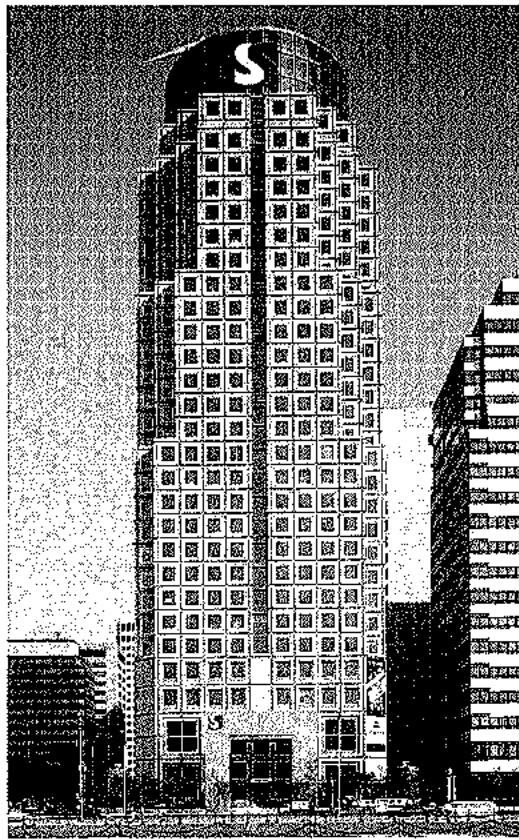
그러니까 건물의 기준층 내부 마감은 코아부분만 완성하고 사무실 부분은 주베과 주닥트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관청의 준공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러한 「Core and Shell Bldg」 개념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준공시 모든 천정, 벽, 바닥 마감을 다 해 놓아야 준공검사를 득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입주되는 회사에 따라 다시 마감하는 그래서 이중으로 공사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보면 그러한 시스템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처리하는 과정의 차이가 디자인 작업에 직접 관련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7

이 프로젝트와 같이 그 설계의 착수부터 공사의 추진에 폐많은 세월을 소요하게 된 경우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법규 및 조례사항이 많은 부분 변경되는 것이 보통이다.

당초 지금의 지하 1층 자동차 승강장층은 1층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이는 그 당시 시행되던 옥외주차 25% 확보를 위해 설정된 층이었다. 최대 용적률에 의해 산출되는 주차대수와 그 비율에 의한 옥외주차 확보는 자동차 주차부분은 비율 맞게하는 묘수를 선택하게 만들었으며, 그 이후 그 법규가 변경됨에 따라 지상층화 함으로 건물의 층수가 30층으로 되게 되었으며 추후 주차공간 상부의 플라잉 보위에 화분이 설치되면 지하 1층 승강장층에서 그런과 광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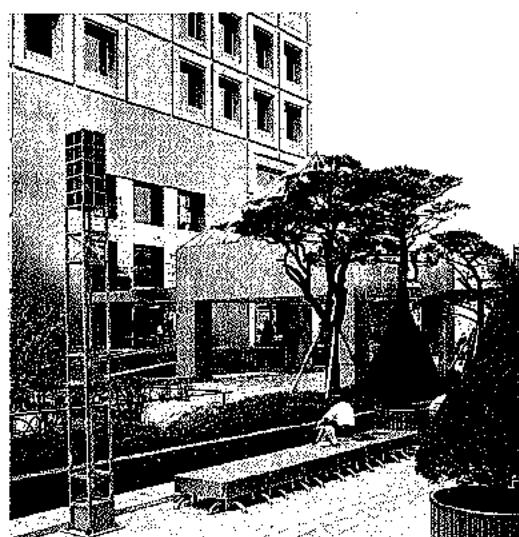
초기 컨셉트에서의 지하 최하층 기계실 처리가 그후 지하 2층으로 변경되었으며, 또 지하 2층 Level에 설치된 중규모의 강당시설은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으나 비교적 유용한 크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중앙 공동조경통로 측으로 설치된 선큰가든으로 강당로비에서의 통로가 확보되어 강당의 사용효율을 더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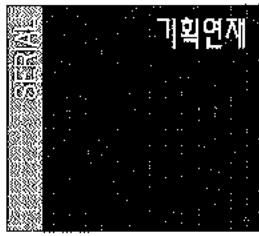
일면



실내



조경



기획연재



## 1. 김수근의 성장배경

개인이란 무엇인가? 어디에 그의 정체가 있는가? 그 끝없는 탐구에, 토마스만은 매우 중대한 기여를 했다: 우리는 행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행위하는 것은 타자 혹은 타자들이다.

밀란 쿤데라, 사유하는 존재의 아름다움.

# 한국의 건축가 - 김수근 (1)

Korean Architect, Kim Swoo-Geun

## 성장배경과 서울의 북촌

鄭麟夏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Jung In-Ha

본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의 건축가」 기획연재는 그동안 계재 되었던 이희태(95년 3월호~5월호), 김정수(95년 6월호~8월호)에 이어 건축가 김수근(1931~1986)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부터 소개되는 건축가 김수근편에서는 그가 태어난 1931년부터 1960년까지의 유년 시절과 건축의 수련기(성장배경과 서울의 북촌, 일본에서의 건축 교육)를 시작으로 1960년부터 1972년까지의 한국건축의 새로운 이념형을 찾아서(김수근 건축 연구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인간환경 계획연구소), 공간시대(1972년~1986년)등으로 구분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분석·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건축가에게 있어서, 그가 처음 자아를 의식하면서 느끼게 되는 공간이나 자연의 특징, 그리고 시대상황은 그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김수근은 1931년 함경남도 청진시 신암동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서부터 해방 까지 15년의 시기는 일제에 의한 조선의 강점과 그에 따른 탄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일본이 이른바 '다이쇼오(大正) 태모크라시'시기가 끝나고 파쇼체제로 넘어가면서 침략전쟁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하고

식민지 조선에 대해 전쟁협력을 강요하던 시기이다. 침략전쟁이 본격화한 후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파쇼체제가 그 본국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조선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해 버리기 위해서, 한국어 사용금지와 창씨개명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인식과 자유의 도구인 언어가 실제생활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정신구조가 왜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는 참으로 힘들다. 김수근도 이 점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시기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일본 통치시대에 일본현병이 어떤 행동을 하였다든가, 일본 군국주의가 무엇을 하였다든가, 살인을 하였다든가 한 것들은 접어 두고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서부터 원점에 이르는 시점까지의 문화를 상실했다는” 점이었다<sup>1</sup>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왜곡과 단절은 그가 일생을 두고 복원해야 할 과제로 등장한다.

김수근의 집안은 원래 경상도 봉화쪽이었지만, 그의 부친이 사업을 위해서 청진으로 이주했다. 그의 가문에 대해서 상세한 내력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조부는 한문교육을 담당한 마을 훈장이었다고 한다. 그의 부친 김용환(金龍煥)은 사업에 상당한 수완이 있어서 일찍부터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 그가 청진에서 한 것은 정어리 건착사업이었다. 본어선 한 척에 운반선 5척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아서, 그것을 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기름을 짜고, 가스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다. 이런 종류의 사업은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혀가가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청진에서도 다섯 명 정도의 조선인만이 이 사업에 종사할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일인이었다<sup>2</sup>고 한다. 아버지의 사업덕분에 김수근은 유년시절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한다. 일제의 경제적인 수탈에 따라 가난과 궁핍에 시달렸던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생활환경은 분명 예외적인 것이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시대의 다양한 풍속과 사상을 처음으로 조우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김수근이 성장할 당시 그의 집안에는 전환기

1. 김수근, 문화와 공간, 김수근 공간 인생론, 228쪽.

2. 김수근 모친과의 인터뷰.

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특징들이 공존해 있었다. 어머니는 매우 봉건적이고 엄격한 집안 교육을 받고 성장한 반면, 아버지는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동양으로 물려오고 있었던 서구의 새로운 문명에 일찍 눈을 뜨고 그 문화를 향유하려고 한 사람이었다. 두개의 서로 다른 세계관이 가족 내에서 상존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김수근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김수근의 회고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근대지향적이고 부르조아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서구의 부르조아들이 가지는 속성들은 식민지라는 한계상황에 의해서 여러가지 왜곡된 형태로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이상 펼칠만한 장을 찾지 못하고 폐배감과 무력감으로 얼룩진 식민지 시대의 부르조아들이 여자와 술에 도피한 것처럼 말이다. 염상섭의 ‘삼대’나 채만식의 ‘태평천하’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김수근의 부친은 많은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에 집착하지는 않았다.<sup>3</sup> 오히려 가진 것만큼 뿌리고 쓰는게 좋다는 의식을 가진 한량이었다고 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은 별로 없이 현실에 최대한 만족하면서 삶을 영위했던 것이다. 최신 유행의 옷을 입었으며, 당시에 화귀했던 차를 장만하고, 집을 취향에 따라 자주 바꾸고, 만주와 일본으로 돌아다니며 풍류를 좋아 다녔다는 사실은 이런 왜곡된 풍속을 반증하고 있다. 이런 아버지의 가치관은 김수근의 삶에서도 많은 부분 발견된다. 그 역시 풍류를 좋아서 기생집 출입이 잦았고, 부친과 유사한 대카탕한 분위기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김수근을 낭만주의자라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그는 그의 부친처럼 건축을 통해 돈을 벌어 모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번 돈을 어떻게 하면 고급스럽게 소비해야 할까를 고민하였다. 상당한 적자를 무릅쓰고 공간지를 계속 운영하였고, 극장이나 갤러리를 공간사옥내에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사업에 손을 댄 것은, 건축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동시대의 건축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이런 낭만적이고 쾌락주의적 가치관은 모든 생활태도에까지 미친다. 그는 건축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 매순간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지고, 좋아하는 것들을 최대한 탐닉하려 하였다. 이런 그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그의 고백에서 잘 드러난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평생에 딱 한번밖에 못먹는 정해진 수의 끼니를 또박또박 계속하는 셈이다. 여생이 30년이라 치면 정해진 저녁은 매일 빠짐없이 듣다 치더라도 약 1만회 밖에 못된다. 오늘의 바로 이 저녁은 그 1만회 중의 1회인지라 다음은 9천9백대로 내려간다. 무척 아쉽고 소중한 한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음식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과 건축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태도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유년시절을 특징짓는 것 중의 또 다른 하나는 도시적 감수성을 일찍부터 체험한 사실이다. 이것은 그가 일찍부터 ‘근대적 자아’를 가질 수 있었던 배경

을 이룬다. 당시 조선의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근거를 농경문화에 둔 반면, 김수근은 그의 부친 덕분에 일찍부터 도시적인 감수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이미 부분적으로 근대적 면모를 갖추어 나갔던 서울 뿐아니라 이 곳보다 훨씬 서구화된 일본과 만주의 도시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고, 이 때 도시가 주는 물질적인 감수성을 풍부하게 경험한다. 문명의 이기와도 매우 일찍 접한다. 자동차와 카메라 등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상징물이다. 우마차를 통해 보이는 농촌들녘과 질주하는 자동차 안에서 보이는 도시풍경을 비교할 때 발생하는 간수성의 차이를 상상해 보라. 이런 성장배경은 그가 당시 하나의 독립된 직업으로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였던 건축가의 길을 일찍부터 선택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리고 이후 그의 귀족 취향의 미적 감각과 삶의 멋을 좇아 다니게 한 그의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김수근의 유년기 자아형성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업차 혹은 개인적인 일로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한 아버지보다는 꾸준히 그의 성장을 지켜본 어머니였다. 그의 삶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항상 공허하게 지나쳐 버리는 그 무엇이었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그의 실존적 고통을 어루만지는 영원한 보호처의 의미를 갖는다. 아버지를 통해 인생의 빛나는 삶망(d life)과 뛰어 오는 공허함을 보았다면, 어머니는 대지에 굳게 뿌리를 내린 뒷이었다. 그리고 건축은 김수근에게는 어머니였다. 훗날 그는 집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집이란 언제 어느 때 돌아가게 될지는 자신도 알 수 없을 때 그 개념이 더욱 확실해지고 강화된다. 이럴 때 일수록 집은 한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에 고여 있는 주체(主體)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오래오래 멀리 떨어져 있을 수록 나의 집이란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라는 관념에 깊이 박하게 되었다.> 이런 집의 개념은 후에 그가 제시하게 될 모태공간(Womb space)과도 많은 연관을 지닌다. 그래서 <나의 집은 자궁입니다. 나의 집의 집의 집이 있습니다. 내집은 자궁이고 자궁의 집은 어머니이며, 어머니의 집은 가옥이며, 집의 집은 환경입니다>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

김수근의 모친인 김우수달(金又壽達)은 경남 진주에서 6남매중 둘째 딸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했다. ‘우수달’이란 이름은 불명(佛名)인데, 불심이 돈독했던 그녀의 조부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그 무렵 대부분의 양가집 규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집안 어른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진주여중을 끝으로 더이상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머무르면서 열여덟살 되던 해에 김용환과 종내로 결혼한다. 당시 김용환은 이미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었으나 부인과 사별하고 재가를 들었던 것이다. 그 첫아들이 바로 김수근이다. 아래로 남매가 더 있었으나 어릴 때 천연두를 앓다가 모두 사망하고, 결국 외아들이 된 수

3. 희원님의 인간 기행, 그말 정말입니까?, 동아 일보사, 1983.

큰 혼자 남았다. 따라서 그녀가 아들에게 기울인 정성은 대단하였다. 그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해서 그가 취한 태도는 매우 절제있고 엄격한 태도였다. 마음속에는 사랑이 충만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좀처럼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 엄모(嚴母)의 태도랄까. 당시 무엇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칫하면 안하무인에 가까운 오만스런 인생관에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때문이었다. 그녀는 모든 삶의 보람을 자식에게 투자한, 당시의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다. 이런 성장 환경은 그의 성격에 있어서 두가지 상반된 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먼저 강한 모자간의 유대감은 김수근의 유년기의 자아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를 중요한 심리적인 원형으로 각인케 한다. 성장한 후에 그는 일년의 반을 해외에서 떠돌아 다니며 보내지만 그의 내면에는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모태가 존재했다. 한국에 돌아 온 후 많은 여성편력을 하지만, 그는 결코 가정을 버리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부인에게 충실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적으로 보자면,십년에 가까운 일본 유학시절과 그리고 새로운 서구건축에 대한 그의 천착으로 인하여 많은 외국의 건축들을 섭렵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건축으로 돌아가야한다는 강한 귀소성이 그의 이런 자아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축면은 헌신적인 어머니가 거는 과도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김수근의 어머니는 그 당시 한국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가치관에 따라, 그의 자식이 법학을 전공하여 사회적으로 입신출세하기를 바랬다. 처음 김수근이 건축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머리속에는 '집을 짓는 목수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실망스러웠다고 한다.<sup>6</sup> 건축가의 직분의식이 미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 이었지만, 현대건축의 1세대로서의 사명의식과, 건축가로서의 성공을 통해서 어머니의 정성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에게 많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었음이 틀림없다. 이런 심리 상태는 여러가지 편지나 글을 통해 나타난다. 김수근이 동경예대를 졸업하고, 동경대의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찍은 동경대의 아까몽(赤門)사진을 부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어머니가 저에게 노래삼아 늘 말씀하시던 아까몽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매일 지나게 되었습니다.<sup>7</sup> 동경에서 귀국한 후 국내 언론에 자주 소개가 될 때도 그는 항상 자신이 '톱 아키텍트'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려 했는데, 이런 반응도 심리적인 부담감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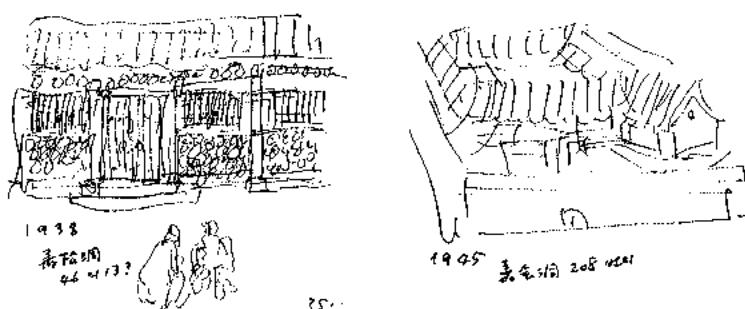
자식에 대한 정성은 강한 교육열로 이어진다. 김수근이 청진에서 서울로 오게 된 것도 바로 그의 어머니의 교육열 덕분이었다. <그 당시 경기중학을 목표로 했는데, 시골학생으로서 도저히 경기 중학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에 매우 반대한 그의 부친도 <모자가 무작정 서울로 와버리니, 그녀의 고집을 꺽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에 집을 장만해 주게 된다.<sup>8</sup> 이미 청진에서 천마(天馬)소학교에 입학하였던 그는 한학기 만에 서울의 교동국민학교<sup>9</sup>로 전학한다. 당시의 교동국민학교는 수송국민학교와 함께 장안에서는 가장 좋은 국민학교로 알려졌다. 매년 20여명에 달하던 경기중학교 입학생을 배출했고, 대부분 학생들의 집안도 상류층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1938년 그가 처음 이사를 온 곳은 종로의 수송동이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기 전까지 그의 집은 종로구의 가회동, 삼청동, 원서동을 3-4년 주기로 옮겨다닌다.

## 2. 서울의 북촌

나는 어린 시절에 서울의 가회동과 낙원동과 제동과 인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꼬불꼬불한 많은 길을 누비고 걸어 다녔고, 자전거도 타고, 제기도 차며 그 길 속에서 자랐다. 그 때의 길들은 나에게는 마당이요, 놀이터요, 시체(時體)말로 거실이요, 휴식의 처소요, 나의 몸과 살갗에 알맞는 주위공간이었다.

김수근.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건축가에게 있어서 조형의식과 공간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그의 건축에 나타난 원칙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



김수근의 집(스케치)

1. 김수근 어머니와의 인터뷰.

2. 건축가 김수근씨의 어머니. 김우스님 여사. 여성동아. 1997년 8월호.

3. 김수근 어머니와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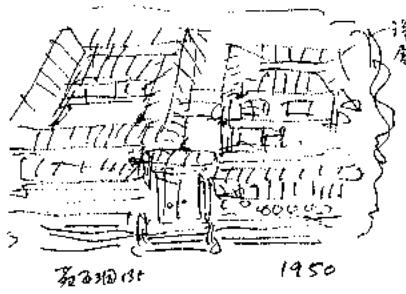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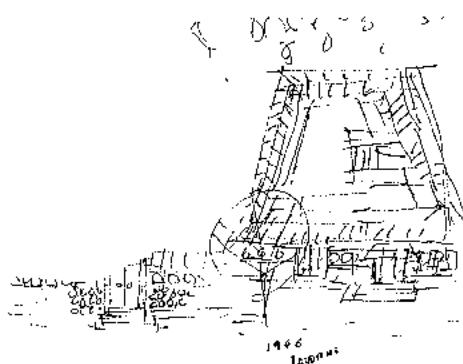
4. 이 학교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민학교로, 1884년 고종에 의해 왕실 사녀들에게 신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렇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적인 측면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 예술가가 만들어 낸 작품이나 글들은 매우 다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이 제시한 상징적인 이미지나 언표들은 의미의 압축과 이동이 교차하는 복합성에 의해 다의적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김수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그가 자신의 공간개념과 조형의식이 어떻게 건축적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쓴 글들과 작품을 엮어서 그 기원을 반대로 추론해 나갈 수밖에 없다.

김수근이 건축가로 성장하는데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먼저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대부분의 유년기를 보낸 서울 북촌에서의 삶이다. 두 번째는 근대적인 건축교육을 받는 9년간에 걸친 일본 체류기간이다. 세 번째는 1960년 귀국한 이후 한국적 조형일반의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 최순우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다. 이렇게 구분된 세 기간은 그가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성장하는데 각기 다른 양상으로 의미를 갖게 되지만, 조형의식과 공간개념의 형성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유년기의 서울 북촌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전생애에 걸쳐 지속될 지각적인 쉐마(schema)의 체계, 즉 구조화된 세계를 획득한다고 보고 있기<sup>8)</sup> 때문이다. 빼아제에 의하면, 최초의 쉐마는 사물의 고유성에 대한 지적인 추상이 아니라 주로 수많은 현상의 유사성(類似性)으로부터 추상화되어진 세계가 형성되어, 직접적인 지각이 갖는 유동적인 이미지 밑에서 영구적인 대상을 구성한다고 한다. 이 주장에 공감한다면, 건축가들이 가지는 원형적인 심상은 주로 어린 시절의 지각 체험을 통해서 특정한 문화를 습득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동의할 수 있다.<sup>9)</sup> 따라서 우리는 김수근의 조형의식과 공간개념의 형성과 그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서울의 북촌<sup>10)</sup>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추측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수근이 그린 여러 가지 스케치를 검토해 보면 이런 추측은 자의적인 것이 아님이 판명된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는 펜으로 복잡하게 그려진 스케치들이다. 촘촘하면서 무질서하게 그려진 선들, 이것은 바로 그의 머리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심상(mental image)이 표출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이런 심상은 김수근의 유년시절을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이미지들의 유사성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본질적인 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유년시절의 환경, 즉 북촌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1930년대 서울은 비록 타의에 의해서이지만 근대적인 면모를 조금씩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산미증산계획에 따른 농촌의 궁핍화로 인해, 농촌인구가 계속해서 서울로 몰려들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따라서 이에 필요한 도시시설들과 도시계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심의 경우 풍수지리에 입각한 기존의 도시질서가 일제의 강권적인 도시구획정리사업으로 왜해되고, 서구적인 도시개념에 의해서 새로운 면모를 갖게 된다. 1907년 일본 황태자의 서울방문을 위해서 동대문과 남대문의 주위 성곽이 철거되면서 도성으로서의 서울의 면모는 사라진다. 1910년부터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서울의 명칭을 한성에서 경성으로 바꾸고, 1911년에는 도시계획 가로망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주요 간선로를 확장하고 신설하는 공사를 벌인다. 광희문과 남대문로를 연결하는 직선의 을지로와, 경복궁에서 남대문을 연결하는 대평로, 그리고 종묘의 북쪽지역을 절단하면서 통과하는 올곡로 등은 바로 이 때 신설되었다.<sup>11)</sup> 이렇게 넓혀지고 만들어진 도로에는 자동차와 전차가 다니게 되고, 바로 여기서 사람들은 일찍이 이상(李想)이 감지하였던 도시적 감수성과 근대문명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체험하게 된다. 서울의 도시계획은 1934년에는 조선총독부령으로 조선시가지령이 공포되면서 식민지하에서의 그 큰 골



김수근의 집(스케치)

- 8) J. Piaget, *The Child's Construction of Reality*, C.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제인용.  
 9) 실제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경우, 건축사가들은 그의 조형의식과 어릴 적 그의 어머니가 구입해 준 프레不相信 은물과 많은 관련을 지우는데, 라이트 자신도 이 놀이의 조형원리가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생애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시인하였다. 루이스 칸의 경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폴 클래를 통해 접한 보자르의 전통이 그의 조형의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르코르뷔제의 경우, 청년시절 여행을 통해 발달한 서중해의 문화와 고전적인 전통을 그의 조형의식의 원류로 본다.  
 10)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이미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주거지 분화가 된 곳이다. 조선시대의 주민들은 대체로 계층별 직업에 따라 주거지역을 달리하고 살았는데, 경기천을 중심으로 하여, 그 북쪽은 풍수상의 갈서로식 궁궐, 관아, 교육기관이 인접한 이유로 주로 양반계층이 살았으며, 그래서 중류계층과 하급관리들이 주로 사는 남촌과는 대비되는 이름으로 이곳을 북촌이라고 하였다. 임병순, 서울의 수도기원과 발생과정, 68-69쪽, 송인호, 도시형 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의 내용을 재수록.  
 11) 吉川光男, 漢城と都市計画-近世ソウルの街並みへのアプローチ, 朝鮮史研究会, 1992년, 112쪽.

격이 잡히게 된다. 그렇지만 이 당시 서울의 도시체계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몇 가지 왜곡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서울의 도시구조에는 식민시대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되어, 종로를 중심으로 하여 북쪽(북촌)은 주로 조선인들이 거주하였고, 남쪽(남촌)은 주로 일본인들이 새로이 정착하게 된다. 당시에 세워진 대부분의 공공건물과 대형빌딩들은 주로 일본인 주거지쪽에 밀집되었고, 근대적 도시계획도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김수근이 주로 산 북촌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기와집들로 별다른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당시 서울의 도시구조는 유기적 일체성을 가졌기 보다는 기형적 이중구조를 가지게 된다. 또한 서구의 경우 도시화는 공업화와 동시에 일어났는데, 일제는 한국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산업이외에는 공업의 발전을 억압하기 때문에, 서울은 자생적인 산업기반을 갖지 못하고 주로 식민지배를 위한 행정과 서비스시설만이 들어 선 소비도시가 된다. 그 결과 도시 내부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가 없었고, 서울시민들은 대부분 일제의 행정관청에 기생하는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제의 도시계획이 주로 강권적인 토지구획정리에 머물면서 근대도시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1936년에 ‘대경성계획’이 발표되면서 많은 교외지역이 도시에 포함되지만 도시의 골격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sup>12)</sup> 도시형 한옥이 계속 반복되면서 거대한 기와지붕의 군집을 이루는 서울의 북촌지역은 김수근이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산 곳이고, 9년간의 일본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의 홈베이스 역할을 한 곳이다.<sup>13)</sup> 그가 북촌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공부를 위해 청진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1938년 종로구 수송동에 정착했을 때부터라고 생각한다. 이때부터 3-4년 간격으로 1950년까지 삼청동, 가회동, 원서동을 빚겨 다닌다.

이 당시 전통적인 한옥주거지로서의 북촌은 “근대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재편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대형 필지 또는 주거지 안쪽의 미개발지 등이 새로운 도시형한옥으로 개발되게 된다”<sup>14)</sup> 김수근이 청진에서 서울로 올라온 1938년경에는 1930년대 중반이후, 부족한 도시주거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대형 필지의 외해와 소필지로의 분화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김수근이 자신이 살던 집들을 그린 스케치를 살펴보면, 이들은 전통적인 상류주택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소필지로 분할되어 지어진 개량식 한옥도 아니었다. 특히 그가 1950년에 살았던 원서동 135-2의 주택은 지금까지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

로 남아 있는데, 220평에 달하는 대지에 매우 고급스런 춘양목으로 지어진 전통한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가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산 ‘수송동 46의 13번지’ 주택은 전통적인 한옥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스케치상으로는 건물의 규모는 나타나지 않지만, 출입구 부분의 파사드는 전형적인 한옥의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후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산 ‘삼청동 35번지’ 주택은 1920년이후 일본을 통해 들어온 화양(和洋) 절충주택의 외관을 지니고 있다. 미국 방갈로풍의 건물이 변형된 이런 양식은, 1921년 무렵 일본각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후, 서울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일본인들의 관사와 사택을 중심으로 세워진다. 이것이 영향으로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붉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소위 ‘문화주택’의 건설이 성황을 이루게 되는데,<sup>15)</sup> 김수근이 산 삼청동 주택은 이 당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로 김수근의 조형의식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곳은 바로 ‘가회동 208번지 주택’(1945-1946년)과 ‘가회동 13의 3번지 주택’(1946-1950년)이다. 그가 보브라는 미국인 병사를 통해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건축에 눈을 뜨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건축에 접근해 나가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두번째 집은 월북한 부용가 최승희가 살던 집으로<sup>16)</sup> ‘링’자형 주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집은 헐려서 지금 이곳에는 양옥 건물이 들어서 있다. 원서동 135-2의 주택은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두 부분의 건물이 보이는데, 하나는 ‘링’자형의 한옥이고, 또다른 하나는 김수근의 부친이 지은 양식건물이다(지금은 헐려서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링’자형의 한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얇으막한 또하나의 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중정의



원서동 135-2번지의 집

12. 壇谷 廣, NIES都市ソウルの形成, 朝鮮都市論へのアプローチ, 朝鮮史研究會 編輯, 122-123쪽.  
13. 김수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나의 집은 서울 종로구이다. 그냥 막연히 종로구라고 넓게 같은 것은 태어나서 50 평방이 되도록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회동, 개동, 원서동 등지를 전전해 왔기 때문이다. 나의 집, 나의 홈 베이스는 지금도 이 속에 있다.” 김수근, 활력과 리듬을 찾아, 샌터, 1981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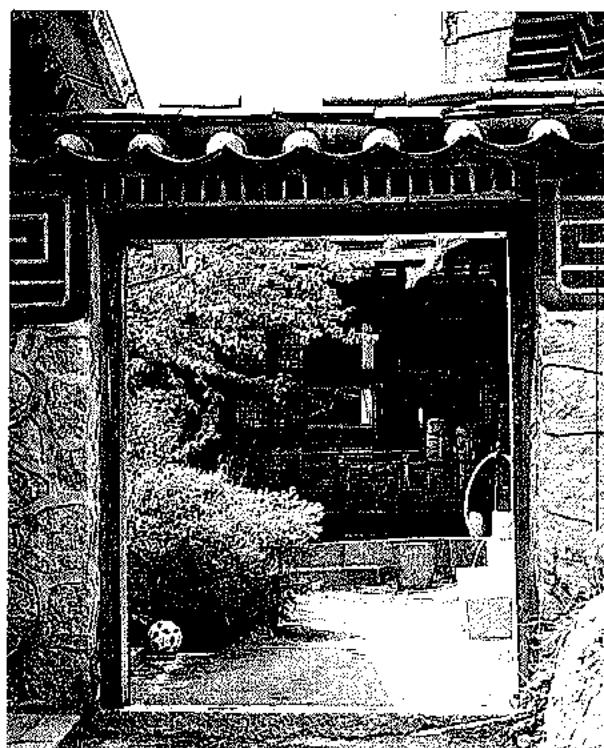
14. 송언호, 같은 책.

15. 김경아, 일제시대 ‘근대주거’의 유형연구 - 경성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학과 석사논문, 1992년.

16. 김수근 선생 어머니와의 인터뷰. 이 집은 후에 소설되어 작은 필지로 분할되어 나누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sup>17)</sup> 김봉렬, ‘공간의 침략 ‘병산서원’, 건축과 환경, 1993년 8월, 18. 1979년 3월 24일에 쓴 김수근의 일기.

공간을 한정하면서 공간적 중층성을 연출하고 있다. 김수근의 건축에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짓는 입구의 의미가 매우 강조되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건축적 어휘는 바로 이런 유년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듯하다. 당시의 한옥에서의 체험이 나중에 그의 건축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는 원서동의 한옥 마당과 청주박물관의 중정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나타난다. 그 스케일과 조작방법이 너무나 유사해 보인다.

그렇다면 서울의 북촌이 건축가 김수근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건축과 대지의 관계이고, 두번째는 조형의식이고, 세번째는 공간개념이다. 건축과 대지와의 관계, 건축과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건축과 자연과의 관계는 김수근 건축의 핵심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김수근이 유년기를 보낸 북촌은 조선왕조의 태조 이성계가 서울에 도읍을 정한 이래로 풍수지리상 가장 길지로 손꼽히는 곳일 뿐 아니라 도성내의 위치적, 기능적 측면에서도 최고의 양택지로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다. 이곳은 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며 바람이 순하여, 왕궁과 사직을 모시는 제단, 종묘 등이 위치해 있고, 이들 사이에 고급관료들의 대저택이 들어서 있다. 현대화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겪은 지금도, 시내쪽에서 이곳을 바라 보노라면, 겹겹히 쌓인 집들의 실루엣이 배경으로 있는 산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지붕에 한식기와를 얹은 나지막하고 조그만한 건물들이 북악산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에 돈화문이 우뚝 솟아 있어서 시선을 불들이 매는 것이다. 김수근은 이곳에서의 유년생활을 통해, 한국건축이 가지는 이른바 '점지의 묘'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었던 것



원서동 135-2번지의 집: 중간문을 통해 본 중정부분

17. 김봉렬, '공간의 광합: 병신서원', 건축과 환경, 1991년 8월.

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즉 대지 내에 건물이 자연스럽게 삽입되면서, 이것이 보는 이들에게 시원한 눈맛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후에 최순우와의 교류를 통해 더욱 명확해지지만, 그를 만나기 이전에 지은 작품에서도 대지에 대한 개념들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에 대한 생각의 원류를 바로 북촌에서의 삶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조형의식에 관한 것이다. 과연 김수근은 당시 북촌을 구성하고 있었던 전통 한옥에서 어떤 조형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각각의 개인에 따라 동일한 환경을 인지하는 심상은 다르기 때문에, 한옥을 어떻게 보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김중업이 전통건축 가운데 지붕이 지니는 강한 조형성과 양감에 강하게 집착한 것과는 달리 김수근은 전통건축이 가지는 강한 선적인 구성을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 특히 한옥이 가지는 조형적 특징 가운데 지붕의 이미지는 그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이후 그가 한 한옥 스케치를 보면, 지붕의 기와꼴이라든가, 기와가 겹치면서 생기는 가는 선들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중업과는 달리 한옥 지붕이 가지는 양감(量感)을 비교적 평면적으로 처리하면서, 이들의 대체적인 윤곽을 굽은 선들과 가는 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건축조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의 작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양감을 선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이다. 부여박물관과 청주박물관에서 사용된 지붕 모티브는 바로 이런 선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붕 형태 이외에도 이런 이미지는 조형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지붕 자유센터의 기둥 디테일을 보면 이런 경향은 잘 나타난다. 기둥이 가지는 불륨을 계속해서 선화(線化)하고 있는 것이다. 후에 그에 작품에 나타나는 모든 선적인 요소들도 바로 이런 이미지와 동일하게 오버랩될 수 있을 것이다.

한옥을 선적인 요소로 파악하려는 경향과 함께, 건축조형을 군집적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이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 병풍처럼 서있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대지에 수천채의 한옥이 겹을 이루면서 서있는 모습은 바로 한국의 군집미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미적 체계는 한국 전통건축의 조형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김봉렬은, "한국건축은 자연지형까지도 일체가 된 거대한 영역 속에서 서로가 집합되어 있어서"<sup>17)</sup> 이것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건물의 집합방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한국건축의 조형미는 바로 건물 개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 건물의 집합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근이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면서 감탄을 자아낸 것도 바로 경사진 대지위에 촘촘하게 군집되어 있는 주거군들이었다. 자연발생적으로 지어졌지만, 이들이 군집을 이를 때 장엄한 아름

다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그가 후에 일기장에 기술한 바 있는 다음의 독백과 상응되는 것이다. “종이는 투명해야 종이다. 축적(蓄積)이 보이니까. 축적을 덮쳐 축적을 이룩할 수 있으니까. 이 전축적(前蓄積) 기록을 겹쳐 볼 수 있으니까. 겹쳐져야 창조가 있을 수 있으니까.”<sup>18)</sup>

마지막으로 공간의식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북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길의 특징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북촌의 가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매개적인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950년대 말이후 영국의 건축가인 스미슨 부부에 의해 주거단지에 재도입된 이후 제3세대 건축가들의 대표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가로’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렇지만 서구의 가로 개념에 비하면, 북촌에서의 길은 그 스케일에 있어서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 기능은 더욱 포괄적이며, 그 구성은 더 미로적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에 적용되면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를 형성하는 가로체계를 격자형과 가지형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sup>19)</sup> 가하학적인 격자형으로 구성된 서구의 가로체계에 비해서 북촌의 <가로 형태는 골짜기나 물의 흐름 등 지형에 따라 일차적으로 그 기본적인 형태가 결정된><sup>20)</sup> 가지형의 가로 체계와 막다른 골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량통행이 완전히 차단된 이 길들은 순전히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고 또 가로 양쪽의 주거벽으로 포위된 좁고 인간척도의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또한 넓은 펼지를 나누면서 나타나게 된 T자형의 좁은 미로와 지형차이로 인해 생겨난 계단들은 서구의 직선적인 가로나 넓게 둘러싸인 광장과는 다른, 분절되면서도 폐쇄된 매개공간을 형성한다. 그래서 북촌의 한 옥주거에서 나타난 가로체계의 구조는 통과기능 보다는 오히려 가로 양쪽의 각 가구가 공유하는 반사적(半私的)인 공간기능에 더 알맞는 것이고, 다수의 익명적인 집회보다는 소수의 친근한 이웃과의 모임에 더 적당한 것이다. 이런 외부 공간은 이어 내부공간인 마당으로, 반외부공간인 처마공간을 통해 연결되는, 일련의 공간적인 프로세스를 형성시키는데, 이 개념은 후에 김수근 건축의 주요 모티브로 등장한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공간들이 집과 담장 그리고 대문이나 계단 등으로 구성된 ‘사이(間) 공간’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닫혀진 공간체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공간체계를 의미한다. 북촌의 외부공간체계는, 지금은 대형필지가 작은 필지로 분할되면서 그 공간적인 성격이 많이 변했지만, 김수근이 거주할 당시 조선시대 상류주택이 가지는 공간방식으로 구축되었다. 그것은 서구의 건축처럼 폐쇄되고 구심적인 외부공간이 아니고 한정된 내부공간을 외부까지 확장시키거나 외부공간이 내부공간까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의 신축성 또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격이 분명한 공간이 아니고 경계가 불분명한 ‘사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김수근은 이것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독특한 공간론으로 발전시킨다. 즉 ‘둘러싸여 있으되 결코 막히지 않는 공간(endlosed but endless space)’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같은 공간체계는 다음과 같은 체험을 김수근에게 가져다 준다. <나는 어린 시절에 서울의 가회동과 낙원동과 제동과 인사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꼬불꼬불한 많은 길을 누비고 걸어 다녔고, 자전거도 타고 제기도 차며 그 길 속에서 자랐다. 그때의 길들은 나에게는 마당이요, 놀이터요, 시체(時體)말로 거실이요, 휴식의 처소요 나의 몸의 크기와 살갗에 알맞는 주위공간이었다.> 이후 김수근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도시의 길은 집과 집 사이, 건물 사이의 공간들로 구성되어 여러가지 삶의 모습이 연출되는 무대였다. 또 도시의 길은 여러 기능을 가진 곳이요, 끊임없이 변하고 형성되고 되풀이되는 도시의 핵으로서 도시의 고유한 삶을 키우는 근원적인 존재><sup>21)</sup>였다.

1944년 김수근은 경기중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후 해방을 맞는데, 이해 가을에 그의 삶을 가르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다른아닌 건축을 전공하는 한 미국인 병사와의 만남이었다. 영어를 배워 보겠다는 단순한 욕심에서 ‘헬로’를 외치는 후진국 소년과 미국 병사와의 선문답과 같은 대화는 당시 한국 현대 건축의 위상과 건축가 직분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당시의 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가는 무엇하는 사람이나?>



원서동 135-2번지의 집: 장득대



청주박물관 중정부분

18. 1979년 3월 21일에 쓴 김수근의 일기

19. 이 분류는 송인호의 논문에 의한 것이다.

20. 송인호 앞의 책, 62쪽.

21. 김수근, 앞의 책, 102쪽.

-예술가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다. 건축가는 건축가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미국의 대통령보다 중요한 사람이나?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집이 없으면 살지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지.»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과연 건축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는데, 보브라는 미군이 대답한 것은 <소설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려야하고, 여행을 많이 하여 안목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일이면 늦다. 특히 건축가는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므로 오늘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sup>22)</sup> 몇마디로 암축되어 있는 이 말에서 우리는 건축가 김수근이 지향하게 될 본질적인 삶의 방향과 그가 견지 할 삶의 태도를 감지할 수 있다. 한 미국인 건축학도와의 우연한 만남이 후에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성장하게 될 한 한국소년의 눈을 뜨게하고,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도록 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후 계속된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건축적인 견식을 넓히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한다. 아버지를 즐라서 사진기를 장만하고 주말이면 고사찰을 답사하였다. 문예반에 들어서 그림도 그리고 학창활동도 한다. 건축가가 되기 위한 예비적인 활동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인 건축학도와의 만남을 통해, 건축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힌 그는 1950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한다. 일제시대 총독부의 건축사업을 보조할 건축 기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1918년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출발한 이 학교는 박길룡과 박동진과 같은 대표적인 초창기 근대건축가들을 길러낸다. 이후 1947년 이후 국립서울대학교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는데, 1950년 당시 서울대 건축과 교수진은 김중업(요코하마 고공), 황의근(쿄토대학), 김중식(와세다 대학), 김형걸(동경공대)과 같이 일본에서 건축을 공부한 교수와 이준상(경성고공)과 같이 한국에서 공부한 교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김수근이 후에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게 될 김중업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의 매부가 될 화가 박고석(朴古石)이 그의 친구인 김중업을 소개해 주었을 때였



가회동 전경: 한옥의 군집미

다. 그는 1939년 일본의 요코하마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서, 동경에서 마쓰다(松田), 히라다(平田) 사무실<sup>23)</sup>을 다니다 귀국하여 조선주택영단의 기수로 일하다, 1947년부터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중이었다. 그렇지만 입학후 3개월 만에 한국전이 발발함에 따라 김수근은 1년 이상 공부를 계속하지 못한다. 전쟁이 날 당시 그의 부친은 충청도 예산에 있는 금광에 머무르고 있었다. 해방후 북한에 공산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그의 집안은 당시 사양길에 놓여 있었던 건축 사업을 정리하고 남하하여 서울에 정착한 다음 이 금광을 구입하였다. 해방후의 어수선한 정국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었다. 전쟁발발 후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자, 피난을 가지 못했던 김수근은 의용군으로 강제로 동원되었다. 다행히도 그가 끌려간 곳은 휘문중학교였다. 담하나만 넘으면 바로 자신의 집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도망치는데 성공하여 아버지가 있는 예산까지 걸어갔다고 한다. 그후 14후퇴 때에 대구를 거쳐 부산 영도에 정착하는데, 여기에는 서울대학교가 천막을 치고 임시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김수근은 김중업을 다시 만난다. 당시 두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지만, 김수근이 밀항할 때 김중업이 군표 100달리를 주어 여비를 도와 주었다고 한다. 후에 김중업이 운명의 베니스 회의에 가기 위해 일본을 들렸을 때, 이 두사람은 김수근의 하숙방에서 15일을 같이 보내며, 미술관 구경도하고 술도같이 마셨다고 한다.

일본 밀항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1951년 후반으로 추정되는데, 그의 밀항 동기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었다. 내전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건축가로서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는 보다 안정된 곳을 찾아나선 것이다. 어머니에게 알리면 분명히 반대 할 것으로 알고, 당시 부산에서 살고 있었던 이복 누이에게만 알리고, 아버지의 악어가방을 판 돈으로 여비를 마련하여 밀항을 꾀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1960년 국회의사당 현상설계에서 당선되어 귀국할 때까지 9년간의 기간은 그의 건축관 형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시기였다. <다음호에 계속>



가회동 골목

〈사진: 심훈보〉

22. 김수근, '결정적 웨이', 앞의 책, 16쪽.

23. 김수근도 후에 이 사무소에서 아트아이드를 한 적이 있었다.



건축기행

## 몽골건축을 찾아서 (1)

In Research of the Mongolian Architecture  
대초원의 비밀, 몽골리아

朴舒弘 / (주)회산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uh-Hong

지난해 12월 15일 개최됐던 제6차 아시아건축사 대회 기간 중 우리 협회와 몽골건축협회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체결을 합의,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 이번 여행은 몽골건축협회 공식 초청으로 지난 7월 22일 시작됐다.

6박 7일의 일정으로 한 몽 건축기술 정보교류 및 우호증진과 상호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위해 김규태 우리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협회이사와 국제위원 7인을 단원으로 구성, 찬란한 역사를 지난 몽골을 찾았다. 이글은 초원의 나라 몽골을 다녀와서 방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박서홍(회산건축)씨가 몽골건축을 중심으로 그 문화를 소개, 연재된다.  
(편집자 주)

### 부르칸 칼둔<sup>1)</sup> 가는길

「우째 우리하고 저렇게 닮았노?」

「글쎄 말입니다. 생긴 모습에서나 몸짓에서나 비슷비슷 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잖아. 말하는 것만 빼놓고 말이야.」

「정말 우리가 몽골 사람같고 셔들이 한국사람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행중 몇분의 두려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두리번거리는 눈에 들어오는 환한웃음의 모습, 모습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도회지 길거리에서나 시골의 장터에서 흔히 마주치는 다정한 우리의 이웃들.

김지녀 국제위원장의 속사포 같이 쏟아지는 영어소개를 들으며 약간은 쑥스러운 듯, 순박한 표정을 짓고있는 저들의 모습에서 피어나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서는 사라져버린 소박한 미소.

아, 이곳이 잊어버린 우리의 고향이었구나.

한때 세계 초유의 초강국을 형성하여 세계 사에 당당히 군림하였던 대 몽골<sup>2)</sup>제국.

1) Burcan qaldun. 신성한 고봉이라는 뜻. 몽골의 발원지를 시찰하니 정기스칸의 신조를 가리킬 때도 있다. 현 위치는 불확실하다.(몽골 비사. 우원수 역주)

2) 중국족 사서에는 위제국과 몽고로 형상 구분하고 있지만 민족의 자존이라는 측면에서 정식 국명으로 되어 있는 몽골(Mongolia)이라는 단어가 타당하리라 본다. 한(漢)족 중심의 중국족 입장에서는 면방의 민족들을 바하하려는 심리가 오랜 시간동안 누적되어 왔다. 한국을 오랑캐(동이, 東夷)라고 하는 경우도 같은 예이다.



오보-울란비토르시에서 교외로 나가는 외곽 능선에 만들어져 있는 우리나라 서낭당의 원류에 해당하는 돌무더기 체단. 몽골에서는 라마교가 들어온 후에는 라마승이 오보를 세우는 자리를 지정했을 뿐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여 왔다. 혁명후 줄곧 금지되어 오다가 최근에야 민간에게 허용됨.

서양사람들에게 황색공포의 두려움과 외경스러움을 갖게 했던 대 몽골 민족.

“한국인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조상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었나?”라는 아둔한 물음에 항상 제일 먼저 연상 되어지는 곳. 우리가 현재 몽골이라고 부르는 봉꼴 인민 공화국은 원래<sup>3)</sup> 외몽골을 가리키며, 당초의 몽골이라는 이름은 칭기스칸시대의 용감하다는 뜻을 갖는 부족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up>4)</sup>인구 210만명, 면적은 1,566.500km<sup>2</sup>. 평균 해발 1,600m. 풍부한 광물자원에다 석유매장도 확인되고 있다. 종교는 자유스럽고, 4계절이 뚜렷한 대륙성 기후이지만 겨울은 추우면서 길고 여름은 더우면서 짧다. 목축이 주업으로 260만 마리의 가축(국민 1인당 13마리)이 GDP의 35%를 차지한다. 1인당 GNP는 100\$이며 인구증가율은 1.03% 수준. 국토의 70%가 풀, 8%가 삼림으로 구성된 초원국가가 현재의 몽골이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초의 민족은 흉노족<sup>5)</sup>으로서 BC300-AD100경에 북방초원지대를 장

악하여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를 발전시킨 기마민족이었다.<sup>6)</sup> 오랫동안 남쪽의 중국(한, 漢)과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민족들의 주체는 변하여 갔으며, 몽골에서 선비를 거쳐 투르크와 위그르에서 몽골족이 다시 평정하기까지 거의 1000년을 보내면서 12C 칭기스칸 시대를 맞게 된다. 그후 원(元)이 한(漢)족의 명(明)에 망하면서 세계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족은 북반주로 이동하여 계속 항전을 하게 되지만 그 사이 몽골지역은 오이라트족에 의해 점거된다. 16C초 (1552년) 몽골족이 오이라트족을 몰아내고 이지역의 주인이 되고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라마교를 신봉하게 되면서 몽골민족의 독자성을 지켜나가는 계기로 삼게 된다.

청(淸)<sup>7)</sup>의 속국으로의 피지배는 18C 말 러시아의 진출로 끝이나고, 1911년 12월 몽골의 독립을 선언하지만,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함께 러시아 백(白)군이 적(赤)군에 밀려 시베리아를 거쳐 외몽고로 진입해서 중국군을 쫓아내고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후 1921년 다시 적군이 몽골에 진입해서 1924년 외몽골에 몽골인민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근대국가로의 출발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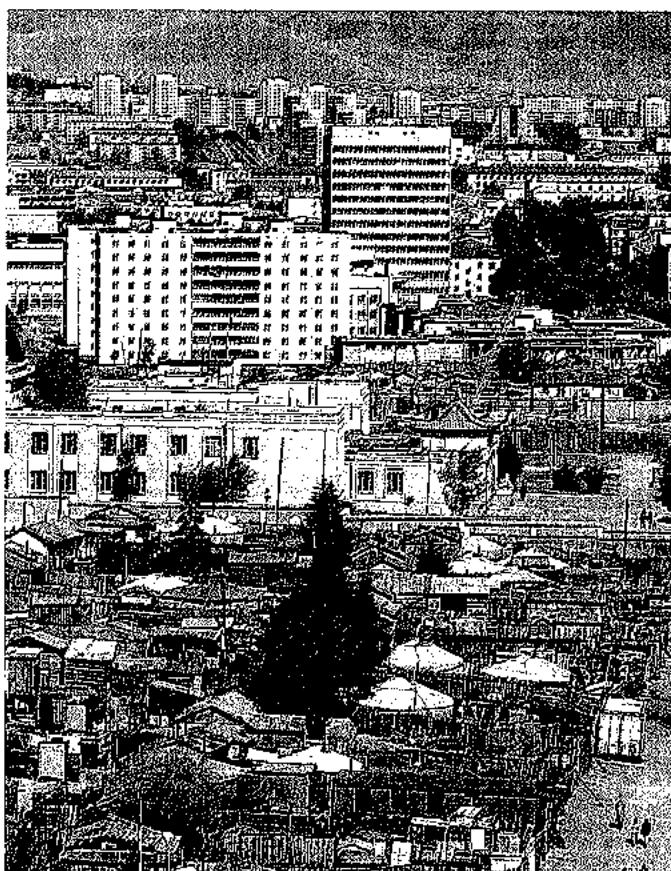
3) 고비사막을 경계로 내·외 봉꼴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봉꼴 지역은 중국 영토에 편입되어 내봉꼴 자치구로 되어있고, 중국측에서는 막북, 막남이라 하여 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4) 주한 몽골 대사관 제공, UNDP, IMF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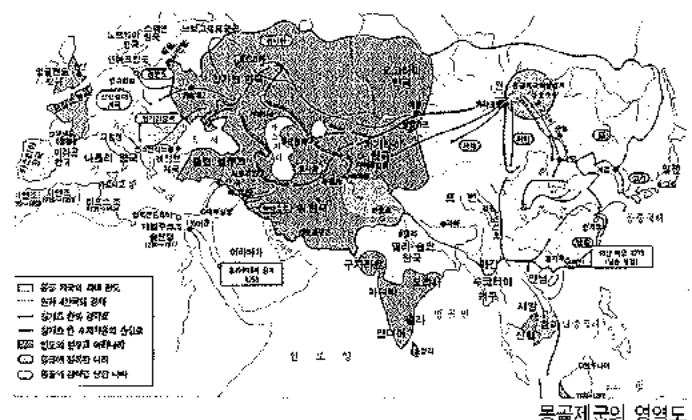
5) 융(獯)이라고도 하며 서양에서는 서양에서 보이는 여러 민족들의 대이동을 유발한 훈(Hun)족이라고 불렀고, 내외몽골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쳐서 군사적 주인으로 군림했다.

6) 신라 묘제(적석총)에서나 신라 왕족, 왕관의 고고 유물에서 보이는 이 시기 문화의 유사성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고고학에서는 이제 상식이 되어있다.

7) 중국에 의한 몽골의 지배는 이시기가 역사상 최초였다.



도시전경(울란바토르). 현대식 아파트가 전통가옥인 겉과 조화를 이루면서 빈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 ТОВЧХОН

### УРЖИГДАР:

“Шударга үз, осолтгүй бүтээгдэхүүн. сэдэвт хяналт шалтгалын ажлы нийсмэлд эхээв. Угахыг Монголын хэрэгжэгчийн эрх ашигтгын хамгаалах инйэмэлт, дүүргүүнийг Засаг дэргэн тэмдэг газар. Эрүүг ахуй, халдвэр судлалын хяналтын газар хамтрын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на. Баруун чавар, униний үндэснээ, үйлчилгээг шалгаж, цэвэртэй зорчилж илэрээ газрын татван буулагч аж.”

### ӨЧИГДӨР:

“Монгол Улсад байгаль орчныг хамгаалах талаар хэрэгжүүлж байгаа олон улсын төслийнгийн зохицуулалт зөвлөхийн уулзат Байгаль орчны яаманд эхээв. Уулзатад Герман, Америкийн байгаль

орчныг хамгаалах сахарын мэргэжилтийн, байгаль хамгаалах олон янзийн байгууллагын төлөөлөгчид оролцдог.

### ӨНӨЕДӨР:

“Монголын зрийнекторуудын залжийн урилгаар БНСУ-ын архитекторуудын ийститутийн ерөнхийлийг Ким Куй Тae тэргүүтэй төлөөлөгчид ээз сарын 22-25-ийн зорилж хөөр орны архитектур хот байгуулалтын салбарыг ширгийнээс сургалтын талаар харилцан мэдээхээл солмынх гэрээ байгуулна.

### МАРГААШ:

“Монголын холбоочдын баар

신문기사: 이곳 일간지에 소개된 한국 건축사협회 대표단의 일정과 방문 기사

난장판을 이룬 베이징공항을 떠나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비행기가 화북평원을 지나 산악지대를 날기를 30~40분, 녹색의 푸르름은 사라지고 옅은 화청색의 평원이 끝없이 전개되고 있다.

「저곳이 고비 사막입니까?」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저런 곳에선 인간이 살기도 힘들었을텐데 어떻게 그런 강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인솔자인 김규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김태웅 이종만 두분 이사들의 대화가 기내의 소음속에서도 뚜렷이 전달된다.

「녹색의 농경민족, 갈색의 유목민족이라는 구분이 과히 틀린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몽골 이전의 요(遼)나라도 유목민들의 정복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도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북쪽의 유목인의 남쪽의 농경민에 대한 침입이 이해가 가는것 같습니다. 북에서 남으로의 이동은 이동주민들에게 있어선 보다 절박한 생존 그 자체였을테니까 말입니다.」

상식적 얘기지만, 문화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인간역시 항상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모이는 것이 인류문화사의 기본적인 전제라 한다면 자연조건이 열악한 지방의 주민들이 이동하여 조건이 좋은 지방의 정주민과 심한 전쟁을 하여 정복한 후 그들 자신들이 토착민이 되고

이동지방에는 항상 소수의 민족이 이동을 계속하면서 이러한 이동민족의 반복적 정복에 의한 파괴와 건설이 고대 문명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고정되었음을 어찌보면 극히 당연시 하여야 할 인류사의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길게 이어지는 초원이 끝나는 곳에 공항이 보이고 기체는 큰 전동음과 함께 금정차 충격에 울음소리를 내면서 멎고있다. 활주로가 짧아서 그런가?

### 우리는 누구였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우리민족과 몽골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한가닥 기대(?)는 입국수속의 지리함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몽골말에 대한 짜증스러움 인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우선 몽골말은 발음부터가 생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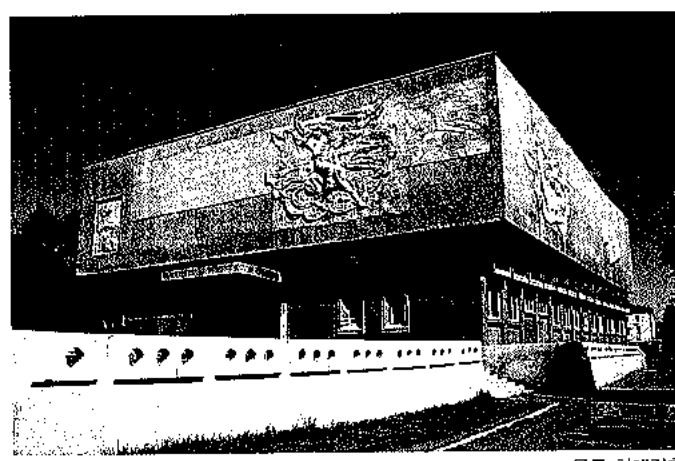
횡당할 정도로 애매모호한 우리의 고대사.

그 중에서도 국민학교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던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고 우리말의 모음조화 등이 알타이어와 비슷하여 우리 언어의 뿌리가 알타이어계에 속한다는 그래서 우리민족의 연원을 몽골족에서 찾아야 한다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불신의 확인인가?

역사학이나 고고학을 막론하고 세계 여러 민족의 동질성과 뿌리를 찾는 방법은 언어학적 분류가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말과 몽골말은 스와디쉬<sup>8)</sup> 차트의 기준에도 맞지

8). SWADISH CHART : 인류학에서 사용, 어느 부족을 박론하고 모래전부터 사용해오는 기본적 낱말은 약 270개정도인데 시간, 장소가 바뀌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1.000년간 약 14% 정도만 변한다.



않는다. 예를 들면 어머니를 에이쥐<sup>9)</sup>, 하나를 니키, 불을 까르스, 쌀을 사간보타, 밥을 보쑹보타, 예를 사, 아니오를 우구이, 해를 나르 등 몇개의 기본적 낱말을 포함해서 전혀 이질적인 언어의 바탕을 나타내고 있다. 연지, 곤지, 윷놀이, 제기차기, 자차기 등 민속적으로 유사한 몇가지 풍습만으로 우리와 몽골과의 관계를 유추해석함은 지나친 비약이었던가.

알타이어계인 몽골어는 우리와는 아주 거리가 먼 듯 하고 알타이어계라고 생각되는 북방민족인 읍루(숙신, 말갈)와 거란족의 풍습은 우리와는 전혀 틀리다. 쌀은 인도로부터 왔고, 한반도는 옛부터 인류의 이동이 빈번했던 지역이 아니라는 고고학적 가설은 우리말과 드라비다어(인도)와의 유사어휘가 1,368개에<sup>10)</sup> 이르며 우리의 조상은<sup>11)</sup> 5~6천년전 흑해나 카스피해 부근의 소아시아 지방에서 살던 아리안족의 일부라는 학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기에 무리가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였던가?

언어의 이질감에서 비롯된 혼란의 심도는, 디스코홀의 블랙라이트 아래서 배꼽을 드러내고 혼들어대는 짧은 여성의 표정없는 몸짓을 보면 서 외국인을 위한 전통 민속

공연에서의 초원을 달리는 말발굽소리를 연상케 하는 듯 한 집단군무의 빠름만을 강조한 듯한 울동에서 또 떨림이나 여운이 전혀 없는 현악기와 금속성소리 만을 주장하는 듯한 피리소리를 들으며 깊어만 갖고, 마치 영화촬영장을 떠올리게 하는 각양각색의 건축물에 이르러선 그러한 느낌은 극에 다다르고 만다.

1930,40년대의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이 주종을 이루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네오꼬르뷰세 풍의 건축에다 포스트모던풍의 건축까지 가세하여 묘한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고 있다. 혁명후에 건설된<sup>12)</sup> 도시라서 그런가. 이 사람들이 주창했음직한 전통의 요소는 어디로 숨어버렸나? 1940년대에 스탈린이 내세웠던 소비에트연방 각 민족의 주체적인 민족건축의 양식은 몽골에서 만은 적용되지 않았던 원칙이었었나?

로마제국 홍망사의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이 포로 로마노(로마 광장)에서 받은 것과 같은 영감을 떠올리기를 여기 울란(RED, 붉은)의 광장은 외면하고 있다.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의 전통과 구라파 해체주의 형식을 참고한 듯한 건축과 대학생들의 작품 경향에서 보이는 이 시대 몽골의 선택이라는 믿음이 아시아인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을 대몽골제국의 장엄한 서사시를 망각하라는

9).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강길운 교수, 충남대, 이원론, 김방한 교수,

10). 주9 참조.

11). 흰단고기, 태백일사, 삼청일기

12). Ulaanbaatar, 울란바토르, 1639년에 건설, 1921년의 혁명 이전에는 몽골시대의 불교중심지였다. 1924 울란바토르(붉은 영웅)로 개칭되면서 대대적 건설에 착수, 현대적 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



투르크시대 석상(BC 700-900)



몽골 현대건축



기념촬영·외국인들을 위한 캠프·뒤편의 원형 건물이 몽골 전통 가옥인 절

강요로 우리에게 비쳐지는 혼란스러움은 향후 몽골의 건축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 건축교류의 새로운 장

“… 솔통고스<sup>13)</sup>와 우리 몽골은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몽골의 근대화에 건설이 주도적 역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양국 건축 관계의 밀접한 협조아래 양국의 우호증진은 물론 …” 몽골정부에서 2인자와 위치에 있다는 엔비시(ENEBISH) 수상과의 회의중 느끼게 되는 이곳 사람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우회적인 갈망은 우리 일행 모두가 수긍하는 공통된 정서라고 생각된다. 장중하면서도 거만하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열정에 찬 몸짓. 동석한 몽골건축사들의 기대어린 눈동자에 가끔씩 시선을 주면서도 전체를 압도하는 듯한 태도. 직달박한 체구에다 부리부리한 눈매. 앞으로 약간 상체를 굽혀 테이블위에 양팔을 고이고 조용히 경청하는 듯한 자세. 미국산 주스와 구라파제 초콜렛으로 디파를 준비하는 늘씬한 활동신 미녀의 무표정 하나 세련된 태도와 함께 한 몽 건축교류의 새로운 장은 열리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몽골간의 교류는 멀리 상(上)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 시대부터 지금의 몽골방에 성(城)을 쌓으며 삶의 터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

지지만 역사에<sup>14)</sup> 전해지기는 지금부터 1000년전인 995년 고려때 봉골어를 배우도록 학생을 선발하여 유학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니 어찌보면 금년이 수교 1000년째가 되는 셈이다. 그후 교류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1231년~1258년 사이 28년동안 봉골인에 의한 침공이 7차례 걸쳐 이루어지면서 이후 80여년간 우리나라를 피장복자로서의 수난을 겪은 치욕의 역사가 있다.

민족적 통분은 말한 나위도 없이 국토 전체가 당한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참상을 연출하였다. 그중 가장 처참한 상황이 몽골인들에 의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강제범탈 이었으니 당시 우리나라 전국 인구 450만명 중 20만이 넘는 숫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호색하고 무절제한 몽골인에 의해 고려사람들의 통곡소리가 산천을 전동시키고 원한은 하늘에 사무쳤다고 역사사는 전한다.

그때<sup>15)</sup>의 영향이 조선중기까지 이어져서 몽골피가 섞인 후손이라는 낙인이 사회계층 구분의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하니 지금 우리와 몽골인간의 외모의 유사함이 그러한 역사적 필연에서 나온 결과라면 이 무슨 아름한 아이러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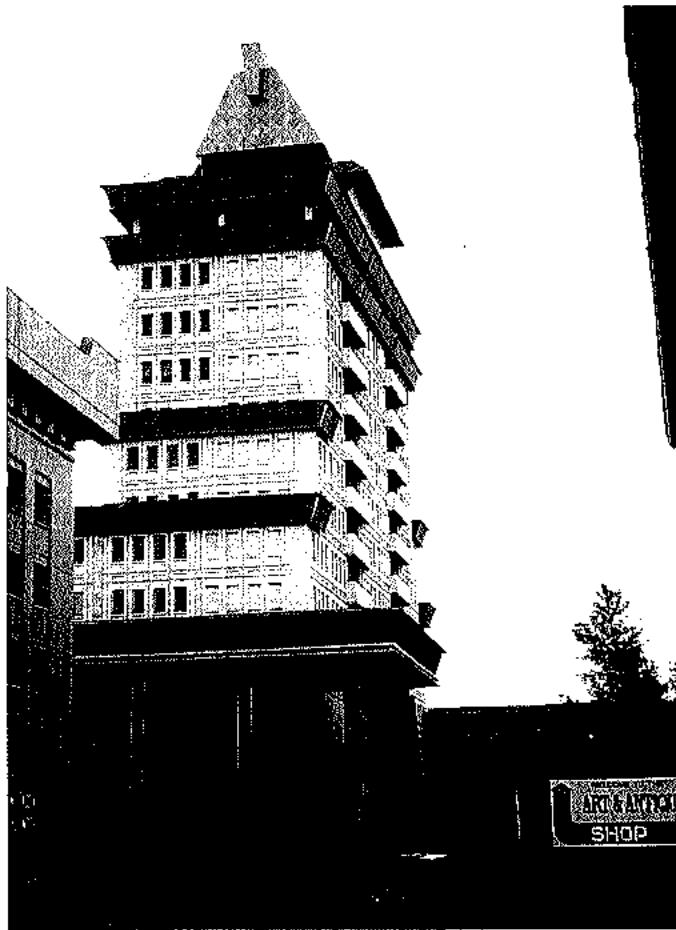
### 잃어버린 시간의 의미

관광객 캠프로 향하는 도중 울란바토르 시내를 막 벗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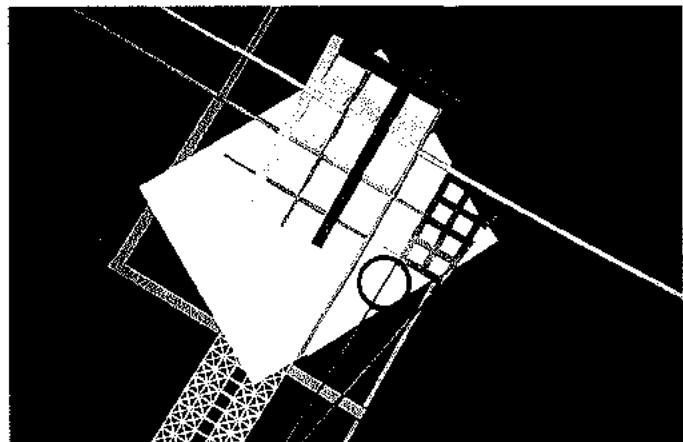
13). 부지개라는 뜻의 몽골어. 이곳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무지개같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으로 부른다.

14). 고려사 기록

15). 이조실록 기록



몽골 현대건축



몽골대학 건축과 학생작품



한국 현대건축 세미나

는 얇은 언덕위에 만들어져 있는 돌무더기 심볼을 목격한 것은 이번 몽골여행에서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접하게 되는 행운이었다. 돌무더기의 높이는 약 2.5m 지름 4.0m로 원추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에는 버드나무가지가 꽂혔는데 흰색 형겁들이 풍치를 이루며 매여 있다. 우리들이 오보라고 부르는 돌무더기는 언덕이나 산속의 신앙처로서 민간신앙의 대표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서낭당의 원류로 자작되어 왔으며 알타이지역을 비롯하여 시베리아에서 티베트까지 이르는 넓은 분포를 갖고 있다. 오보의 형태<sup>16)</sup>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시베리아 등지에서는 큰나무아래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옆에 솟대를 꽂는데 비해 몽골, 티베트 등지에서는 돌무더기 위에 꽂은 버드나무가지에 형겁을 매어두는 것이 보통이다. 유목민족들에게 있어 일상생활의 기본이 이동성에 있다함은 가축들의 이동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 다닌다는 (1년에 2-4회)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환경에서의 신앙역시 이동성의 특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이동신앙의 중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의 상징으로서의 오보신앙이다.

이동하는 주거지부근 어디에서건 간에 돌을 쌓아 나무 가지를 꽂으면 무당에 의해 신(神)이 내려와(강신) 머문다(신의 장소, 神處)는 사고는 알타이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16) 김평언, 오보신앙

17) 우리 조상들을 포함해서 많은 북방계 민족들은 자연의 한 형태인 블(石)에 신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으며 사후(死後)를 둘에 의지하려는 사고와 행례가 강렬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18). BC 2000년경, 그리스 조각가, 설화석고 둘인형으로서 그리스의 원초적인 조각이다. 키클라데스미술관, 아테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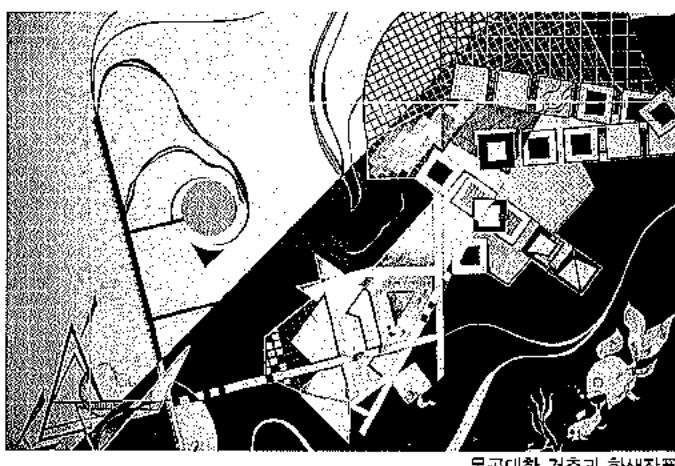
물론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이란 것이 인간이 신(神)이 되는 과정을 전제로한 신앙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선돌과 석상의 건조와 함께 그와같은 블(石)<sup>17)</sup> 송배 사상이 보다 발전된 형태의 문화적 양상으로 변하여 갔으며 우리 한번도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투르크족에 의해 제작된 석상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감동을 안겨준다.

경주지방에서 접하게 되는 석상과 유사함에서나 내부표현을 억제하여 형태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키클라데스<sup>18)</sup>의 조각작품을 보는 것과 같은 통합적인 분위기에서나 남성적인 힘과 함께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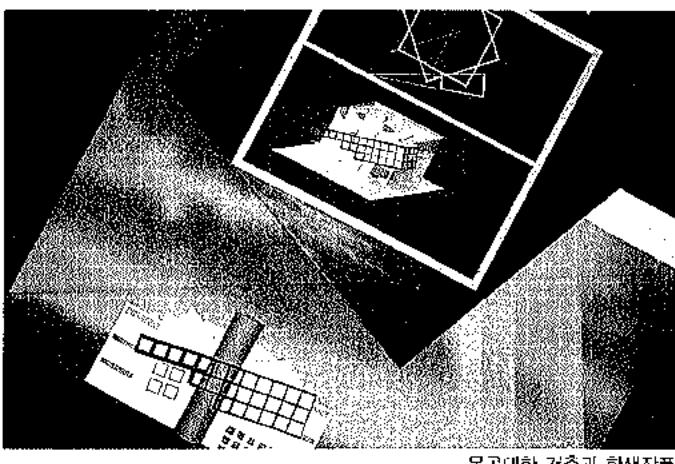
오보가 세워져 있는 산정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울란바토르 시가지의 전경은 녹색의 바다위에 떠있는 거대한 전함을 연상시킨다.

광활한 초원과 함께, 그것은 멀리서 보았을때는 압도당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이집트 루소의 하트세프스트여왕(BC1 501-1480) 신전을 대할때 와는 달리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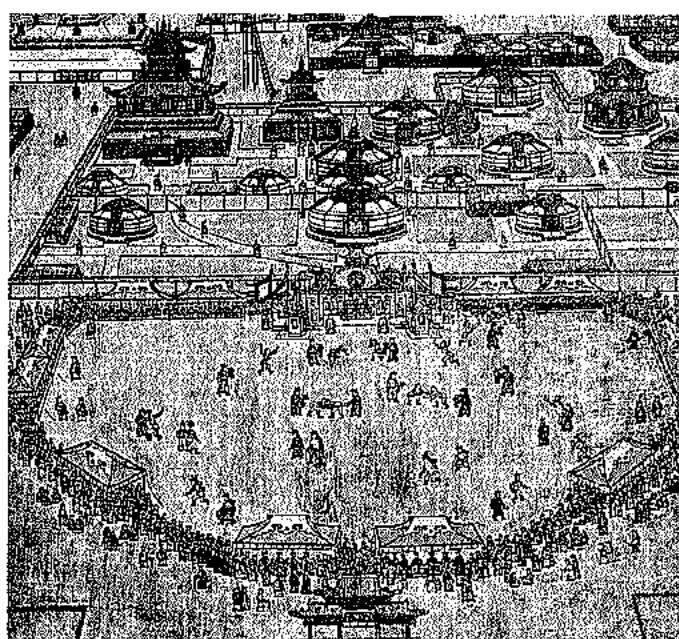
이제 몽골의 대초원속에 감추어져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우리의 잊어버린 시간과 한국 고대사(古代史)를 풀 수 있는 단서는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몽골대학 건축과 학생작품



몽골대학 건축과 학생작품



D. 딤디스렌 작품, 나담축제, 국립미술박물관 소장



## 서원－조선조 최고의 學堂

書院은 한마디로 말하면 儒學이란 학문적 근원을 밝히고 아울러 소위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선 중기에 주로 설립됐던 당시 최고의 學堂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은 私學으로서 물론 서원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오늘날의 대학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오늘날 대학 설립자가 대부분 학자가 아닌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서원의 설립자는 대유학자 내지는 그를 흡모하는 후학이 설립과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였다. 따라서 누가 어느 서원에서 어떠한 학문적 이상을 갖고 거쳐하느냐에 따라 그 서원의 격이 결정되곤 했다. 가령 우리가 서원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안동 陶川書院의 경우 어느 서원보다 국가급 인재를 많이 배출해 냈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조 최고의 유학자 退溪 李滉(1501~1570) 선생이 머물렀던 서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친숙한 학자인 高峯奇大升, 鶴峯金誠一, 雪月堂金富倫, 日休堂琴應來, 西厓柳成龍, 寒岡鄭述, 月川趙穆, 良齊李德弘 등은 退溪門下에서 배출된 名弟子인 동시에 碩學들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柳西厓(1542~1607)와

鄭寒岡(1543~1620), 그리고 金鶴峯(1538~1593)은 退溪門下의 三傑이라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退溪門下에는 26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宰相이라든지 巨儒로 손꼽히는 인재만도 10여 명이나 되었다. 오늘날 退溪學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도 깊이 따지고 들어간다면 門下에 名賢과 碩學들이 많았기에 퇴계의 인간적인 전모와 구체적인 行狀까지도 체계있게 전해질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당시 도산서원의 사회적 역할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최고의 교육기관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가령 오늘날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같은,

도산서원보다 16년 늦은 1590년에 설립된 전남 장성의 筆岩書院도 이 지역에서 꽤 주목되는 서원이다. 이곳에는 河西金麟厚(1510~1560) 선생이 배향되어 있는데 그는 정계에서 물러난 후 이곳 향리에서 성리학 연구에만 정진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이 인근의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결과 장성 유림과 하서의



한국서원의 효시가 된 소수서원(紹修書院)

#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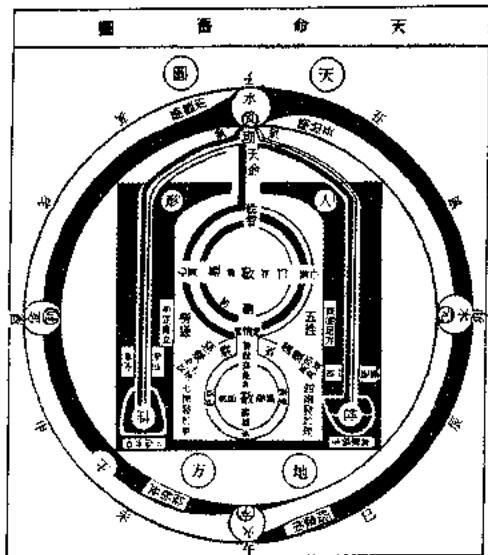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 서원건축(1)

金知民/목포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by Kim Chi-Min

문인들에 의해 하서가 태계한 후 30년 후인 1590년에 서원이 설립되게 되었다. 하서의 학문은 誠敬의 실천을 목표로 하였고 또한 그는 天文, 地理, 律曆 등에도 정통 했다.



天命圖

天命圖設은 鄭之雲(1509-1561)이 지은 것으로 떠계는 원문중 西端發於里, 七情發於氣라는 文句를 저자의 청에 의하여 이를 西端理之發, 七情氣之發 이라고 개성했다. 이것은 훗날 四七論爭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다.

四端七情서는 퇴계선생이 주장한 깊은 인생관의 논리적 분석이다. 四端은 맹자가 실천도덕의 근거로 삼은 恻隱之心, 羞惡之心, 舊讓之心, 是非之心을 말하며 七情은 中庸에 나오는 喜, 怒, 喜, 慾, 惡, 欲을 말한다. 퇴계선생은 그중 사단은 理에서 나오는 마음이며 七情은 氣에서 나오는 마음이라 하여 인간의 마음은 理와 氣를 겸하고 있지만 마음의 작용은 理의 발동에서 생기는 것과 氣의 발동으로 생기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즉 善과 惡이 섞이지 않은 마음의 작용인 四端은 理의 발동에 속하고 善惡이 섞인 마음의 작용인 七情은 氣의 발동에 속하는데 이것은人性에 본연의 性과 기질의 성이 다른것과 같다고 하여 이른바 命氣二元論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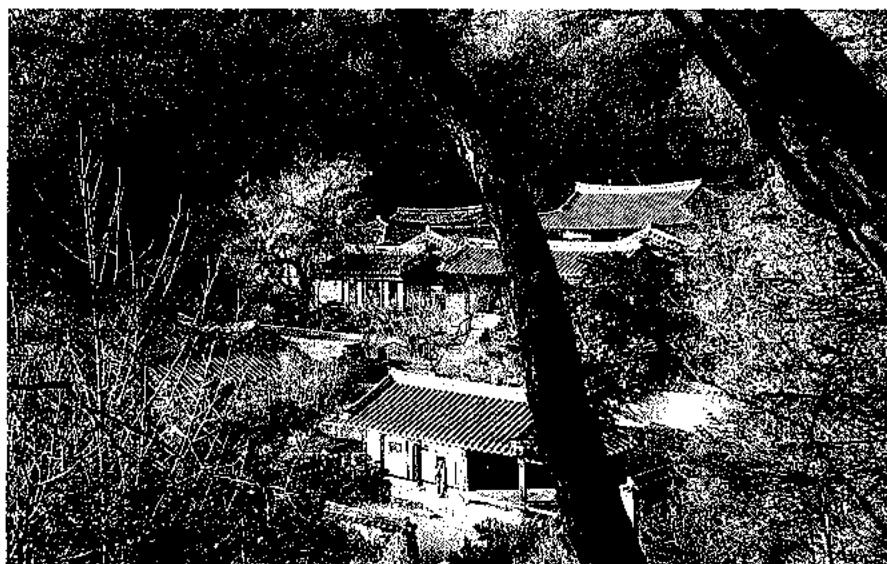
물론 조선시대 내내 서원이 도산과 펠암서원 같이 모두 성리학 연구를 전제로 한 道學書院의 성격으로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진 것만 아니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변화와 혼란의 양상이 커지는 데 가령 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기능도 본래 추구했던 교육기능보다는 先賢의 享祀 중심으로 성격이 변모하여 祠宇와도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 서원은 향촌사회에서 봉당과 파당 근거지, 가문결속 등 지극히 부정적인 면도 보여주게 된다. 아무튼 서원의 변천사는 당시 건축사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조선사회에서 서원이 갖는 역사·사회적 의미는 첫째 서원의 開設을 계기로 士類들이 향촌에서 학문을 닦은 풍토가 무르익게 되었고, 둘째 서원에 배향되어 있는 인사가 대부분 낭대 명성을 떨치었던 巨儒들이었기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적인 귀감이 되어 孝悌忠信의 정도를 깨우치기도 했다.

오늘날 향교와 마찬가지로 서원 역시 전국적인 분포경향을 갖고 있지만 이젠 단순한 享祀기능만으로 그 명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봉건사회의 잔유물 정도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시설은 당대에 있어 교육과 제향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공동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곳이며 그 건축적 공간은 한국건축사에서도 현재 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가치를 부여 받고 있다. 앞에서 사례로 들은 두 서원 외에 屏山, 玉山, 道東, 藍溪, 武城, 돈암, 韶岡, 德峯書院 등은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건축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서원들이다.

### 한국 서원의 태동—白雲洞 서원

서원은 조선시대 그 많은 유교 유적중에서 제일 역사가 짧다. 시작도 鄭校, 家廟, 賢室 등이 대부분 조선초 유교 이념의 확산과 더불어 시작됐던 것과는 반대로 서원은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태동이 된다. 하지만 짧은 역사속에서도 독특하게 당시의 사회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서원이 건립되기 시작한 16세기는 여름면에서 조선사



퇴계 태계후 4년, 제자들이 생전에 퇴계가 거처하던 도산서당 뒷편에 세운 도산서원(陶山書院)



도산서당, 3칸 집으로 가운데 1칸이 퇴계가 거처했던 완락재(玩樂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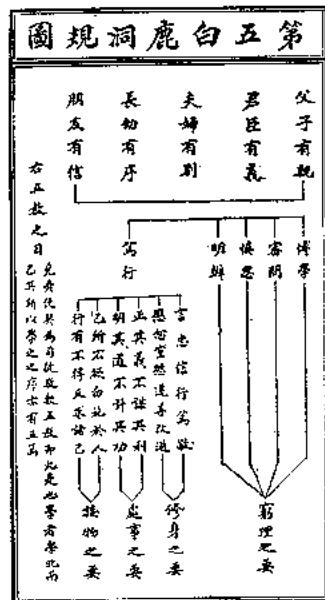
회의 큰 변혁기였다. 특히 사회적인 측면과 사상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니 그에 은거해 있던 士林들이 이 때에 이르러 세력집단을 형성하면서 정권참여를 모색하고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한편 性理學이 그들 士林을 중심으로 根源의 으로 연구되면서 哲學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러한 발판을 디딤돌로 하여 士林政治가 굳어지는 계기가 바로 16세기에 이루어져 갔다. 서원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속에서 士林들이 鄉土墓地로서 그 구실을 하면서 태동<sup>1)</sup>, 발전하여 갔다.

서원성립의 배경에는 官學의 한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왕조는 儒教의 儀禮를 널리 보급시키고, 나아가 교육관계의 확충을 보기 위해 官學體制로 지방의 鄉校, 중앙의 四部學堂, 成均館 등을 세우고 그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적지 않게 지속적으로 기졌다.

초기에는 官學이 나름대로 발달하였다. 養賢庫를 두는가 하면, 科舉法을 정비하고 국왕 친히 與學, 謁學, 親問, 培養 등 여러가지 裝學方法이 강화되면서 官學은 자신의 지위를 굳혀갔다. 그러나 15C 후반에 이르러 官學은 점차 쇠퇴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 교육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그 끼닭은 첫째, 官吏 등용의 첨경으로서 儒生의 忠順衛으로의 入屬을 허락한 일이 學館을 공허하게 하고 있었다. 둘째, 당시 교관의 質이 저하되고 있었다. 이는 국가적 관심과도 깊이 관련되는 문제로서, 外方巨邑의 教授를 임명함에 있어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를 택하는 무성의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教授를 불신하고 학교에 나가 수업받기를 원치 않았다.셋째, 관학의 부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 요인으로는 世祖의 집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世祖는 자기의 즉위를 반대하였다고 하여 集賢殿을 폐지하고 佛教를 신봉하였으며, 武藝를 중시하였다. 특히 世祖의 왕위찬탈에 반대하여 不事二君의 뜻을 표방하고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떠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상황하에 成均館 및 四學 등의 관학은 텅비게

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학생들이란 학문에는 전혀 뜻이 없고 벼슬이나 관심이 있는 학생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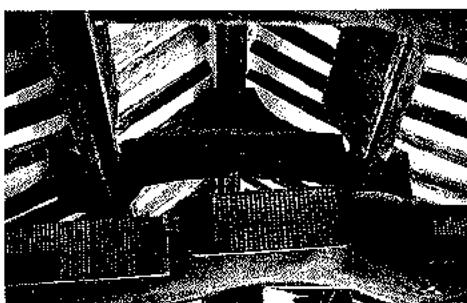
관학의 부진은 16C에 이르러 극적인 상황에 이른다. 연이은 士禍와 燕山君의 教育毀損이 그것으로 연산군은 經書를 불사르고 성균관을 연란의 장소로 만들며, 학자들의 독서를 금하기 조차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선비들은 痘病하여 혹은 기타의 구실을 붙여 향촌으로 피신하고자 하였다.<sup>2)</sup>



서원의 敎學理念  
으로 삼은 白鹿洞  
친規. 대개 서원의  
강당에 게시해 두고  
講會나 享祀 때  
朝夕으로 목소리  
를 크게 하여 낭독  
하게 했다.

서원 성립의 또 다른 여건으로는 中宗과 明宗의 적극적인 崇儒政策을 들수 있다. 中宗은 연산군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文治主義를 내세우고 당시 士林의 지도자인 趙光祖를 중용하였다. 중종원년에는 成均館을 중수하고 位牌를 환생하고 博士이하의 官을 다시 두고 그리고 中外에 명하여 교육시설을 부흥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中宗의 중학정책에도 불구하고 관학은 여전히

1) 俗說集, 制經朝, 1586년의 諸問題, 韓國史論 8卷, 1986, p.22  
2) 1揭序, p.18



무성서원 강당 상부에 걸린 각종 편액들(上標, 重修記等)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을 모신 정읍의 무성서원(武城書院)

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私學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며 관학의 부진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때에 서원이 등장한 것이다.

中宗의 뒤를 이은 明宗은 다 허물어져간 官學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 보다는 士林들의 자발적인 욕구와 실천으로 생겨나는 서원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예컨대 白雲洞 서원에 대한 賜額조치가 그것이다. 賜額, 즉 王의 인정을 받는다는 일은 서원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일 뿐 아니라 免稅, 免役의 특권을 향유한다는 실질적인 이득이 따랐다. 그리하여 地方有力者에 의하여 세워지고 영위되는 서원은 지방의 향교보다도 오히려 그 실재적인 권위와 권세가 커서 在鄉 양반자제들은 거의가 모두 서원에 모이게 되니, 조선 性理學의 융성은 이들 서원을 터전으로 하여 이루어져 갔다. 실제로 국왕의 賦稅政策은 서원의 성립, 나아가 그 발전을 보장해 주었으니 적어도 초기의 서원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서 이루어졌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이다.

서원의 源流을 찾자면 우선 先師, 先賢은 奉祀하는 「祠」와 弟子를 교육하는 「齋」의 성격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훗날 이들의 결합이 진정한 의미의 서원이 되기 때문이다. 祠의 경우에는 신라시대까지 그 시원을 올려볼 수 있다. 인간본성에서 우러 나오는 報恩行爲로 先祖, 先賢崇拜思想의 표현인 祠宇는 이미 신라 고려시대부터 적지않게 건립되어 祠廟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柳忠烈 교수의 「朝鮮 祠廟發生에 대한 考察」이란 논문에 의할 것 같으면 신라시대 충청남도 鎮川에 金庾信을 모신 祠宇가 세워져 조선 초기까지 奉祀되었다고 한다. 또한 고려조에도 국가가 歷代諸王에게 공헌한 功臣들을 功臣堂에 靈廟하자 일반인들도 이를 모방하여 祠宇를 건립, 先賢을 奉祀하였으며 조선조에 와서는 한층 조직적으로 祠廟 建立이 일반화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祠廟제도는 조선 중엽의 서원성립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 결국 서원의 성립은 祠宇의 발생에서 유래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書齋, 精舍로 일컬어지는 養는 지방의 名儒나 賢

士가 그의 私邸나 別舍에 둔 書室로서 고려 말 性理學의 수용과 함께 시작된 지방사학의 실체로서 단순한 敎修, 講學만의 장소였다.

교육에 관계되는 書院이란 명칭이 역사적으로 쓰인 적도 있다. 「增補文獻備考」(卷 202) 學校考 및 「高麗史」(卷 63)에 “宣令所同, 於西京開置修書院, 令諸生抄西史籍而藏之”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唐나라시대의 集賢書院이나 醫正書院과 같은 제도를 모방한 일종의 도서관적 기능을 가진 것이었다. 또한 「世宗實錄」(卷 86)에도 “其有儒士私置書院, 教誨生徒者, 啓聞褒賞”이란 기록이 보이는데 이 또한 先賢에 대한 尊祀의 기능이 없는 書堂이나 書齋에 해당하는 교육장소였다.

우리나라에 있어 講學機關과 祠廟가 역사적인 필연성에 의해 하나로 통합된 최초의 서원은 中宗 3년에 豊基郡守로 부임한 周世鵬(1495~1554)이 1543년(中宗 38)에 敎化施策의 하나로 고려 文臣 安珦을 奉安하고 학문을 講論하기 위해 세운 白雲洞 書院이다. 그는 學德을 겸비한 학자이며 정치인인데 주세붕은 그 뒤에도 海州監司로 재임하면서 首陽書院을 개설하여 書院史의 서장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周世鵬이 서원을 건립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는 그가 撰한 竹溪志 序文에 問答式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饑饉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세우는 목적은 敎化가 救饑보다는 급한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尊賢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함으로 이에 立祠立院하게 된다는 論理的 근거를 내세웠다. 그리고 安珦은 祭享하려는 것은 東方 道學의 祖로서 斯文에 막대한 功을 남긴 先賢이기 때문이며 특히 그는 이곳 출신으로 豊基의 敎化를 위해서는 그를 尊奉하는 祠廟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가 세운 祠院이 총체적으로 斯文興起에 토양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한국 서원의 효시가 되었던 白雲洞 서원은 설립 후 5년 되던 明宗 3년에 李滉이 豊基郡守로 부임하자 賜額을 청했고 2년 후인 1550年(明宗 5)에 賜額이 내려질 때 紹修書院이라는 稱號이 내려짐으로 해서 처음으로 賜額書院이 되었고 동시에 이름이 白雲洞에서 紹修로 바뀌었다. 당시 賜額은 郡守였던 李滉의 請으로 인하여 경상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을 주향으로 모신 논산의 돈암서원 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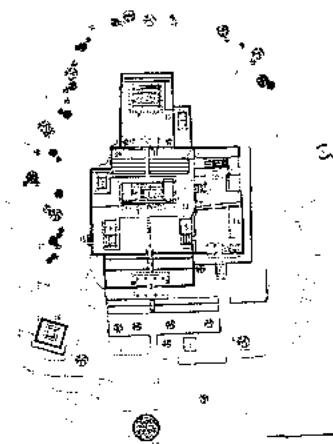
내삼문에서 바라본 안성의 덕봉성원(德峯書院) 사당

사의 上啓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賜額은 王命으로 扁額이 내려진 것이므로 국가에서 先賢의 奉祀와 教化事業을 한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 되어서 免稅되는 토지를 급여받게 되고 또 공식기관에서 印行되는 書籍이 배급되고 병역이 면제되는 奴婢들이 급여되며 被奉祀者の 地位도 국가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듯 退溪에 의하여 白雲洞書院이 한국 최초의 賜額書院이 되어 또 다시 書院史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당시 퇴계가 서원에 대한 견해와 賜額을 청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당시의 嶺南監司였던 沈漁源에게 보낸 上沈方伯書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上略) 이 고을에 있는 白雲洞 서원은 前 郡守 周世鵬이 창건한 것입니다. 竹溪의 물이 小白山아래에서 발원하여 옛날 順興府의 가운데로 지나니 실은 유학계의 先聖 文成公 安裕가 옛날에 살던 곳입니다. 마을은 그윽하고 깊숙하여 구름에 잠긴 골짜기가 아득합니다. 周 군수가 고을을 다스리는데 있어 특히 학문을 일으키고 人材를 육성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 이미 鄉校에 대하여 경성을 다하였습니다. 또 竹溪는 前賢의 유적이 있는 곳이므로 나아가 터를 잡고 서원을 지으니, 무릇 30여 間이 되었습니다. 祠廟를 두어서 文成公을 奉享하며 文貞公 安輔과 文貞公 安輔를 배향하고, 堂齋와 亭宇를 그 곁에 건립하여 儒生들이 노닐고 講讀하는 장소로 삼았는데 (下略) 무릇 중앙의 수도로 부터 지방의 고을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없는 곳이 없었으니 서원이 또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마는 中國에서 서원 송상이 그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와 道學을 강명하고 업을 익히는 무리가 혼히 세상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많은 책을 싸짊어지고, 생각하기 한적한 들판과 고요한 물가로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고요한 중에 천하의 의리를 두루 살펴서 그 덕을 쌓으며 仁을 익혀 이것으로써 낙을 삼는지라. 그 때문에 서원에 나아가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저 國學이나 鄉校는 중앙 또는 지방의 도시 성곽안에 있으며, 한변으로 學舍에 구애됨이 많고, 한편으로 변화한 환경에 유혹되어 뜻을

바꾸게 하여, 정신을 빼앗기는 것과 비교하여 본다면 어찌 그 공효를 서원과 같이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선비의 학문이 오직 서원에서 득세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현명한 인재를 얻을 것도 또한 반드시 이 서원에서 구하니 저 國學이나 鄉校보다도 우월한 것입니다. (下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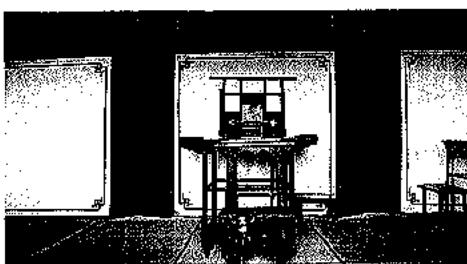
道東書院 配置圖  
(자료 : 새마을건축사무소)

- 범례
1. 講堂(中正堂)
  2. 祠堂
  3. 水月樓
  4. 嘉慶門
  5. 東齋(居二齋)
  6. 西齋(居義齋)
  7. 緩緩閣
  8. 內三門(神門)
  9. 禮記所
  10. 一朗門
  11. 四柱門
  12. 典記廳
  13. 문간체
  14. 곡간체
  15. 便 所
  16. 碑 閣
  17. 書院木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退溪는 周世鵬이 학문진출을 위해 서원을 세우게 된 내력을 서술하였고, 또한 鄉校와 國學은 나라의 制度와 規定에 엄매이고 科舉와의 관련에서 옳은 학문에 心潛할 수 없는 반면 서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出世主義나 功利主義를 떠나 순수한 학문연구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원제도를 도입, 권장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退溪는 계속해서 서원創設運動에 적극성을 띠었고, 서원을 통한 性理學의 토착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그의 생존시에 이미 적지 않은 서원이 설립되었고 그것들은 대부분 退溪에 의해 命名되었거나 記文이 불어졌다. 그 한 예로 退溪文集의 書院十詠時에 9個所<sup>3)</sup>

3) 竹溪講院(豎基), 陽明書院(永川), 文忠書院(海州), 退溪書院(星州), 岳山書院(江陵), 景饗書院(咸陽), 伊山書院(榮川), 西齋精舍(慶州), 老岩書院(大邱), 書院十詠의 第 10首는 總論講院이라 하여 書院自體를 時評한 것입니다.



둔암서원의 사계(沙溪) 위패



응도당 대청 내부



둔암서원 응도당(凝道堂). 육중한 맞배집으로 조선중기의 독특한 건물

의 서원에 대한 譲時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당시의 서원설립에 退溪가 크게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明宗朝까지만도 20여개의 서원이 창설되었다.

퇴계는 서원에서 배워야 할 과목과 함께 학문하는 자세에 대한 글도 남겼다. 그가 쓴 伊山書院院規를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생들은 독서할 때에 四書와 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小學과 家禮를 門戶로 삼으며, 국가에서 인재를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법을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지켜서 온갖 善이 본래 나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옛 道를 지금에 실천할 수 있음을 믿어 모두 몸소 행하고 마음에 얻으며, 體를 밝히고用에 맞게 하는 학문에 힘쓰도록 한다. 그리고 여러 史書와 子書와 문집, 문장과 과거공부도 또한 널리 힘쓰고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마땅히 內外와 本末의 輕重과 緩急의 순서를 알아서 항상 스스로 격양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邪謬하고 요망하며 읊탕하고 궁벽한 책은 모두 서원으로 들어와 눈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서 道를 어지럽히고 뜻을 혹하지 말도록 한다.

한편 퇴계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항상 향리에 내려와 학문연마 하기를 꿈꾸었는데, 한때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 향리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 退溪에서

몸이 벼슬에서 물려오니 본 분수에 편안하건만  
학문이 물려서니 늘 그막이 걱정되네  
비로서 이 시내 위에 깃들 곳 마련했으니  
남마다 맑은 흐름을 굽어 깨달음이 있을 것일세  
身退安慰分學退憂暮境  
溪上始定居臨流日有省

결국 퇴계는 그의 나이 61세이던 명종 16년(1561)에 향리 예안에 도산서당과 농운정사를 세우고 학문탐구와 후학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곳이 모태가 되어 후일 한국 서원의 메카라 할 수 있는 陶山書院이 건립되게 된다.

#### 발전에서 쇠퇴까지, 300여년

서원건축의 전개는 역시 서원의 역사적 변천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건물구성과 배치구조에 있어서는 주목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서원의 변천과정 고찰은 건축의 이해 폭을 넓히고 아울러 조영규범을 밝히는데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丁淳睦 교수는 「한국 서원교육제도 연구」에서 우리나라 서원 발달의 단계를 ① 제1기(16세기 중엽~) : 藏修優位시대, ② 제2기(17~18세기) : 享祀優位시대, ③ 제3기(19세기~) : 서원정비시대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閔丙河 교수는 「조선시대의 서원 政策考」에서 書院史를 始創期(中宗~明宗), 發展期(宣祖~肅宗), 整理期(景宗~高宗初)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용어정리에서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체로 시기구분이나 성격변화의 해석쪽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필자는 두 교수의 구분을 전제로 하여 당시 서원의 역사적 변천사실을 고찰해 보겠다. 편의상 3단계의 과정을 제1기, 제2기, 제3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제1기는 백운동 서원의 창건이후 서원 건립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先賢先師에 대한 奉祀와 함께 學問연구의 장으로써 그 기능이 충실히 이루어진 16C 중엽부터 17C초 까지의 시기다. 비록 기간을 짧았지만 당시에 창건된 서원 중에는 우리에게 건축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서원이 많다. 즉 藍溪書院(1552년), 西岳書院(1561년), 玉山書院(1573년), 陶山書院(1574년), 筆巖書院(1590년), 道東書院(1605년), 屏山書院(1613년), 武城書院(1615년) 등이 있는데 이 서원들은 대부분이 士林세력자체의 발판으로 性理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配享者로 하였다.

제2기는 주로 17~18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兩班官僚間의 분열인 黨爭이 격화되어 自黨의 先師, 先輩를 경쟁적으로 奉祀하는 서원수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다. 즉 이 시기의 서원은 본래의 목적을 차츰 잃기 시작하여 강학기능 대신에 제향우위로 바뀌게 되어 서원享祀人은 반드시 斯文有功인이 아니라도 可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원은 濫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을 주향으로 모신 광주 월봉서원 서당



논산의 노강서원 현판



병산서원(屏山書院) 강당과 그 앞뜰

設. 疊設時代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濫·疊設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정략적인 당쟁에 있었고, 自黨의 학문적인 정통성이 곧 서원 수에 의하여 과시되는 까닭에 朱子學의 名分論을 앞세워 文廟從祀는 바로 黨權의 尺度로 둔갑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서원이 모두 祀賢爲主의 인물중심이 되어 본래 尊賢에 목적을 두고 祀賢만의 기능을 가졌던 祠宇와 명칭 이외에는 별다른 구별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래 서원과 사우는 그 건립의 동기와 목적이 표1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것이었다.

표1. 서원과 사우의 비교

	명칭	목적	기능	제향인물	구조
서원	書院 書齊 精舍	養育人材 斯文振興 (敎化)	士子藏修 講學 祀賢	先賢、先儒 土林宗師	講堂, 書齊 祠廟(祠堂)
사우	祠宇、影堂, 埋賢祠, 別廟, 鄉祠, 世德祠, 造愛祠, 里祠, 生祠堂	報本崇賢 (敎化)	祀賢	忠節人 儒賢	祠廟(祠堂)

資料 : 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評論, 鄭萬祚

즉 祠宇는 先賢을 제향하는 기능이 1차적인 것이었고, 이에 반하여 書院은 士者를 강학하는 교육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서원에는 東·西齋가 있게 되고 서적을 비치하거나 간행하는 도서관적 기능도 하였다. 사우의 경우는 단순히 해당지역과 연고가 있는 學者나 官人을 제향하면서 그 유덕을 본받자는 뜻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과 사우의 구별은 조선후기가 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그 한계도 무너져 버렸다. 사우라고 해서 兩齋를 두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강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컨대 대원군의 서원훼철령(1868년)에서도 보듯이 서원·사우는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전남지역에서 훼철을 면한 광주 포충사의 경우도 명칭상은 사우이나 장성의 필암서원과 마찬가지로 양체를 갖추고 있다. 혹자는 학자를 제향하

여야 서원이고, 그 외에 서원이라 한 것은 잘못이라고도 하나 이 역시 근거 없는 말이다.

이러한 명칭의 혼용은 조선후기의 서원·사우를 다루는 관변의 여러 기록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書院可考」라는 전국서원·사우 목록에서도 서원과 사우가 어떠한 구분도 없이 함께 기록되고 있고, 「別邑院字事蹟」의 경우도 전혀 구분이 없다.<sup>4)</sup>

표2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건립된 서원과 사우 수를 살펴본 것이다. 대체로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 광해군부터 영조사이에 전체의 80% 가까이가 이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2. 年代別 書院·祠宇의 建立·賜額數 一覽表

年 代	建 立 · 賦 額	建 立 數	賜 額 數
中宗以前		13	1
中 宗(1506~1544)		1	-
仁 宗( 1545 )		-	-
明 宗(1546~1567)		17	3
宣 宗(1568~1608)		82	21
光海君(1609~1622)		38	15
仁 祖(1623~1649)		55	5
孝 宗(1600~1659)		37	10
顯 宗(1660~1674)		72	44
肅 宗(1675~1720)		327	131
景 宗(1721~1724)		29	-
英 祖(1725~1776)		159	13
正 祖(1777~1800)		7	13
純 祖(1801~1834)		1	1
憲 宗(1835~1849)		1	1
哲 宗(1850~1863)		1	1
高宗(大院君執權期 1864~1873)		1	1
年代未詳		62	-
合 計		903	270

資料 : 표1과 같음

정리期라 함은 대체로 景宗때부터 高宗初까지 들 수 있다. 즉 17~18세기의 서원·사우의 수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여 그에 대한 비판이 이 시기에 들어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이미 仁祖代부터 서원의 濫設을 규제하는 논의가 있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4) 李承魯, 전남지방 「書院·祠宇」 조사와 인구파세, 전남문화재지 제2권 1989, p 54



우동사(祐東祠)란 현관을 걸은 필암서원 사당



도동서원(道東書院)의 정문

못한 채 여전히 증가일로에 있어 오다가 英祖 17년(1741)에 이르러 마침내 私設 祠院 300여 개소를 헐어 없애게 되었고, 마침내 高宗 5년(1868)에 大院君에 의해 文廟從享人을 중심한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毀撤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른바 “辛未存置四十七書院”인 것이다.(표3)

이상과 같이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엽 백운동 서원을 효시로 하여 발전의 단계를 잠시 거쳤다가 조선 후기에 가서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곳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결국은 대원군에 의해 1,000여 곳의 서원·사우 중 오직 47곳만 남게 되는 운명을 겪었는데 사실은 47곳 중에서도 사우와 이북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 20여 곳만이 건축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이다. 이는 결코 다른 유교유적에 비해 많은 수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제시했던 陶山·筆巖·屏山서원 등 10여개 서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道學書院이면서 서원건축의 전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서원건축의 이해에 중요한 현장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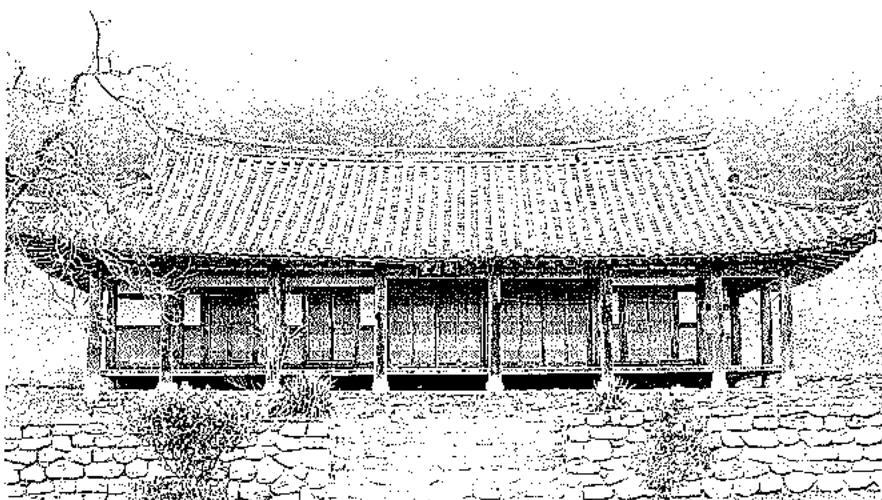
한편 19세기 말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부터 전국의 각 지방에서는 폐철되었던 서원·사우에 대한 대대적인 復元이 이루어 졌으며 최근에까지 계속되는 곳도 있다. 전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170여개소가 되는데 복원의 주체는 거의가 문중 중심이 되고 있다.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우선 遺址에 遺墟碑만을 먼저 세우고 設壇形式으로 配享해 오다가 齋閣(講堂)을 우선 충전하고 그 다음으로 祠堂이 건립된다. 물론 곳에 따라서는 사당과 강당이 함께 복원되기도 한다. 곳에 따라서는 옛 터가 아닌 새로운 곳에 복원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유적은 비록 창건 년도가 19세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형고찰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적 해석에 별도의 전제가 따라야 할 것이다.

표3. 대원군의 서원 폐철령에서 제외된 47개 서원·사우

	서원명	주 휘자	창건년도	사액년도	소재지
경 기 도	坡山書院	成宇宗	선조원년(1568)	호종원년(1650)	파주군 파평면 늘광리 266
	崧陽書院	鄭夢周	선조6년(1573)	선조8년(1575)	개성
	牛齋書院	趙惠	인조26년(1648)	숙종원년(1675)	김포군 김포면 정리 492
	梁谷書院	趙光祖	효종원년(1660)	숙종17년(1691)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 203
	龍淵書院	李德馨	숙종17년(1691)	숙종18년(1692)	포천군 산북면 신판리 168
	顯軒祠	金尚惠	숙종14년(1688)	숙종19년(1693)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江智院	朴泰輔	숙종21년(1695)	숙종23년(1697)	의령부시 장암동
	西忠書院	金昌集	영조원년(1726)	영조2년(1726)	평주군 중부면 상신곡리
	德峯書院	吳斗寅	숙종21년(1695)	숙종26년(1700)	안성군 양성면 덕봉리
	大老祠	宋時烈	정조9년(1785)	동년	여주군 여주읍 하리
충 청 도	紀功祠	崔愬	현종7년(1841)	동년	고양군 지도면
	忠烈祠	金尚誥	인조20년(1942)	호종9년(1658)	강화군 선원면 선현리
	義士院	金長生	인조12년(1634)	현종원년(1660)	논산군 양산면 일리 74
	義園書院	尹煌	숙종원년(1682)	돈산군 광식면 오강리 227	
	忠烈祠	林慶業	숙종23년(1697)	영조3년(1727)	충주시 단판리 337
	彰烈祠	尹集	숙종43년(1717)	경종원년(1721)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表忠祠	李鳳詳	영조7년(1731)	영조12년(1736)	청주
	筆巖書院	金麟厚	선조23년(1590)	현종9년(1662)	장성군 홍옹면 필암리 95
	高敬命	高敬命	선조34년(1601)	선조36년(1603)	광주시 대치동 원산리 775
	武毅書院	崔致遠	광해7년(1616)	숙종22년(1696)	경상군 칠보면 무성리 550
경 상 도	招雪書院	安裕	중종38년(1543)	명종5년(1550)	영주군 순흥면
	藍溪書院	鄭汝昌	명종7년(1552)	명종21년(1566)	함경남도 수동면 원평리
	西岳書院	蔚總	명종16년(1561)	인조원년(1623)	경주시 서악동
	金烏書院	言再	선조34년(1570)	선조8년(1575)	신성군 선산면 원동
	玉山書院	李彦迪	선조5년(1573)	선조7년(1574)	월성군 안강읍 우산리
	陶山書院	李達	선조7년(1574)	선조8년(1575)	안동군 도산면 토계리
	道東書院	全宏祐	선조6년(1605)	선조34년(1601)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忠烈祠	宋象賢	선조38년(1605)	인조2년(1624)	금산군 등래구 안라동
	屏山書院	柳成龍	광해8년(1613)	칠종14년(1683)	안동군 동천면 하회리
	忠烈祠	李景臣	광해6년(1614)	경종3년(1723)	충주시 영장동
황 해 도	興義書院	宋旼吉	숙종28년(1702)	숙종31년(1705)	상주군 내사리 언월동 769
	五洞書院	黃奎	숙종40년(1714)	성종13년(1789)	상주군 모동면 수봉리
	褒忠祠	李述原	영조14년(1738)	동년	거창군 용왕면 노현리 189
	影烈祠	金千端	선조40년(1607)	선조40년(1607)	진주시 남성동
	文會書院	李珥	미상	선조원년(1558)	백천
	淸聖廟	伯夷	숙종17년(1691)	숙종27년(1701)	해주
	萬陽書院	朴世采	숙종21년(1695)	숙종22년(1696)	장연
	太師祠	申崇謙	고려시대	정조20년(1796)	평산
	武烈祠	石星	선조26년(1593)	동년	평양
	三忠祠	諸葛亮	선조36년(1603)	현종9년(1668)	영유
강 원 도	忠愍祠	南以興	숙종7년(1681)	숙종8년(1682)	인주
	酬忠祠	林體	미상	정조8년(1784)	영변
	表節祠	劉善	미상	미상	인주
	忠烈書院	洪命晉	효종원년(1650)	효종3년(1652)	금화
제 주 도	褒忠祠	金應河	현종6년(1665)	현종9년(1668)	철원
	彰節書院	朴彭年	숙종11년(1685)	숙종26년(1699)	영월
임 성 도	老健書院	李恒謹	인조5년(1627)	숙종13년(1687)	북청



병산과 낙동강이 한데 어우러져 경관이 매우 수려 (병산서원은 이들이 내려다 보이는 경사진 산록에 위치)



듬직한 조선시대 선비의 자태를 보는 드문 월봉서원 강당

## 1. 개요

아미앵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폭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으며 파괴된 지역의 재건축은 미학적인 면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서서히 건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성당 근처에는 그리 크지 않은 강이 있어 도시를 운치있게 하여주고 있으며 비교적 큰 상업도시 속에서 조그만 공원 옆의 역사가 서려 있는 대성당은 푸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검은 벽지속에 파묻혀 있는 토대의 섬세한 조각들과 금빛 성모상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깊이 느끼게 한다. 아미앵 대성당은 프랑스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성당 가운데 하나이며 훌륭한 대성당에 속한다. 중앙회중석의 높이는 42.3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아 프랑스의 고딕양식 대성당 가운데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7,700\text{m}^2$ 에 달하는 면적으로 길이는 133.50m로 랭스의 대성당 다음으로 길다. 전체가 완전히 고딕양식인 이 성당은 양천적 의지가 가장 잘 표출되어 있고 '고딕의 파르테논'이라고 칭할 정도로 고딕의 대표적 건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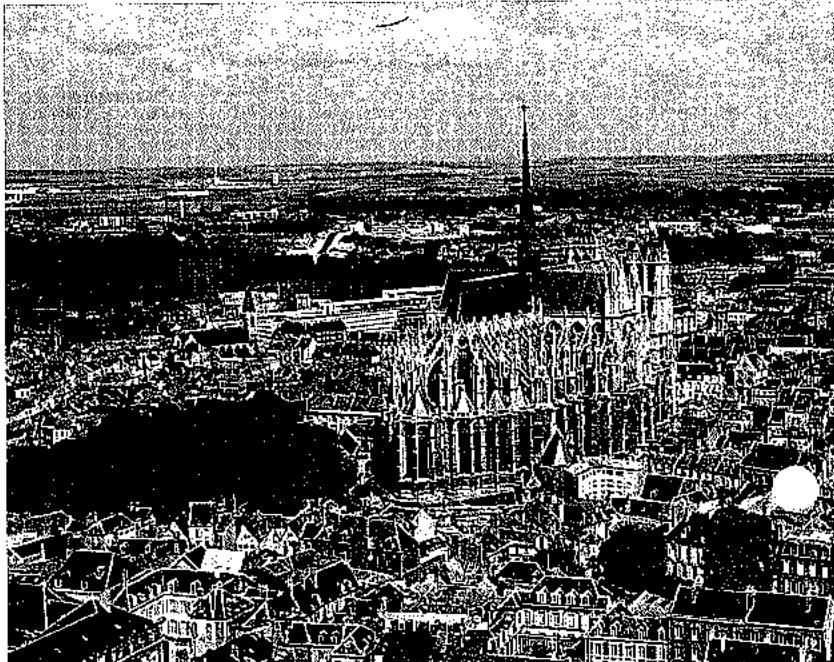
#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6)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 Amiens 성당 -

朴孝洵/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 2. 역사

현재의 아미앵(Amiens) 대성당은 옛날 대성당의 부지에 건립되어 있다. 옛날 대성당에 대해서는 1220년경에 있었던 화재로 파괴되었다는 것 외에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아미앵 대성당의 건립은 주교좌 대성당을 재건축해야만 한다는 것과 1206년 제4차 십자군 원정때 교회 참사회원 발롱 드 사르통(Wallon de Sarton)이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져온 세례자 요한 성인의 특별한 머리 성유골과 그에 어울리는 보물 상자를 보관할 대성당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그 당시 아미앵 시는 상업적으로 번성기에 있었으므로 주교 에브라르 드 푸이 우아(Evrard de Fouilloy)와 교회 참사회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합의



대성당의 전경

하여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먼저 중요한 예비공사로 옛날 대성당에 남아있는 부분과 생 피르맹 르 꽁페쇠르(Saint-Firmin-le-Confesseur)성당, 시립병원 그리고 주교 저택의 한 부분을 철거하고 대성당의 내진과 좌우익랑을 건축하기 위해 시의 성벽을 동쪽으로 약 200m정도 옮겼다. 드디어 1220년에 주교 에브라르 드 푸이우아는 새로운 대성당의 초석을 놓았다. 공사는 관례와는 반대로 중앙회중석부터 시작하여 1236년에는 중앙회중석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서쪽 정면은 대형 원화창까지 완공이 되었고 동시에 좌우익랑의 공사가 시작되었다. 1240년에서 1258년 사이에 공사비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노레(I Honore)성인의 성유골을 동반하고 모든 교구를 다니며 모금을 하였다.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1270년 건물을 완공했으나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현재 서쪽 정면의 두 탑은 앞으로도 오랜 세월을 미완성인 채 남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좌우익랑의 교차점에는 뾰족탑이 없고 단지 간단한 종루만 있으며 측랑 가장자리에 있는 측면의 작은 계단들은 14세기에 가까스로 건립되었다. 결국 프랑스의 대성당들과 비교해 볼 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거대한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되었던 18년을 제외하고 약 30년 동안에 전부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대성당의 짐작들이었던 로베르 드 뤼자르쉬(Robert de Luzarches)특히 첫번째 건축가의 설계도를 준수했던 토마 드 코르몽(Thomas de Cormont)과 그의 아들 르노(Renaut)는 세인들에게 길이 기억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대규모 건축물에서 이러한 놀라운 건축속도는 공사장의 특성과 관계가 깊다.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석재공사중 석재크기에 대한 합리성을 계획하고 구상을 했다. 그 전까지는 석재를 놓을 장소에 따라 그 자리에서 석재를 다시 자르거나 손질을 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아미앵의 공사장에서는 아주 작은 숫자

의 표준치수 석재부터 대량으로 가공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부속 공사장에서 악천후를 피하여 석재를 가공할 수 있었고 또 일년내내 언제라도 들을 갖다놓아 공사속도가 빨라질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특별한 상황으로 건축물은 매우 통일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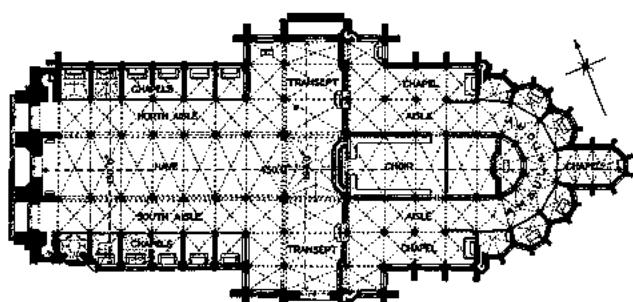
중앙회중석 속에 있는 측면의 작은 계단들은 1292년에서 1375년 사이 건립되었으나 다른 시기에 행해진 공사로 대성당은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1366년 대형 원화창 위쪽의 중앙 정면이 완공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남쪽 탑을 동시에 완성했다. 1528년 7월 15일 낙뢰에 의해 파괴된 종루를 대체하기 위해 좌우익랑의 교차점에 뾰족탑을 건립했다.

대성당의 내부는 여러세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먼저 아름다운 성직자석 등을 들 수 있다. 성직자석은 16세기인 1508년 7월 3일부터 제작되기 시작했고 또한 15세기에 매우 독창적으로 건립된 특별석 위에 대형 파이프 오르간 틀을 제작한(1549년)것도 16세기 동안이었다. 18세기에 대성당의 내부를 다시 보수하게 되었는데 내진들레의 아름다운 그릴과 같은 많은 부분에서는 공사가 잘 되었으나 설교단과 특히 내진속에서 시야를 가리고 있는 배광과 같은 부분에 대해 재차 보수한 것은 실패였다. 또한 당시의 교회 참사회원들이 좀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대형 착색 유리창을 철거하므로써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은 현재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그 당시 아미앵 사람들이 그들의 대성당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던 정서 때문에 대성당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아미앵시를 감독하는 지방 행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대성당의 보존에 힘을 쓰고 있다. 1793년 피르맹(Firmin)성인의 생애를 서술해 놓은 내진 들레의 부조만이 파리를 향해 내려가던 릴(Lille)사람들에 의해 훼손되었을 뿐이다. 19세기에 복원 공사가 시작되므로써 내진 들레의 피르맹 성인의 생애(남쪽면), 세례자 요한 성인의 생애(북쪽면)



구세주의 문 합각벽 마지막 심판



아미앵성당 평면도

가 원상태로 복구되었고 얼마후 도장도 새로 했다. 19세기 전반에 외부에 있는 입상들의 세세한 부분의 예를 들면 입상의 팔, 다리, 검, 왕홀 등을 복원했다. 1849년에서 1874년 사이에는 교구의 건축가였던 비올레 르 뉴 (Viollet-le-Duc)이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기로 한 매우 중요한 공사를 감독했다. 여러가지 사유로 세세히 열거하기가 어려운 이 공사는 첫번째 외부 복원 공사였다. 두번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아미앵시는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었지만 대성당은 거의 파손되지 않았다. 1918년 3월 대성당에 포탄이 몇개 떨어졌지만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 1940년 5월 20일 대성당이 있는 구역을 휩쓴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대성당은 기적적으로 화재를 모면했고 1944년 연합군의 폭격에도 대성당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여러 세기 동안 아미앵 대성당에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것으로 1264년 1월 23일 영국의 왕 헨리(Henri)3세와 그에게 반항한 남작들 사이에서 루이(Louis)성인의 결정이 있었으며 1385년 7월 17일 프랑스 왕 샤를르(Charles)6세와 독일 바이에른(Bayern)의 이자보(Isabeau)의 결혼식이 있었고, 1463년 11월 3일에는 기욤 주브넬이 공식적으로 루이(Louis)11세의 이름으로 솜므(Somme:프랑스 북부의 지방)지방의 도시들을 이곳에서 물려받았다. 1550년 5월 8일에는 불로뉴(Boulogne)를 프랑스에 돌려준 우트로(Outreau)조약을 양리(Henri)2세가 공식적으로 비준했던 곳이며, 1597년 9월 25일 양리(Henri)4세가 스웨덴에서 도시를 탈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양리 4세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 예식도 있었다. 또한 1598년 6월 7일 교황 특사인 추기경 알렉상드르 드 메디시(Alexandre de Medicis)가 스페인과의 평화조약(베르뱅 Vervins 조약)을 공식적으로 공포하기도 하였다. 1625년 6월 7일에는 영국의 왕 찰스(Charles)1세의 부인이며 루이(Louis)13세의 누이인 프랑스의 양리에뜨

(Henritte)의 공식리셉션이 이곳에서 있었다.

### 3. 대성당의 규모

일반적으로 내진이 동향인 성당들과는 달리 아미앵 대성당은 내진이 남쪽으로  $23^{\circ}$  정도 향한 동남향으로 라틴 십자가 형태를 하고 있다.

- 면적 :  $7,700m^2$
- 총길이 : 145m
- 내부길이 : 133.50m
- 중앙회중석의 폭 : 14.60m
- 좌우익랑의 길이 : 70m
- 중앙회중석의 높이 : 42.30m
- 북쪽탑의 높이 : 66m
- 남쪽탑의 높이 : 65m
- 지면에서 뾰족탑까지의 높이 : 112.7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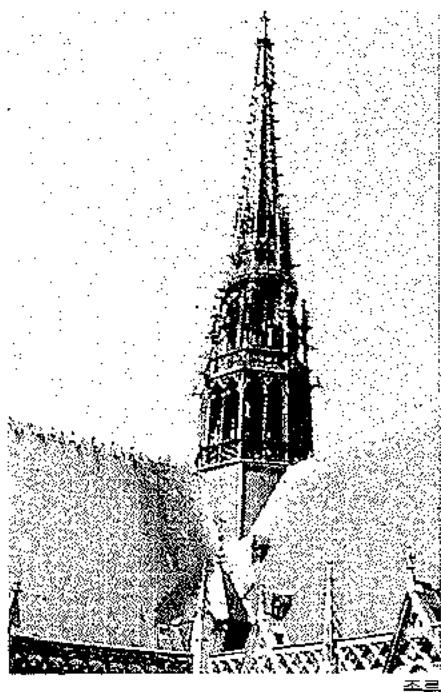
### 4. 외부

#### 4-1 서쪽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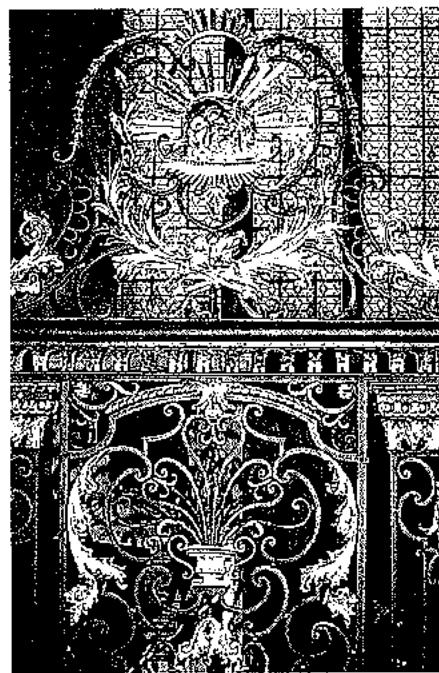
만일 아미앵 대성당의 방문이 유익하고도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면 이 서쪽정면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쪽 정면에는 매우 화려하고도 많은 입상들이 거의 본래의 상태로 완전하고도 질서정연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쪽 정면은 수평으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맨아래 부분 : 세 정문이 있는 일층
- 두번째 부분 : 트리포리움에 부합하는 주랑
- 세번째 부분 : 22점의 입상이 있는 왕들의 주랑
- 네번째 부분 : 대형 원회창
- 다섯번째 부분 : 14세기에 건립한 맨윗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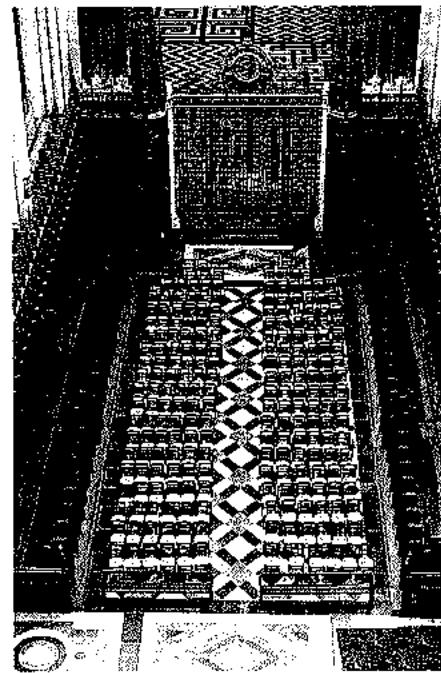
일층의 정문에서부터 시작하면 “구세주의 문”으로 불리는 중앙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것이고 “성모



종루



내진의 축면 그림



내진과 성직자석 중앙회중석과 바닥의 포식

의 문”으로 불리는 오른쪽 문은 성모 마리아에게, 왼쪽 문은 아미앵의 초대 주교이며 교구의 수호성인인 피르맹(Firmin) 성인에게 바쳐진 것이다. 세 정문은 정면에서 아주 깊숙히 들어가 있고 윗쪽에는 우아한 삼각형 박공이 있다.

#### 4-1-1 중앙문(구세주의 문)

정면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중앙문의 가운데 벽위에는 “아비앵의 선한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복하는 모습의 그리스도 입상이 있다. 이 작품은 모든 고딕양식 입상에서 걸작품에 속한다. 그리스도는 독사와 괴사를 밟고 있고 그 아래에는 사자와 공룡이 있어 시편 91장 13절을 나타내고 있다. “네가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새끼와 구리뱀을 짓이기리라” 아래 주춧돌에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있는 왕의 모습이 눈에 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솔로몬 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 주춧돌의 양쪽에는 꽃, 초롱꽃, 들장미가 구별하기 쉽게 조각되어 있다. 왼쪽과 오른쪽 문틀 위에는 현명한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가 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다섯 명의 현명한 처녀들이 그들이 램프를 바르게 들고 있다. 그들의 옳은 행동은 맨 아래쪽에 과실 달린 나무로 비유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왼쪽에 있는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의 램프를 거꾸로 들고 있으며 그들의 삶은 나무 밀둥에 이미 도끼가 찍혀 있는 마른 나무로 상징했다. 문의 양쪽 토대 둘레에는 양과 공룡, 이솝 우화의 “수탉과 여우”, “늑대와 학”이 표현되어 있다. 신앙적 영감이 가장 탁월한 “선한 하느님”은 아주 단순한 우화와 함께 표현되어 있다.

#### (1) 사도들

관람객의 오른쪽에 십자가와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 성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안드레아 성인, 조개껍질로 장식된 배낭을 지고 검을 든 자끄 성인, 성작을 든 짚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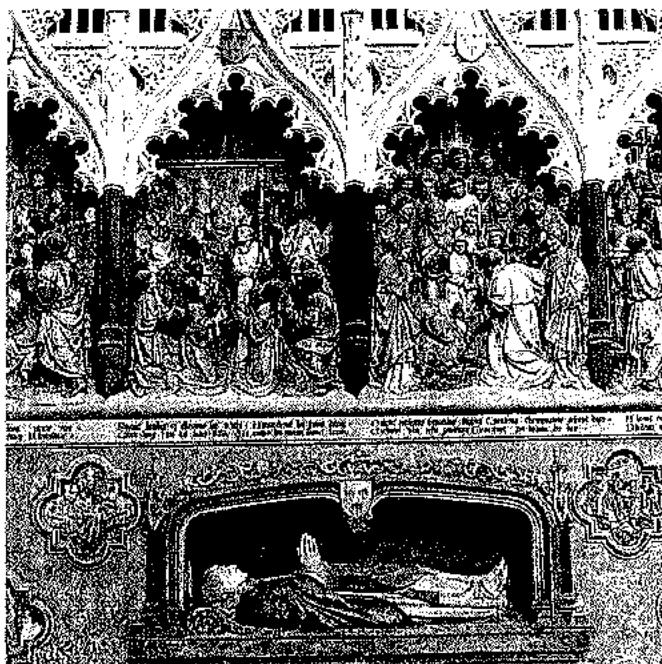
수염이 나지 않은 요한 성인, 시몬과 주장하기 어려운 바르텔로미(Barthelemy) 성인의 입상이 있다. 마지막의 두 입상은 추정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로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원래의 특징이 깨어져 버렸고 약 백 년전에 유감스럽게도 상상으로 다시 제작했기 때문이다. 관람객의 왼쪽에 책과 검을 든 바오로 성인, 측용기의 막대를 든 자끄 성인, T자 형의 십자가를 든 토마 성인, 복음사가 마태오 성인, 가장 키가 큰 벨립보 성인(들에 맞아 죽었던 그는 그가 맞았던 돌 하나를 들고 있다), 그리고 유다 또는 시몬인지 알 수 없는 성인의 입상이 순서대로 있다.

#### (2) 대 예언자들

오른쪽에는 두루마리와 종려나무 가지를 든 이사야와 십자가를 든 예레미아가 있다. 왼쪽에는 두루마리를 든 예제키엘, 펼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수염이 없는 다윗의 입상이 있다. 다윗의 입상은 완전히 예외적인 것으로 이 입상의 머리는 현대식으로 복원했다.

#### (3) 선과 악

사도들의 입상 아래에 선과 악을 나타내는 사열편이 두 줄로 나란히 있다. 윗줄에는 선이 그들을 상징하는 방패꼴의 작은 가문을 들고 앉아 있다. 그 아래에 악은 활기차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문에서부터 오른쪽에는 용기(사자로 묘사)와 두려움(기사가 도망을 가면서 산토끼 앞에서 검을 놓친 것으로 묘사), 인내(황소)와 분노(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여자로 묘사), 부드러움(어린양)과 폭력(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술따로는 하인)의 배를 발로 차고 있는 키 큰 여자로 묘사), 일치(겁지)와 불협(가정의 한 장면을 묘사), 복종(낙타)과 반항(주교에게 머리를 들고 있는 평신도로 묘사), 불변함(왕관)과 배교(환속한 수도사로 묘사)를 볼 수 있다. 왼쪽에서 신앙(성작과 십자가로 묘



성직자석의 뒷면(남쪽): 아드리앙 드 애Ң쿠르(Adrien de Henencourt)의 무덤



피르맹 성인의 순교



교회참사희원 뷔리(Bury)의 모식  
(1504년 제작)

사)과 우상숭배(원숭이인 우상을 사랑하는 남자로 묘사), 소망(깃발)과 절망(검으로 자살하는 사람으로 묘사), 자비(암양)와 탐욕(상자속에 금화로 넣는 여자로 묘사), 정절(불사조)과 음란(포옹하고 있는 여자와 남자로 묘사), 현명함(뱀)과 무분별(돌을 먹고 있는 남자로 묘사), 겸손함(비둘기)과 거만함(날뛰는 말에서 떨어진 남자로 묘사)을 볼 수 있다.

대 예언자들의 입상아래있는 사열편은 예언자들의 생애나 그들의 예언의 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뜨거운 조약돌로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천사 세라핀과 얹힌 두 바퀴 앞에서 명상에 잠긴 에제키엘, 허리띠를 땅에 둘고 있는 예레미아, 사자의 굴속에 있는 다니엘의 그것이다.

#### (4) 합각벽

구세주의 문 위에 마지막 심판을 묘사한 것으로 아름답기로는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사르트르 성당, 부르주의 대성당과 베르됭은 조각이 있다. 전체적으로 아래에서 윗쪽으로 4부분의 가로띠 모티브로 나눌 수 있다. 맨 아래쪽 가로띠 모티브는 부활을 나타낸 것으로 죽은 이들이 그들의 무덤 밖으로 부활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유골함 속에서 나오고 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고 한가운데서 대천사 마카엘은 저울로 선인과 악인을 재고 있다. 그의 쟁반 속에는 하느님의 어린양과 악마의 머리가 있는데 이는 선인과 악인을 상징한 것이다.

두 번째 모티브는 선인들의 구별을 나타낸 것이다. 구세주의 오른쪽에서 선인들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열고 있는 천국의 문으로 나가고 있다. 천사들이 그들을 동반하고 있고 그들은 옷을 입고 있다. 행렬의 맨 앞에는 아미앵에서 프란시스코회의 수도원을 열었으며 최근에 시성된 아시즈(Assise)의 프랑수아(Francois)성인이 있다.

다. 구세주의 왼쪽에는 악인들이 악마에게 밀려 큰 입을 벌리고 있는 괴물의 머리로 상징한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들은 모두 벌거벗고 있다. 세번째 가로띠 모티브에는 성모마리아와 요한 성인의 사이에 심판자가 있다. 성모마리아와 요한 성인은 무릎을 끊고 인간들을 위해 중재를 하고 있으며 양쪽에는 천사들이 수난의 도구들을 들고 있다. 네번째 가로띠 모티브에서 합각벽의 맨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각형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의 입속에서 두 자루의 검이 나오고 있고(요한 목시록) 그의 양쪽에서 두 천사가 각각 태양과 달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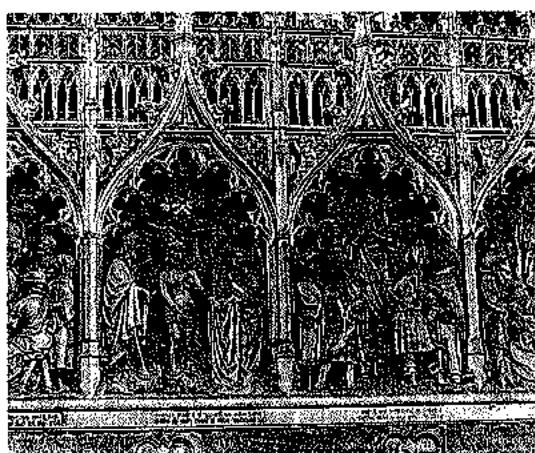
또한 물매지게 깍은 문틀이 포함된 아치형의 여섯줄에 합각벽의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오른쪽에는 천국의 장면들이 있다. 특히 그의 가슴 속으로 선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고 왼쪽에는 지옥의 장면으로 큰 가마솥, 활을 쏘는 악마, 요한 목시록의 말들과 같이 악인들이 받는 벌이 묘사되어 있다. 여섯번째 줄 전체는 천사들, 순교자들, 고해 신부들, 성녀들과 구약 성서의 족장들로 승리의 교회를 묘사했다.

#### (5) 등모양의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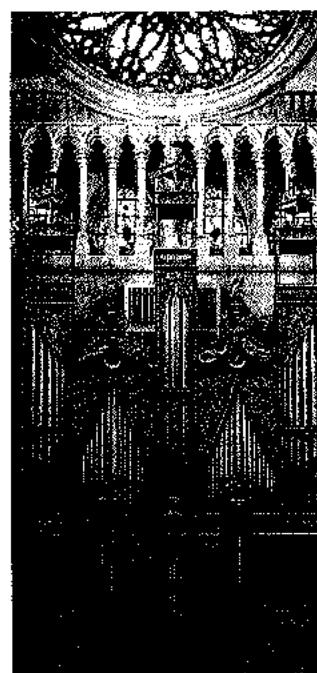
구세주의 문은 대형 입상의 받침 아래를 장식하고 있는 등 모양 장식의 예술적 가치와 작품제작의 질에서 또 한번 방문객의 주위를 끈다. 등 모양의 장식은 일반적으로 우스꽝스럽고 괴상한 자태의 어린애 얼굴을 하고 있다.

#### 4-1-2 성모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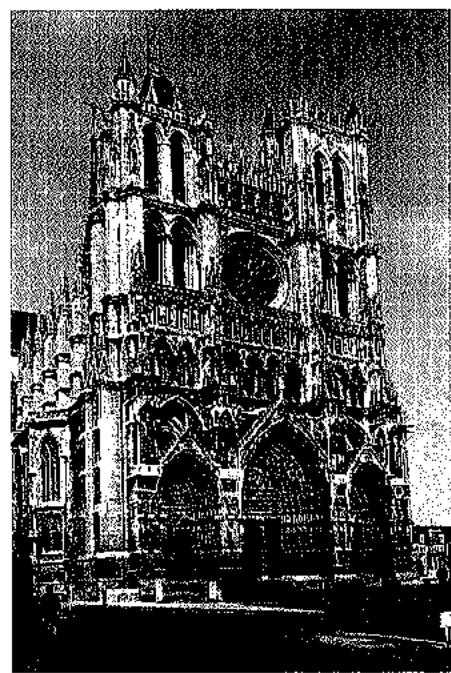
문사이의 가운데 벽에 아기예수(아기예수의 머리는 현대식으로 복원되었다)를 안고 있는 성모마리아의 입상이 있다. 입상의 자세는 엄숙하고도 고정되어 있으며 얼굴표정은 표현력이 빈약하다. 그러나 곧 남쪽 익랑의 정문에 있는 성모마리아의 금빛 입상과 성모의 문에 있



세례자 요한의 생애



대형 파이프 오르간과 그늘



서쪽 정면과 대형 정문

는 이 성모 마리아의 입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성모마리아는 여자의 머리를 한 뱀을 발로 짓누르고 있다. 그 아래 받침돌 위에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남자의 창조, 여자의 창조, 선악과 먹는 것을 금함, 아담과 이브가 금한 것을 위반하고 지상의 낙원에서 쫓겨남, 일을 하는 아담과 이브가 묘사되어 있다.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매우 아름다운 열두 점의 대형 입상들은 성모마리아의 일생의 이야기이다. 방문객의 오른쪽에 있는 문에서부터 각각 두점의 입상이 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성모 영보, 성모의 엘리사벳 방문, 신전에서 예수를 봉헌함이 묘사되어 있다. 왼쪽에는 맨먼저 세 동방박사,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헤로데, 맨비같쪽에 있는 입상은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다. 토대의 사열편들은 그위의 입상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과 관계있는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신전에서 예수를 봉헌하는 장면 아래에 이집트로의 도피와 학자들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고 세 동방박사 아래에는 죄없는 아기들의 학살이 있다.

합각벽은 세 부분의 가로띠 모티브로 되어 있다. 맨 아래 가로띠 모티브는 구약성서의 여섯 인물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이며 가운데 가로띠 모티브는 성모 마리아의 죽음과 승천 그리고 마지막 맨 윗쪽의 가로띠 모티브는 성모마리아의 대관식이 묘사되어 있다. 물매지게 깎은 문틀이 포함된 아치형 출 속에는 천사와 유대의 왕들 그리고 성모마리아의 조상들이 조각되어 있다. 여기서 정면의 북쪽 부분을 점유한 문으로 다시 가서 세 정문 사이에 있는 4개의 부벽의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열 두점의 입상들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이 부벽들 각각의 정면에는 세 점의 입상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열두 점의 입상이 있다. 성모의 문이 있는 오른쪽 맨 끝에서부터 피르멩 성인의 문이 있는 왼쪽 끝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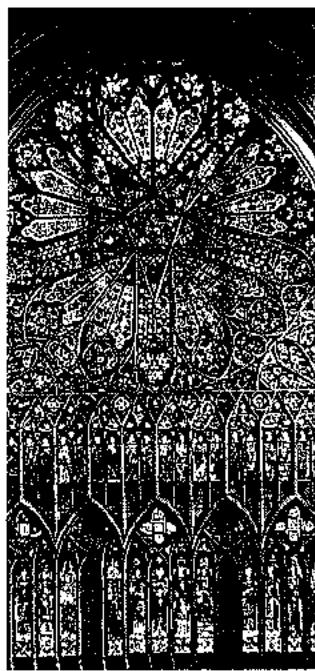
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오바디야, 요나, 미가—나훔, 하바ブ, 스바니야—하께, 즈가리야, 말라기 순으로 일렬로 서 있다. 그들 가운데 두 입상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나훔과 하께가 입상으로 나훔의 머리치장과 머리 뒤로 묶은 긴 수염이 물만하고 하께 얼굴의 사실적 묘사가 특이하다. 이 입상들 아래에도 역시 사열편이 있는데 각각의 주제는 이 예언자들, 그리고 그들의 생애와 관계 있다. 예를 들면 고래 속에서 나오는 요나가 그것이다.

#### 4-1-3 피르멩 성인의 문

성모의 문과 상응하는 것으로 문사이의 벽에는 아미앵의 초대 주교의 아름다운 입상이 있다. 이 입상은 아름다움에서 “선한 하느님”的 입상과 벼금간다. 이 입상의 아래에 있는 저부조는 오래전부터 파손정도가 매우 심하여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며 한번도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 양쪽에 여섯 점씩 있는 입상들은 피르멩 성인에게 줄지어 가고 있는 모습으로 아미앵 교구의 성인 대부분을 묘사해 놓았다. 방문객의 오른쪽 부터 보면 6세기 아미앵의 주교였던 고해신부 피르멩 성인, 부제였던 도미스(Domice)성인, 주교, 순교자였던 휴시앵(Fuscien)성인, 고해신부였던 바르루스(Warlus)성인, 고해신부였던 럭소르(Luxor)성인의 순서이다.

왼쪽에는 6세기 아미앵의 주교였던 오노래(Horore)성인, 향로를 반드시 천사, 아쉬(Ache)성인과 아체르(Acheul)성인(그들은 순교의 기념으로 그들의 손에 머리를 들고 있다), 천사와 울프(Ulphe)성인의 순서로 있다.

이 입상들 아래에 있는 사열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으로 같은 시대에 같은 테마로 제작된 다른 성당의 사열편들 보다 훨씬 아름답다. 웨줄에 있는 사열편들은 삼이천궁에 따른 달을 표현하고 있고 아랫줄에 있는 사열편들은 그 달에 하는 노동을 표현하고 있다. 문에서부터 방문객의 오른쪽으로 12월(염소자리, 돼지도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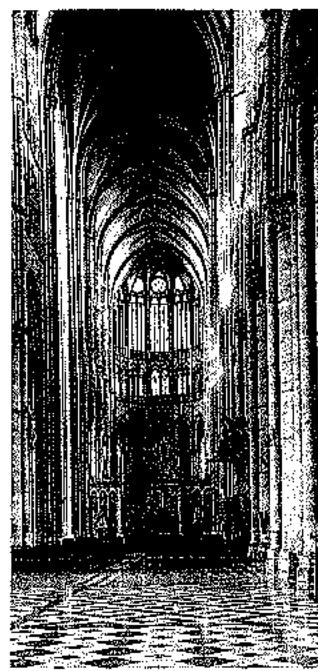
북쪽 의랑의 원화창



벽날개



남쪽 후진 주위의 회랑



중앙회중서

기), 1월(물병자리, 두 머리를 가진 신인 야누스가 식탁에 있음), 2월(물고기자리, 물고기를 구우면서 몸을 덥히는 사람), 3월(백양자리, 포도밭에서 노동), 4월(황소자리, 새사냥), 5월(쌍둥이 자리, 꽃나무 두 그루 사이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문쪽으로 와서 원쪽으로 6월(게자리, 풀베어 말리기), 7월(사자자리, 수확), 8월(처녀자리, 도리깨질을 하고 있음), 9월(천칭자리, 과실의 수확), 10월(전갈자리, 포도압착하기), 11월(사수자리, 파종하기)이 묘사되어 있다. 합각벽은 역시 세 부분의 가로띠 모티브로 되어 있다. 맨 아래 가로띠 모티브는 단정치 못한 자세로 앉아 있는 여섯명의 주교들, 가운데 가로띠 모티브는 페르맹 성인의 시신의 발견, 맨 위쪽 가로띠 모티브는 페르맹 성인의 시신을 아미앵으로 옮겨오기가 표현되어 있다. 문에서 가장 가까운 불매지게 깍은 문틀의 아치형 세줄에는 인물들을 조각해 놓았는데 천사와 두 주교를 볼 수 있다.

#### 4-1-4 정면의 윗층

세 정문 위층에는 두 주랑이 있으며 첫번째 주랑에는 트리포리움에 해당하는 창문이 있다. 한가운데 중앙박공의 꼭대기에는 나팔을 부는 천사가 있다. 이것은 근대에 제작되었다. 두번째 주랑은 왕들의 주랑으로 불리며 약 4m높이에 달하는 입상 22점이 있다. 보통처럼 프랑스의 왕들을 묘사했다. 그 위쪽에 16세기의 대형 원화창이 있다. 대형 원화창 위에 조각된 배내기는 현재 13세기의 정면 건축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대형 원화창의 위쪽에서 두 탑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높은 주랑은 건축가 비올레 르 뉴이 복원한 턱택이다. 게다가 이 두 탑의 꼭대기는 19세기에 여러번 보수를 했다.

#### 4-2 북쪽 측면

모퉁이를 돌면 북쪽 측면에 있는 두 작은 제단의 외부에 위치하게 된다. 이 두 작은 제단과 건축물의 모퉁이

를 형성하고 있는 부벽은 라그랑쥬(La Grange) 초기경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된 것이다. 셋씩 그룹을 진 아홉 점의 입상이 수평적으로 정렬해 있다. 이 입상들은 14세기말(1375)의 프랑스 조상술의 걸작품들로 유명하다.

여기서 처음으로 대성당의 입상들을 왕이 아닌 역사적 인물로 표현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계급에 따라 위치해 있는 입상을 살펴보면

- 첫번째 줄 : 성모마리아, 세례자 요한, 페르맹 성인
- 두번째 줄 : 샤를르(Charles)5세, 그의 아들(후일 샤를르 6세가 됨), 두번째 아들 루이 도플레앙(Louis d' Orleans)

- 세번째 줄 : 라 그랑쥬 초기경, 샤를르 5세의 시종 장인 뷔로 드 라 리비에르(Bureau de la Riviere), 알려지지 않은 평신도가 묘사되어 있다.

조금 멀리 북쪽 익랑의 정문쪽으로 보면 더 오래된 네 점의 입상이 있다. 먼저 왕의 옷차림인 루이(Louis)성인, 그의 위쪽에 주교 기욤 도 마퐁(Guillaume de Macon), 더 위쪽으로 아네스 성녀와 카타리나 성녀가 있다.

북쪽 측면의 문에는 입상이 거의 없고 문사이의 벽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띤 주교의 대형 입상이 있다. 이 작품은 아미앵의 주교 오노래(Honore)성인으로 13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4-3 남쪽 측면

남쪽 측면을 들려보기 위해서는 탑모퉁이로 가서 익랑 쪽으로 올라가면서 코르몽(Cormont)거리를 따라 가야 한다. 첫번째 부벽위에 해시계가 눈에 띠고 그 위쪽으로 날개를 편 천사가 있다. 지면에서 약 1.8m 높이의 돌 속에 큰 쇠갈고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밤이 되면 길을 막던 사슬을 걸기 위해 사용되었다. 크리스토프(Christophe)성인의 문에 이르면 문위쪽 박공의 원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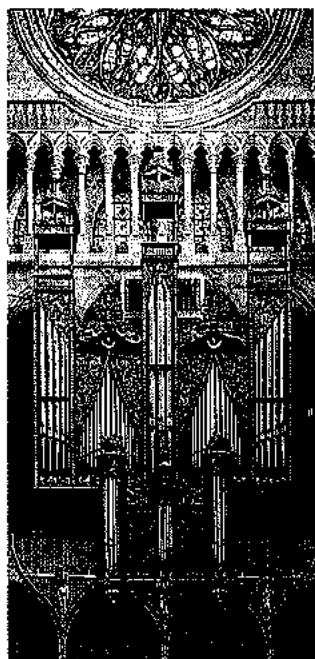
건립자 에브라르 드 주이우아의 황화상



페르맹의 성인의 문의 사열편:  
천칭자리(13세기 제작)



금빛 성모입상



파이프 오르간

과 오른쪽에 주교와 평신도를 나타내는 두 입상이 있다. 평신도 입상은 매우 훼손되어 있다. 두 입상은 빠찡 데리스탈(Pepin d' Heristal)과 탕베르(Lambert)성인으로 빠찡 데리스탈의 잘못된 행실을 비난했던 탕베르를 상기시킨다. 그 옆으로 아기예수를 어깨에 올리고 있는 크리스토프(Christophe)성인의 입상이 있다. 남쪽 측랑의 첫번째 작은 제단은 탕베르 성인에게 봉헌되었고 두 번째 작은 제단은 크리스토프 성인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두번째와 세번째 작은 제단의 가운데 있는 사이 벽에서 아래쪽에는 성모영보를, 위쪽에는 대천사 미카엘과 라파엘을 볼 수 있다. 조금 멀리 중첩된 세 그룹의 입상들이 있다. 맨 위쪽에는 소금통 속의 세 어린이와 함께 니콜라(Nicolas)성인의 입상이 있고 가운데에는 무엇인가로 가득찬 가방 주위에 두 명의 인물입상이 있다. 두 사람은 프랑스에 인디고(염료의 일종으로 양람이라고 함)가 들어오기 전에 푸른 염색약으로 쓰였던 염색용 식물 Waide의 상인이다. Waide는 아미앵 부근에서 많이 재배되던 식물로 매우 중요한 상업용품이었다. 게다가 계시판에는 “Waide를 팔던 아미앵 부근의 선량한 사람들이 기부하여 작은 제단을 짓게 되었다.”고 알리고 있다. 이것은 외부에 조각으로 표현된 작은 제단의 기증자들의 유일한 예가 된다. 맨 아래에는 부릎을 꿇은 두 인물이 있는데 이들은 니꼴라 성인을 수호성인으로 모셨던 Waide상인 조합의 우두머리들을 나타낸다. 계속 가면 몇몇 입상을 더 볼 수 있고 그중 세 입상들은 예수의 현성용과 마꽁(Macon)의 기욤(Cuillaume)주교를 표현하고 있다.

#### 4-3-1 금빛 성모의 문

만일 일반적인 건축과 장식 부분에서 대성당 공사의 처음 시기로 거슬러가 보면 중앙입상과 합각벽은 1260-1270년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매지게 깍은 문틀 속 원쪽과 오른쪽에 위치한 여덟 점의 입상은 건축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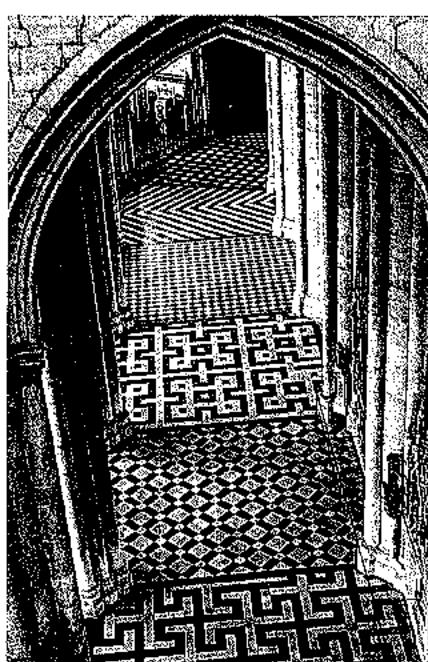
의 것이다. 정면의 입상들이 더 최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입상들은 정면의 입상들보다 더 가치가 없다. 반대로 입상을 받치고 있는 어린애 얼굴의 등모양 장식들은 매우 아름다워서 구세주의 문의 등 모양 장식들과 비교할 만하다. 두 토대는 매우 아름다운 소벽(장식띠)으로 강조하고 교차된 반원형 아치의 형태를 한 홍예문 모양으로 장식했다. 같은 시기의 것으로 중앙입상의 아래 있는 분사이의 벽에는 미사물품을 가지고 있는 주교와 신부들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있다. 중앙의 입상을 제외하고 합각벽과 아치형 출 속에 있는 조각들은 두번째 시기에 속하는 것이다.

금빛 성모상은 성모의 문에 있는 성모상과 매우 다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외모는 매우 부드럽고 몸무게는 한쪽 나리에 실려 있으며 상반신이 기울어져 있다. 매우 섬세한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로 생기가 돈다. 머리는 큰 왕관으로 장식했고 가벼운 베일이 둘러져 있다. 뒤에는 세 아기 천사들이 가장자리에 주름장식이 있는 후광을 들고 있다. 이 작품은 순수한 걸작품이다. 불행하게도 금빛 성모상은 자동차 배기 가스가 일으키는 대기오염으로 내려놓아야만 했다. 지금은 내부의 한 작은 제단에 있으며 문에는 복제품으로 대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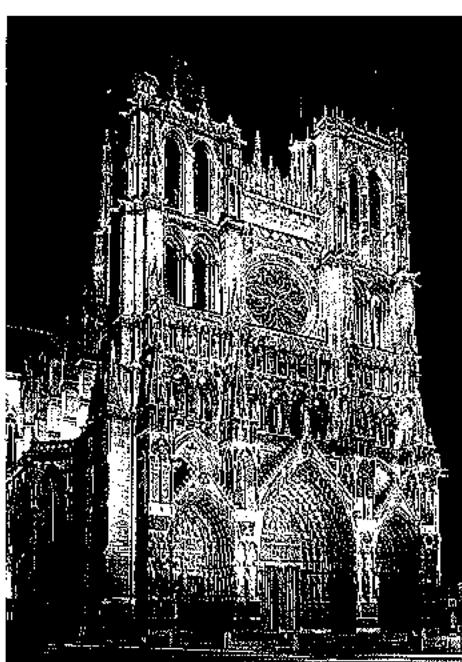
합각벽을 보면 정면의 합각벽보다 훨씬 유연하고 생기가 있다. 다섯 부분의 가로띠 모티브로 나누어져 있다. 맨아래 가로띠 모티브는 열두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흘어지기 전 사도신경을 외고 있는 순간으로 둘씩 짹지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로 젖혀진 모자를 쓴 자끄 성인을 알아 볼 수 있다. 이 유명한 입상들은 매우 완벽하게 제작되었으나 13세기 후반의 프랑스 입상술에서 걸작품에 속한다. 두번째 가로띠 모티브에서 왼쪽은 오노레(Honore)성인이 주교가 된것을 묘사했고 오른쪽은 아미앵 가까운 생(Sains)에서 세 순교자 휴시앵(Fuscien), 빅토리스(Victorice)와 쟁티앵(Gentien)성인의 유골을 발견한 것을 표현했다. 세번째



성직자석 고백(16세기 제작)



후진주위화랑의 바닥 포석



서쪽 정면의 물려진 모습

가로띠 모티브에는 오노래 성인이 미사집전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그의 무덤위에서 치유된 것을 나타내었다. 네번째 가로띠 모티브는 오노래 성인의 유골의 거동을 나타낸다.(주 : 거동은 종교상의 엄숙한 행렬을 말함), 다섯번째 가로띠 모티브에서는 성당의 십자고상이 성골함을 지나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표현했다. 양쪽에는 성모마리아와 요한성인 그리고 향로를 받드는 두 천사가 있다. 아치형의 네 줄을 서쪽 정면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아치에서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 작은 그룹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매우 아름답게 처리되어 있다. 여기서는 구약성서의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 문의 위쪽에 있는 원화창 둘레에서 17줄의 꽃 모양의 장식을 한 “인생의 유위 전변”을 볼 수 있다. 꽃모양 장식의 내부 각각에는 저 부조로 된 인물들이 있다. 위쪽 인물들의 모습은 아치의 정점을 향하여 기어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오른쪽 인물들은 반대로 아래로 향하여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박공의 뾰족탑과 입상들은 19세기에 모두 새로 제작되었다.

#### 4-4 후진과 뾰족탑

내진쪽으로 건물을 따라가면 먼저 벽널개가 눈에 띈다. 이 벽널개는 압력을 바꾸는 수직부벽에 기대어 있다. 또한 가장 큰 중앙의 작은 계단들과 함께 방사상의 작은 계단들도 감상 할 수 있다. 후진에서 뾰족탑을 쳐나보면 건축물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 건축된 이 뾰족탑은 나무에 납을 입힌 것으로 중간 층에는 입상 여덟 점으로 장식했다.

### 5. 내부

중앙회중석으로 들어가서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특별석 아래에 서면 넓은 공간과 밝음으로 인해 매우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건물의 규모 자체에서 내부 공간이

매우 넓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가능한한 벽을 줄이고 중앙 회중석의 넓은 창문들 사이에는 가느다란 원주만 있으며 트리포리움이 내진둘레에 있기 때문에 내부는 매우 밝다.

#### 5-1 스테인드 글라스

아미앵 대성당에는 옛날 스테인드 글라스는 아주 적다. 제일차 세계대전 때 까지도 남아 있던 스테인드 글라스는 세척하기 위해 파리에 있는 유리제품 상인에게 맡겼으나 화재로 거의 파괴되었다.

##### 5-1-1 서쪽 정면의 장미창

16세기 초에 회반죽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한 이 장미창은 원래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 5-1-2 남쪽 익랑의 장미창

남쪽익랑의 두 주랑 만큼이나 매우 훼손되어 많이 손질했지만 이 장미창은 배내기의 상인방의 돌출부분에 15세기 말에 제작한 천사의 조상을 간직하고 있다.

##### 5-1-3 북쪽 익랑의 장미창

이곳도 남쪽 익랑과 마찬가지로 두 주랑은 많이 손질했다. 그러나 장미창은 정확히 말해서 14세기 제작된 스테인드 글라스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전 까지도 남아있던 아름다운 푸른빛이 대부분 소실되었다.

##### 5-1-4 내진 중심의 높은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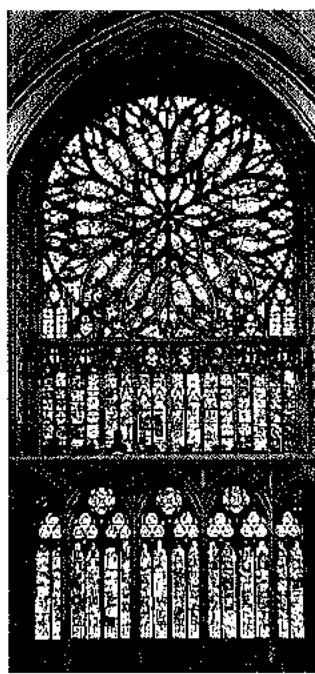
13세기에 제작된 이곳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고 1269라는 연도의 표시는 건축물의 이 부분이 완성된 시기를 말해준다.

#### 5-2 중앙 회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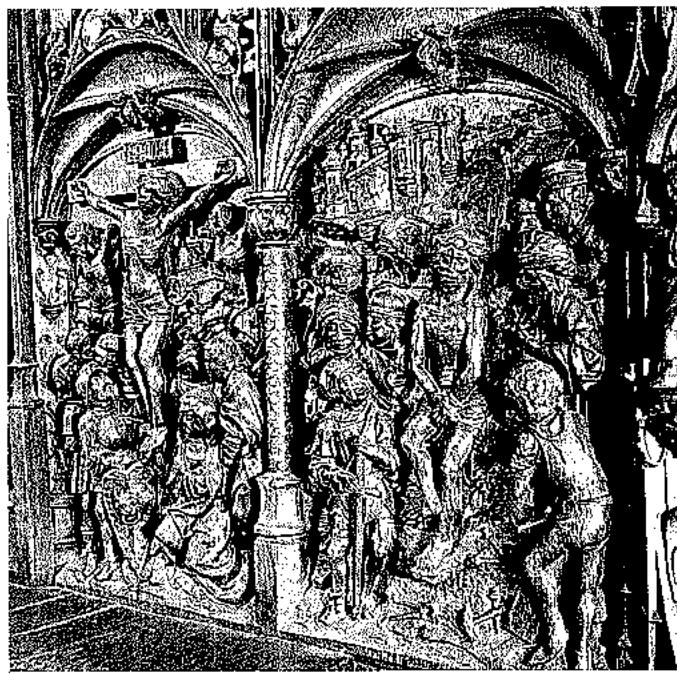
두번쩨와 세번쩨 트라베(지주사이의 공간)의 기둥들



좌우 익랑의 교차점의 궁륭



남쪽 익랑의 원화창



성직자석: 그리스도의 책형(16세기 제작)

사이에 대성당의 초석을 놓았던 에브라르 드 푸이아우(남쪽)와 그의 후임자 제오프루아 데(Geoffroy d' Eu)의 청동 무덤이 있다. 이 두 작품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용해된 모든 청동 작품들을 합쳐도 이것에 버금가는 작품이 없을 정도의 걸작품으로서 각각에는 고인을 찬양하는 중간문 시구의 라틴어 비명이 새겨져 있다. 중앙회중석에 있는 가운데 포석에서 조금 위쪽을 쳐다보면 대성당 공사 시작날짜와 통치했던 왕들의 이름, 설립자인 주교의 이름 그리고 장인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으로 된 띠를 발견할 수 있다. 남쪽 축랑의 작은 계단들을 따라 계단가면 1773년 제작된 설교단을 보게 된다.

### 5-3 남쪽 익랑

남쪽익랑의 오른쪽 움부분에서 다색의 조각들을 볼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예술적인 면에서 주목할 만한 본보기가 된다. 1511년에 제작된 것으로 플랑브와 양 양식의 흥예문 모양 장식 아래 네 그룹의 조각들이 있으며, 헤르모제네(Hermogene)와 그의 제자 필레튀스(Philetus)가 자끄성인에게 설득당하여 개종을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아미앵의 조각가 블라쎄(Blasset)가 조각한 현대리석의 저부조 작품들로 위를 장식한 8점의 검정 대리석판이 있다. 저부조 작품들은 성모마리아의 일생을 표현한 것이며 검정 대리석판에는 플랑드르에 있었던 같은 종류의 조합을 모방하여 14세기에 창립한 푸(Puy)의 노트르 담(Notre-Dame)협회의 1389년부터 1729년 까지의 장인들의 이름과 좌우명들이 새겨져 있다. 정문의 오른쪽에는 18세기에 나무로 제작한 아름다운 두 고해실이 있다.

### 5-4 좌우익랑의 교차점과 성직자석

건물의 중앙이며 뾰족탑의 아래에서 정면의 대형 원화

창을 바라보면 대형 원화창 아래 16세기에 제작된 대형 파이프 오르간의 틀이 눈에 들어온다. 파이프 오르간은 15세기에 건립된 매우 독창적인 특별석에 놓여 있다. 내진쪽으로 몸을 돌리면 코르비(Corbie)의 한 장인이 제작한 철물 걸작품으로 1755년에 허문 내진과 본당 사이의 높은 주랑대신 1761년부터 이곳에 설치된 화려한 출입 그릴이 눈에 뛴다.

그 뒤에 내진의 삼면을 차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직자석들이 있다. 총 110석인 작품은 1508년 7월 3일 제작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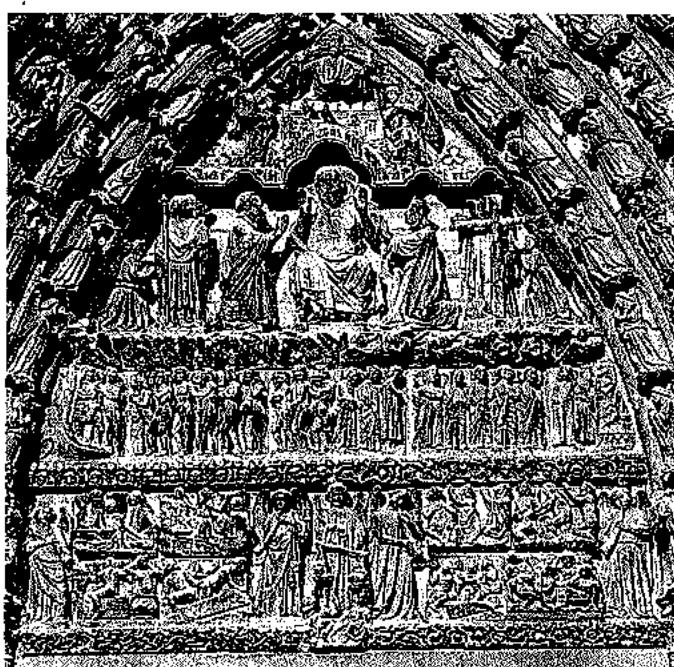
출입 그릴의 양쪽에 올려져 있는 피라미드는 규모가 크고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한쪽 피라미드는 왕을 위해서 또 다른 한쪽 피라미드는 성당 참사회장을 위해 준비되었다. 본래는 백합꽃으로 장식되어 있던 문설주는 프랑스 대혁명 때 제거되어 1814년 재설치했으나 1831년 새로이 제거되었다. 피카르디(Picardie)지방의 고고학자 협회의 발의로 몇년전 부터는 문설주의 본래의 장식을 없앴다.

나무조각과 목공술의 걸작품인 아름다운 성직자석은 역사적 기념물 보존 협회의 승인을 받은 책임자의 안내 하에서 단체로만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세하게 묘사하기가 어렵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면들은 주로 구약성서 중에서 특히 요셉의 이야기와 성모마리아의 생애를 표현하고 있다.

### 5-5 내진 주위

#### 5-5-1 피르멩 성인의 이야기

오른쪽으로 부터 내진을 돌면 얼마 안가 계단으로 오르게 되고 왼쪽 즉 성직자석의 뒤쪽이며 내진의 간막이가 시작되는 곳에서 다색 부조를 볼 수 있다. 남쪽 익랑에서 이미 보았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배치된 다색 부조는 남쪽 익랑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아름답다. 1490년에 제작된 네 벽감은 참사회의 사제장인 아드리



중앙정면의 합각벽: 마지막 심판



성직자석:바벨 탑의 건축(16세기 제작)



성직자석:형제들에 의해 팔려가는 요셉

앵 드 애낭꾸르(Adrien de Henencourt)가 건립한 것으로 그의 삼촌이자 아미앵의 주교로 1473년에 죽은 페리드 보부아르(Ferry de Beauvoir)의 죽음이 묘사되어 있다. 그 아래에 있은 큰 수평 벽감 속에 그의 횡화상이 있다.

벽감에는 피르맹 성인의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다. 첫 번째 벽감에서 무릎을 끊은 기증자와 피르맹 성인이 아미앵에 들어온 것이 묘사되어 있다. 두번째 벽감은 강론하는 피르맹 성인. 세번째 벽감은 세례를 주는 피르맹 성인. 네번째 벽감은 성인의 체포당함과 그 옆에서 그의 참수 당함이 묘사되어 있다. 약 반세기 후에 제작된 다섯번째에서 여덟번째까지의 벽감들에는 피르맹 성인의 시신을 찾기 위해 아미앵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도록 하는 솔브(Saulbe)성인. 시신이 있는 곳을 가르키는 하늘에서 내려온 빛, 순교자 유골의 발굴, 피르맹 성인의 유골을 아미앵으로 옮겨오는 순서로 표현되어 있다. 아드리앵 드 애낭꾸르의 횡화상 주위에 있는 13점의 사열편에는 피르맹 성인이 아미앵으로 오기 전의 생애 중 특히 두드러진 사실들이 묘사되어 있다. 전체 속에서 15세기와 16세기의 아미앵시에 대해 매우 귀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네번째 벽감에서 그 당시의 대성당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진 밖을 따라가면서 18세기에 제작된 로코코식의 화려한 그릴을 감상할 수 있다. 오른쪽에 있는 작은 제단 깊숙히 제의실로 통하는 문이 있다. 여기서 1506년 제작 당시 매우 아름다웠을 그림들의 자취를 볼 수 있다. 또 서쪽의 두 트라베에서 그 당시 그리스도의 도래를 알리는 여자예언자들을 볼 수 있다.: 아그리파(Agrippa), 리비고(Libyque), 와롭(Europe), 페르시끄(Persique), 프리지엔느(Phrygienne), 에리트레(Erythre), 쿠만(Cumane), 티부르틴(Tiburtine)의 무덤이 있다. 그 다음으로 건축물의 대칭축에 위치한 작은 제단으로 성모마리아에게 봉헌된 곳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곳보다 더 깊숙한 이 작은 제단에는 14세기의

주교 시몽드 공상(Simon de Savoie)의 무덤이 있다. 복원된 두 무덤의 토대위에 눈을 흘리는 작은 입상들이 있어 매우 흥미롭다. 그 다음으로 주제단의 뒤에서 참사위 원 지슬랭뤼가(Ghislain Lucas)의 묘석과 1402년 생을 마친 추기경 라 그랑쥬(La Grange)의 이름다운 흰 대리석 횡화상을 볼 수 있다. 18세기에 내진에 그릴을 설치할 때 추기경의 묘를 없애고 그 후 이곳에 그의 횡화상을 놓았다.

후진 주위의 회랑에는 북쪽이랑으로 가기전 오른쪽부터 보면 1257년에 생을 마감한 아미앵의 주교 제라르를 꽁쉬(Gerard de Conchy)의 무덤이 있다 그의 횡화상은 처리솜씨가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작품의 얼굴부분은 마치 초상화 같다.

### 5-5-2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

피르맹 성인의 생애와 비교해서 대칭적인 것으로 여기서는 세례자 요한 성인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들을 여덟점의 대형 벽감속에 서술해 놓았다.

1531년에 제작했으며 모두 전형적인 풀랑브와양 양식이다. 기증자는 알 수 없으며, 좌우익랑의 교차점 가까이에서부터 전개된 이야기를 보면, 첫번째 벽감에는 황야에서 전도하는 세례자 요한, 두번째 벽감에는 요르단강에서 그리스도의 세례, 세번째 벽감에는 그에게 누구인가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답하는 세례자 요한, 네번째 벽감에는 그리스도를 치적하는 세례자 요한이 묘사되어 있다. 다섯번째 벽감에는 헤로데를 비난하는 세례자 요한이 구속되어 있는 장면이 있고 여섯번째 벽감에도 헤로데의 잔치와 살로메의 춤이 표현되어 있다. 일곱 번째 벽감에는 세례자 요한의 참수가, 여덟번째 벽감에는 순교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칼로 찌르는 헤로디아의 복수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각 작품의 아래에는 두줄의 새겨진 글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15점의 사열편이 있으며 즈가리야의 환영에서부터 요한



성직자석: 아브라함의 회생



정면의 문들 아래에 있는 사열편



성직자석: 성모마리아의 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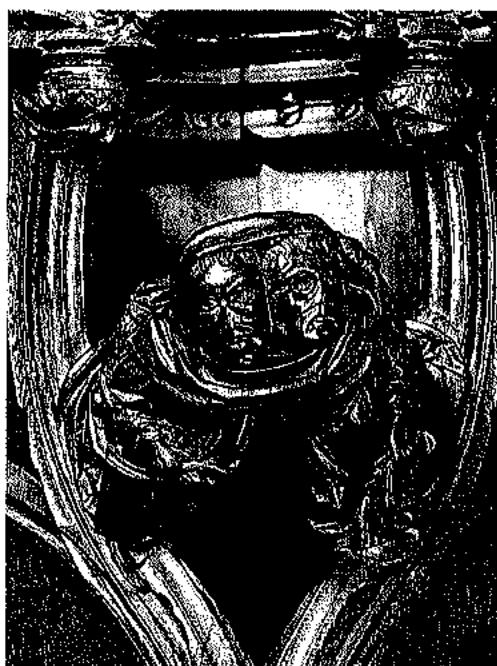
성인의 머리를 아미앵에서 받아들이기 까지 세례자 요한에 관계되는 에피소드가 전개되어 있다.

## 6. 맷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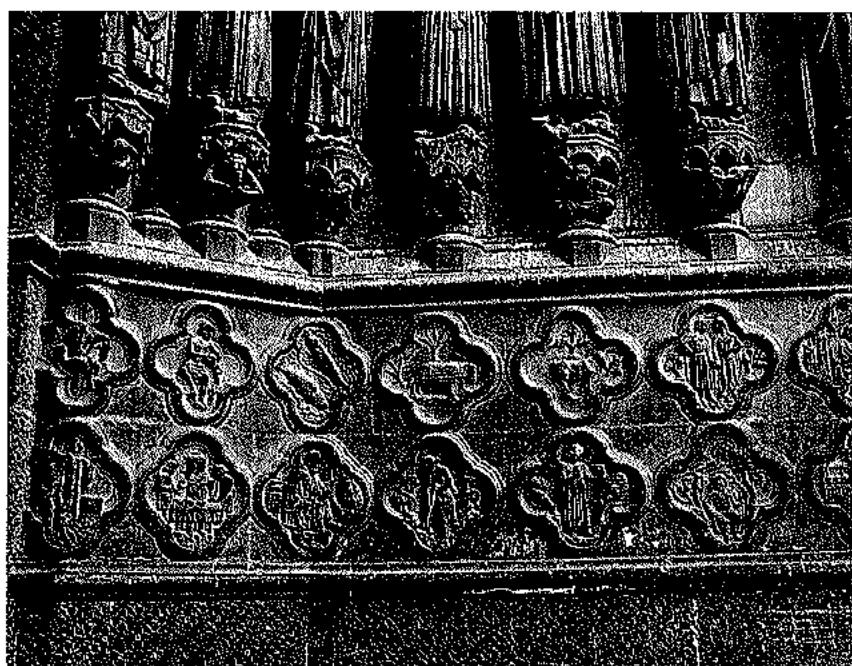
소개된 아미앵성당은 랭스의 성당과 함께 프랑스 고딕 양식중에서 대표적인 건축이라 할 만큼 고딕성당건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미앵 성당의 모든 요소들의 비례는 랭스성당보다 더 세장하고 평면은 사르트르 성당을 모방하였지만 그 비례에 있어서는 더욱 우아하다 할 수 있다. 정면은 표면장식의 풍부함과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기념적인 장대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 있는 건물본체와 완벽하게 통합되어져 있는 최초의 성당이다. 그러나 다른 성당과 비교해볼 때 성당의 외관이 완전히 성공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반면 대성당의 중앙회증석과 내진은 창이 넓고 후진의 방사상의 작은제단들에 유리창이 많아 매우 밝은 것이 건축가들의 의도를 엿보이게 한다. 대성당의 서쪽 정문 조각들은 13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이보다 20년 또는 30년 후의 작품인 랭스 (Reims)의 조각들보다 단순하고 평이하다. 이곳에서는 성모마리아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평화의 영광송을 읽을 수 있으며 정문의 입상들과 상인방은 간단한 종교적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훌륭한 조각

작품으로는 성모 마리아의 입상, 성인들, 천사들, 예언자들의 입상이 있으며 약간 둑직한 코, 미소를 뛴 생기 있는 입 등의 얼굴 형태로 조각가의 솜씨를 표현했다. 선한 하느님과 왼쪽 정문의 피르멩 성인을 제작한 조각가는 그 당시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간결하고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남쪽 정문의 금빛 성모입상은 랭스의 조각술과 미소 뛴 천사의 조각가를 상기시킬 뿐이다. 완벽하게 배열된 서쪽 정문과 문상부의 아치, 합각벽, 토대의 조각들은 마지막 심판, 성모마리아의 일생, 아미앵시의 수호 성인들의 일생, 인간의 삶을 축소시킨 모습과 하느님의 법이 지배하는 우주의 모습인 달과 계절, 노동과 자유예술의 신비 등이 표현되어 있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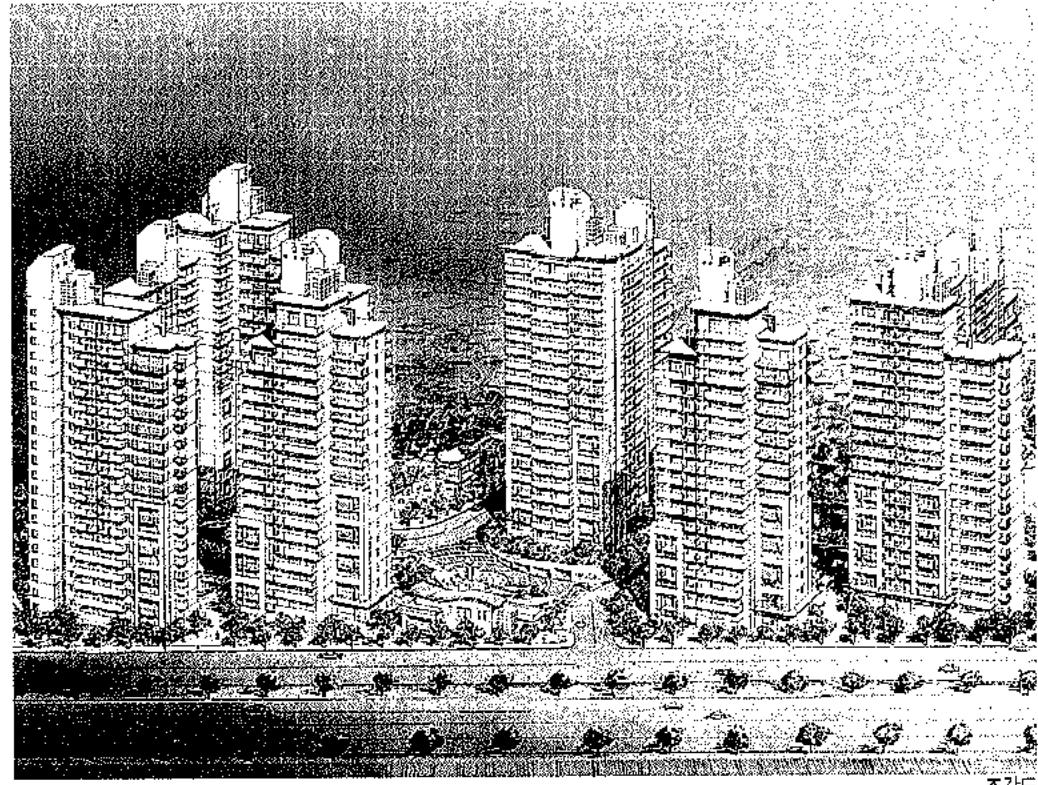
아미앵시는 성당건물을 전립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다른 지역의 성당들처럼 많은 시련을 겪어왔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창하여 18세기에는 프랑스 북부 상업도시의 중심역할을 했고 시민들의 세력이 막대하여 혁명정부는 그들의 법을 강요할 수도 없었고 대성당에도 더이상 손상을 주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공업중심 도시로 매우 활기찬 아미앵시는 대성당을 제외하고는 볼거리가 별로 없으나 대성당의 “선한 하느님”은 행인보다 주차된 차가 많은 인적 드문 곳에서 축복을 하고 있다.



상작자석 한 모자속의 두 머리  
(주:언제나 의견이 같은 두 사람을 의미한다)



정면의 문들 아래에 있는 사열편



조감도

# 대구 이천지구 아파트

Taegu-shi Icheon Apartment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구 이천지구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재생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 총9개 작품이 응모한 결과 무영건축(손광민)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담건축(맹준호)안이, 가작으로는 신한건축(최경일) 안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무영건축(안길원+손광민)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2동  
121-69번지 일원

대지면적 / 15,676㎡  
건축면적 / 2,882.53㎡  
연면적 / 60,456.61㎡  
건폐율 / 18.38%  
용적률 / 302.33%  
계획담당 / 주창학, 최대성, 조영선, 김영훈,  
김영우, 최정봉, 주경호, 박은경, 김  
경순, 이미애, 차병철, 임창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근대화와 산업화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능률성 위주의 개발정책의 일괄적인 시행에 따라 삶의 질과 연관되는 그 지역의 지역특성에 따른 커뮤니티(Community)의 재구성에 관한 문제는 항상 등한시하여 온 것이 현재의 도시·건축계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기존에 살고있던 삶의 터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재생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거주민과 이주자간의 근린의식(Neighborhood)증진에 의한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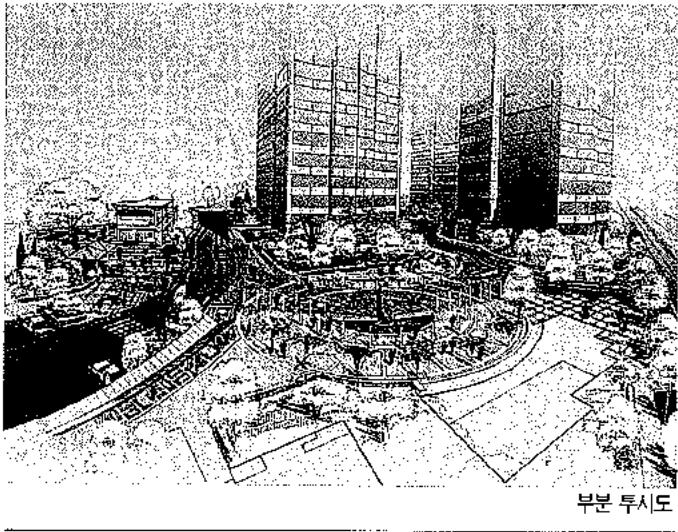
(Community)의 재구성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제시된 대구 이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현상설계 공모안은 새로운 개념의 주거단지 설계적용 요소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참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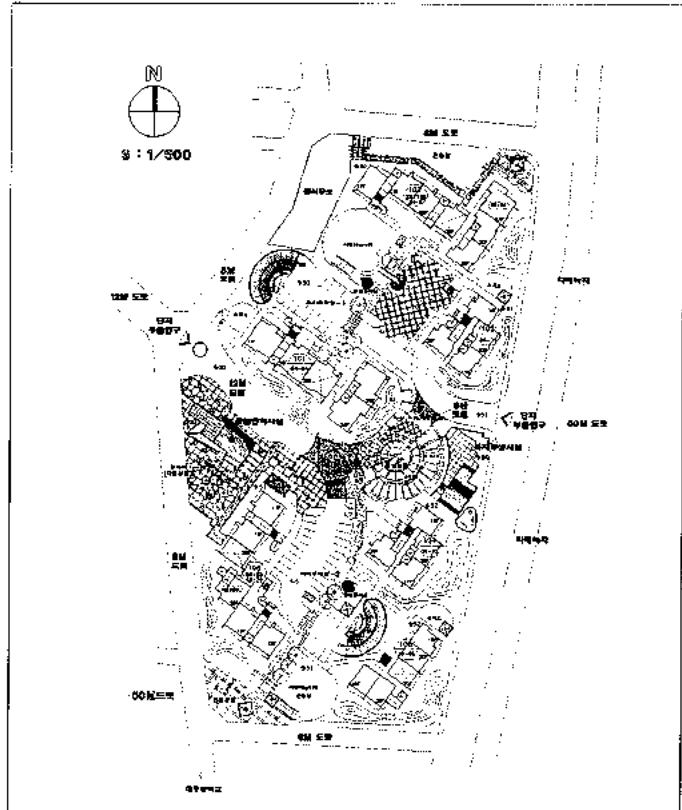
무엇보다 기존 거주민과 이주자가 상호 조화되는 커뮤니티(Community)개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단지 중심부에 구심적인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Community)시설의 집약적인 배치와 주거동의 배치에 의해 구성된 개방된 오픈스페이

스(Open Space)를 보행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커뮤니티(Community)시설을 체계화 하였다. 또한 주변도로와 도시기반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선 및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하였고 특히, 단지 동측의 35m 순환도로에서의 경관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순환도로변에 Tower형을 배치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조망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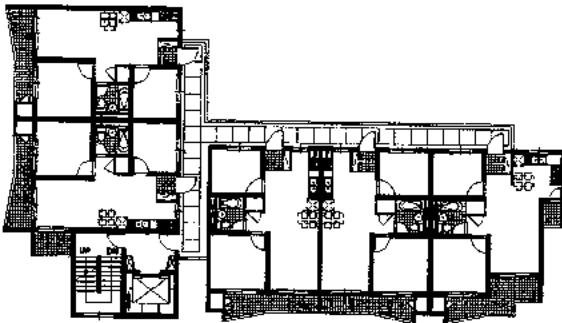
동선계획은 보도와 차도의 분리를 기본목표로 단지의 남북을 연결하는 강한 보행축을 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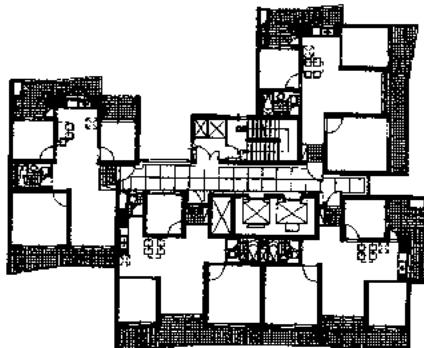
부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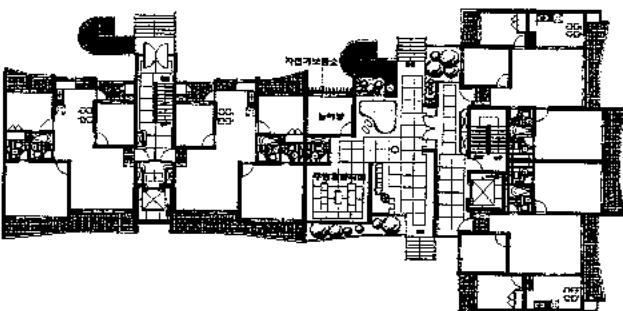
종합계획도



15평 타워형 기준층



18평 타워형 기준층



25평 절곡형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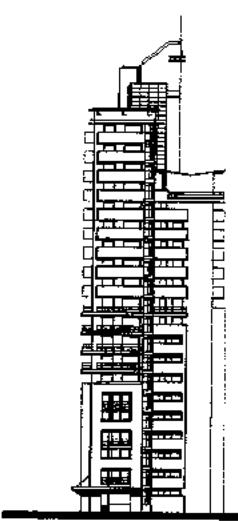
주거동 표준평면도

로 계획하였고 차도는 단지 동·서 측에서 각기 진입하여 보행로와의 중첩을 최소화시켜 계획하였으며 보도와 차도가 중첩되는 부분은 바 닥재료를 달리 하여 보행축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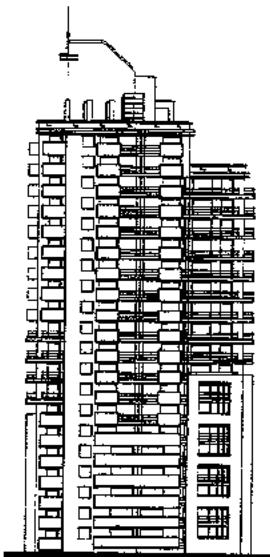
주동계획은 각 동별 아이덴티티 (Identity) 부각을 위한 동내개념을 도입하여 주거군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부지조건에 순응하는 각 주거동의 남동향배치로 합리성과 페적성을 제고하고 주거군의 클러스터(Cluster)화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편리성 및 독립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입면계획은 주거동의 저층·중층·고층부

의 구분에 의한 다단식 층고구성과 한국고건축의 특징적인 지붕형태요소의 도입으로 변희있는 스카이라인 및 경관요소를 도입하였고 각 층별 및 세대별 발코니의 형태변화와 미래지향적 이미지의 주거단지를 계획하고자 하였다.

단위평면계획은 소형주택에 적절한 개방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였고 거실과 주방, 식당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실의 프라이버시 (Privacy)를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3Bay 타입 평면으로 주방에도 최대한의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거성을 극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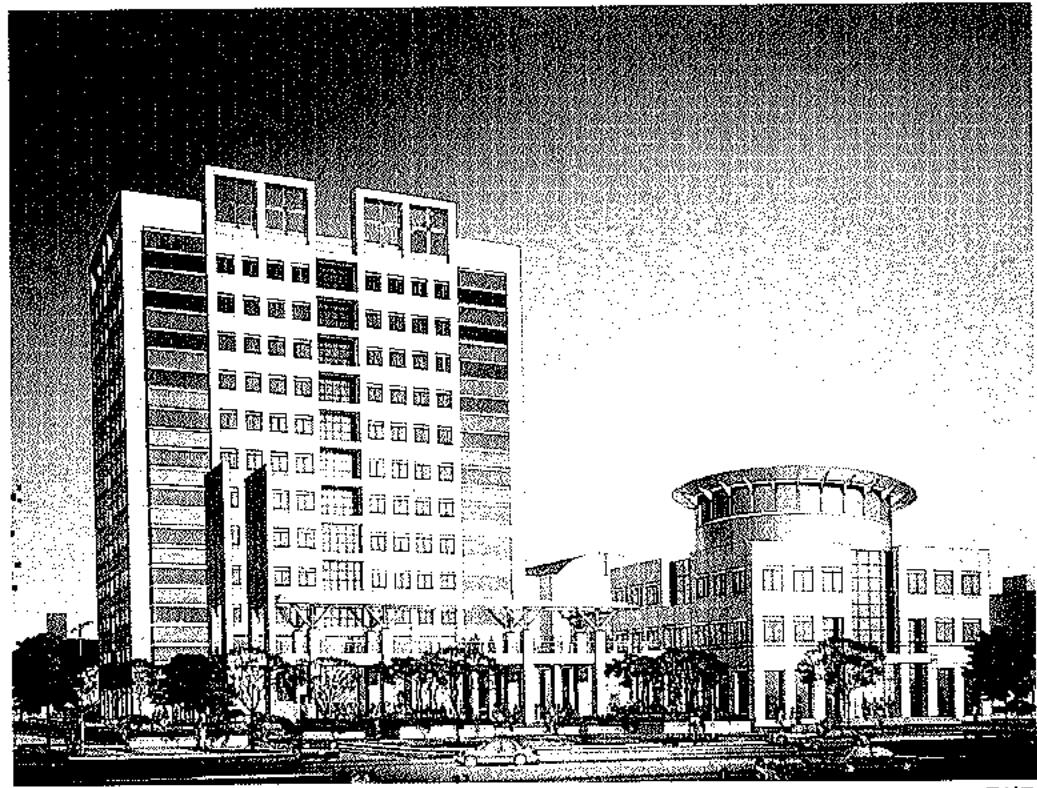
입단면1



입단면2



현상설계경기



투시도

## 동대문구 청사

Tongdaemun-gu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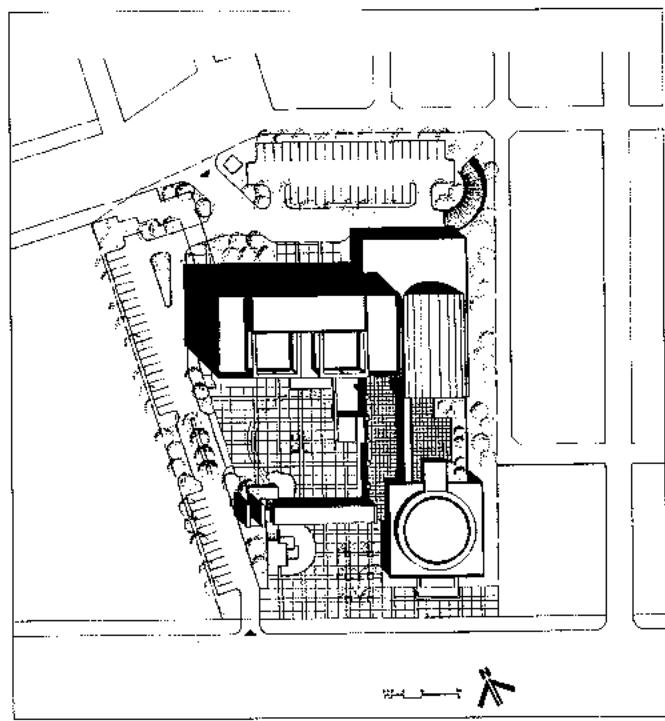
동대문구청에서는 주민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과 원활한 대민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신축에 따른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유신건축안(김지덕)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6월 16일 발표했다.

총 8개 작품이 응모된 이번 현상설계경기에서 우수작은 원도시건축(변용)안이, 기작으로는 동남아태건축(양해준)안과 범한건축(최광수)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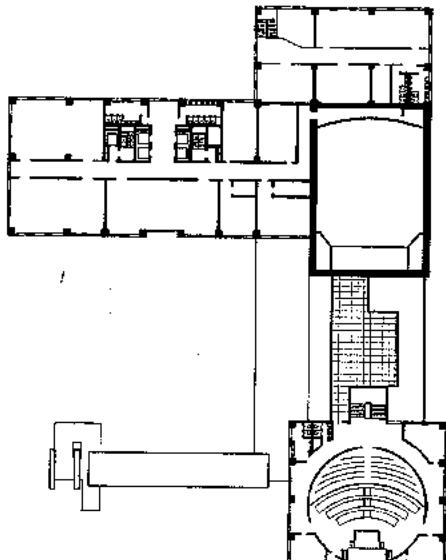
### 당선작

유신건축(김지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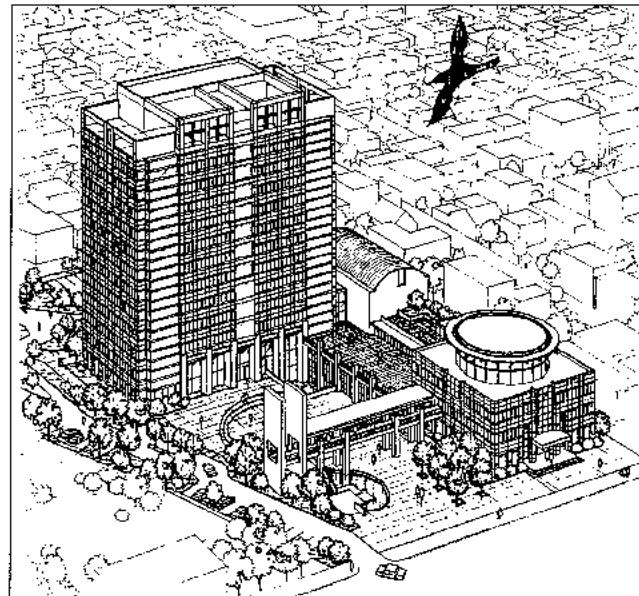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08일대  
대지면적 / 11,532㎡  
건축면적 / 3,285㎡  
연면적 / 29,087㎡  
건폐율 / 28.5%  
용적률 / 149%  
규모 / 지하2층, 지상1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 THK 30회강석,  
THK 24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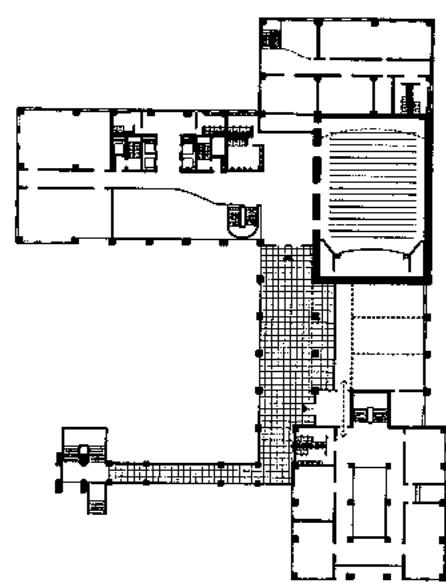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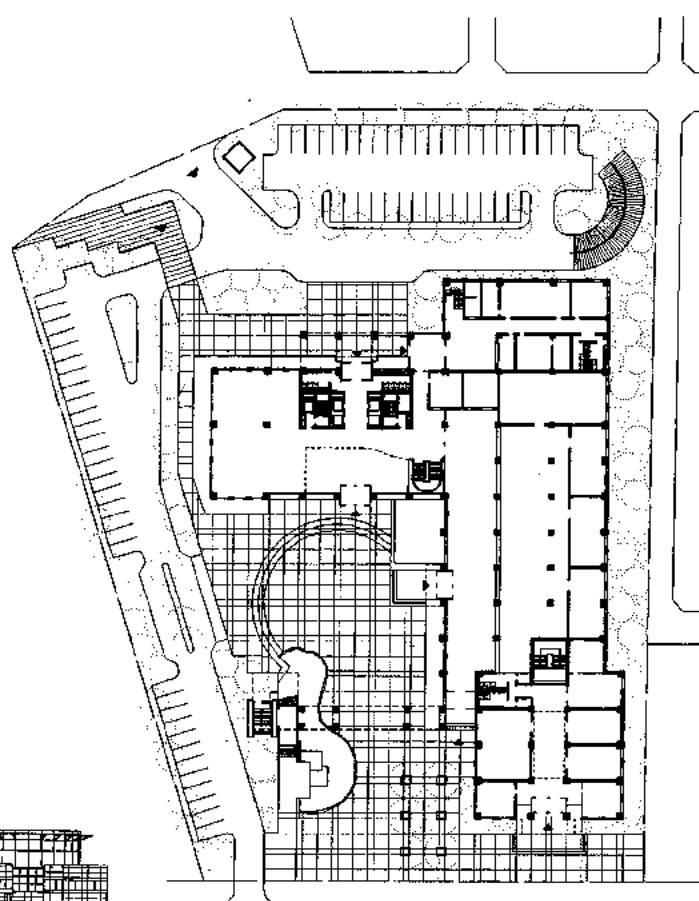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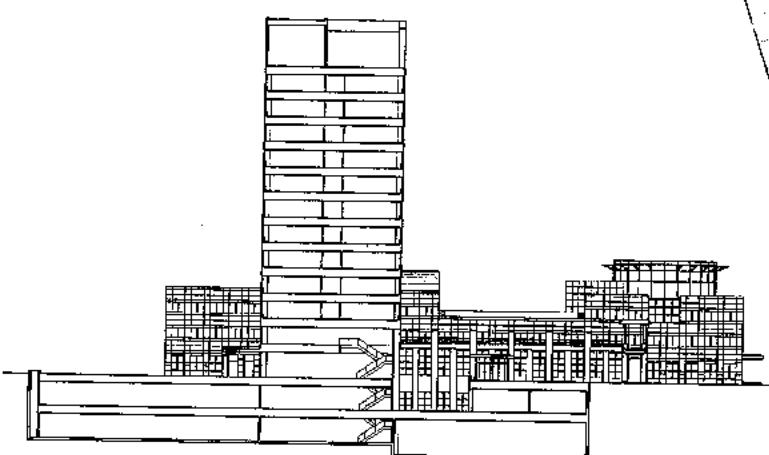
조감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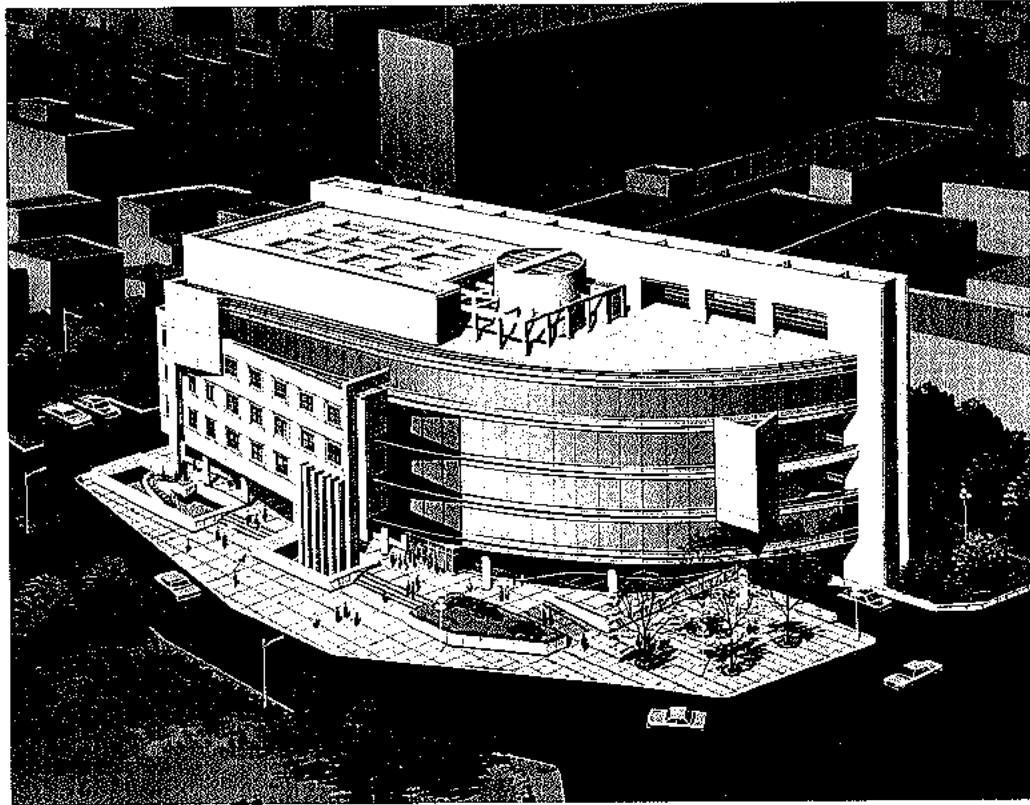
-지하층 계획 : 식당, 휴게실, 선큰 가든등 지원복지시설을 배치하여 대중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저층부 계획 : 넓은 구민광장과 연계해 전시홀, 민원봉사실, 구민자치시설을 배치하여 구민들간의 교류, 정보 기능을 극대화 하였다.  
-기준층 계획 : 층고 4m로 하여

천정고 2.7m로 하여 쾌적한 사무 공간과 사무자동화에 대비하였다.  
-상층부 계획 : 각동 고층부에 옥상정원을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차 계획

지하주차장은 자주식을 원칙으로 하고 장래 주차수요 증가시 2단주 차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층고를 4.2m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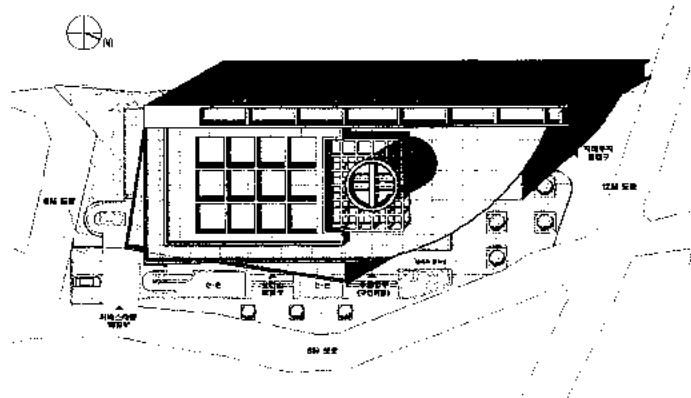
조감도

## 동작구 구민회관 및 보건소 청사

Tongchakgu Residential Hall & Preservation of health Center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동작구 지역 이미지에 부합하며, 지역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구민회관 및 보건소 청사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총 8개 작품이 응모한 결과 주수일건축+소람·두가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6월 23일 발표하였다.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범일건축(이수형)안이, 기작으로는 공간인식건축(양상준)안이 각각 선정됐다.



배치도

### 당선작

#### 주수일건축(주수일)+ 소람건축(허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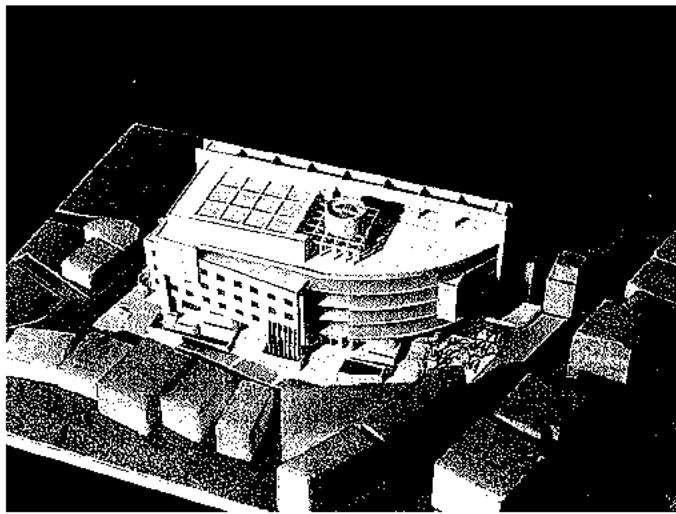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75-10번지 외 5필지  
지역·지구 / 일원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2,887㎡  
건축면적 / 1,469.62㎡  
연면적 / 9,900.59㎡  
건폐율 / 50.90%  
용적률 / 21.21%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조조  
철골 트러스(강당 상부)  
외부마감 / 화강석, 벼나구이,  
24mm 복층유리 커튼월

도시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 서로 이웃해 살고 있더라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들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성 속에 서로 서로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어떤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로움을 구민회관 계획의 기본 모티브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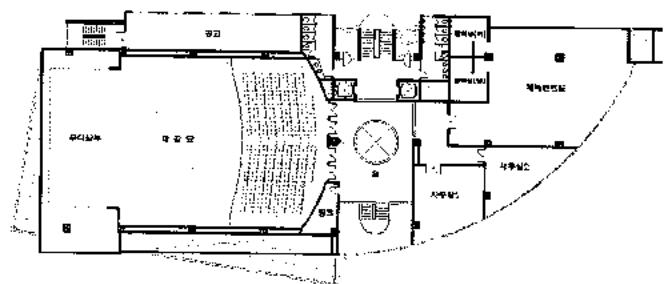
#### 계획의 기본방향

동작구민회관은 기존의 대부분의 구민회관이 녹지나 공원과 접해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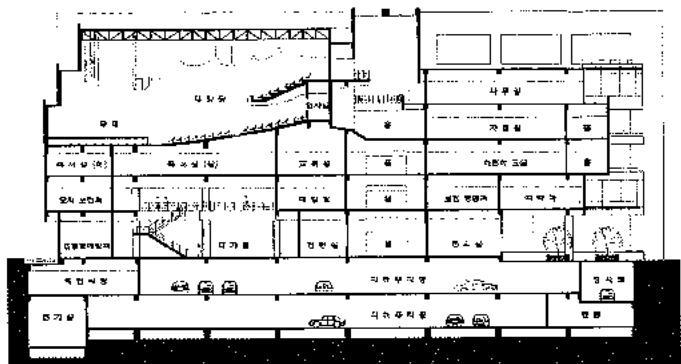
는 것과는 달리 구민들의 생활타전과 밀접해 있다. 대지는 주도로인 상도동길에서 주택가로 진입하는 6m 도로를 따라 20m 정도 진입하여 자리하였다. 서측으로는 시장과 인접하여 있고, 주변은 상가, 주택, 학교 등이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구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터에 구민들의 구심점이 되고 문화생활의 중심이 되어야하는 구민회관의 모습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하는 가라는 질문이 계획의 시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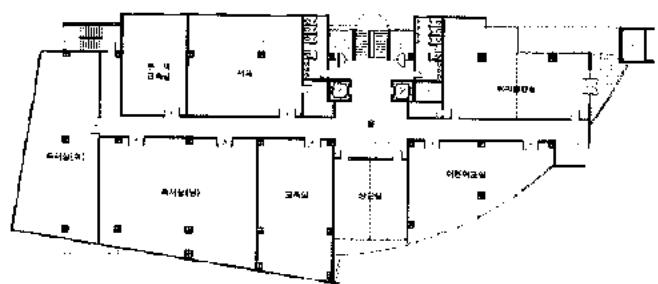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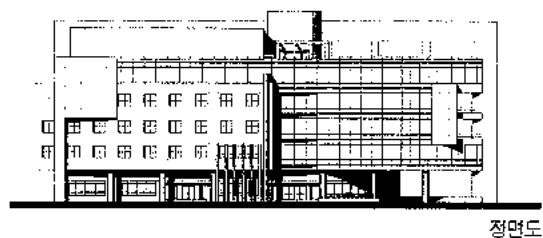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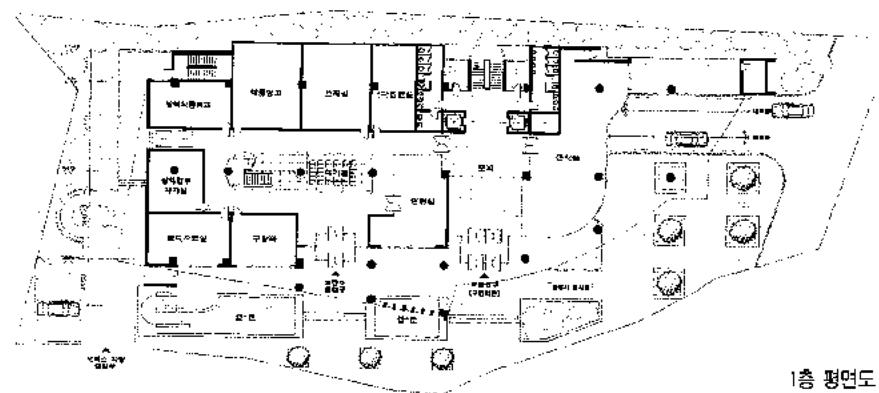
횡단면도



3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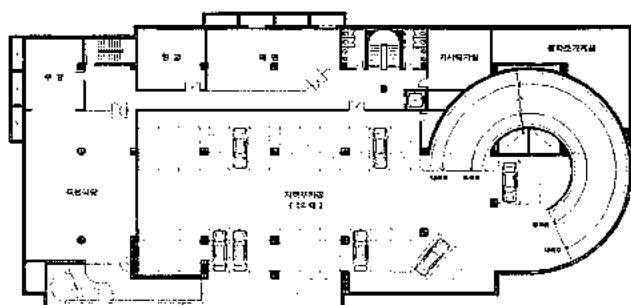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주변건물들에 비해 커다란 건물규모와 공공건물이라는 무거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스의 중첩과 입면의 변화를 통해 다양성과 조화를 표현하고 도로변에 소공원등 옥외공간을 확보하여 개방감을 넓히고 구민들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였다.

#### 건축 계획

구민회관과 보건소의 기능을 독립시키고 그에 따른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건축지침에 따라 보건소가 저층부에 구민

회관이 고층부에 위치하였고, Main Core에서 보건소와 구민회관의 동선을 수평과 수직으로 구분하였다. 동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보건소내에 별도의 계단을 두어 두 용도의 기능적 분리를 도모하였다. 차량동선은 대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차량진입을 두어 주거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혼잡을 피하였고 대지내 차량동선은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피로티등을 이용해 넓은 외부공간을 확보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다.



지하1층 평면도

## 2-11. 擧折

**擧折** 其名有四：一曰 廉，二曰 峻，三曰 廉峻，四曰 擧折。

**擧折之制**：先以尺爲丈 以寸爲尺 以分爲寸 以厘爲分 以毫爲厘，側畫所建之屋 於平正壁上，定其擧之峻慢 折之圓和 然後，可見屋內梁柱之高下 卵眼之遠近，令俗謂之定側樣，亦曰點草架。

**擧屋之法**：如殿閣樓臺，先量前後檐方心相去遠近 分爲三分，若餘屋 柱

梁作或不出跳者 則用前後檐柱心 從檐方背 至脊榑背 擧起一分，如屋深三丈 卽擧起一丈之類 如瓶瓦廳堂 卽四分中 擧起一分，又通以四分 所得丈尺，每一尺 加八分 若瓶瓦廊屋 及瓶瓦廳堂，每一尺 加五分 或瓶瓦廊屋之類，每一尺 加三分 若兩椽屋 不加 其副階或總腰 幷二分中 擧一分。

**折屋之法**：以擧高尺丈 每尺折一寸，每架 自上遞減半爲法，如擧高二丈 卽先從脊榑背上 取平下至檐方背 其上第一縫 折二尺，又從上第一縫轉背 取平下至檐方背 於第二縫 折一尺 若椽數多 卽逐縫取平，皆下至檐方背 每縫并減上縫之半，如第一縫二尺，第二縫一尺，第三縫五寸，第四縫二寸五分之類

如取平 皆從榑心 护纏令緊 爲則 如架道不勻 卽約度遠近 隨宜加減 以脊榑及檐方背 爲準。

若八角或四角闊尖亭榭，自檐方背 擧至角梁底 五分中 擧一分，至上簇角梁 卽兩分中 擧一分，若亭榭只用版瓦者，即十分中 擧四分。

**簇角梁之法**：用三折。先從大角梁<sup>1)</sup>背 自檐方心 量向上至根桿卯心，取大角梁背一半 立上折簇梁，斜向根桿舉分盡處，其簇角梁上下 幷出卯，中下折簇梁同。次從上折簇梁分盡處 量至檐方心 取大角梁背一半 立中折簇梁，斜向上折簇梁當心之下。又次從檐方心 立下折簇梁，斜向中折簇梁當心近下。令中折簇角梁上一半 與上折簇梁一半之長同。其折分 幷同折屋之制。唯豎折 以曲尺 於絃上 取方直之 用版瓦者同。

**거절(擧折)** 이름에는 네가지가 있다. : 첫째 포(廉), 둘째 준(峻), 셋째 포준(廉峻), 넷째 거절(擧折)이다.

**擧折의 制度<sup>2)</sup>**：擧折의 제도는 우선 尺으로 丈을 삼고, 寸으로 尺, 分으로 寸, 厘로 分, 毫로 厘를 삼아 평평한 壁에 짓고자 하는 집의 側樣圖를 그려 擧屋의 정도와 折屋의 정도를 정한다. 이 이후에 보(梁)와 기둥(柱)의 높낮이 및 卵眼의 遠近을 결정할 수 있다<sup>3)</sup>. 이 것을 현재 일반적으로 側樣을 정한다고 하며, 또 草架를 點한다고 하기도 한다<sup>4)</sup>.

**擧屋의 방법<sup>5)</sup>**：殿閣樓臺인 경우에는 우선 건물 前後에 있는 檻方 중심사이의 거리를 헤아려, 이 거리를 3等分하여 - 이 의의 건물로 柱梁作이거나 出目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 前後에 있는 檻柱(外陳平柱) 중심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sup>6)</sup>。- 檻方 상면에서 脊榑 상면에 이르기까지를 [3等分한 것의] 1分 만큼을 들어올린다. 예를 들어 屋心<sup>7)</sup>이 3丈인 경우에 1丈을 들어올리는 것과 같은 類이다<sup>8)</sup>. 瓶瓦廳堂<sup>9)</sup>인 경우에는 [건물의 전후에 있는 檻方 사이의 거리를] 4等分한 것 중의 1分을 들어올리는데, 4分하여 얻은 1分의 길이<sup>10)</sup>가 10尺을 넘으면 1尺마다 8分씩을 더해준다<sup>11)</sup>. 瓶瓦廊屋 및 版瓦廳堂<sup>12)</sup>인 경우에는 1尺마다 5分씩을 더해주며<sup>13)</sup>, 版瓦廊屋과 같은 유형의 건물에서는 1尺마다 3分씩을 더해준다<sup>14)</sup>. 兩椽屋<sup>15)</sup>인 경우에는 더하지 않으며<sup>16)</sup>, 副階나 總腰인 경우에는 2等分한 것의 1분을 들어올린다<sup>17)</sup>.

**折屋의 방법**<sup>18)</sup> : 樓高를 丈尺으로 삼아 1尺마다 1寸씩을 꺾도록 하는데, 每架마다 위로부터 半寸遞減하는 것을 법칙으로 한다<sup>19)</sup>. 예를 들어 樓高가 2丈인 경우에는 우선 脊榑의 상면에서 아래의 檩檣方 상면까지 取平<sup>20)</sup>하여 第1縫<sup>21)</sup>에서 2尺을 꺾고, 다시 상부에 있는 第1縫의 도리 상면에서 아래의 檩檣方 상면까지 取平하여 第2縫에서 1尺을 꺾는다. 서까래 수가 많은 경우<sup>22)</sup>에는 각 縫에서 아래의 檩檣方 상면까지를 取平하여 각 縫에서의 꺾은 높이는 모두 上縫에서 꺾는 높이의 半寸을 줄인다<sup>23)</sup>. 예를 들어

第1縫에서 2尺으로 하는 경우 第2縫에서는 1尺, 第3縫에서는 5寸, 第4縫에서는 2寸5分으로 하는 것과 같은 類이다.

取平은 모두 도리 중심으로부터 (평승)垂繩<sup>24)</sup>을 팽팽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架道가 균등하지 않은 경우<sup>25)</sup>에는 그 거리에 따라 적당히 加減하는데, [이 때에도] 脊榑 및 檩檣方을 기준으로 한다.  
8角 또는 4角의 開尖亭榭<sup>26)</sup>인 경우 檩檣方 상면으로부터 角梁 아래<sup>27)</sup>까지는 수평거리의 5분의 1을 들어 올리고, 상족각량(上簇角梁)<sup>28)</sup>까지는 2분의 1을 들

1) 원문에는 '梁'字가 빠져 있는데 문맥의 내용을 볼 때 '梁'字를 추가하여 '人角梁'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원문을 교정하여 '梁'字를 추가하여 계체하였다.

2) '舉折'은 지붕을 형성하는 가구 중 도리의 위치, 즉 도리의 수직높이를 결정함으로써 지붕경사면의 곡선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거목법(舉屋法)'과 '절옥법(折屋法)'의 총칭이다. 舉屋法은 건물의 종단면상에서 전률 전후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종도리의 수직높이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折屋法은 우선 舉屋法에 의거하여 종도리의 높이를 결정한 후에 종도리 아래에 위치한 각 도리의 수직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本『舉折之制』의 항목에서는 舉屋法과 折屋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舉屋法과 折屋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뒤에 따로 '舉屋之法'과 '折屋之法'의 항목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舉折之制』의 내용은 집을 지울 때 건물의 종단면도를 1/10의 축척으로 그려서 舉折을 정한 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기둥과 보 등의 길이 및 높이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개설적인 내용이다. 舉屋과 折屋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의 註5) 및 註18)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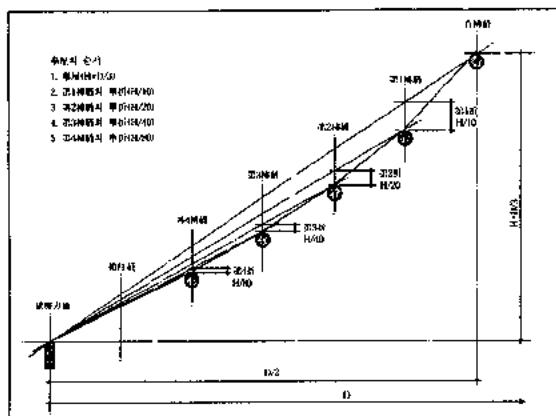
본『營造法式』에 의하면 舉折에 의해 각종 도리의 수직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선 舉屋法에 의해 종도리의 높이를 결정하고 나서 折屋法에 의해 각종 도리의 수직높이를 상부에 위치한 도리(즉 종도리 바로 아래에 위치한 도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결정한다<도1>. 이에 반하여 清代에는 舉折을 '舉架'라고 불렀는데 그 방법은 宋『營造法式』의 舉折法과는 다르다. 즉 清代의 舉架法은 宋『營造法式』의 舉折法과는 반대로 가장 아래에 위치한 도리에서 시작하여 비교적 둘째가 약하게 도리를 걸기 시작하여 종도리쪽으로 올라갈수록 도리 사이의 경사를 급하게 하면서 도리의 높이를 결정해 나간다<도3>. 이러한 清代의 舉架法에 의해 얻어진 지붕곡선은 宋『營造法式』에 의해 얻어진 지붕곡선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건물에서 풍기는 효과와 분위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染思感, 「營造法式詳釋(卷上)」, p.183).

宋『營造法式』의 舉折法과 清代의 舉架法은 일반적으로 도리의 수평거리를 일정하게 정하고 이 거리에 비례하여 각 도리의 수직높이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비례는 건물의 유형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중국건축의 지붕곡선은 건물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일정한 비례를 지닌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지붕곡선은 건물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지닌다. 長椽과 短椽이라는 서로 다른 길이의 서까래를 사용하고, 도리의 수평위치를 잡는데 있어서도 3分作法 또는 4分作法 등 경우에 따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지붕 가구에 의한 1차곡선을 만든다. 그리고 다시 이 위에 흙을 덮어 기와를 올라놓아 최종적인 제2차의 지붕곡선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중국건축과 다른 방법의 2중곡선에 의해 지붕의 곡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의 지붕곡선은 중국건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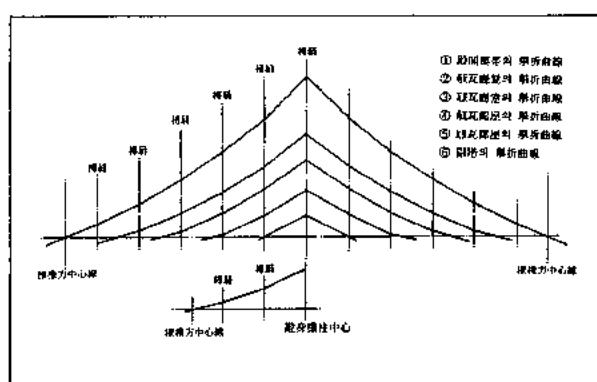
3) 여기에서는 원문에 '側濶'로 되어 있는 것을 '側椽圖'로 번역하였는데, '側椽'은 바로 뒤의 문장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종단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側椽圖'는 우리의 '종단면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단면도를 1/10의 축척으로 그려서 舉屋과 折屋의 정도를 정하고, 이 舉屋과 折屋를 결정한 후에 보와 기둥의 위치 및 높낮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舉屋'과 '折屋'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4) '側椽', '草架'는 모두 우리나라에서의 '종단면'에 해당한다.

5) 지붕을 구성하는 架構 중에서 도리의 높이를 결정함으로서 지붕의 류매를 결정하는 舉折法의 하나로 건물을 종단면상에서 보아 전후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脊榑(종도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방법이다<도1>. 본『營造法式』의 舉屋法에 의해 종도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1〉殿閣樓臺의 舉折



〈도2〉宋『營造法式』의 舉折曲線

여울린다. 亭榭에 암키와(瓦)만을 사용한 경우에 10分의 4를 들어올린다<sup>29)</sup>.

족각량(簇角梁)의 제도<sup>30)</sup> : 3折<sup>31)</sup>을 사용한다. 우선 大角梁 상면을 따라 檩檣方 중심에서 위쪽으로 정간(棟桿)<sup>32)</sup>의 장부 중심에 이르는 길이를 채어 大角梁 상면의 절반을 취하여 上折簇梁을 세우는데, 비스듬히 棟桿쪽을 향해 檩桿의 舉分이 다하는 곳까지 이르도록 한다. 그 簇角梁의上下에는 모두 장부를 내는데, 中·下折簇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上折簇梁이 끝나는 곳<sup>33)</sup>에서 檩檣方 중심까지의 길이를 채어 大角梁 상면의 절반을 취하여 中折簇梁을 세우는데, 上折簇梁의 중앙 아래쪽에 이르도록 비스듬히 세운다. 또 다시 檩檣方 중심에서부터는 下折簇梁을 세우는데, 中折簇梁 중심근처까지 오도록 비스듬히 세운다. 中折簇角梁의 절반과 上折簇角梁의 절반의 길이는 같도록 한다. 그 折分은 모두 折屋之制와 같다. 折을 채는 것은 曲尺을 이용하여 絃上에 方을 취하여 그것을 쌓다. 瓦瓦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III. 平面

卷第三·一 <大木作制度圖樣下>에서는 ‘殿閣地盤分槽等第十’이라는 제목으로 건축물의 평면유형에 관한 내용을 간단한 설명과 도면으로 제시하고 있다<도7>.

이는 卷第四·五 <大木作制度一·二>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목조건축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건물의 평면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평면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건물의 유형은 모두 殿閣이다. 이는 卷第四 <大木作制度>에서 제시된 건물 유형 중에서 殿堂과 廳堂 형식의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亭榭類의 건물은 그 평면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평면유형을 모두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이는 『營造法式』 편찬의 목적에도 벗어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殿堂型과 廳堂型의 건물은 평면이 대부분 장방형<sup>34)</sup>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건물의 평면유형을 定型化(類型化) 할 수 있는 殿堂과 廳堂형의 건물을 다루고 이에 해당하는 네 개의 평면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殿閣地盤九間, 身內分心斗底槽
- ② 殿閣地盤殿身七間 副階周市, 各兩架椽 身內金箱 斗底槽
- ③ 殿閣地盤殿身七間 副階周市, 各兩架椽 身內單槽
- ④ 殿閣地盤殿身七間 副階周市, 各兩架椽 身內雙槽

- ① 殿閣으로 평면은 정면 9칸이며, 殿身의 내부는 分心斗底槽이다.
- ② 殿閣으로 평면은 정면 7칸이며, 주변에 副階가 있다. 도리방향의 각 柱間은 2架椽이며<sup>35)</sup>, 殿身

① 건물을 종단면상에서 보아 건물 전후에 위치한 檩檣方 또는 檩廡博(외목도리)의 위치를 수직·수평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공포를 사용하지 않거나 공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출목이 없는 경우에는 檩檣方 또는 檩廡博(이하 檩檣方이라 함)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 때에는 건물 전후에 위치한 外檣柱(外陳平柱)의 중심선이 기준이 된다.

- ② 전후 檩檣方 사이 수평거리의 중심을 脊博의 수평위치로 한다.
- ③ 전후 檩檣方 사이 수평거리에 비례하여 檩檣方에서 脊博까지의 수직높이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③의 脊博 높이는 건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그 비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표1>에 정리하였다.

6) 柱梁作은 기둥위에 공포를 사용하지 않고 기둥위에 직접 보를 엾고 이 위에 도리를 엎어놓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민도리집’계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不出跳者(출목이 없는 경우)’라고 한 것은 앞서의 柱梁作과는 달리 공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출목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본 『營造法式』에서는 이와같이 출목이 사용되지 않는 공포로 ‘把頭絞項造’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大木作制度>에서는 把頭絞項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 卷第十七 <大木作功限>條에 把頭絞項造에 사용되는 부재의 수량을 적은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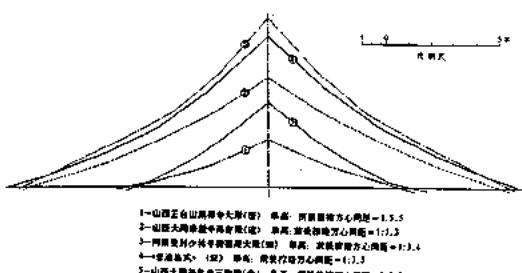
把頭絞項作每柱頭用材料等下項

: 每道柱一隻, 牛頭一隻, 檩料一隻, 齊心料一隻, 散料二隻, 開槧二條

把頭絞項作每間內前後擗用方桁下項

: 方桁一條

이를 근거로 하여 把頭絞項造의 구조를 그리면 <도5>와 같다.



의 내부는 金箱斗底槽이다.

- ③ 殿閣으로 평면은 정면7칸이며, 주변으로 副階가 있다. 도리방향의 각 柱間은 2架椽이며, 전신의 내부는 單槽이다.
- ④ 殿閣으로 평면은 정면 7칸이며, 주변으로 副階가 있다. 도리방향의 각 柱間은 2架椽이며, 殿身의 내부는 雙槽이다.

이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건물의 유형과 정면의 間數, 副階의 설치여부 및 도리칸 각 칸의 길이, 내부의 기둥배열(柱網)의 순으로 건물의 평면형식을 설명하고 있다.

맨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殿閣'이란 말은 건물의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으로 '地盤'은 우리나라 말로 '평면'을 말하는 것이다. '九間' 또는 '殿身七間'이라 한 것은 건물 정면의 기본적인 間數를 규정한 것이다. 물론 건물 정면의 間數는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 뿐이다. 卷第四 <大木作制度>에서는 건물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間數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 정면의 間數임을 알 수 있다. 건물 측면의 間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면의 間數로 건물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였던 개념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언급된 間數는 副階를 제외한 殿身, 즉 건물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間數만을 말하는 것이다. 副階는 건물 몸체에서 외부로 1칸씩만 돌출하기 때문에 副階의 間數를 건물의 間數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副階는 건물 몸체의 架構와는 별도의 架構를 형성하기 때문에 평면에 있어서 건물 몸체와는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건물 몸체 주변에 副階를 설치하는지의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뒤에 있는 '各兩架椽'은 도리칸의 각 칸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身內'이라는 말과 더불어 '分心斗底槽', '金箱斗底槽', '單槽', '雙槽'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身內'는 당연히 건물 몸체의 내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뒤에 나오는 각각 서로 다르게 표현된 설명이 실제적으로 건물에 있어서의 기둥 배열(柱網), 즉 평면유형에 대한 것이다. 이를 용어에는 모두 '槽'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 '槽'는 이웃한 공포 사이를 서로 연결시킨 선인데, 이 선은 건물 각 면의 정면에서 바라볼 때 횡으로 기둥열을 연결한 선과 동일하니<sup>36)</sup>. 따라서 이 네가지 평면유형은 '槽'의 위치, 즉 기둥열의 배열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다.

### 1. 分心斗底槽<도.7-가>

'分心斗底槽'은 '分心槽'라고도 한다. 건물 몸체의 전후 외진주열을 연결한 선, 즉 건물 몸체 전후의 外槽를 단순히 2등분하여 그 중심에 하나의 内진주(金柱)열을 세우고 이를 연결한 선상에 공포를 두어 '槽'를 형성하도록 한 평면형이다. 따라서 分心斗底槽는 평면상 외진부나 내진부의 구분은 없으며, 전퇴(전랑)나 후퇴(후랑)의 구분 또한 없다. 내부공간이 단순히 전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사찰의 山門 등 門형식의 건물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평면형이다.

이와 같이 柱梁作이거나 출목이 없는 경우에는 檻檐方(또는 檻風搏)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때에는 전후 檻檐方 사이의 수평거리 대신에 건물 전후에 위치한 檻柱, 즉 外陳平柱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檻檐方이 사용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柱梁作 또는 출목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이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 7) '岸心'은 건물의 前後에 위치한 檻檐方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柱梁作이나 출목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 전후에 있는 檻柱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 8) 건물의 유형이 殿閣 또는 櫻堂인 경우 舉屋의 높이, 즉 檻檐方에서 종도리까지의 수직높이(H)는 건물 전후에 위치한 檻檐方 사이의 수평거리 (D)의 1/3로 한다(H=D/3)는 규정이다<도.1>.
- 9) '前(동)'은 '수기와'이다. 따라서 '再瓦瓦廳堂'은 수기와를 사용한廳堂을 말하는 것이다.
- 10) 즉 건물 前後에 위치한 檻檐方 사이 수평길이의 1/4에 해당하는 길이를 말한다.
- 11) 櫻瓦廳堂인 경우 舉屋의 정도에 대한 규정으로 건물 전후에 위치한 檻檐方 사이 수평거리의 1/4을 舉屋의 높이로 한다. 이 때 전후 檻檐方 사이 수평거리를 D, 舉屋의 높이를 H라 했을 때, 이 규정을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단위: 尺)

$$\cdot D \leq 10\text{인 경우 : } H = \frac{1}{4}D \quad \cdot D > 10\text{인 경우 : } H = \frac{1}{4}D + \frac{8}{10}(\frac{1}{4}D - 10)$$

(표.1) 건물에 따른 舉屋의 정도

( D : 전후 檻檐方 사이의 거리, 단위 : 尺 )

건물의 유형	檻檐方에서 育搏까지의 수직높이(H)		비 고
殿閣樓臺	$H = \frac{1}{3}D$		
瓦瓦廳堂	$\frac{1}{4}D \leq 10\text{인 경우}$	$H = \frac{1}{4}D$	
	$\frac{1}{4}D > 10\text{인 경우}$	$H = \frac{1}{4}D + (D-10)$	
瓦瓦廊屋 瓦瓦廳堂	$\frac{1}{4}D \leq 10\text{인 경우}$	$H = \frac{1}{4}D$	
	$\frac{1}{4}D > 10\text{인 경우}$	$H = \frac{1}{4}D + \frac{5}{10}(\frac{1}{4}D - 10)$	
殿瓦廊屋	$\frac{1}{4}D \leq 10\text{인 경우}$	$H = \frac{1}{4}D$	
	$\frac{1}{4}D > 10\text{인 경우}$	$H = \frac{1}{4}D + \frac{3}{10}(\frac{1}{4}D - 10)$	
2緣屋	$H = \frac{1}{4}D$		$\frac{1}{4}D > 10\text{인 경우에도 더해주는 높이 없음}$
副階, 級腰	$H = \frac{1}{2}D$		副階인 경우 D는 檻檐方 중심에서 殿身 檻柱의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이다.

평면을 이와같이 결정하면 기본적인 건물의 종단면이 결정된다. 평면이 分心斗底槽로 된 형식의 종단면도가 ‘殿堂等六鋪作分心槽草架側樣第十四’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도.8>. 이 외에도 分心斗底槽 형식의 가구를 종단면으로 나타낸 도면이 있다. ‘廳堂等(自十架緣至四架緣)間縫內用梁柱第十五’라는 제목으로 제시된 일련의 도면들 중에서 ‘十架椽屋分心三柱’, ‘十架椽屋分心前後乳狀用五柱’ 등 종단면의 중앙에 기둥이 표현된 도면들이 그것이다. 이를 도면을 보면 종단면의 중심선상에槽를 두고, 다시 종단면상에서 보아 중심에 있는槽와 전후 外槽의 사이에 또 다시 기둥을 두고 이 위에 공포를 구성하여 또 하나의槽를 형성한 경우도 있다. 이 또한 分心斗底槽라 할 수 있다. 제시된 도면은 측면 4칸으로 되어 있으나, 측면의 칸 수가 짹수이면 分心斗底槽형의 평면을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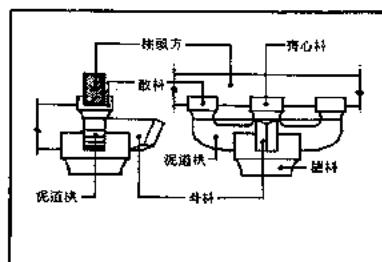
天津 蓼縣 獨樂寺 山門(遼 984년), 山西 大同 善化寺 山門(金, 1128-1143年) 등의 평면형이 分心斗底槽에 해당한다<도.9>.

## 2. 金箱斗底槽<도.7-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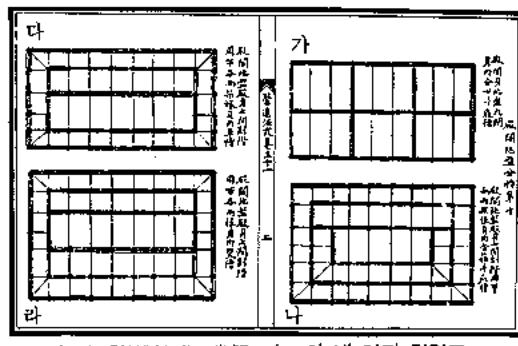
‘金箱斗底槽’는 ‘斗底槽’라고도 한다. 外槽의 내부 네 주변으로 또 다시槽를 구성한 평면형식이다. 즉 건물 몸체의 네 주변 외진주 내부에 다시 내진주를 두어 내부공간을 외진부와 내진부의 두 영역으로 구분한 평면형이다. 내부공간에서 확실한 중심영역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 12) 鏽瓦廊屋은 수기와를 사용한廊屋이다. 瓦反瓦廳堂에서 ‘瓦反(판)’은 ‘암기와’의 뜻으로 瓦反瓦廳堂은 암기와를 사용한廳堂을 말하는 것이다.  
 13) 鏽瓦廊屋과 瓦反瓦廳堂의 경우 舉屋의 높이는 전후 檩槽方 사이 수평거리의 1/4로 하는데, 전후 檩槽方 사이 수평거리의 1/4이 10尺 이상인 경우에는 10尺을 넘어서는 1尺마다 0.5尺씩을 더한 높이를 舉屋의 높이로 한다는 규정이다. 전후 檩槽方 사이의 수평거리를 D, 舉屋의 높이를 H라 했을 때, 이 규정을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단위: 尺.)

$$\cdot D \leq 10\text{in} \text{ 경우 : } H = \frac{1}{4}D \quad \cdot D > 10\text{in} \text{ 경우 : } H = \frac{1}{4}D + \frac{5}{10}(\frac{1}{4}D - 10)$$



〈도5〉 把頭紋項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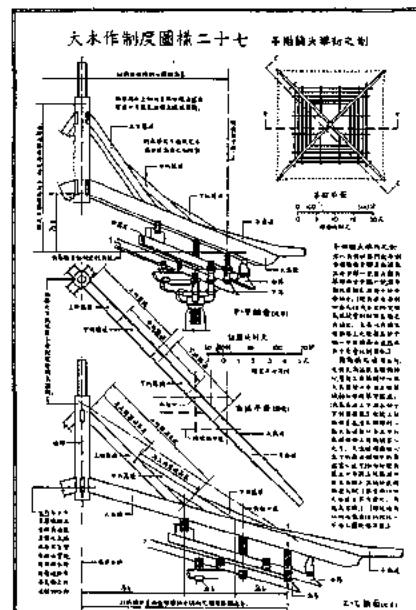
〈도7〉 「營造法式」卷第三十一의 네 가지 평면도

제시된 도면에서는 측면이 4칸(副階 세외)으로 되어 있으나, 최소 3칸 이상이면 金箱斗底槽의 평면형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평면을 金箱斗底槽로 결정하면 기본적인 종단면의 가구형식은 어느정도 결정되는데, 그 가구형태는 다음에 설명할 ‘雙槽’에 있어서의 종단면 가구 형태와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雙槽’ 항목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현존하는 건축물 중에서 山西 五臺 佛光寺 大殿, 山西 五臺 佛光寺 東大殿(唐, 845年), 山西 大同 下華嚴寺 薄伽教藏殿(遼, 1038年), 天津 蓼縣 獨樂寺 觀音閣(遼, 984年) 등의 평면이 金箱斗底槽에 해당한다<도.10>. 遼寧 義縣 奉國寺 大殿(遼, 1020年), 山西 大同 善化寺 大雄寶殿(遼, 11세기), 河北 正定 隆興寺 摩尼殿(宋, 1052年) 등의 평면형은 金箱斗底槽를 기본으로 한 변화형이라 할 수 있다<도.10>.

## 3. 單槽<도.7-다>

‘單槽’은 건물 전후 外槽의 내부에 횡으로 하나의槽만을 둔 평면형식, 즉 건물몸체의 내부 후면쪽에 횡으로 하나의 기둥열을 형성하여 후퇴(후랑)을 둔 형식이다. 건물내부의 후면이 아닌 전면쪽으로 기둥열을 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면형은 공간의 이용상 실례가 드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된 도면에서는 측면이 4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측면 4칸의 구성이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최소 3칸이면 單槽의 평면형을 구성할 수 있다.



〈도6〉 開尖亭榭의 舉折  
(출처 : 梁思成, 「營造法式註釋卷上」, p.266)

평면을 單槽로 하는 경우의 종단면도가 ‘殿堂五鋪作(副階四鋪作)單槽草架側樣第十三’에 제시되어 있다.

<도.11>.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전후에 위치한 외진주 사이에 있는 두개의 내진주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내진주 중 하나는 단면도에서 생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單槽의 평면과 비교하여 볼 때, 내진주 중 하나는 건물 측면의 외진주이기 때문이다.

山西 晋城 青蓮寺 大殿, 山西 榆次 永壽寺 雨花宮 등의 평면형이 單槽에 해당한다. 單槽의 변화형으로는河北 新城縣 開善寺 大殿의 평면을 들 수 있다.

#### 4. 雙槽<도.7-라>

‘雙槽’은 건물 전후 外槽의 내부에 횡으로 두개의槽를 구성한 평면형식이다. 즉 건물 몸체의 내부에 횡으로 전후 두 줄의 내진주열을 두어 전퇴와 후퇴를 구성함으로써 내부공간을 전퇴(전랑), 내진(중심공간), 후퇴(후랑)의 세 부분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양 측면에 외진주열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金箱斗底槽의 평면과 거의 유사하다. 내부공간의 형태도 金箱斗底槽와 비슷하다. 제시된 도면에서는 측면이 4칸으로 되어 있으나, 3칸 이상이면 雙槽의 평면형을 만들 수 있다.

雙槽의 평면에 해당하는 종단면도가 ‘殿堂等八鋪作(副階六鋪作)雙槽(斗底槽準此, 下雙槽同)草架側樣第十一’과 ‘殿堂等七鋪作(副階五鋪作)雙槽草架側樣第十二’라는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다<도.12,13>. 종단면상으로 전퇴와 후퇴가 구성되므로 그 단면형이 평면을 金箱斗底槽로 한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두 종단면의 제복에 ‘斗底槽準此 下雙槽同<sup>37)</sup>이라는 附註가 붙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雙槽는 종단면이 金箱斗底槽와 동일하지만 양 측면에 퇴칸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횡단면상은 金箱斗底槽와 다르다.

山西 洪洞 廣勝下寺의 평면이 雙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營造法式』에 언급되지 않은 네가지 평면형 외에도 실제로는 내부에 기둥을 사용하지 않은 通間으로 된 형식이 있다. 山西 五臺 南禪寺 大殿과 山西 太原 晉祠 獻殿 등이 그 예이다. 또한 江蘇 蘇州 玄妙觀 三清殿과 같이 내부공간 모든 칸에 빈 곳 없이 기둥을 세운 특수한 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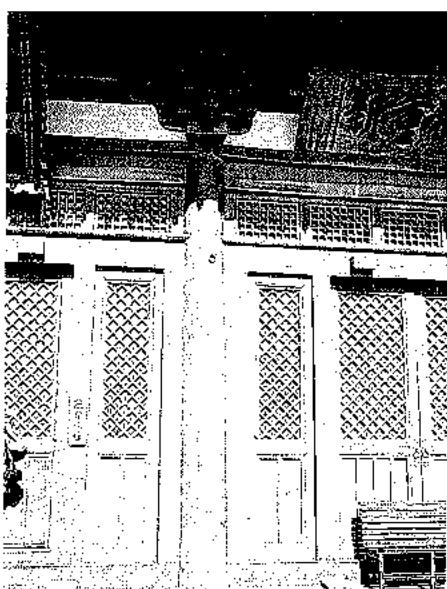
이상 『營造法式』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 가지 평면유형은 장방형 또는 정방형 평면의 가장 기본적인 평면유형이라 할 수 있다. 山西 五臺 佛光寺 大殿과 같이 오래된 건물일수록 『營造法式』에 기록되어 있는 위의 네가지 기본적인 평면형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대로 내려오는 건물일수록 내진주의 배열에 변형이 생기게 된다. 즉 내진주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簡柱法) 그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移柱法)과 같은 변형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簡柱法이나 移柱法을 사용하여 내진주의 기둥 배열을 변화시킨 평면

14) 瓦反瓦廊屋은 암기와를 사용한 廊屋으로, 이 때 廊屋의 높이는 전후 檻槽方사이 수평거리의 1/4로 하는데, 전후 檻槽方 사이 수평거리를 10尺 이상인 경우에는 10尺을 넘어서는 1尺마다 0.3尺씩을 더한 높이를 廊屋의 높이로 한다는 규정이다. 전후 檻槽方 사이의 수평거리를 D, 廊屋의 높이를 H라 했을 때, 이 규정을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단위: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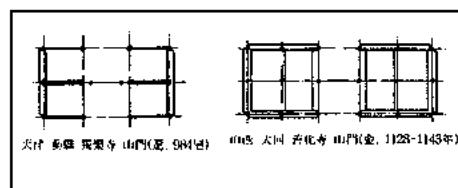
$$\cdot D \leq 10\text{尺} \text{ 경우 : } H = \frac{1}{4} D$$

$$\cdot D > 10\text{尺} \text{ 경우 : } H = \frac{1}{4} D + \frac{3}{10} (\frac{1}{4} D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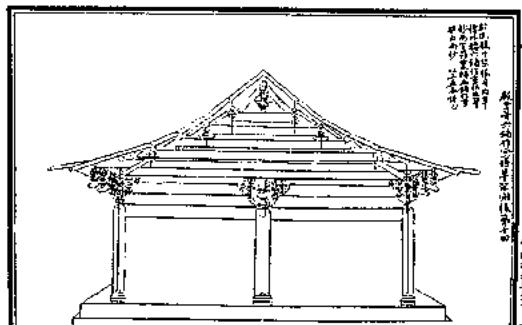
15) ‘兩棲柱’은 ‘兩架椽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3架架構에 해당한다.



대동화엄사 下寺 박가교장전(94.7.17)



〈도9〉 分心斗底槽의 평면 실례



〈도8〉 殿堂等六鋪作分心槽草架側樣第十四

의 변화형은 『營造法式』이 편찬되기 이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營造法式』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평면형은 당시 사용되던 평면형을 단순히 정리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평면형으로 정형화 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營造法式』의 평면형은 당시에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평면형태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맷는말

##### 1. 『營造法式』<大木作制度>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

###### 1-1. 『營造法式』의 편찬목적과 건축의 標準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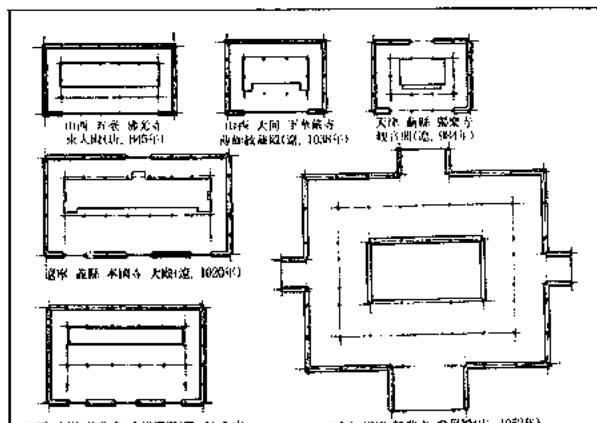
『營造法式』의 편찬은 宋의 開國 이후 많은 건축물을 짓게 되면서 국고의 낭비가 심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건물의 규모와 목재치수 등을 규정하여 건물을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营建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는 점은 서문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시각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營造法式』의 편찬목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營造法式』의 편찬목적 宋代 중국의 목재공급 현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宋代의 중국, 특히 당시 北宋의 수도인 開封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목재의 공급이 원활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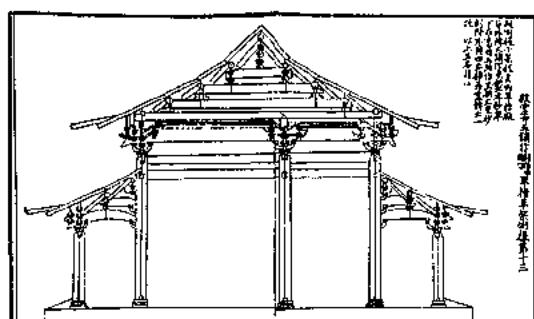
보인다. 당시 開封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는 궁궐이나 상류계급들의 주택, 사찰 등을 짓기 위해 많은 양의 목재를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은 양질의 풍부한 목재가 생산되는 지역은 아니었다<sup>38)</sup>. 목재의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많았을 것이다. 더욱이 國初에는 많은 조영활동으로 인하여 목재의 부족현황이 더욱 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營造法式』의 卷第三十·<大木作制度圖樣上>에는 '合柱鼓卯第七'에 '兩段合'이나 '三段合'에 제시된 2~3개의 목재를 합하여 하나의 기둥을 만드는 組合柱에 대한 내용이 있다<도14>. 조합주는 구조적 보강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목재가 충분한 상황이었다면 구태여 조합주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합주에 대한 규정은 당시의 목재부족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목재의 부족현황은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장거리에서 운송해야 하고 목재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놓게 된다. 운송의 수단으로서는 運河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과 운송수단이 현재에 비해 매우 열악하였던 당시로서는 목재의 운송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목재의 운송을 조금이라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를 생산지에서의 1차 가공에서부터 작은 크기로 줄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생산지에서의 1차 가공을 위해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목부재의 크기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목부

- 16) 兩椽屋인 경우 舉屋의 높이는 전후 檻檻方 사이 수평거리의 1/4로 하며, 전후 檻檻方 사이 수평거리의 1/4이 10尺 이상인 경우에도 앞의 경우에서처럼 더해주는 높이는 없다.
- 17) 副階나 繼腰인 경우에 수평거리의 기준은 檻檻方 중심에서 건물몸체 平柱의 중심선까지의 거리이다. 이 거리의 1/2을 舉屋의 높이로 한다는 규정이다.
- 18) 折屋은 舉屋에 의해 종도리의 위치를 결정한 다음, 종도리 바로 아래에 위치한 도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각 도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선 종도리 바로 아래에 위치한 도리(이해의 편의상 ①번이라 한다.)의 높이는 종도리 상면과 檻檻方 상면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직선에서 舉高의 1/10만큼을 낮춘 높이로 한다. 다음으로 ①번 도리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도리(②번 이라 한다.)의 높이를 결정하는데, ②번 도리의 높이는 ①번 도리의 상면과 檻檻方 상면을 연결한 직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직선에서 ①번 도리를 折屋하는 높이의 半, 즉 舉高의 1/20을 낮춘 높이로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折屋하는 높이를 半씩 줄여가면서 檻檻方 바로 위에 위치한 도리까지 각 도리의 높이를 결정한다<도1>.
- 19) 매 도리의 '折'하는 높이는 종도리 바로 아래의 도리에서는 舉高의 1/10로 하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折'하는 높이를 1/2씩 줄여나간다는 규정이다.



(도10) 金箱斗底槽의 평면 실례



(도11) 殿堂五鋪作(副階四鋪作)單槽草架側樣第十三

제의 크기를 미리 규정하는 것이 적산계획이다. 적산계획은 영조하고자 하는 각 건물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적산계획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적산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적 사항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필요성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개인 등私的인 경우보다는 대규모의 건물을 영조하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더욱 절실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가에서는 목재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私의인 영조 활동까지도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적산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사항이 필요하게 된다.

많은 건축물에 대한 적산을 손쉽게 하기 위해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해 낸 것이 건축물의 '標準化'이다. 표준화는 목재 생산지에서 건축부재의 1차가공을 가능하게 한다. 목재 생산지에서의 1차가공은 운송해야 할 목재의 양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또한 표준화는 공사현장에서의 조립화를 가능하게 하고, 공사의 합리화와 재료의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

『營造法式』<大木作制度>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표준화에 대한 시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大木作과 관련된 『營造法式』의 전체적인 구성은 <大木作制度一·二>에서 건물을 영조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까지 규정하여 건축물을 표준화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大木作制度功限>條에서 각 건물에 소용되는 목부재의 수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유형, 평면유형과

규모, 포작수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게 되면 그 건물에 소용되는 목부재의 수량을 손쉽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營造法式』의 특징은 표준화이다. 그런데 『營造法式』이 표준화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목재가 부족한 당시의 상황에서 목재의 절약과 효율적 관리, 목재운송의 합리화에 대한 보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2. 기본비례척도단위(材)의 사용

『營造法式』<大木作制度>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材'라고 하는 '비례척도단위'의 사용을 통한 '모듈화'를 들 수 있다. 1材는 건물의 공포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부재인 첨차(棋)의 단면높이와 동일하다<sup>39)</sup>. 이 높이의 1/15을 1分<sup>o</sup>으로 하고 그 10分<sup>o</sup>(첨차의 단면폭과 동일)을 1材의 너비로 삼았다. '材' 외에 부수적인 단위로 '架'라는 비례척도단위를 사용하였다. 1架는 단면의 높이가 6分<sup>o</sup>, 너비가 4分<sup>o</sup>이다. 이와 같이 『營造法式』에서는 '材'와 그 부수적인 단위인 '架'를 사용하여 각종 치수를 "×材×架", 또는 "×分<sup>o</sup>"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材는 단면비가 높이:너비=3:2의 비를 이룬다. 부수적인 단위인 '架'도 같은 비례의 단면을 지닌다. 즉 『營

- 20) 작역하면 '평평하게 한다.' 라는 뜻이나, 여기에서는 종도리 상면에서 檻檻方(의목도리) 상면까지 줄을 이용하여 작선을 잡는다는 것이다.
- 21) 罷에 대해서는 앞의 II장 1-2. 構條의 計(23)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리의 위치를 도리방향으로 연결한 선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第1縱'은 종도리 바로 아래에 위치한 도리를 길이방향으로 연결한 선, 즉 종도리 바로 아래에 위치한 도리 자체를 말한다.
- 22) 構架의 數가 많은 것, 다시 말해서 도리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23) 앞에서의 "매 梁마다 위로부터 半씩 遙減하는 것을 법칙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반복된 것으로 생각된다.
- 24) '括繩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평줄'을 말한다.
- 25) 도리 사이의 수평거리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를 따로 항목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도리사이의 수평거리를 일정하게 하는 것을 법칙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건축에서는 도리사이의 수평거리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앞의 計(2)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長椽과 短椽을 사용하여 각 도리사이의 수평거리가 중국건축에서처럼 일정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 26) '開尖'은 지붕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모암지붕'을 말하는 것이다.
- 27) 角梁 후미의 아랫면을 말한다.
- 28) 뒤의 計(30) 참조
- 29) 4각 또는 8각형 평면의 모암지붕으로 된 檻檻류의 건물에 있어서 檻折의 높이(舉高)에 대한 규정이다. 이때에도 건물 전후에 위치한 檻檻方 사이의 수평거리와 그 상면이 각각 기준이 된다. 물론 여기에서도 檻梁이나 출목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 전후에 위치한 檻檻 사이의 수평거리가 기준이 된다. 여기에서는 檻檻方 상면에서 角梁 후미 아랫면까지의 높이와 檻檻方 상면에서 上敍角梁까지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다. <도6>과 <표2>는 이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 30) 측각량(簇角梁)은 折腹梁이라고도 하는데, 4角形, 6角形, 8角形 평면의 開尖亭榭에 사용하는 角梁의 일종으로 大角梁 위에 거듭하여 사용하는 부재이다. 이 부재는 각 大角梁 위에 3개씩 사용하는 것(上·中·下敍角梁)을 원칙으로 한다<도6>. '簇'의 자전적 의미는 '모이다(聚也)'로 徐伯安, 郭巖旭은 "(簇角梁은) 그 후미가 모두 건물 평면상의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簇角梁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徐伯安, 郭巖旭, 『宋『營造法式』述語註釋』, p.76~77).

(표.2) 4角 또는 8角 開尖亭榭의 舉高

건물유형	椽檻方상면에서 角梁 후미 아랫면까지의 舉高(H1)	椽檻方 상면에서 上敍角梁까지의 舉高(H2)	비 고
亭 樣	$H = \frac{1}{5} D$	$H = \frac{1}{2} D$	D : 전후 檻檻方 사이의 수평거리
암기와만을 사용한 亭棚		$H = \frac{2}{5} D$	

『營造法式』에서는 각 부재의 단면을 기본적으로 높이:너비 = 3:2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리고 실제적인 각 부재의 단면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도 일부 수평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평재는 단면비가 3:2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례는 수평재가 수직력을 받을 때, 이에 대항하는 강성이 가장 좋은 비례이다. 이러한 점에서 『營造法式』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면비는 구조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3. 건축물의 획일화

표준화와 비례칙도단위의 사용을 통한 모듈화는 대량생산이나 합리적 시공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해 조영된 건축물은 '획일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중국 목조건축이 시대나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태나 비례의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획일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조건축과 비교할 때 좀 더 확실해진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조건축은 고려시대 중후기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다. 이는 현존하는 중국의 목조건축이 빠른 것은 唐代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시대적 분포가 매우 짧은 기간에 걸쳐 있다. 이와 같이 비교 가능한 현존하는 목조건축의 시대적 분포가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은 변화가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그

계통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현존하는 중국의 목조건축은 우리나라 보다 긴 시대적 분포상황을 지니고 있지만 그 변화의 폭이 좁은 편이다. 즉 중국의 목조건축은 그 계통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동시대의 목조건축을 비교할 때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중국의 목조건축이 표준화의 시도와 비례칙도단위를 사용을 통한 모듈화를 시도했다고 하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실례의 하나로 지붕곡선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長椽과 短椽을 사용하고 3分作法 또는 4分作法에 의해 도리의 위치를 결정한다. 도리 사이의 거리와 각 도리의 수직높이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더욱이 최종적인 지붕곡선은 도리와 서까래에 의해 1차의 곡선을 형성한 위에 다시 훑을 깔아 기와를 얹어서 얹어진다. 즉 우리나라의 지붕곡선은 2중의 곡선을 이루는 셈이다. 따라서 지붕의 곡선이 매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중국건축에서는 도리와 서까래에 의해 구성되는 곡선이 그대로 지붕곡선이 된다. 도리 사이의 수평거리는 거의 일정하게 설정된다. 도리의 높이도 일정한 비례에 따라 설정된다. 따라서 지붕곡선이 획일적일 수 밖에 없다. 宋代의 『營造法式』이나 清代의 『工程做法』에서 사용하는 지붕기구법은 서로 다르지만 두 방법 모두 도리 사이의 수평거리와 수직거리 사이에는 일정한 비례가 형성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營造法式』이나 『工程做法』이 실제적인 영조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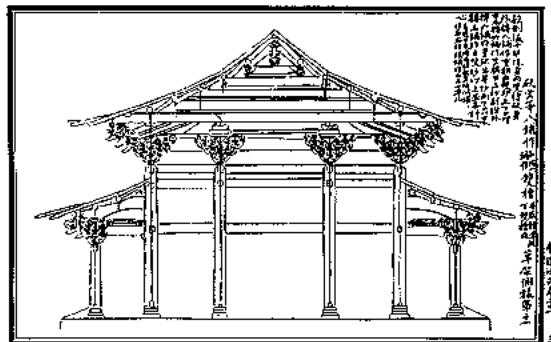
31) 세계의 旗角梁(또는 簾梁), 즉 上折旗梁, 中折旗梁, 下折旗梁을 사용하여 세번 꺾인 구조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도6>

32) '정간(板檁)'은 4角, 6角, 8角形 평면의 開尖平檁에서 자봉의 한가운데 角梁의 후미가 모이는 위치에 있는 공중에 매달려 수직으로 세워진 부재로, 角梁의 후미가 이 檁으로 모여 결구된다. 清代 亭閣건축에서의 '雷公柱'에 해당한다.

33) 上折旗梁과 大角梁이 만나는 곳을 말한다.

34) 경우에 따라서는 평방이 정방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정방형이 대부분이다.

35) 이를 앞 문장과 연결하여 副櫛替가 2架椽, 즉 副替에 사용되는 보(乳樑)의 길이가 2架椽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뒤에 나오는 側櫛替와 비교할 때, 이러한 해석이 옳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문액으로 볼 때, '脊'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도리방향 각 柱間의 길이가 2架椽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12〉 殿堂等八鋪作雙槽草架側樣第十一



五臺佛光寺 문수전(94.7.18)

알 수 있으나, 이들 建築書에 나타난 표준화의 시도는 중국건축이 획일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4. 건축에 대한 이상향으로서의 『營造法式』

『營造法式』의 각종 내용이 실제적인 영조활동에 얼마나 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조활동에 대한 중국인의 기본적인 생각이 『營造法式』에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점 만큼은 분명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營造法式』 <大木作制度>의 내용이 당시의 건축적 상황, 즉 당시 목조건축의 형태나 기술수준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營造法式』은 편찬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건축기술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형태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편찬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것을 따랐다고 볼 수 없다. 『營造法式』의 내용이 실제 건축물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營造法式』에서는 창방(闊額)에 벨목을 두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40)</sup>. 그러나 현존하는 목조건축물을 중에서 唐代에 건축된 山西 五臺 南禪寺 大殿, 山西 五臺 佛光寺 東大殿 등 이른 시기에 건축된 일부 건축물을 제외한 遼代와 宋代 이후의 대부분의 건축물에서는 창방벨목이 사용되고 있다<sup>41)</sup>. 따라서 「營造法式」의 내용은 당시의 건축형태와 다른 점도 많았

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營造法式』을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건축기술과 형태 등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인 것으로 보고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만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營造法式』은 사실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건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營造法式』의 筆者(李誠)가 자기 나름대로의 건축에 대한 생각을 그의 저술 속에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營造法式』은 앞으로의 건축에 대한 北宋代의 사람들의 이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營造法式』에는 北宋代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理想的'인 건축에 대한 가치관이 투영된 것이다. 물론 실제적인 造營활동에 이 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宋『營造法式』 <大木作制度> 註解를 마치며

『營造法式』은 조영활동과 관련되는 매우 드문 전문적인 建築書라고 하는 建築史的 의미를 지닌다. 宋代의 건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營造法式』은 宋代를 前後한 중국목조건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史料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현존하는 목조건축의 시대적 분포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중국건축이나

36) 이는 건물을 각면의 정면에서 보아 기둥을 황방향으로 연결한 선이라 할 수도 있다. '構'에 대해서는 앞의 주)에서 설명한 바 있다. II장 1-2의 誌23) 및 <도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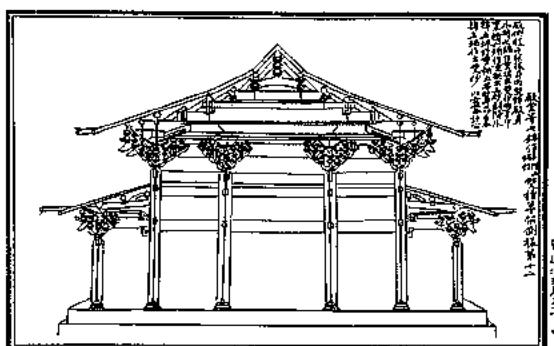
37) “斗底槽도 이에 준한다. 아래의 叢槽('草家側樣第十')를 말함)도 마찬가지이다.”

38) 北宋代 開封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의 목재생산량에 대해 정확한 자료는 아직 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조사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중국의 중원지역은 목재가 많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언급은 아직은 가설적인 것으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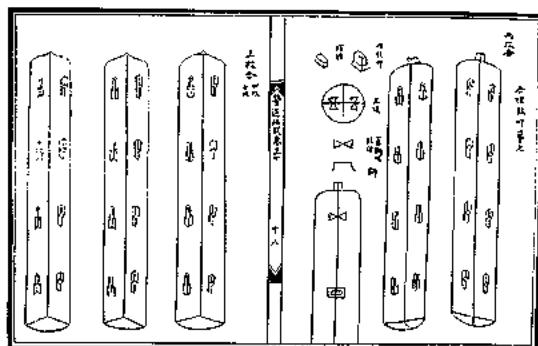
39) 『營造法式』 卷第四 <大木作制度> '材' 條 II장 1-1. 材 條 참조

40) 출처, 물론 창방에 벨목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규정된 내용에서는 창방에 벨목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41) II장 2-2. <闊額> 조의 誌5) 참조



(도13) 殿堂等七鋪作雙槽草架側樣第十二



(도14) 組合柱

일본건축을 간접적인 사료로 활용하여 고려중기 이전의 목조건축에 대한 내용을 비교·연구해 보는 것도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을 연구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그 동안 중국건축이나 일본건축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고대목조건축을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루어진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사실 매우 편향적이었다는 느낌도 든다. 현존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목조건축을 충분히 실견해 보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을 중국이나 일본의 것과 연결시키려 시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건축과 우리나라 건축의 비교연구는 과거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가 아직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중국건축을 실견하거나 중국건축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건축을 실견할 수 있으니, 자료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와 중국의 건축문화를 비교·연구함으로써 과거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建築史의 평가를 시도해야 할 단계라 생각된다. 그러나 막연한 중국건축과의 비교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건축사를 중국건축에 종속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自繩自縛의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를 범

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건축이 지니는 건축사적 의미, 사료적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 이후에야 우리나라 건축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사료로서의 중국건축이 그 활용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營造法式』<大木作制度>를 번역하고 이에 대한註釋을 달게 된 것이다. 본註解가 한국목조건축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註解者の見識이 좁아原文에 대해 해석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고, 번역이나 주석에 오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의 지적과 질책이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國土開發研究院, 『營造法式(二)』, 1989
- 國土開發研究院, 『營造法式(一)』, 1984
- 徐伯安, 郭黛姮, 『宋<營造法式>述話匯釋』<建築史論文集> 第六輯,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1984
- 梁思成, 『營造法式註釋 卷上』,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3
- 梁思成, 『清式營造則例』,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7
- 李誠, 『營造法式』,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 梁思成著, 한동수·양호영 역, 『圖說中國建築史』, 서울: 세진사, 1992

#### 원고모집

## 「건축사」지는 건축사 여러분의 대화의 “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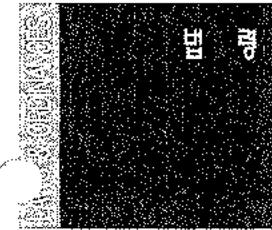
월간 「건축사」지는 회원 여러분의 대변자이며, 모든 건축인을 위한 잡지로 항상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에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참여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 〈모집내용〉

- ☆ 시, 수필, 수상, 건축기행문
- ☆ 건축관련 연구논문 또는 기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의 글
- ☆ 회원작품(최근 1년이내 준공된 작품)
- ☆ 계획작품(현재 계획중이거나 계획으로만 끝난 미실현작품)
- ☆ 작품스케치(작품과 관련된 개념스케치)
- ☆ 회원 갤러리(그림, 사진, 조각 등)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우편번호 : 137-070)  
전화 : 587-8504(직), 581-5711~4(교) FAX : 586-8823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 14,744호, 1995년 8월 4일

##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1995년. 1. 5. 법률 제492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기술보호기 간을 “2년이상 5년이하”에서 “5년이상 10년이하”로 연장함(령 제32조 내지 제34조)
- 나. 과당경쟁이나 업체간 담합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체에 지가낙찰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조건이 우수한 업체순으로 협상을 벌여 낙찰자를 정하는 가격·기술분리입찰제를 도입함(령 제38조제3항).
- 다. 시설감리의 대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에 관한 설계로 하되,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이 도입되거나 주요시설물이 포함되는 설계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령 제38조의 12).
- 라. 외국감리전문회사는 일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감리업무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외국감리전문회사도 국내감리전문회사와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쳐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 2 및 제54조의 3 삭제,령 제54조제3항).
- 마.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그 기록사항의 관리,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감리협회 등의 민간단체에 위탁함(령 제61조).
- 바. 기술자격취득자와 동등하게 건설기술자로 인정받는 학력·경력자를 학력·실무경력 등에 따라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함(령 별표1).

〈법제처 제공〉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건설공사의 견적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설계감리대상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의 범위)법 제2조제3호의3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

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관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사업시행자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시설의 사업시행자로서 주무관청(관계법령에 의하여 낭해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의 업무를 관掌하는 행정기관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2월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법·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와 건설 관련업체의 임원(개인업체의 경우에는 경영자를 말한다)인 건설기술자로서 건설업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을 받은 자 또는 건설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9.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전문기관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② 건설기술자는 매 5년마다 1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은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등급의 기준으로 훈련과정별로 정되며, 교과목에는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감리원의 관리)①** 법 제6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관리를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한 감리원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이동사항
2. 기술자격 또는 학력변경사항
3. 상벌사항

② 법 제2조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한다)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감리원이 배치된 때와 감리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감리원의 감리원수첩에 사업명·감리기간·담당업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감리원 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감리원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5.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기관 또는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전문기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 훈련의 대행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7조 및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 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외에 관한

##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9조 제2항·제85조 제5항·제86조 제2항 및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중 "200인"을 "300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간사 및 서기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등 용역의 계약이행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할 것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 다만, 중앙위원회가 기본설계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기타 관계기관에"를 "기타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로 하고, 동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발주청"으로 하며, 동항 제1호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관계기관에"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특별시의 경우에는 2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위원회”로, “80인”을 “120인”으로 한다.

제29조의 2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7.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30조제2항중 “투자를”을 “투자액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을 작성하여”를 “당해연도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과 전년도 기술개발투자등의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와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전에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신기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9조 제3호의 건설기술정보센터에 통지하여 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및 기간

3. 기타 신기술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신기술의 보호 등)①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권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발주청에 권고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한 결과 현장적용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기술개발자금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신기술

## 사업자금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등은 당해 신기술의 공고일부터 5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신기술지정시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5장의 제목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설계 등 용역의 참가제한)① 법 제20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자

가. 해당전문분야의 기사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 7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2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의 10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나.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2. 기술사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범위의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3.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전문분야별 현황을 작성하여 발주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중 “3억원이상인 건설기술역사업”을 “1억5천만원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① 발주청(제3조의2제2호의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작성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용역명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 6.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제3조의2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 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내지 제38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건설기술의 공모대상)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제38조의3(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① 발주청은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기술공모에 위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

## 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당해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예정시기
6. 기타 기술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등 기술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4(건설공사 시행과정)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경우,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보수, 철거, 개량사업인 경우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의5(건설공사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주민이나 이해 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연계성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8조의6(건설공사의 설계)① 발주청은 제38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공모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발

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가 작거나 공사의 특성상 기본계획에 개략적인 구조제산·설계도서작성·기초토질조사등 기본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할 것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의 지하배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사기간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 혹서, 혹한등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할 것

제38조의7(설계자문)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지방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당해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착수단계·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발주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38조의8(건설공사의 착공 및 시공)① 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공종별 공정계획,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과 시공에 따

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규모등에 따라 준공예정일 1월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의9(유지관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결과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3. 준공도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설물의 관리자는 완공된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10(건설공사시행과정의 세부사항) 제38조의4내지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의 착공 및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11(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른 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시정조치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의12(설계감리대상용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설계등 용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1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거나 주요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0억원이상인 공사

2. 국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인 공사

3. 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가. 길이 100미터이상 또는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이상인 교량 공사나 터널, 지하철, 댐등의 특수한 구조물공사

다. 막구조, 현수구조등 특수한 구조로 건축하는 건축물공사

라. 국내에서의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공사.

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제40조제3항중 "설계도서·시방서"를 "설계도서"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건설업자등"을 각각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상품"을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상품(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품을 포함한다)"으로, 동조제4항중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을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등"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본문 중 "건설업자등"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재료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당해 재료에 대한 총시험회수를 산출하여 그 산출된 회수의 5분의 1이상 관리시험을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건설업자등"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제49조의2 각호의 기관"을 "법 제2조제3호의 3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건설업자등을"을 "건

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자등에게”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로, “건설업자등은”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을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발주자 및 건설업자등은”을 “발주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품질시험”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자등은”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점검)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건설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의 의뢰는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할 것

2. 정기안전점검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것

가.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관급자체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되,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계약총공사비”라 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실시할 것

나. 계약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다. 재해발생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회수를 증가시킬 것

3.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④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⑤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결과와 그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공사의 준공후 2월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기관의 장”을 “기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

7.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부수 둘

제47조의4제3항중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을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표준납품서”를 “납품서”로 한다.

제4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 6. 지방해운항만청

제4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품질시험대행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의2를 삭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의 공사로 한다.

가.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나.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이거나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다. 가목 및 나목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소득원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 각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는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

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

6. 전문기술을 요하는 방송시설공사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중 “발주기관의 장”을 “발주청”으로,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회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전문회사를 교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발주기관의 장”을 “발주청”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기준에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 중 “발주기관의 장”을 “발주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는 최근 3년이내에 5건이상의 용역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용역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20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여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ベル점, 기술개발투자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및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용역성과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또는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건설업법 제50조 또는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 우수건설업자지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로 하고,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우수용역업자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20조의3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우수용역업자지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종전의 제59조의2)  
제59조의3의 제목을 “(건설감리협회 성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하며, 동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감리원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5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5(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 의무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분회, 지부,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재정, 회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3.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4.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과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등의 요청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및 변경 등록

6.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및 등록말소

7. 법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취소·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등의 조치

8.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에 대한 업무 정지 또는 시정지시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

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수첩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3.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

4.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사항의 접수

5.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의 접수

6.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이에 고용된 감리원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첩의 교부 및 관리

3.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현황신고의 접수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의4제3호의 설계등 용역업자(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2.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자에 현황의 작성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한건설

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한국기술사회 및 대한측량사협회에 각각 위탁한다.

1. 대한건설협회: 법 제21조의4제1항제1호의 건설업자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2.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3. 한국기술사회: 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설계등 용역업자(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한한다)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4. 대한측량사협회: 법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설계등 용역업자(측량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에 대한 부실별점의 종합관리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주요시설물 등) 법 제41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고가도로, 지하도, 월주로, 삭도, 냉,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연변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점화시설 기타 16층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7과 같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

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별표 1)내지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시행과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 이후 설계등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증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연장신청은 보호기간만료일 9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시공중인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점검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안전점단대가가 공고될 때까지는 제4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1984년 8월28일이전에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당해 교육이수 당시에 제5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당시 건설교통부장관

이 시행한 감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5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31일까지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외국법인의 감리전문회사등록에 관한 특례)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1996년 4월30일이전에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리전문회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1996년 6월30일까지 (최초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1996년

6월30일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를 말한다)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초급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전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미만인 초급감리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증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증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너비 4m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m 미만의 도로)와 종단 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제6조 제2항 및 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주차시간 30분을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차시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11조 제4항 본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대지면적에 대한 토지가액에 의하며, 소요대지면적은 주차대수 1대당 18m<sup>2</sup>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11.5m<sup>2</sup>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대지면적에 대한 토지가액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부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낮은 가액에 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차장법시행규칙증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27호, 1995년 8월 5일

## 개정이유

노상주차장 시료건을 완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는 등 협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요건을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서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완화함(제4조).

나.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요건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완화함(제5조).

다.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분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차시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요금계산법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납부하는 설치비용을 당해 건축물부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함(제14조).

〈건설교통부 제공〉

주차장법시행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m 이상, 길이 6m 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너비 2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제3호 단서중 “8m”를 “6m”로 한다.

제5조 제3호라목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6

# 1995년도 7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7월분 1천1백1만1천1백80m<sup>2</sup> 보다 17.5%(1백9십2만1천78백84m<sup>2</sup>) 감소한 9백8만9천3백96m<sup>2</sup>의 실적을 보임.

###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7월누계 8천4백8십2만1천7백85m<sup>2</sup> 보다 10.3%(8백

7십4만2천3백98m<sup>2</sup>) 감소한 7천6백7만9천3백87m<sup>2</sup>의 실적을 보임.

### 다. 전월비

전월 6월분 1천7십4만1천8백56m<sup>2</sup> 보다 15.4%(1백6십5만2천4백60m<sup>2</sup>) 감소한 9백8만9천3백96m<sup>2</sup>의 실적을 보임.

##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m <sup>2</sup> )			
구 분		1994년도	1995년도	증 감	비 율(%)
증가지역	부 산	258,717	364,928	106,211	41.1
	충 북	348,557	529,128	180,571	51.8
	전 남	234,624	771,519	536,895	228.8
	제 주	16,510	120,337	103,827	628.9
감소지역	서 울	1,822,824	1,529,664	(293,160)	-16.1
	대 구	849,589	459,975	(389,614)	-45.9
	인 천	360,540	338,540	(22,000)	-6.1
	광 주	261,722	208,485	(53,237)	-20.3
	대 전	310,883	216,073	(94,810)	-30.5
	경 기	3,198,529	1,948,146	(1,250,383)	-39.1
	강 원	396,137	305,887	(90,250)	-22.8
	충 남	513,149	445,797	(67,352)	-13.1
	전 북	760,121	324,540	(435,581)	-57.3
	경 북	916,660	847,091	(69,569)	-7.6
	경 남	762,618	679,286	(83,332)	-10.9
	합 계	11,011,180	9,089,396	(1,921,784)	-17.5

##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m <sup>2</sup> )			
구 分		5월분	6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951,738	755,706	(196,032)	-20.6
다 세 대 주 택		377,605	306,718	(70,887)	-18.8
연 립 주 택		189,359	164,910	(24,449)	-12.9
아 파 트		3,892,484	3,152,464	(740,020)	-19.0
근린생활시설		1,488,872	1,237,888	(250,984)	-16.9
종 교 시 설		113,324	67,418	(45,906)	-40.5
의 료 시 설		89,427	132,826	43,399	48.5
교 육 연구 시 설		459,053	209,835	(249,218)	-54.3
업 무 시 설		632,890	593,956	(38,934)	-6.2
숙 박 시 설		155,183	205,115	49,932	32.2
공 장		1,117,093	1,231,413	114,320	10.2
기 타		1,274,828	1,031,147	(243,681)	-19.1
계		10,741,856	9,089,396	(1,652,460)	-15.4

##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7월분)

구 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3,013	3,064	680,193	3,126	3,184	755,706	113	120	75,513	11.1	
다 세 대 주 택	632	670	304,721	698	726	306,718	66	56	1,997	0.7	
연 립 주 택	80	87	126,130	94	101	164,910	14	14	38,780	30.7	
아 파 트	197	798	5,012,324	147	502	3,152,464	(50)	(296)	(1,859,860)	-37.1	
근린생활지역	3,003	3,111	1,320,917	2,848	2,961	1,237,888	(155)	(150)	(83,029)	-6.3	
종 교 시 설	102	121	81,165	109	119	67,418	7	(2)	(13,747)	-16.9	
의 료 시 설	22	24	18,415	27	27	132,826	5	3	114,411	621.3	
교 육 연구 시 설	174	204	394,407	110	119	209,835	(64)	(85)	(184,572)	-46.8	
업 무 시 설	107	117	339,798	98	111	593,956	(9)	(6)	254,158	74.8	
숙 박 시 설	134	140	147,687	122	128	205,115	(12)	(12)	57,428	38.9	
공 장	800	1,138	1,513,171	833	1,138	1,231,413	33	0	(281,758)	-18.6	
기 타	1,184	1,459	1,072,252	1,062	1,267	1,031,147	(122)	(192)	(41,105)	-3.8	
합 계	9,448	10,933	11,011,180	9,274	10,383	9,089,396	(174)	(550)	(1,921,784)	-17.5	0=마이너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7월분)

구분 용도별	1994년			1995년			대비			연면적 비율 (%)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29,367	29,927	6,883,377	27,771	28,242	7,071,650	(1,596)	(1,685)	188,273	2.7	
다세대주택	5,029	5,427	2,514,815	5,350	6,167	2,658,760	321	740	143,935	5.7	
연립주택	683	880	1,304,774	790	842	1,144,102	107	(38)	(160,672)	-12.3	
아파트	1,281	5,377	30,090,602	1,176	4,121	26,725,363	(105)	(1,256)	(3,365,239)	-11.2	
근린생활시설	28,795	29,607	13,254,023	24,959	25,731	11,517,108	(3,836)	(3,876)	(1,736,917)	-13.1	
종교시설	950	1,093	843,266	812	932	608,994	(138)	(161)	(234,272)	-27.8	
의료시설	142	164	328,393	170	182	632,915	28	18	304,522	92.7	
교육연구시설	886	1,048	2,457,073	833	967	2,254,913	(53)	(81)	(202,160)	-8.2	
업무시설	792	851	2,374,187	824	861	4,243,266	32	10	1,869,079	78.7	
숙박시설	1,365	1,432	1,739,582	889	967	1,287,012	(476)	(465)	(452,570)	-26.0	
공장	6,164	9,212	9,674,254	6,001	8,362	8,938,016	(163)	(850)	(736,238)	-7.6	
기타	8,870	11,281	13,357,439	7,208	8,760	8,997,300	(1,662)	(2,521)	(4,360,139)	-32.6	
합계	84,324	96,299	84,821,785	76,783	86,134	76,079,387	(7,541)	(10,165)	(8,742,398)	-10.3	0=미너스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7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비			연면적 비율 (%)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263	1,289	1,822,824	1,356	1,356	1,529,664	93	67	(293,160)	-16.1	
부산	708	779	258,717	864	937	364,928	156	158	106,211	41.1	
대구	1,398	1,405	849,589	1,148	1,168	459,975	(250)	(237)	(389,614)	-45.9	
인천	441	441	360,540	343	360	338,540	(98)	(81)	(22,000)	-6.1	
광주	221	257	261,722	223	274	208,485	2	17	(53,237)	-20.3	
대전	276	285	310,883	192	193	216,073	(84)	(92)	(94,810)	-30.5	
경기	1,498	1,997	3,198,529	1,663	1,901	1,948,146	165	(96)	(1,250,383)	-39.1	
강원	497	583	396,137	510	550	305,887	13	(33)	(90,250)	-22.8	
충북	494	560	348,557	523	610	529,128	29	50	180,571	51.8	
충남	410	454	513,149	378	423	445,797	(32)	(31)	(67,352)	-13.1	
전북	290	391	760,121	261	278	324,540	(29)	(113)	(435,681)	-57.3	
전남	347	437	234,624	371	482	771,519	24	45	536,895	228.8	
경북	674	964	916,660	516	756	847,091	(158)	(208)	(69,569)	-7.6	
경남	894	1,053	762,618	821	963	679,286	(73)	(90)	(83,332)	-10.9	
제주	37	38	16,510	105	132	120,337	68	94	103,827	628.9	
합계	9,448	10,933	11,011,180	9,274	10,383	9,089,396	(174)	(550)	(1,921,784)	-17.5	0=미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7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비			연면적 비율 (%)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1,537	11,949	11,159,064	11,767	11,831	11,858,889	230	(118)	699,825	6.3	
부산	6,663	7,542	5,849,014	6,230	7,406	4,932,912	(433)	(136)	(916,102)	-15.7	
대구	9,659	10,341	4,853,665	8,654	9,022	5,389,770	(1,005)	(1,319)	536,105	11.0	
인천	3,338	3,479	4,406,634	2,877	3,036	3,972,817	(461)	(443)	(433,817)	-9.8	
광주	2,742	3,350	3,954,820	1,977	2,619	2,939,948	(765)	(731)	(1,014,872)	-25.7	
대전	2,968	3,124	1,987,391	1,904	2,072	2,307,381	(1,064)	(1,052)	319,990	16.1	
경기	13,953	16,918	18,927,619	14,362	16,251	16,541,716	409	(667)	(2,385,903)	-12.6	
강원	3,821	4,359	2,444,858	4,109	4,866	3,277,974	288	507	833,116	34.1	
충북	4,415	5,252	3,110,129	3,713	4,177	2,725,793	(702)	(1,075)	(384,336)	-12.4	
충남	3,702	3,930	8,584,851	3,142	3,420	5,051,379	(560)	(510)	(3,533,472)	-41.2	
전북	2,552	3,043	3,476,713	1,923	2,155	2,564,032	(629)	(888)	(912,681)	-26.3	
전남	3,693	4,472	2,359,678	2,841	3,386	2,368,080	(852)	(1,086)	8,402	0.4	
경북	5,368	7,082	5,962,457	4,705	6,131	4,792,893	(663)	(951)	(1,169,564)	-19.6	
경남	7,675	9,078	6,782,536	7,006	8,098	6,652,866	(669)	(980)	(129,670)	-1.9	
제주	2,238	2,380	962,356	1,573	1,664	702,937	(665)	(716)	(259,419)	-27.0	
합계	84,324	96,299	84,821,785	76,783	86,134	76,079,387	(7,541)	(10,165)	(8,742,398)	-10.3	0=미너스

## 이사회 개최



우리협회의 주요 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김규태회장 주재로 지난 7월 21일(제13회)과 8월 11일(제14회)에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어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3회

- 창립30주년기념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관한 건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창립30주년기념 전국건축사대회는 삼풍백화점 봉고사고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침체와 정부차원의 건축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 추진 등으로 인해 유보 또는 무기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창립30주년기념 행사는 정기총회 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기로 함.

### 제14회

- 창립30주년기념 행사 개최계획(안) 승인의 건

-창립3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10월 23일(목)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대연회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참석대상, 주요행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 및 30주년기념 행사 위원장에게 위임 추진토록 함.

- 동고 및 일본건축사 초청 계획(안) 승인의 건

-1985년 3월 체결된 한·일건축사 교류각서에 의거 건축기술 정보교류 및 상호친선 도모를 위하여 격년제로 상호방문 또는 초청 등의 형식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는 일본건축사회 연합회회장단 4인과 한·몽 상호협력 및 교류협정 체결에 따라 동고건축사협회 회장단 8인을 오는 10월 24일 제30회 정기총회에 초청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가급적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함.

- 제30회 정기총회 개최일정에 대한

### 협의

- 오는 10월 24일(화) 오전 10시에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키로 함.

- 건설제도 개혁 기획(안)에 대한 협의
- 기존 대책위원회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임원은 수시로 조언토록 함.

- 삼풍사고 대책처리에 대한 협의
- 삼풍백화점 사고 특별점검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수고한 위원들에게 감사장 수여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함.

- '95한국건축문화대상 부문별 심사위원 추천에 대한 협의
- 회장 및 홍보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강봉전 전임회장 저술 "한국건축사대요" 발간 요청에 대한 협의
- 우선 편찬위원회에서 협회에서 발간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도록 위임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우리 협회, 설계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우리협회는 지난달 삼풍사고 이후 건설교통부가 건설제도 전반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설치된 건설제도 개선기획단(단장 유상렬 건설교통부차관)에 설계감리분야에 대한 의견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협회가 제안한 제도개선 추진과제는 표준계약서 및 세부기술기준, 건축관련 법령의 통·폐합 정비,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 정립, PQ 및 입찰제도 확대에 관한 건, 중·단기 고급기술인력 수급대책 수립 등이다.

의견서에서 협회는 표준계약서 및 세부기술 기준의 경우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세부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또 현행 건축법도 법령체계가 애매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앞으로는 건축행정공무원이 설계서를 검토하기보다는 설계자가 건축법 등을 합법적으로 적용했는지의 여부만을 가려서 허가를 내주는 역할로 규정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또한 각종 심의 등도 건축법안에 있는 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별도 심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기존 건축관련 법령이 지나치게 다원화(약 80여 종류의 각종 법령)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법령을 관장하는 행정부서에서 제각각이어서 건축행정의 생산성이 크게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건축관련 법령을 통·폐합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현행 건축·건축사법에서는 설계감리의 업무와 개념정립이 불분명하게 돼 있어 시공업체와 설계자간 책임한도 및 역할 등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범위의 확실한 정립을 제안했다.

또한 설계발주에 있어 PQ 적용 및 입찰제도 확대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설계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재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건축설계의 경우 시공분야와 달리 기술자보유, 재정상태, 경험 등이 풍부하다고 해서 꼭 우수한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입찰제도의 확대방침은 오히려 대형설계업체에 대해 물량 편중은 물론, 중소업체 및 신인건축사들의 참신한 역량 발굴 및 발전기회를 봉쇄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 종합화 방안에 대해 협회는 설계와 시공의 경우 현행대로 분명하게 업역분리가 이뤄지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고 제안했으며, 장단기 기술인력 수급대책에 대해서도 건축대학의 별도 설립 등을 통한 국가적 장기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내실있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교통부 건설제도 개선기획단은 업계·학계·건설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아서 오는 10월까지 과제별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95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접수 마감

우리협회와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95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접수가 지난 8월 18일에 마감되었다. 건축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예년에 비해 많은 작품들이 접수된 이번 행사에는

준공건축물의 경우 총 77점이 접수되었으며,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신인부문과 각 대학 건축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문은 각각 16점, 179점이 접수되었다. 한편 '95 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는 작품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계획건축물 부문과 준공건축물 부문의 심사를 2차에 걸쳐 심사, 최종결과를 오는 10월 13일(금)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6일(월) 서울시립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거행되며, 전시회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동일 장소에서 열리게 된다.

강은 협회 대강당에서 오는 9월 18일(월) 오후 2시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강의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풍수지리, 건축법규(질의응답), 건축설비, 전기 및 시공, 우리건축에 대한 이해, 외국건축에 대한 이해, 기타 건축행정업무 등이고, 교재와 수강료는 무료이다.

## 개정 건축사법시행령 이달초 확정공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건축사법에 따른 시행령이 이달초에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될 개정 건축사법시행령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구분, 건축사자격시험, 설계도서의 사후신고제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건축사법에 단독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분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업무구분과 확보해야 할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규정한 항목을 삭제했으며, 아울러 사무실 면적 등의 등록기준, 설계·공사감리 수주에 따른 규모제한, 징해야 할 책임건축사의 수 등도 폐지됐다.

건축사 시험의 경우도 건축사 자격시험과 건축사 예비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건축사자격시험의 과목은 건축설계(2백점), 건축법규(1백점)으로 개정되며 건축사 예비시험은 건축구조(1백점), 건축시공(1백점), 건축계획(1백점)으로 바뀐다. 또 건축사보 신고수리, 건축사시험시행,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자의 신고수리 등의 업무를 건축사협회가 맡도록 했다.

또한 설계도서신고의 경우 기존에는 건축허가신청 청전에 건축사협회에 신고토록 했으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건축허가신청 후 7일이내에 신고토록 사후 신고제로 바꿨다.

## '95건축사자격(면허) 2차 시험실시

우리협회는 지난 9월 3일(일) 서울고, 선린중·상고에서 95년도 건축사자격(면허) 2차시험(특별전형 포함)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된 2차 건축사자격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90분동안 건축계획, 오후 12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3백60분동안 건축설계가 각각 실시되었으며, 주관식 30% 객관식 70%로 치러졌다. 한편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3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일제히 발표된다.

## 서울건축사회, 시민건축대학 제3기 개강

서울건축사회(회장 이의구)는 일반시민 및 건축관련인에게 건축과 관련된 올바른 상식과 정보를 제공, 건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부실 건축물 방지 및 건축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한 시민건축대학 제3기를 개설한다. 이번 제3기 시민건축대학 개

일 시	강 좌	내 용	강 사
9월 18일	1강좌	건축물의 안전관리	장동한(종합건축 신세기대표)
9월 25일	2강좌	풍수지리	박시익(도봉건축대표)
10월 2일	3강좌	건축설비(에너지관제)	이정기(에너지관리공단 기획과장)
10월 9일	4강좌	주거론	김인철(종합건축 인재대표)
10월 16일	5강좌	건축설계(교수)	한정도(서울산업대 건축공학과 교수)
10월 30일	6강좌	건축조경(설내외)	김유일(성균관대 조경학과 교수)
11월 6일	7강좌	건축법규	윤현경(서울시청 도시경관과 계장)
11월 13일	8강좌	건축시공	장양순(종합건축 동명대표)
11월 20일	9강좌	외국건축에 대한 이해(주거위주)	이정근(종합건축 우리계획대표)
11월 27일	10강좌	우리건축에 대한 이해(주거위주)	장순웅(삼성건축 대표)

이번 개정령 및 규칙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개정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 부산건축사회, 건축사 법인 전환 설명회 개최



부산광역시 건축사회(회장 박성길)은 지난 7월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건축사회관 12층에서 건축사 법인전환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건축사회 박성길 회장과 회원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선진 학동 회계사무소(서울) 황용현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건축사의 법인전환 절차 및 건축법인의 세무, 부동산 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요에 대한 설명에 이어 회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참석한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 일본 하마마쓰 지부 건축사방문단, 우리협회 방문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지부 가또 히데야끼 지부장과 19인이 지난 7월 27일 우리협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단은 올 해로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지부와 대전광역시 건축사회간의 건축문화 교류 1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내한했으며, 우리협회 박경환부회장 및 서울건축사회 이의구 회장은 이들 방문단을 맞이하여 양국 상호관심사에 관해 활

담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한·일 양국 간 건축문화교류의 기틀을 다졌다.

### 대전건축사회, 한·일교류 10주년 기념 행사개최



대전광역시건축사회(회장 류성희)는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지부와 건축문화교류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일교류 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념행사는 하마마쓰지부 가또 지부장과 26명 방문단의 환영식을 시작으로 국악공연, 공식회의 및 대전 EXPO관람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한·일 건축문화교류에 공헌한 김지태(우리협회 14대 회장), 유근렬(충남 8.9대 지부장), 고 민영기(충남지부 10대 지부장) 회원, 가에코 게이지(하마마쓰지부 전지부장), 가또 히데야끼(하마마쓰 지부장)에게 각각 기념패가 전달되었다.

사회의 새로운 짐을 실험한다.  
일본측 2명 -中原暉子等

토론자 : 좌 장/강병기(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병답(현대산업 개발 부사장)  
임창복(성균관대 건축과 교수)  
조혜정(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김석철회원, '95부산건축전 개최

서울건축사회 김석철 회원(아키반 대표)이 부산 가람갤러리에서 한국건축의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건축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건축전은 최근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석철회원의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과 제주도 영화박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의 프로젝트 위주로 30여작품이 전시되었고, 이어 지난 7월 29일에는 개막 전시회 리셉션에 이어 21세기 도시에서의건축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도 열렸다.

### 현실 비평연구소, 공개좌담회 개최

현실비평 연구소는 오는 9월 30일(토) 오후 2시에 종로구 소재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작가정신, 무엇이 아닌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 좌담회를 개최한다. 현실작가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작가정신의 정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개좌담회에는 김명윤(메타건축)소장의 사회로 김개천(이도건축), 김억중(하남대학교), 김홍일(WITH건축), 백문기(인도건축), 이정호(대구대학교), 이종상(이데아건축)소장이 참가한다. 한편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당일 오후 1시 40분까지 입실하여야 되며, 행사준비관계상 1시 45분에는 행사장 문을 폐쇄한다고 한다.

### 제2회 한·일여성건축가 심포지엄 개최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김화련)는 오는 9월 30일(토)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2회 한·일여성건축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1세기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1세기 신주거문화, 여성이 주역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지난 1994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주택, 가족, 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심포지엄에 이어 두번째이다.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발표자 : 지 순(간삼대표)/여자와 함께

변해 온 주택

김진애(서울포럼 대표)/바뀌는

여자, 바뀌어야 할 주택

조성룡(우원건축 대표)/새로운

## 서울건축학교, '95워크숍3 개최

정규과정 시행에 앞서 일련의 실험 과정으로 심도깊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건축학교는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95워크숍3'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전통건축의 해체라는 주제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이번 행사에는 특히 Alejandro Zaera Polo(영국, 요꼬하마 국제여객선 터미널 국제건축 설계 경기 당선자)가 초대되어 강연회도 진행된다. 강연일정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8월 22일(화) 오후 7시/한국의 고지도에서 발견되는 건축정신  
(최종현-우리공간문화연구소)

8월 24일(목) 오후 7시/우리의 리얼리티, 창작극의 현장(정현룡-연우무대 대표)

8월 25일(금) 오후 7시/제3세계 건축에서 전통의 의미와 실천  
(김광현-서울대 건축과)

8월 28일(월) 오후 7시/한국 전통음악의 해체와 현대적 재구성  
(백대웅-중앙대 한국음악과)

8월 31일(목) 오후 7시/건축에서의 동양과 서양의 만남  
(Alejandro Zaera Polo-영국건축가)

## '95 여름디자인 스튜디오 건축전 개최

국내 최초로 건축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경기대 건축대학원이 지난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대 서대문 캠퍼스에서 '95 여름디자인 스튜디오 건축전을 개최했다. 이번 건축전은 '95 여름디자인 스튜디오에 참가하고 있는 건축과학생, 설계사무소 직원 등이 한강변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Water Fron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40여작품을 전시한 것으로 참가자들에게 건축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난 8월 16~17일 양일간에 걸쳐 4명의 비평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참가작품에

대하여 공개 건축비평 시간도 가졌다.

## 강진희 교수 Total Design전 개최

홍익대 건축학과 건축계획 연구실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역 문화관 전시실(옛 그릴식당)에서 '강진희 교수 Total Design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30여년간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건축학회 작품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제자들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주택전시관, 올림픽 펜싱경기장, 백마고지 전적기념비 등 강진희교수가 30여년간 동료 및 제자들과 함께한 건축·도시설계, 조경, 공원계획, 조형물 등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한다.

## 성균관대 졸업작품 전시회 개최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는 오는 9월 2일(토)부터 9월 6일(수)까지 서울역 문화관 제1전시실에서 95년도 졸업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95년도 성균건축전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갈고 닦은 건축학과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될 뿐만아니라 선배 건축사들의 작품도 전시된다.

## 동해시 여성회관 현상설계 공모

동해시에서는 여성문화교육시설인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공모한다. 대지규모가 8,855m<sup>2</sup>, 건물규모 850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어질 이번 동해시 여성회관 현상설계 공모에는 오는 9월 13일까지 신청서 1부, 사무소등록증 사본1부, 대표자사용 인감제 1부를 가지고 신청접수를 하여야하며, 작품은 오는 9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당선작 발표는 오는 10월 중 예정이며, 당선작 1

점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고, 우수작 2점에는 상금 2천만원, 각각 1점에는 상금 1천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가정복지과 전화 0394-30-2342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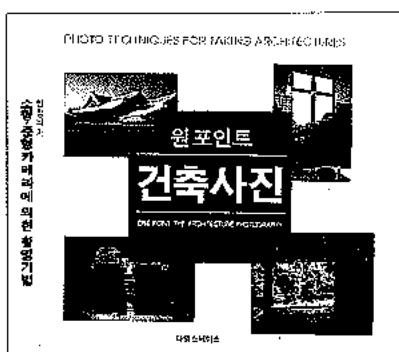
## 제4회 서울시 조경상 작품 공모 공고

서울시는 도시조경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체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4회 서울시 조경상 작품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서울시 조경상은 지난 90년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서울시내에서 시공완료된 육외 조경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9월 22일까지 작품을 접수하여야 한다. 또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7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금상 1점에는 상금 2백만원 및 상장, 은상 2점에는 상금 각 1백만원 및 상장, 동상 3점에는 상금 각 50만원 및 상장이 각각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지과 전화 750-8595로 문의하면 된다.

## 임정의, 건축 사진전 개최

20여년간 건축 사진만을 전문으로 찍어온 건축사진작가 임정의씨가 '세계건축 100년'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충무로 후지포토 살롱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작가가 유럽, 미국, 일본, 남미 등 세계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300여점을 역사적 맥락에 따라 사진으로 조명한 것으로서 건축사진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과 건축가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 「원 포인트 건축사진」 발간



도서출판 타임스페이스는 건축사진의 활용기법서인 「원 포인트 건축사진」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원 포인트 건축사진」은 다년간 건축사진만을 전문으로 찍어온 건축사진 작가 임정의씨가 환경과 도시, 산업시설, 스포츠시설과 문화공간, 현대와 고대건축,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 등 사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종류의 건축물을 제반조건과 상황에 따라 접근방법

및 활용기법에 대해 상세한 해설과 실례를 신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건축사진 활용기법 이외에도 모형사진과 투시도, 몽타주, 지명원과 포트폴리오 제작 등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담겨져 있다.

## 제2회 건축 CAD 학생작품 공모전 개최

(주)건축캐드기술연구소는 지방자치회사 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CAD/CAM을 이용하여 Presentation하는 것을 주제로 제2회 건축캐드 학생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내외 대학(대학원), 전문대학의 건축과 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에는 미발표된 창의적 작품이어야 하고 작품마감일은 오는 9월 18일(월) 까지이다.

한편 오는 10월 4일(수) 발표되는 당선작 1팀에게는 상금 2백만원 및 부상, 최우수상 1팀에게는 상금 1백만원 및 부상, 우수상 2팀에게는 상금 50만원 및 부상이 각각 수여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건축캐드기술 연구소 전화 598-1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건축가협회, 강연회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윤승중)는 오는 9월 19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노만 포스터(영, 건축가)를 초청하여 그의 건축 및 건축세계에 관한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며, 또한 오는 9월 27일(수), 10월 25일(수) 오후 3시부터 문예진흥공단 강당에서 조성렬(큐빅디자인), 오기수(환경스페이스 5)씨가 참석한 가운데 '95건축가 포럼'을 개최한다.

##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 안내

우리협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의한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 기관으로서, 1987년 본 사업 추진이래 다년간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이룩해 온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코자 보다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주요서비스내용

-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진단비용 절감
- 체계적인 업무수행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보장
-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에 대한 봉사(30일이내 완료)
- 의뢰일로부터 2일이내 현장 출장, 진단의 필요성 유무 조사, 판단

### 노후·불량 주택의 범위

- 건물이 웨손되거나 멀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건축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 토지 이용도에 따른 경제성·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합,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찰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구역내의 주택

문의 : 기술부 (02)581-5711~4, FAX. 586-8823

대한건축사협회 재건축위원회